

연구보고서 2005-14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연구

박세경 서문희 강주희
서영숙 진미정 노성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 리 말

아동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한다. 그 가치를 기증할 수조차 없는 아동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는 내일을 약속할 수 없다고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지만, 정작 이들이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장면을 마주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인간발달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해 성인의 관심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기본적 권리와 욕구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성인 권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과거와 비교하여 아동의 권익이 상당히 향상되었다지만 기본적인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비단 다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의 발달 환경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제공하고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Best Interests of Children)을 담보하는 보호체계의 구축과 보호환경(Protective Environment)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당연한 책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본 연구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아동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과 지역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입체적인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아동인구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미래사회의 생산적 구성원인 동시에 건강한 시민으로 키워내는 첩경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학대, 착취, 폭력 및 부적절한 양육환경 등 발달위기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체계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주요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아동보호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는데, 본 원 박세경 책임연구원의 책임 하에 원내·외 전문가가 참여하여 완성하였다.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바이며, 참여 연구진의 연구 활동과 보고서 집필을 위한 분담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박세경]

제2장 아동보호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박세경]

제3장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 [서문희]

제4장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사례연구

제1절 미국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및 주요 쟁점 [진미정]

제2절 영국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및 주요 쟁점 [노성향]

제3절 스웨덴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및 주요 쟁점 [강주희]

제4절 일본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및 주요 쟁점 [서영숙]

제5장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종합 비교 [박세경·강주희]

제6장 결론 및 제언 [박세경]

최근 저출산 현상이 사회문제화 되고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저출산 대응 정책의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한편에서는 이미 출생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대한 정책적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산장려만이 아니라 기 출생한 인적자본에 대한 적극적 사회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이에 아동보호정책이나 그 관련 서비스는 보편적 아동복지서비스를 추구하는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가 충실해질 수 있도록 의견제시 및 검독과정에 참여한 연세대학교 김명순 교수, 배제대학교 김숙령 교수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0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목 차

Abstract	10
요약	11
제1장 서 론	5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57
제2장 아동보호에 관한 이론적 고찰	65
제1절 아동보호의 개념	65
제2절 아동보호환경의 범주 및 보호체계 분석틀	77
제3장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	92
제1절 아동보호체계의 연혁	93
제2절 아동보호체계의 특성 및 주요 쟁점	99
제3절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시사점	122
제4장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사례연구	128
제1절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및 주요 쟁점	128
제2절 영국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및 주요 쟁점	164
제3절 스웨덴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및 주요 쟁점	197
제4절 일본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및 주요 쟁점	217

제5장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종합 비교	259
제1절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비교	260
제2절 OECD 국가 아동보호체계의 시사점	270
제6장 결론 및 제언	272
제1절 결 론	272
제2절 아동보호체계의 발전방향	274
 참 고 문 헌	 288
 부 록	
§ 1.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비교	297
§ 2. UN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전문	353

표 목 차

〈표 1- 1〉	주요 비교영역 및 분석지표	62
〈표 3- 1〉	아동보호체계의 연혁	98
〈표 3- 2〉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개념 및 금지행위	100
〈표 3- 3〉	아동학대예방 협력체계	108
〈표 3- 4〉	아동학대 건수와 유형	110
〈표 3- 5〉	아동복지시설의 관리운영비 권고 기준	112
〈표 3- 6〉	연도별 아동복지시설수 및 보호아동수 현황	112
〈표 3- 7〉	아동복지시설 유형별 현황(2004)	113
〈표 3- 8〉	가정위탁보호 아동 변화추이(2000~2004)	118
〈표 3- 9〉	소년소녀가정 보호 아동 변화추이(1995~2004)	119
〈표 3-10〉	연도별 국내입양 실적	121
〈표 3-11〉	아동 보호방법별 아동 비율	122
〈표 3-12〉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 결연사업 실적	123
〈표 3-13〉	아동복지서비스별 국고보조율	126
〈표 4- 1〉	영국의 위탁수당 수준	192
〈표 4- 2〉	학대에 관한 상담처리 건수의 추이	236
〈표 4- 3〉	아동학대 유형	236
〈표 4- 4〉	학대상담의 처리종류별 내역	237
〈표 4- 5〉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위한 체크항목	238
〈표 4- 6〉	아동학대의 예방에서 지원까지	239

〈표 4- 7〉 아동복지 보호시설 현황(2005. 1.)	242
〈표 4- 8〉 시설 입·퇴소에 관련 아동상담소·시설의 회의 검토사항	246
〈표 4- 9〉 수양부모 위탁에 있어서 위탁비 내역(2003)	252
〈표 5- 1〉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관련 법적 체계	262
〈표 5- 2〉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관련 공적전달 체계	266
〈표 5- 3〉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모니터링 및 평가	267
〈표 5- 4〉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 실태	270
〈부표 1〉 OECD 국가의 아동학대, 착취, 폭력 등의 실태	297
〈부표 2〉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관련 법적·제도적 환경	300
〈부표 3〉 OECD 국가의 아동보호서비스 공적전달체계	324
〈부표 4〉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관련 모니터링 및 평가	335
〈부표 5〉 OECD 국가의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와 민간협력 ...	343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64
[그림 2-1]	아동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8대 역점 분야	78
[그림 2-2]	아동보호체계의 개념 확장	82
[그림 3-1]	지방의 학대아동보호 체계도	107
[그림 3-2]	청소년 쉼터의 체계도	115
[그림 3-3]	국내입양 절차도	120
[그림 4-1]	미국 일리노이주 아동가족서비스부의 조직 및 업무분장체계	141
[그림 4-2]	일본 아동보호체계의 체계도	235
[그림 6-1]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협력체계 구축모형	281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Child Protection System among OECD Countries

The present study begins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Protective Environment and the application of this concept to child protection. There is discussion of some recent debates o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state child welfare and child protection. Additionally, increasing recognition is being given to the importance of preventing/protecting of children from harmful developmental environment regarding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Protective Environment Framework identifies the essential components in any society of keeping children safer and healthier from violence, exploitation, abuse, and inappropriate developmental circumstances.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are government commitment and capacity, legislation and enforcement, social value, culture and customs, effective and efficient service delivery system, networking and cooperation, monitoring and feedback, open public discussion, education and campaign, and active participation of families and communities in terms of child protection.

This study describes a range of child protection system among OECD countries. Data were collected from four countries(i.e. U.S., U.K., Sweden, and Japan) via policy documents, internet sites, and previous studies. Also, UN national reports responding to 'The UN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were analyzed to propose the future direction and improvement strategy to Korea child protection system.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학대, 착취, 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발달위기(developmental risks)에 노출된 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아동보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또는 재정비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가시화되었음.
 - 가부장적인 유교전통의 영향으로 자녀양육에 있어 엄격한 훈육방식이 장려되어 왔기 때문
 - 자녀양육은 개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다분히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외부의 참여나 사회적 관여가 어려운 분위기 형성
- 아동의 성장발달 환경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보호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
 - 보호환경(Protective Environment)이란 학대, 착취, 폭력 및 부적절한 양육환경과 같은 아동의 성장·발달 위험요인들(risk factors)을 제거하고,

- 발달위기(developmental risks)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책적 여건을 마련하며,
 - 이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환경으로 정의할 수 있음.
- 학자들은 보호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 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함으로써 발달위기의 상황에 있는 아동 보호의 질적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아동보호체계의 발전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 첫째,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 둘째, 아동보호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들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보호서비스 전달의 효율성 제고
 - 셋째, 아동보호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와 그 결과의 적극적 환류를 통한 수정·보완
 - 넷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보호를 위한 공공과 민간 그리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원주의적 보호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보호체계의 기반 확대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학대, 착취, 폭력 및 부적절한 양육환경 등 발달위기 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보호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OECD 국가의 보호 체계를 비교·분석하는 것임.
- OECD 주요 국가의 아동보호체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비교 기준으로서 다음 4가지를 검토하였음.

- 아동보호체계 관련 법적·제도적 환경
- 아동보호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
- 아동보호체계 및 보호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와 민간협력

□ 주요 연구 내용

- 아동보호(child protection)의 개념과 보호체계 구축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론적 검토
 - 아동보호(Child Protection)와 아동권리 그리고 아동복지
 -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연혁 및 현황 분석
-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에 관한 사례분석과 비교분석
 -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사례연구 :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종합 비교
- 아동보호체계의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의 제시

□ 주요 연구 방법

- 문헌연구 방법을 주로 활용하였음.
 -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공식문헌 및 연구문헌 등을 수집·분석
 - 각종 행정자료와 관련부처 홈페이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 UN 아동폭력연구를 위한 국가보고서 비교·분석
-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국에 대한 심층 사례연구와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관련 비교분석 등 두 가지 접근을 병행하였음.

제2장 아동보호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아동보호의 개념

- 아동보호 관련 정책 및 제도는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 시켜야하며, 발달위험 상황에서 조속히 탈피하여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치유능력(resiliency)을 제고하는 방안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 － 아동보호체계의 운영과 각종 조기 개입방안(early intervention) 간의 조정 및 통합을 바탕으로 아동이 발달위기(developmental risks)에 노출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함.
 - － 위기상황으로부터 최단시간에 벗어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제도적 노력과 아울러 가족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
 -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보호체계는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을 발굴하고 문제를 진단하여 적절한 지원 및 보호방안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관건
 - － 최근 발표된 일련의 아동복지 체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는 아동복지가 아동보호의 측면(Child Protection Orientation)에 중점을 두거나, 가족복지 서비스 관점(Family Service Orientation)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았음.
- 아동보호체계는 아동보호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제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련의 사회체계로 정의할 수 있음.
 - － 아동보호의 개념 자체가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되고 있어, 이를 실천하기 위한 아동보호체계 또한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됨.

- 아동보호는 열악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아야 하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향유할 아동의 권리를 존중
- 아동보호체계는 아동보호의 목적으로 안전한 보호환경 (Protective Environments)을 조성하는 일련의 제도적·조직적 사회체계로 정의

□ Harding(1996)은 아동보호에 있어 국가와 가족의 관계를 권위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한 양극단의 입장으로 구분하였음.

- 권위주의적 아동보호는 국가가 가족생활과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의 양육과 보호에 대한 강력한 조정·중재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
- 자유주의적 아동보호는 아동과 가족관련 사안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기능을 우선시

□ 20세기 이전의 아동보호의 특성은 전통적인 사회구호에 기반을 둔 아동구제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

- 아동구제운동(Child-saving Movement)은 기본적으로 빈곤하고 의존적인 아동은 병리적이고 무책임한 부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였음.
 - 초기 아동구제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진 아동보호는 역사적으로 아동을 성인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사회적 관습이 여전히 내제
-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서구사회에서는 아동보호에 있어 탈시설화의 움직임이 대두되었고, 가정보호가 시설보호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 하지만 아동보호에 대한 철학적 가치의 전환이나 사회적 인식전환이 병행되지 못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시설화의 조류에 따르는 가정보호의 확산은 아동보호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온 것은 분명했던 것으로 판단

□ 20세기 이후의 아동보호서비스는 아동발달에 관한 과학적·학문적 연구 결과에 기초함.

- 아동보호에 대한 논의가 아동과 가족의 발달욕구와 학습욕구 및 보호욕구 등을 입증하는 과학적·학문적 근거와 논의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음.
 - 아동보호의 원칙은 원가정에서 생물학적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전문적 개입의 형태로 구체화
 - 자선적 사회구호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아동보호가 공공부문의 주요 책임영역으로 인식
- 결과적으로 이즈음에 이르러 아동보호를 위한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고, 각종 입법조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아동보호의 표준이 마련되었음.

□ 현재의 아동보호체계가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Barter(2001)는 다음 6가지 근거를 통해 주장하였음.

- 현 아동보호서비스 및 보호체계는 다각적인 위기상황에 봉착하였음.
- 현 아동보호체계는 현대사회의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고안되지 않았음.

- 과거의 위기개입과정은 피해아동에게만 초점을 두면서 가족구성원,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의 적극적 개입이 차단되어 있음.
- 아동보호체계를 포괄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아동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학술적 접근이 병행되지 않았음.
- 아동보호는 아동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다학제적인(interdisciplinary) 접근에 기초한 다양한 기관과(inter-agency) 지역사회의 협력을 (community collaboration) 필요로 함.

2. 아동보호환경의 범주 및 보호체계 분석틀

- 바람직한 보호환경(Protective Environment)의 조성을 위하여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을 보편화함으로써 개별 국가나 개별 아동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함.
 - UN이나 UNICEF와 같은 아동관련 국제기구들은 보호환경의 조성 과정에서 보호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괄적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담론화하고자 하였음.
 - 담론화의 과정에서 아동보호환경의 조성과 보호체계의 구축에 있어 국가와 사회의 책임 공유는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임.
 - 보호환경을 마련하는 과정이 구체화되고 체계화된 것이 바로 아동보호체계(Child Protection System, CPS)로 볼 수 있음.
 - 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8대 역점 분야는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정부역량 강화’, ‘입법조치·강제조치 마련’, ‘문화와 관습의 고려’, ‘사회적 공론화’, ‘아동 스스로에 대한 생존기술의 보급’,

‘가족·지역사회의 참여’, ‘보호서비스 전달과 자활·자립지원’, 그리고 ‘보호체계 및 보호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등임.

□ 아동보호의 개념에 대한 접근을 광의로 할 것인가 또는 협의로 할 것인가에 따라 아동보호체계의 범주도 국가별, 지역별로 상이함.

- 미국에서는 아동보호체계(CPS)를 학대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체계로 간주하고 있어 협의의 아동보호를 수용하고 있음.
- UN과 UNICEF의 입장에서 보면, 아동보호체계의 구축은 학대아동 보호를 포함하여 각종 위기로부터 적절한 보호환경의 조성을 강조하는 포괄적 접근을 강조함.
- Munro(2005)는 학대, 착취, 폭력 및 부적절한 양육으로 인하여 외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아동보호서비스는 크게 4가지 상황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접근
 - 피해아동이나 가족과 관계된 공공 또는 민간 지원체계
 - 아동보호 관련 기관 및 관련 기관의 전문가
 - 피해아동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

□ 이러한 논의배경을 기저에 두고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비교 틀의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음.

- 아동보호 관련 법적·제도적 환경
- 아동보호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
- 아동보호체계의 모니터링과 평가
-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민간협력

제3장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

1. 아동보호체계의 연혁

□ 서비스의 기능과 성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는 1950년대까지의 사회구호 단계, 1960~70년대의 선별주의 단계, 1980년대 이후의 보편주의 단계, 2000년 이후는 보편주의가 확대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근대적 아동복지의 시초는 갑오경장 이후 외국 선교사에 의하여 보육원이 설립되면서 탁아 및 구제사업의 형태로 시작되었음.
- 1945년 이후에는 해방과 이후 한국전쟁의 격동기에 빈곤으로 인해 발생한 다수의 요보호 아동에 대한 긴급구호형태의 서비스로 이루어졌음.
 - 시설보호 중심의 보호서비스 전달과 외원 위주의 재원활용을 당시 아동보호의 특성으로 볼 수 있음.
 - 해외입양이 시작되면서 홀트아동복지회, 십자군연맹, 한국봉사회 등의 민간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국외입양사업이 점차 확대되었음.
- 1960~70년대는 선별주의 원칙에 기초한 단계로 분류되는데, 생활보호법과 아동복지법의 제정으로 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 원칙이 처음으로 법제화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정부가 아동보호에 개입하기 시작하였음.
 -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하였으며, 국내입양을 권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1976년 12월 입양특례법으로 개정하였음.

- 1980년대 초에는 아동복지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아동복지가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음.
 -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보호와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증대
 - 아동보호 및 복지서비스의 전문화와 다양화 지향
 - 시설보호를 소숙사 형태로 개선하거나 공동취사 형태로 전환시키고자, 1997년에는 그룹홈(group home)제도의 도입을 결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 1990년대 UN의 아동권리협약은 보호아동에 대한 단순한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보호방식의 다양화와 전문화로의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음.
- 2000년 이후 제공되는 아동보호서비스는 보편주의의 확대기로 볼 수 있음.
 -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의 근거 규정을 마련

2. 아동보호체계의 특성 및 주요 쟁점

□ 아동보호관련 법적·제도적 환경

-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무차별의 원칙, 성장발달권 보장의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등을 기본 이념으로 아동보호에 있어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보호자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였음.
 - 아동 폭력 및 아동학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아동

복지법 이외에도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 아동보호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

- 중앙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아동보호 관련 주무부처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책임을 갖고 있음.
- 청소년위원회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청소년 복지정책의 시행을 담당함.
- 법무부는 검찰을 통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아동보호정책의 수행 및 아동보호서비스를 전달하는 업무의 상당부분이 정부와 민간이 협동하는 체계로 진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은 보호 사업별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고 민간이 정부 사업을 위탁 받는 형태로 운영
 - 아동학대예방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등이 이에 해당

□ 아동보호체계의 모니터링과 평가

-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은 없음.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규정
 - 실질적으로는 정부 출연연구기관도 아동보호 모니터링 및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민간협력

- 우리나라에서 아동보호체계는 민간의 참여가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현재에도 대부분의 아동보호사업이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음.

- 한국복지재단, 이웃사랑회,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수양부모협회 등 민간단체가 학대아동보호기관, 가정위탁 지원기관, 입양지원기관 등을 위탁 운영

□ 학대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 2000년 이전 학대아동 보호사업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은 미비하였음.
-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긴급전화(1391)의 설치·운영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시설보호 및 자립지원

- 시설을 통한 대리보호는 만18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보호아동의 교육, 취업, 장애 및 건강상의 등을 이유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연장 보호가 가능
- 시설에서의 생활보호기간이 만료된 퇴소아동의 조기 자립유도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위기청소년의 특성별, 발생경로별, 보호기간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시쉼터(drop-in center), 단기쉼터, 중장기 쉼터로 구분하여 시설을 설치할 방침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위탁가정지원 및 입양지원

- 15세 미만 또는 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적으로 가정위탁하고 있음.
 - 가정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탁가정 활성화 과제
 - 위탁가정 선정, 지원 및 관리 그리고 가정위탁에 대한 체계적 교육 등 다양한 정책적 접근 요구
- 입양사업의 기본방향은 국내입양을 우선하며, 국외입양을 차선택으로 추진하도록 함.
 -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하여 입양을 활성화
 - 입양에 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혈연 중심의 자녀관을 전환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접근 필요

□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쟁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음.

-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설보호 아동이 안정적으로 가정·가족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리보호 제도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음.
- 아동학대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고,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상담, 교육 등에 참여토록 하는 법적 강제조치가 없어 실효성 한계가 지적됨.
 -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학대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높아 2차 폭력의 위험 가중

-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체계가 체계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어 보호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함.
- 그룹홈 지원과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동보호 사업이 지방정부 사업으로 이양되면서 지역간 보호서비스의 질적·양적 격차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로 대부분의 서비스가 사후 치료중심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사전예방적 접근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전문적 보호서비스의 제공과 서비스의 다각화를 모색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보호, 위탁보호 등 단순보호의 형태가 지배적임.
 - 결연 또는 후원을 통해 물질적 지원 이외에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지만, 실제 그 효과는 미흡한 수준

제4장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사례연구

1. 미국의 아동보호체계

□ 아동보호관련 법적·제도적 환경

- 아동보호 관련 법률 기반은 아동학대의 범위와 유형을 규정지음으로써 아동과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호와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고, 아동보호 체계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실질적인 아동보호서비스가 주(州)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주(州)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과 책임을 연방법으로 규정함으로써
 - 주(州)정부 임의로 서비스를 감축하지 못하도록 연방정부가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토대가 되고 있음.
- 주법은 물론 연방법에서 모든 아동보호정책의 근간은 아동의 안전성(safety)과 아동보호의 영구성(permanency)을 갖추는 것임.
- 아동학대예방및조치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 of 1974)→아동가정안전법(Keeping Children and Families Safe Act)으로 개정
 - 아동성폭력예방법(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Predators Act of 1998)
 - 입양지원및아동복지법(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AACW of 1980)→원가정보존법(Family Preservation Act: FPA of 1992)으로 확대 개정→입양및가족안전법(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ASFA of 1997)

□ 아동보호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

-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주무 연방부처는 보건복지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내에 있는 아동가족관(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산하 아동청소년가족실(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내의 아동국(Children's Bureau)임.
- 각 주(州)정부에는 아동보호 서비스 담당부서(Child Protective Services)를 두고 있으며, 이 부서에서 아동학대와 보호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

- 아동보호 관련 업무는 아동가족서비스부에서 총괄하여 시행하
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은 민간기관들을 통해 제
공되고 있음.
- 이에 아동보호체계의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는 민간기관이
되며,
- 민간기관의 운영을 감독하고 이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공공부문 아동보호 업무의 중요한
부문

□ 아동보호체계의 모니터링과 평가

- 연방정부의 아동국(Children's Bureau)에서는 각 주(州)에서 시행
되고 있는 아동보호 정책에 대한 2가지 유형의 모니터링과 평
가를 수행하고 있음.
- 첫째, “IV-E 평가”(IV-E Review)는 주(州)정부의 아동보호사례
중 연방정부의 사회보장법 제4장-E (Title IV-E of Social
Security Act) 기금을 사용한 사례에 대한 조사평가
- 둘째, 아동가족서비스평가(Child and Family Services Reviews:
CFSR)는 입양및가족안전법에 근거하여 제도화된 것으로서,
각 주(州)정부와 아동보호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아동
들의 경험과 업무실적을 취합하여 평가

□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민간협력

- 미국의 아동보호 및 사회복지 역사에서 정부, 학계, 민간기관,
NGO 들의 협력에 기초한 파트너십은 쉽게 발견할 수 있음.
- 파트너십은 민간, 정부, 학계의 공고한 협력관계를 반영하지만,

-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역할과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에 복지서비스 제공책임을 이양하는 미국의 복지정책의 기본전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함.

□ 학대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 학대아동 보호체계는 주(州)정부의 아동보호서비스 관련부서(Child Protection Services)와 이 부서로부터 위탁을 받은 지역사회 민간기관(communitary agencies)들의 협력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에서는 보호조치의 결정, 즉, 원가정으로 복귀시킬 것인가, 가정위탁을 할 것인가, 또는 그룹홈이나 시설보호를 할 것인가 등의 결정과 시행을 가장 중심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있음.
 - 보호조치 이후의 서비스 제공은 상대적으로 간과되는 경향이 있으며,
 - 사후보호서비스 내용도 상당히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시설보호와 자립지원

- 시설보호는 쉼터(emergency shelter), 그룹홈(group home), 치료시설(residential treatment center) 등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음.
 - 그러나 다른 복지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시설보호는 아동보호 수단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되는 대안으로 간주
- 보호체계를 벗어나는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1999년 가정위탁자립법(the Foster Care Independence Act)이 제정되었음.

-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재정적 지원에 주(州)정부의 대응자금(matching fund)을 20% 이상 확보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주(州)정부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장려

□ 위탁가정지원

- 아동이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동안 원가정에 대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 결과적으로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지만 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에는 대안적으로 입양이 선택되기도 함.
- 민간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위탁가정을 모집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가정위탁 자격을 갖추게 한 후, 위탁가정 면허를 제공함.
 - 위탁가정은 아동을 보호 위탁하는 대가로 일정한 위탁료를 정부로부터 지급받고,
 - 위탁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보장받으며,
 - 위탁보호 내용에 대한 아동보호기관의 감독과 모니터링 수용

□ 입양지원

- 입양지원및아동복지법에서는 가정위탁이나 시설배치를 최소화하고, 입양이나 원가족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동 법을 통해 가정위탁으로 보호되던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입양수당(Adoption Assistance)을 제공
- 입양및가족안전법은 아동이 보호체계에 들어온 후 입양될 때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

- 입양대기 기간을 제한
- 입양건수를 증가시킨 주(州)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입양 촉진정책 수립
- 아동과 입양가족이 새로운 가족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변화된 가정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아동보호체계의 목표가 됨.
 - 입양 후 사례관리에는 입양보조금 지급, 입양아동의 교육비 지원, 입양 사례별 관리 외에도,
 - 입양지원센터의 운영, 입양정보검색 데이터베이스 운영 등의 정보제공 지원을 포함
 - 또한 약물남용치료, 가족치료, 주간보호, 위기중재, 의료/행동치료, 정신건강치료, 집단상담, 자조집단 형성, 사회적 기술훈련, 특별 캠프 등과 같은 정신 건강 서비스 프로그램 등 제공

□ 미국 아동보호체계의 시사점

-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일련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미국의 복지정책의 전반적 기조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대, 요보호아동의 양적 정체현상, 각종 아동보호정책의 시행 착오, 제도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의 부족 등에 근거
- 미국의 아동보호정책이 시설중심에서 가족중심-아동중심으로 그 초점이 변화해 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입양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 사회의 상황에서 가정위탁 보호는 시설보호를 대치하는 의미가 있으나, 가정위탁보호는 원래 일시적인 보호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일반 위탁가정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공식적 친족위탁

이 증가하여 가정위탁으로 보호받는 아동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아동보호체계의 관점이 변화하는 과정이 단지 사회적 이념의 변화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 학문적 연구결과의 반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은 우리나라 동 연구분야에 대해 갖는 함의가 큼.

2. 영국의 아동보호체계

□ 아동보호관련 법적·제도적 환경

-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 최근까지 영국의 아동보호와 양육에 관련된 법은 분산되어 있었으나 1989년에 아동법(The Children Acts)의 제정을 통하여 대체적으로 정리되었음.
- 아동법은 한마디로 “부모의 책임”, “아동과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 그리고 “동반자적 관계”라는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는 아동보호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음.
 - 아동과 관련한 공법 및 사법을 최초로 통합

□ 아동보호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

- 아동보호서비스의 골격은 주로 지방의 사회복지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학대 및 보호태만이 의심되는 경우에 그 사안을 조사할 의무가 있음.
- 지역아동보호위원회는 보호조치에 대한 권고사항, 법원의 보호명령 신청여부, 아동보호 등록대장의 등재여부 등 제반 사항을 결정함.
 - 지방정부는 아동보호 등록대장을 관리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등록·관리하고, 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할 책임을 가짐

□ 아동보호체계의 모니터링과 평가

- 아동보호 차원에서의 아동권리의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의 가동을 위해 의견수립 및 제도 검토를 거쳐 2001년부터 영국 내 자치권역별로 시행하고 있음.
- 민간부분에서도 아동권리관련 중요 단체들이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 영국정부에 의해 아동권리증진을 목표로 하여 정부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설립된 아동권리판무관 제도를 통해 모니터링 실시

□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민간협력

- 아동보호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영국 내 280여개에 이르는 아동권리 관련 NGO 기관 및 단체들의 역할이 지대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자국 내 아동권리의 향상을 위해 활동할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아동권리 단체들과 연대를 위해 노력
 -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보 네트워크 구성
- 아동권리 모니터링 결과를 발간·유포하고 있고, 영국정부의 정기적 유엔보고 시에도 아동관련 연대 및 중요 기관들은 선택적 기관 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음.

□ 학대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 영국은 아동학대 신고전화의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민간단체인 전국아동에대한잔혹금지협회(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NSPCC)나 지방정부 등에서 신고를 접수함.

- 현장조사는 지방 정부 소속의 사회복지사에 의해 수행되며,
 - 현장조사가 끝나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아동보호위원회(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에서 사례회의 개최
- 장기보호가 결정되어 아동이 원가정에서 격리보호 되더라도 지역아동보호위원회(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는 아동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과 부모간의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 아동학대와 관련된 실질적 업무를 보건부의 하위조직인 아동안전국(Head of the Children's Safeguard Unit)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음.

□ 시설보호와 자립지원

- 아동보호시설은 지방정부가 아동법에 의하여 설치한 지역시설, 영리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등록된 아동시설, 자원단체가 운영하는 자원아동시설 등이 있음.
 - 이들 시설 중 일부는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며, 또 다른 일부는 공적 자금과 개인 자금의 혼합 형태로 운영
- 전반적으로 시설보호아동수가 감소하고 있음.
 - 생후 1년 이내의 아동이 8개월 이상 대규모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사회성, 운동성, 언어 발달에 있어 지체 현상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의 영향
 - 보호 아동에 대한 예방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면서 시설보호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공되어야 된다는 인식 확산

□ 위탁가정지원

- 이미 19세기부터 요보호아동을 시설보호에서 분리하여 수용보호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소규모의 그룹홈, 주거홈 등이 발달하

기 시작했음.

- 가정위탁의 기본 전제는 친부모와 영구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발달적 손상을 감소시키는데 의의를 두고 있음.
 - 위탁보호의 수준은 자신의 친부모에 의한 양육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과,
 - 아동이 가정 분위기에서 보호됨으로써 가정위탁의 목적 달성
 - 가정이 해체되었거나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들은 위탁보호 시행령(Foster Placement Regulations)에 따라 지방당국이 위탁 보호를 알선하며 보호아동의 약 60%가 위탁가정에 배치

□ 입양지원

- 원가정 복귀가 불가능한 요보호아동의 입양촉진을 위하여 부모 맺기운동(Be My Parents Program)을 전개하고 있음.
 - 동 프로그램은 가정보호의 일환인 입양아를 위한 친가 연결 프로그램(Adoption Contact Register)으로 입양아와 그의 친부, 친모 또는 친척들과의 접촉을 용이하도록 지원
 - 양부모의 자격은 결혼한 부부 또는 독신자로서 25세 이상이어야 하나, 입양을 원하는 아동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21세 이상의 자도 가능
 - 독신 남자가 여아를 입양하는 것은 금지
- 입양기관은 아동의 항구적 보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사례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 입양 패넬을 구성해야 하며,
 - 패넬의 결정에 따라 기관의 의사결정자는 입양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영국 아동보호체계의 시사점

- 영국의 아동보호는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어 국가가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가족의 역할과 기능을 중시함.
- 아동보호체계는 위험에 처한 아동을 파악하고 전문가들 간의 상호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절차를 만드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
-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있어 현장조사와 사례판정, 보호조치는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상담 및 치료 등의 서비스는 전문민간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있음.
 - 아동보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법률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아동보호 사례에 대한 적극적 개입 실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찰, 법원, 지역사회, 민간단체 등 다양한 체계의 협력아래 통합적인 접근 시도

3. 스웨덴의 아동보호체계

□ 아동보호관련 법적·제도적 환경

- 스웨덴에서는 아동보호체계와 관련된 단일 법령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아동권익의 최우선 원칙이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달 및 일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이유는,
 - 사회서비스법과 아동보호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아동보호체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
-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 Act)과 아동보호특별법(Care of

Young Persons Special Provision Act)은 아동이 성장·발달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고려 함.

- 아동보호특별법은 아동폭력과 관련한 소송에 있어 국선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 아동보호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

- 중앙정부의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복지국가위원회, 시설보호국가위원회(National Board of Institutional Care) 등을 중심으로 아동보호서비스를 공공부문에서 직접적으로 전달·제공하고 있음.
 - 아동욕구의 충족을 강조(Children's Needs in Focus)
 - 아동학대의 사례 판정 및 사정, 치료와 보호 계획 마련, 보호 내용 평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지원프로그램 마련
- 보호서비스의 전달을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각급 학교, 자원단체들이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음.

□ 아동보호체계의 모니터링과 평가

- 아동보호 및 복지의 수준이 높고, 아동의 인권보장 수준이 비교적 높은 스웨덴이지만 모니터링 및 평가 부분에서는 보완 및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보건복지국가위원회는 보호정책의 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평가센터(Center for Evaluation of Social Services) 운영
 - 옴부즈맨은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접수받거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이 필요하다고 가정될

때, 사회서비스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민간협력

- 대표적인 민간단체는 아동권리사회(Children's Rights in Society, CRIS), 세이브더쉴드린(Save the Children) 등이 있음.
- 그 밖에 여러 아동인권 조직들이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아동권리사회(Children's Rights in Society, CRIS)는 아동을 위한 신고전화인 핫라인을 운영
 - 결연자(Contact Person) 또는 결연가족(Contact Families)으로 불리는 자원봉사활동이 아동보호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사회적 지지와 임시 보호의 혼합형태로 보호서비스 제공
- 사회 보호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국가가 갖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에도 아동보호체계에서 자원봉사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학대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 아동학대 예방체계는 가족단위가 이용할 수 있는 정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의 강제 개입이 이루어지는 사례로의 전환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외부의 개입을 통하여 가족 내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동보호서비스가 제공됨.
 -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하여 비교적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이루고 지고 있으며,
 - 보조금 지급 방식의 아동 보호(Subsidized Child Protection), 학교 등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통한 간접적인 아동학대 예방사

업을 추진

-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지방정부는 지방 정부법에 의해 중앙 정부에서 지급된 보조금 이용
- 지방 정부는 또한 특별법에 기초한 업무로서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의 책임과 의무를 가짐.

□ 시설보호와 자립지원

- 시설보호국가위원회(The National Board of Institutional Care)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아동을 포함하여- 보호서비스를 제공

□ 위탁가정지원

- 위탁가정 제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부모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가 법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음.
- 위탁가정지원은 오랜 기간동안 시설보호를 대처하는 수단으로 선호

□ 입양지원

- 지역 아동복지당국은 미혼모의 자녀 입양을 가능한한 억제할 수 있도록 미혼모 설득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친부모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입양을 제안하거나 장기적으로 위탁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입양을 장려하지 않음.

□ 스웨덴 아동보호체계의 시사점

- 아동의 보호 및 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적극적인 국가 책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단체 및 봉사단체, 학교 등과의 협력 네

트위크 구성 노력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학교 교육 및 지역사회 홍보를 통하여 아동 스스로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여 학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스웨덴의 아동보호체계를 검토하는 과정은 자료 및 언어의 한계로 다른 사례분석 국가와 비교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없었지만,
 - 아동보호체계의 운영 및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달은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사회적 투자와 관심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 아동과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원가족에 대한 복지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

4. 일본의 아동보호체계

□ 아동보호관련 법적·제도적 환경

- 일본의 아동보호체계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개입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문제에 접근할 뿐만 아니라, 소자녀화에 따른 차세대건전육성 및 UN 아동권리헌장 정신을 반영하고자 함.
- 아동보호를 위해 근간이 되는 법은 아동복지법과 최근에 제정된 아동학대방지법이라 할 수 있음.
 -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포괄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보호와 위탁보호 아동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
 - 아동학대방지법을 통해 학대 아동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였고, 입양법은 입양아동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
 - 아동매춘과아동포르노관련행위처벌및아동보호법은 매춘과 포르노그래피 관련 행위 등으로 인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담, 지도 또는 일시적 보호 및 시설 입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 기타 형법, 학교법, 민법 등에서 아동보호 관련 규정을 포함

□ 아동보호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

- 아동보호체계의 중앙 운영주체는 후생노동성의 학대방지대책국, 법무성의 인권위원회, 이민국, 경찰청, 문부과학성 등 임.
- 이외에 지방정부의 관련 전달체계 및 사법부의 가정법원, 그리고 입법부 지원조직 등이 관여하고 있음.
 - 후생노동성의 학대방지대책국(Abuse Prevention Countermeasures Department)이 아동학대 대응조치 계획과 실행방안 초안을 구상하는 책임
 - 법무성의 인권위원회는 아동폭력을 포함한 인권에 관한 여러 종류의 사건의뢰에 대해서 인권상담서비스를 제공
 - 국립경찰청과 지방 경찰서에 마련된 청소년부는 피해 청소년의 보호와 청소년을 표적으로 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역할 수행

□ 아동보호체계의 모니터링과 평가

- 아동보호체계의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확한 기초 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연구, 정책 홍보와 교육, 그리고 평가가 필수적임.
 - 아동보호에 대한 연구 조사는 ‘아동 폭력 피해 전국조사’가 가장 대표적
 - 아동보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아동복지 시설의 복지서비스 평가에 관한 보고서 발간

□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와 민간협력

- 아동보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공적 보호체계가 만들어진 계기는 아동의 희생과 민간단체의 활동이 그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오사카(大阪) 아동학대방지협회와 동경(東京) 아동학대방지센터가 대표적 단체
 - 이들 단체는 학대신고 핫라인을 이용한 상담과 지원활동, 관련 주제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연구회, 네트워크 확보, 사례 검토, 보고서 발행 등 다양
- 청소년 전자모니터링(Electric Monitoring by the Youth)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동의 의견이 아동보호정책에 반영되도록 운영하고 있음.
- 시정촌을 중심으로 구성된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활동하면서, 아동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주장하였음.
 - 개정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협의회의 설치 가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 관계 기관 등의 연계에 의해 조직이 요보호아동의 대응에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정화 등의 조치 채택

□ 학대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 아동학대방지법 신고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아동학대를 목격한 사람은 즉시 관계 기관에 보고해야 함.
 -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상담소는 보호자와 아동에 대하여 임의 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

-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지내는 재가지도나 보호자로부터 분리되도록 하는 조치 결정

□ 시설보호와 자립지원

- 시대의 변천과 사회·가정환경의 변화와 함께 시설입소 아동의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개별 시설의 역할과 운영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특히, 1990년대 들어와서는 학대아동의 입소증가로 보호시설 간의 차이가 불명확하게 되었고 시설 간의 경계선 모호
 - 최근의 시설보호는 가정적인 환경에서 개별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설정
 - 치료기능이 있는 기간시설에서는 특수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문적인 직원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전환
- 시설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자립지원이라 하여 퇴소아동이 사회인으로 생활해 나가기 위해 종합적인 생활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위탁가정지원

- 위탁가정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수양부모제도가 있는데, 수양부모는 친부모에 의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임.
 - 수양부모는 양육수양부모, 친족수양부모, 단기수양부모 및 전문수양부모 등으로 구분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름휴가와 주말을 이용하여 단기간위탁을 실시하는데, 이 경우도 단기수양부모에 포함

- 심신의 유해한 정도가 심한 아동에 대해서는 전문수양부모에게 위탁
- 수양부모가 하는 아동양육은 개인적인 양육이 아니라 사회적인 양육으로 간주함.

□ 입양지원

- 입양지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르는 양자 제도를 살펴보아야 함.
- 동 제도의 의의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 및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에게 따뜻한 가정을 제공하여,
- 대상 아동의 양육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임.
 - 보통양자결연: 입양대상 아동이 15세 미만일 때는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모든 것을 대신하지만, 15세 이상일 경우에는 양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의사확인이 우선
 - 특별양자결연: 6개월 정도의 시험 양육을 통하여 가정재판소에 특별양자결연 신청을 하여 성립되며, 아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항구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
- 수양부모제도와 마찬가지로 입양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서
 - 입양제도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관습적 폐쇄성
 - 입양아에 대한 편견 및 사회적 인식의 부족 등 지적

□ 일본 아동보호체계의 시사점

- 일본 아동상담소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아동복지시설, 지역사회, 관련 행정부처나 사법기관 간의 연계체계를 형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아동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하여 아동은 물론 가족과 친인척,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도모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해당 아동의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자원을 마련하는데 지역사회 전체의 적극적 참여 촉진
- 아동보호서비스의 다양한 서비스 내용이 통합적이고 포괄적 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능
-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서비스 표준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제5장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비교

1.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종합 비교

□ 아동보호관련 법적·제도적 환경의 비교

- 아동권리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24년 국제연맹 총회(League of Nations)에서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채택되면서 부터임.
- UN은 1979년을 ‘세계 아동의 해’(The International Year of the Child)로 결정하고, 이를 기념하여 아동권리선언을 더욱 구체화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조약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결의를 채택하였음.
-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통해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음.

- 국제협약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하는 계기를 마련
- 협약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장치를 함으로써 아동권리협약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조치
- 아동보호관련 각국의 법적 체계는 고유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체계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
 - 국가 헌법이나 연방법과 같이 기본법 차원에서 아동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경우: 이탈리아, 프랑스 등
 - 아동보호의 문제를 형법에서 주로 논의하는 경우: 호주, 캐나다, 체코,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 별도의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존재하거나 기본법 또는 형법에서 아동보호를 직·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더라도 아동보호와 관련된 특별법을 갖고 있는 경우: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한국, 헝가리, 아이슬란드 등
- 각국의 아동보호에 관련된 법률들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아동보호방안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음.
 - 아동 포르노그래피 및 유해정보와 관련된 법령은 대체로 아동보호체계 관련법 체제 하에서 운영: 호주,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한국 등
 - 아동 포르노그래피 등 온라인상의 유해정보 차단을 위하여 최근 별도의 법률 제정 확산: 헝가리, 미국, 일본 등

□ 아동보호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 비교

- 학대, 착취, 폭력 및 부적절한 양육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 아동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오스트레일리아, 체코,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 등
 - 정책 수립은 중앙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정책시행 및 서비스 전달의 책임은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경우: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 영국 등
-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아동보호 사업의 상당수가 민간에 위탁운영 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일부 보호사업의 경우 순수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아동보호사업의 대부분이 지방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의지에 따라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그 나머의 재정 지원 규모도 변동 가능
 - 결과적으로 아동보호사업의 재정적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서비스 전달의 일관성 및 보호대상에 대한 보호내용 확충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 농후

□ 아동보호체계의 모니터링과 평가 비교

- 모니터링은 아동보호서비스 및 보호체계가 지향하는 목표와 목적을 보다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사업을 조정하기위하여 활용될 수 있음.
- 아동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 설치되어 있는 국가: 프랑스, 뉴질랜드, 독일, 캐나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호주, 미국, 오스트리아 등
 - 프랑스, 캐나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등은 아동옹부즈만 제도를 통해서 UN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수준 검토하면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서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는 국가: 네덜란드(전담조직 설치 예정)
- 모니터링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서 관련 자료를 부정기적으로 수집하는 국가: 호주, 핀란드, 일본, 한국 등
- 모니터링 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서 극히 제한적인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는 국가: 체코, 헝가리

□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 실태 비교

- 아동보호체계의 효과적 운영과 보호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관건이 되고 있음.
 - 민간단체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실질적인 서비스 전달이 활발하게 전달되고 있는 국가: 스웨덴, 미국, 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등
 -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제한적이어서 사건사실 정도를 전달하는 수준이지만, 독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는 보다 적극적 활용방안을 검토

2.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종합 비교의 시사점

□ 아동보호관련 법적·제도적 환경의 비교

- 아동보호체계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UN 아동권리협약 비준내용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법체계 및 제도적 여건 조성이 중요함.
 - 단일법 제정을 위한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현 입법체계에서 아동보호 관련법의 연계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

- 아동보호정책 수립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하여 아동 및 아동보호 관련 국가 통계 생산체계를 갖추어야 함.

□ 아동보호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 비교

-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달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음.
 - 초기 아동보호체계의 구축 자체가 민간의 역할에 상당부분 의존하였고, 구체적인 보호서비스의 전달이 사실상 민간을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진행
 -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과 아동보호체계 있어 공공부분의 명확한 자리매김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임

□ 아동보호체계의 모니터링과 평가 비교

- 모니터링 기능을 구축하고 평가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보다 면밀한 정책적 검토와 학술적 연구가 필요함.
 -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대체로 취약한 실정

□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 실태 비교

- 아동보호에 있어 지역사회의 참여와 민간협력은 지역 내 아동보호 관련 물적·인적 자원을 동원하여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계체계의 마련에서부터 출발해야 함.
 - 연계방안의 수립은 지역 내 기존의 아동복지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기획·관리 가능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 아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와 성장발달의 지원

- 저출산 시대에 이미 태어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는 것은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사회적 과제임.
- 본 연구는 자료수집의 한계와 정보의 편차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으나, 주요 국가의 아동보호관련 법적·제도적 여건을 살펴보고, 아동보호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또한 아동보호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검토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 현황과 민간협력 내용을 비교하였음.
 - 이러한 비교의 틀이 궁극적으로 아동보호가 추구해야 할 보호환경(protective environment)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이었다는 점에서 갖는 함의 또한 적지 않음.
- 아동보호환경의 조성은 UN 인권위원회에서도 강조하는 바와 같이
 -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공유하고,
 -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의 견지에서 향후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동보호환경의 조성 및 보호체계의 구축

- 보호환경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은 사회정책의 영역아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만 함.

- 거미줄과 같이 촘촘하게 연계되어 있는 보호망 속에서 아동이 경험하게 될 불행한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안정장치가 될 것임
- 위기상황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적,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숙제임.
 -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예방적 접근이 기본적 임무
 -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여 가족원들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족의 기능과 책임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

2. 아동보호체계의 발전 방향

- 아동보호체계의 한계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임.
 - 효과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여 전문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전달하는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동보호의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함. 따라서,
 - 아동보호는 발달위기에 처한 아동이 경험하게 될 물리적, 정신적 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지만,
 - 발달위기로부터 사전에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를 예방하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의 제공이 강조되어야 하며,
 - 보호체계의 구축 및 보호서비스의 전달은 아동발달 및 아동보호에 대한 명백한 이론적·학문적 근거를 기초로 하여 개발·실행되어야 하고,
 - 보호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 문화, 정치 등 사

회 전반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

□ 법적·제도적 측면의 아동보호체계 발전방향

- 아동보호체계의 구축과 보호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동보호 및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함.
 - 단일법령으로 집중화하는 노력보다는 관련 법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통합적 법령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화의 노력 우선시
 - 정책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대상별 맞춤형 보호서비스의 전달을 위해서 아동인구의 연령기준을 통일 필요
- 아동보호 관련 입법 활동은 물론 각종 아동보호 정책의 수립 및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하는데 과학적 정책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증 자료를 확충해야 함.

□ 아동보호서비스의 공적 전달체계 개선

-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보호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적·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아동보호체계의 발전 방향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여야 함.
 - 아동보호서비스는 전체 사회복지 맥락 안에서 입체적으로 조망되어야 하며, 다른 사회복지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서 효과성 제고 가능
-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치료·보호·예방을 주로 담당하는 예방센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사회기관을 연계하는 아동보호네트워크 구축해야 함.
 -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전국 800여 개소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

□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분절적 아동보호서비스의 개선

- 아동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사례관리는 현 아동복지 체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방안임.
 - 사례관리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정 결과를 근거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보호계획의 마련에서 시작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례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와 적극적 참여와 유기적 연계 중요
-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가정보호 중심의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공공의 역할규명이 선제되어야 함.

□ 아동보호체계의 모니터링 활성화와 모니터링 결과의 환류

- 보호체계의 구축 및 전문적 운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모니터링의 과정임.
 - 모니터링 과정 자체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적극적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끊임없이 보호체계를 수정·보완함으로써 보호수준의 질적 향상 도모

□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 도모

-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에 있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고, 이들의 참여의지를 도모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제공 등과 같은 유인책 개발·보급되어야 함.
 - 보호환경의 조성 및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
 - 전통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아동보호체계의 특성은 전문화되고 특화된 지역중심의 체계로 전환

-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대중적이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중매체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함.
 - 대중매체는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아동보호의 사회적 가치와 아동보호체계 구성의 참여를 도모하는데 기여
 - 교육·홍보 캠페인 콘텐츠의 개발에 있어 대상별 특화된 접근 필요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적 존재(social actor)로서 아동의 지위와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결코 성인의 책임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아울러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다(Woodhead & Faulkner, 2000:31~33).’

아동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희망이자 자산이라는데 이견은 없다. 아울러 아동에 대한 투자를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대한 사회투자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확대가 사회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의 아동보호체계는 미래사회에 대한 중요한 투자전략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와 사회는 인적자본의 개발 차원에서 아동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환경 조성의 책임을 갖는다. 아동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과 지역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입체적인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아동인구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미래사회의 생산적 구성원인 동시에 건강한 시민으로 키워내는 첩경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학대, 착취, 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발달위기(developmental risks)에 노출된 아동보호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가부장적인 유교전통의 영향으로 자녀양육에 있어 엄격한 훈육방식이 장려되어 왔고, 자녀양육은 개별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에 외부의 참여나 사회적 관여가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아동보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나 재정비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가시화 되고 있다.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권리를 추구하고 동시에 발달위기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유엔(United Nations)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국가 비준이 보편적 관행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위기의 상황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미 많은 아동이 아동보호체계의 미흡 또는 실패로 고통 받았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신체적, 정서적 치유와 회복은 물론 사회통합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있다.

당연한 아동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아동의 규모도 적지 않다. 전 세계에 걸쳐 100만 명 이상의 아동들이 사법체계의 혼선 등으로 인해 구금되어 있으며, 105만 명 이상의 아동들은 대규모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15세 미만 아동 1,400만 명 이상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으로 인해 부모 모두를 잃었으며, 18세 미만의 아동 246백만 여명 정도가 노동시장에 고용되어 있고, 이 가운데 약 180백만 여명은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 약 200만 여명의 아동들이 성 매춘이나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희생양이 되고 있으며, 15세 미만 아동 40백만 여명 가까이가 아동학대 및 방임, 유기, 유기의 피해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한다(UNICEF, 2005).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이외에도 다양한 국제협약들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의 실

천영역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아동의 성장발달 환경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보호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기서 보호환경(protective environment)이란 학대, 착취, 폭력 및 부적절한 양육환경과 같은 위험 요인들(risk factors)을 제거된 환경이다. 즉, 발달위기(developmental risks)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책적 여건을 마련하고, 이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환경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동의 성장배경에 따라 발달위기 상황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된다. 따라서 모든 위기상황으로부터 최상의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적·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시키는 데에는 많은 장애요인이 산적해 있다.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수혜 차원의 아동보호 방식이나, 아동보호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임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는 법, 정책, 그리고 서비스 체계의 부재 또는 미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동보호체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보호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향된 기준에 충족되기 위하여 서비스 내용이나 질적 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아동보호체계의 발전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마련한다. 둘째, 아동보호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화로운 역할분담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보호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셋째, 아동보호사업의 추진에 있어 진행 중인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작업을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한 환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보호를 위한 공공과 민간 그리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원주의적 보호체계를 마

련함으로써 아동보호체계의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추진 전략으로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관련 국가통계의 생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시설입소 지양, 아동보호 체계의 통합적 운영 및 모니터링 강화, 전자정보관리 체계를 활용한 아동보호체계간의 연계강화 그리고 아동보호체계 관련 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상생적 관계의 지향을 제언하고 있다(Baker, 2003, Hugo & Eguren, 2004, Landgren, 2005).

과거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는 대리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 아동에 대한 시설수용보호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주로 아동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동안전망(safety net for children)의 개념으로 아동보호체계가 이해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학대아동을 비롯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서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국내입양, 가정 위탁 등의 재가서비스의 의의와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입양 및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분야, 위탁가정지원 분야, 그리고 아동정책과 가족정책의 연계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대, 착취, 폭력 및 부적절한 양육환경 등 발달위기에 노출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주요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아울러 발달위기의 유형과 심각성 정도는 아동이 처한 상황이나 성장배경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와 예방을 중심으로 아동보호 과정의 일환으로서 입양지원, 위탁가정지원 및 시설보호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비교연구를 통해 아동보호체계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기존 체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발전전략과 아동보호체계의 강화를 위한 포괄적 추진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국가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분석을 통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체계의 효과성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분석(outcome-analysis)은 본 과제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OECD 주요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관련 법적·제도적 환경, 아동보호체계의 공적전달체계, 모니터링과 평가(evaluation) 및 지역 사회 참여와 민간협력 수준 등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아동보호(child protection)의 개념과 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론적 검토가 중심을 이루는 전반부와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에 관한 사례분석과 비교분석이 이루어지는 후반부로 구성하였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주요 연구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아동보호(Child Protection)에 관한 이론적 고찰

아동보호체계는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차적 목적을 갖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보호체계를 아동학대 예방체계와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보호체계는 학대, 착취, 폭력 및 부적절한 양육과 같이 외부의 물리적 압력 또는 성인권력의 의도적 오남용으로 인하여 아동이 신체적·정서적 위협을 당하거나 공격을 경험하게 된 위기상황을 포함

한다. 뿐만 아니라 앞서의 경험으로 인해 아동이 정서적으로 피해를 지거나 정상적 발달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기타 기본적인 아동의 권리박탈과 상실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여 최악의 상황에서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기상황의 아동을 보호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동보호에 대한 정의보다 보다 포괄적인 정의를 수용하는 것이다(Holland & Scourfield, 2004, Landgren, 2005, Bess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기존의 논의보다는 보다 광의로 접근하여 아동보호와 관련된 개념을 비롯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아동보호와 아동복지 그리고 아동권리의 상호연관성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아동보호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바탕으로 OECD 주요 국가의 아동보호체계를 분석할 수 있는 기준틀을 마련하였다.

나.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

주요 외국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도출에 앞서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전반적인 아동보호체계의 변천과정을 정리함으로써 아동보호체계가 갖는 사적(史的)의미와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토대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아동보호체계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환경 및 아동보호서비스의 공적 전달체계를 살펴보았다. 덧붙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동보호 체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과정이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된 방식을 파악하고, 공공부문의 아동보호체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 특히 지역사회의 참여와 민간협력에 대해서 재조명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학대아동의 보호와 예방의 진행과정, 보호아동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입양지원, 위탁가정지원 그리고 시

설보호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사례연구: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아동보호와 관련된 이슈의 대부분은 다른 사회정책 영역과 마찬가지로 시대적, 문화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성격과 형태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다양성은 아동보호에 대한 개념적 접근에서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의 개념이 제도적으로 구체화된 각국의 아동보호 체계에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아동보호체계의 비교연구를 위해서는 각국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복지국가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복지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아동보호체계 연구는 개괄적인 제도 소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분석대상 국가의 아동보호 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등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환경, 아동보호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 아동보호체계의 모니터링과 평가과정, 그리고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와 민간협력 현황 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들 4개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대아동 보호 및 예방, 입양지원, 위탁가정 지원, 그리고 시설보호의 특성을 파악하여 한국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라.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특성

미국, 영국, 스웨덴, 그리고 일본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사례분석에 이어서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UN 아동폭력연구(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자료의 일부를 정리·분석 하였다. 동 연구는 아동폭력의 심각성을 국제적으로 인식시키고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

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다.^{주1)}

UN의 아동폭력연구에서 ‘폭력’은 아동학대를 포함하여 모든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방임, 유기, 착취 및 부적절한 양육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방해하는 일련의 위협으로 광범위하게 조작적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정의는 아동권리협약(CRC)의 제19조, 제34조, 제37조에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인권관련 국제 선언서 및 협약에서 정의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UN의 아동폭력연구의 포괄적 접근은 본 연구에서 아동보호를 학대, 착취, 폭력 및 부적절한 양육 등 발달위기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접근하는 방향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동 연구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는 각국의 아동폭력 국가보고서 내용 중에서 본 연구의 주요 문제인 아동보호체계 관련 변인을 법적·제도적 환경, 공적전달체계, 모니터링과 평가 및 지역사회의 역할과 민간협력을 중심으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마. 아동보호체계의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의 제시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현황과 주요 OECD 국가의 경험, 그리고 바람직한 보호환경(protective environment)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아동보호체계의 합리적 발전방향을 고민하였다. 각론적으로 분석된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하여 아동보호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주1) 2003년도 상반기에 시작된 동 연구사업은 2006년에 최종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동 연구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http://www.ohchr.org/english/bodies/crc/study.htm> 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를 우리나라의 체계와 비교분석하기 위한 문헌연구 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공식문헌 및 연구문헌 등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각종 행정자료와 관련부처 홈페이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분석대상국의 아동보호체계가 산발적인 나열 또는 체계나 제도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비교검토가 가능하도록 공통된 분석틀을 이용하였다.

한편, 비교 분석된 내용과 이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선진화 전략을 강구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공공부문에서 아동보호체계의 운영에 책임을 갖고 있는 담당 공무원 및 아동보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아동보호체계의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가. 비교대상 국가의 선정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국에 대한 심층 사례연구와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관련 현황분석 등 두 가지 접근을 시도하였다. 우선 심층 사례연구에 있어서는 복지국가의 특성이 상이한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등 4개국을 비교대상 국가로 선정하여 이들 국가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국가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아동복지(child welfare)의 국제비교연구 동향에 따른 것이다. 아동복지를 아동보호적(child protective) 접근과 가족복지적(family welfare) 접근으로 구분한 연구들은 아동보호(child protection) 중심의 정책추진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 캐나다 등을 포함하였다. 반면, 가족복지적 접근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독일과 스웨덴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 아동보호적 성

격과 가족복지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선정하였다 (Gilbert, 1997, Lorenz, 1994, Hellinckx et al., 1997, Hetherington, 1998). 한편, 일본의 경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동복지와 아동보호가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하여 비교대상 국가에 포함하였다.

나. 자료의 수집과 분석

아동보호체계를 비교하는 데 있어 각국의 아동보호 관련 법적·제도적 환경, 아동보호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 아동보호체계의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민간협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문헌자료와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하였다. 또한 각국 해당부처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초통계 및 정책현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아울러 서비스 기관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의 근거가 된 비교 영역별 주요 지표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주요 비교영역 및 분석지표

비교영역	분석지표
아동보호 관련 법적·제도적 환경	- 아동보호 관련 법적 근거 - 아동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법적 배경 - 아동보호체계 관련 입법내용
아동보호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	- 아동보호체계 운영 주체 - 아동보호체계 관련 정부 예산 - 아동보호체계 관련 인적 자원의 구성
아동보호체계의 모니터링과 평가	- 보호아동 관련 통계 생산 - 아동보호체계 평가기준 - 아동보호관련 공식 보고서의 작성여부 - 아동보호체계 평가결과의 환류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와 민간협력	- 아동보호에 대한 대중매체의 기능 - 아동보호관련 국가차원의 캠페인 또는 교육·홍보 - 지역사회의 참여 형태 및 유형 - 아동보호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방안

다. 분석 자료의 한계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에 관한 비교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주요 국가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사례분석과 현황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관련 정책 및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심층적 사례분석 및 전체 OECD 국가를 비교분석하는데 다음과 같은 자료의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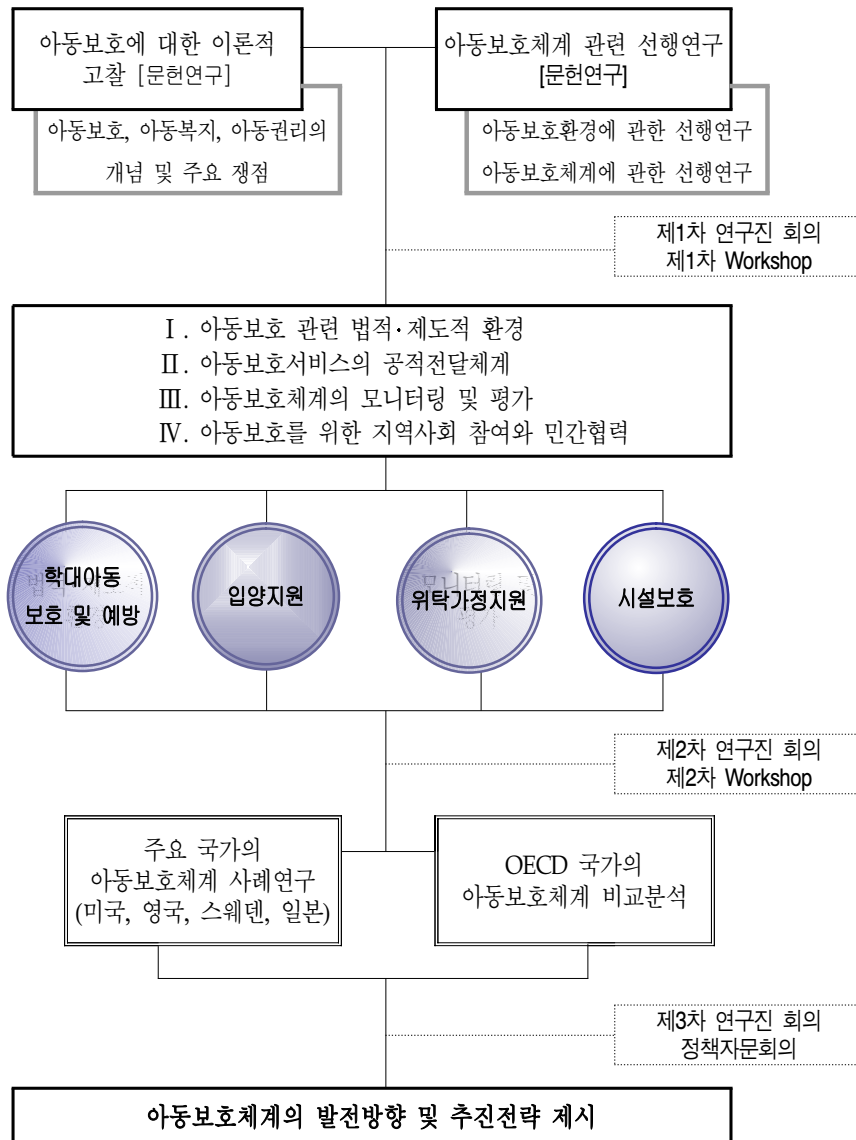
첫째, 사례분석 대상 국가를 포함하여 주요 OECD 회원국의 아동보호체계의 분석대상이 된 자료는 인터넷자료와 관련 행정기관 및 특정 기관자료, 그리고 UN에서 실시한 국가보고서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서 제공된 정보나 온라인상에 제시된 정보의 진위 및 정보 공개 시기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자료수집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동보호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 국가와 공개하지 않는 국가가 있고, 최신 자료의 공개여부도 국가간 편차가 심하였다. 더불어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의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한정되어 있어 개별 국가의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었다.

둘째, 아동보호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2장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겠지만 국가마다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자료수집에 또 다른 한계로 작용하였다. 이는 개별 국가가 처한 사회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복지제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이 달라, 일관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미흡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연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연구의 흐름도는 다음 [그림 1-1]과 같이 요약·제시된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제 2 장 아동보호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아동보호의 개념

1. 아동보호와 아동복지

아동이 있는 곳은 장소와 관계없이 다양한 위험요인을 갖는다. 다만,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위험유형이나 수위가 달라질 뿐이다. 따라서 아동보호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는 기본적으로 아동에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아동보호 정책과 제도는 각종 위험요인의 제거와 동시에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사전에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위험을 경험하더라도 본연의 건강성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Bowes & Hayes, 1999, Werner & Smith, 2002). 다시 말해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 시킬 필요성과 개인적·사회적 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위험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회복 가능성(resiliency)을 제고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동보호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다소 상이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 아동보호체계의 운영과 동시에 각종 조기 개입방안(early intervention) 간의 조정과 통합(coordination & integration)을 바탕으로 아동이 폭력이나 착취, 학대 및 방임 등과 같은 발달위기(developmental risks)에 노출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기상황으로부터 최단시간에 벗어나 아동 본연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제도적 노력과 함께 가족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Bowes & Hayes, 1999). 포괄적, 통합적 보호체계야

말로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을 발굴하고 문제를 진단하여 적절한 지원 및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관건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보호체계는 아동학대예방과 보호체계와 유사 관련 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둘째, 아동보호를 아동복지 체계 내에서 논의되는 하위 개념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최근 발표된 일련의 아동복지 체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는 아동복지가 아동보호의 측면(Child Protection Orientation)에 중점을 두거나 가족복지서비스 관점(Family Service Orientation)에 초점을 두는 형태로 양분된다고 주장하였다(Gilbert, 1997, Lorenz, 1994, Hellinckx et al., 1997, Hetherington, 1998).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아동보호측면을 강조하는 경우 아동복지의 주요 관심은 주로 부적절한 양육환경에서 부모 또는 주양육자로부터 학대받거나 방임된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및 방임 방지를 위한 제도적 활동과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강조한다. 이 경우 아동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는 아동의 부모 또는 주양육자와 반대의 입장에서 대립적 구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복지사는 아동보호 및 권리보장의 차원에서 학대·방임부모나 주양육자로부터 상황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아동을 격리·보호하는 경향이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스웨덴, 독일, 핀란드와 같이 가족복지 서비스 관점에서 아동복지를 실천할 경우 아동을 위협하는 환경이나 행위 및 아동을 둘러싼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갈등과 어려움에 관심을 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치료적·실천적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 경우 아동보호(Child Protection)는 사회복지 및 가족복지의 하위 범주 안에서 논의된다. 특히, 아동이 처한 발달위기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가족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가족복지적 차원의 해결을 강조한다.

셋째, 아동보호는 사회복지를 구성하는 한 분야로서 아동을 그 일차적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복지영역과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를 급격한 사회변화와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바탕

으로 빈곤, 사회적 배제, 불평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조직화하기 위하여 나타난 제도로 본다(김상균 외, 2001).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는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여 이들의 복지를 향상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보호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욕구를 충족하여 안정적인 성장발달의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련의 서비스 체계로 볼 수 있다.

전술된 바와 같이 아동보호는 아동복지나 사회복지와 일종의 정합성을 갖고 논의된다. 여기서 아동복지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아동의 사회적·법적 지위의 향상 및 이들의 인간적 권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구체화되었다. 과거 아동은 성인의 소유물이나 축소체로서 간주되었으나 현대사회에서 이들은 고유한 욕구와 존엄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식된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보장하고 이들의 잠재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제도화된 실천방법 등을 포함한다(장인협·오정수, 2002).

아동복지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일반적으로는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광의의 개념은 모든 아동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이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 보건, 경제, 노동, 문화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노력을 의미한다. 협의의 개념은 가족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이들에게 안전한 성장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조직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공계순 외, 2004, 장인협, 오정수, 2002).

이 경우 아동보호는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의의 아동복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체계는 아동보호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제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

한 일련의 사회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아동보호의 개념자체가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되고 있어, 이를 실천하기 위한 아동보호체계 또한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아동보호는 아동복지와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여 아동복지를 증진시키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포함하지만 제도적이고 구체적인 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핀란드에서 ‘아동보호’는 일반아동의 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그 정책적 영향력이 학교, 보건서비스, 주거, 시설관련 법·제도 및 가족과 사회복지 전반에 걸치는 개념으로 확대된다(Hearn et al., 200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보호의 개념은 아동관련 정책의 다양한 맥락에서 검토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호의 개념과 UNICEF(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동보호의 개념을 종합하여 아동보호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즉, 아동보호는 열악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하며,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학대, 착취, 폭력 그리고 부적절한 양육환경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체계 및 서비스를 운영·전달함으로써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체계는 아동보호의 목적으로 안전한 보호환경(Protective Environments)을 구축하는 일련의 제도적·조직적 사회체계로 보았다.

2. 아동보호와 아동권리

1990년에 채택된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주2)}에 따르면 협약 당사국은 아동이 학대나 착취,

주2)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차별, 폭행과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동 협약에 대해 1991년 비준함으로써 협약을 이행할 책임을 갖게 되었다.

아동이 갖는 인구사회학적 한계 및 근본적 미성숙은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경계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Harding(1996)은 이와 관련하여 아동보호에 있어 국가와 가족의 관계에 대한 양극단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한쪽은 권위주의적 접근을 전제로 하고 다른 한쪽은 자유주의에 기초한 것이다. 전자의 권위주의적 아동보호는 국가가 가족생활과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의 양육과 보호에 대한 강력한 조정·중재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가와 사회가 아동을 위한 최선의 방편이 무엇인가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으며,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조직의 전문성과 연계성을 강조한다. 반면, 자유주의적 아동보호는 국가와 사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따라서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부모의 확신을 우선시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부모-자녀관계의 존엄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Ross(1998)는 앞서 논의된 아동보호에 있어서의 권위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아동보호를 아동권리의 입장에서 재조명하였다. 즉, 아동보호에 있어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에게 성인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할 것과 이를 위해 아동보호 체계가 바람직한 법·제도의 체계 내에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Ross(1998)의 주장은 아동이 성인과 동일한 사회적 권리를

은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한 191개 국가 18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국제협약임. 동 협약은 전체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40개는 아동권리에 관련되어 있으며, 나머지 14개 항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례들과 연관되어 있음. 1969년 비엔나 의정협약 총회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의정서 내용들은 협약 당사국들의 준수 의무사항이 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만 함. 아동권리협약의 전문은 부록에 첨부하였음.

인정받더라도 그 권리의 성격은 분명 다르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인의 사회적 권리가 주로 외부 간섭의 금지나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등의 부정적 권리의(negative rights) 형태로 나타난다면, 아동의 경우 신체적,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받지 않을 부정적 권리 이외에도 교육을 받을 권리나 적절한 영양 및 의료보호를 받을 권리와 같은 긍정적 권리(positive rights)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 보호자들은 아동이 성인과 비교하여 작은 권력을 갖고 있지만 동일환 환경적 제약조건에 대하여 훨씬 취약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근본적인 차이를 정당화한다고 보았다.

사실, 아동보호에 대한 자유주의적 입장이거나 권위주의적 입장인가의 문제와 별개로 분명하게 공유되는 사실은 첫째, 아동을 둘러싼 환경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아동에 대한 외부의 적절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아동보호체계가 아동의 사회적 위치와 성인과의 권력 차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를 제도권 내에 마련해야 하는 당위성은 분명하다는 점이다. 아동보호 및 아동보호체계의 구축은 아동권리의 보장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 된다.

3. 아동보호의 역사적 변천

역사적으로 돌이켜 보면, 아동보호(Child Protection)는 아동구제운동(Child-saving Movement)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빈곤하고 의존적인 아동은 병리적이고 무책임한 부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였다(Rooke & Schnell, 1983).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제도적인 외부의 개입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입은 주로 고아원이나 다양한 형태의 시설보호를 통해 주로 이루어졌으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시설보호는 방치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간주되었다. 시설보호를 통하여 아동은 적

절한 교육과 양육을 받을 수 있었으며,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되었다.

그러나 초기 아동구제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진 아동보호는 역사적으로 아동을 성인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사회적 관습이 내제되어 있었다. 또 아동은 사회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인의 의지나 제도를 통하여 조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할 경우 아동은 피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되고 사회적 기본질서는 파괴되는 결과에 봉착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Bagnell, 1980).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서구사회에서는 아동보호에 있어 탈시설화의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가정 내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아동을 성인의 소유물로 인식하던 사회적·문화적 관습은 차츰 사라졌고 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가족의 보호와 사회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Wiltse, 1985). 시설보호의 폐해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대규모 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은 끊임없는 경제적 의존성과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더불어 도덕적, 신체적, 정서적 발달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가정 내 아동보호는 아동발달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의 정책적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던 아동들의 상당수가 일반가정으로 위탁되는 것이 아동발달 및 사회 안정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아동보호의 주류가 되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아동보호에 가장 적합한 가정을 발굴하는 과정보다는 시설보호 아동을 재배치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아동권리의 보장은 여전히 요원한 것이었다.

아동보호에 대한 철학적 가치의 전환이 병행되지 못하였지만 탈시설화의 조류에 따르는 가정보호의 확산은 아동보호체계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것은 분명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보호에서 시작되어

가정보호로 전환된 아동보호는 가족을 통하여 교육받고 사회화됨으로서, 시설에서 노동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던 보호보다는 한층 성숙되고 인간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요보호아동의 부모는 무책임하고 미성숙한 성인으로 비취졌고 가정위탁을 주도할 수 있었던 사회적 조정역할은(social control) 아동보호의 전환기의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20세기 초반에 들어서면서 아동보호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이 대두되었다. 장애와 박애정신에 기초했던 초기의 아동구제운동 및 가정위탁을 통한 아동보호체계가 아동과 가족의 발달욕구와 학습욕구 등을 기초로 하는 과학적 근거와 논의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Barter, 2001). 아동발달에 대한 과학적, 학문적 영향력은 아동의 욕구에 대한 적극적 옹호와 함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원래의 가정에서 생물학적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문적 개입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자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아동보호가 공공부문의 주요 책임영역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이즈음에 이르러 아동보호를 위한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고 각종 입법조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아동보호의 표준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거 아동구제의 철학은 제도권 안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되었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보호아동의 발생이 특정 가족구성원의 개인적 결함이나 내생적 문제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의 취약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동보호에 대한 적극적 개입의 강조는 산업화, 도시화, 빈곤, 경제위기 등 외적요인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만큼이나 아동보호관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

작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이 무책임한 부모에 대한 비난으로 귀결되지 않고 사회적 지원과 지지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는 사회적 요구로 파악될 수 있다.

공적 개입이 강조된 아동보호는 1950년대 후반, 1960년대 초반까지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접근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라기보다는 공적 지원과 개입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아동이 부적절한 양육을 받는 경우 공공부문의 개입과 지원은 부모의 생활방식이나 양육방식을 진단·치료하여 현금 또는 현물지원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공적 개입이 아동보호를 위하여 생물학적 부모로부터 아동을 일정기간 동안 격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격리의 과정에서 부모의 존재는 무시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 이었다(McFadden, 1985). 원가정 보호의 원칙이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이 난해한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별 가족문제에 접근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Mass와 Engler(1990)는 아동보호에 있어 가정위탁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보호를 목적으로 생물학적 부모(biological parents, parents of origin)와 격리된 아동들이 실제로는 구체적인 보호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의 지속적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강력한 지지자나 장기적인 보호방안 없이 방황하게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에 Mass와 Engler는 위탁가정지원 체계 및 관리방안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 결과,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 걸쳐 항구적 보호계획(permanency planning)의 개념이 소개되었으며, 제3자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항구적 보호계획은 아동보호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또한 항구적 보호계획의 수립은 아동복지와 아동보호체계에 있어서 미온적으로 진행되었던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항구적 보호계획은 생물학적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아동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발달에 있어 부모와 형성하는 애착관계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즉, 아동의 애착욕구를 아동보호체계에 반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격리수용 형태의 단순보호에서 진일보하여 보호를 제공하는 사람과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그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항구적 보호계획에서는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치명적인 상황에 있지 않다면 이들을 아동보호 체계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시 말해, 위기에 노출된 아동 및 이들의 부모와 가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항구적 보호계획의 수립은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지속적 연속성을 강조한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원가정(family of origin)에서 격리하여 보호하는 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구체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반적인 보호과정이 아동의 연령에 상관없이 장기적이고 일관성을 갖고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위탁가정 지원을 통한 아동보호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위기에 처한 가족을 치유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아동보호와 가족복지의 연계라는 아동보호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심을 갖고 있다. 가족기능의 강화는 원가정에서 생물학적 부모의 양육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아동이 생활하게 되는 새로운 환경에서 아동이 상호작용 하게 될 의미 있는 타인들(significant others), 즉, 위탁가정의 구성원들의 역할을 재조명하여 아동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하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정리하자면, 기존의 아동보호가 위기에 노출된 아동을 격리, 수용, 보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면 항구적 아동보호 계획에 기초한 아동보호는 부모와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 및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 이들의 상호작용 관계를 갈등관계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을 최대한 배제하고 보충적이고 보완적인 특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려하는 것이다. 아동보호체계의 접근방식과 철학적 배경에 있어서의 이러한 변화와 발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폭력 및 부적절한 양육환경으로 인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은 전체 사회로 하여금 아동보호에 있어 공공의 책임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혁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Barter, 2000).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기존의 아동보호체계나 보호서비스가 아동복지와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취하였다고 보다는, 아동을 위기상황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아동보호에 있어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학대아동의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아동보호체계의 정책대상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한계에 다다른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술된 아동보호의 개념 및 아동보호체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현재 발달위기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보호체계의 개입과정(intervention process)은 적절한 위상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과거 수십 년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발견, 학대와 방임신고의 조사, 잠재적 학대와 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가족지원, 그리고 가해자의 처벌 등에 대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아동보호의 임무는 소수 사회복지사들의 판단과 위기개입에 기초하면서, 안정적인 보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직적, 인간적 접근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아동보호를 위하여 아동에게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할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보다는 가족해체를 조장하는 비난을 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다음 여섯 가지의 근거를 제시 하면서 Barter(2001)는 아동보호체계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첫째, 기존의 치료중심적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고, 현재 아동보호서비스 및 보호체계는 다각적인 위기상황에 봉착했다. 둘째, 현재의 아동보호체계는 현대의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고안되지 않았다. 셋째, 과거의 위기개입과정은 아동이나 가해자들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어 가족구성원, 지역사회 및 전문가의 적극적 개입이 차단되어 있다. 넷째, 아동보호체계를 포괄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섯째, 아동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학술적 접근이 병행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는 단일 기관이나 특정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는 협의의 개념이 아니며 아동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다학제적인(interdisciplinary) 접근에 기초한 다양한 기관과(inter-agency) 지역사회의 협력을(community collaboration) 필요로 한다.

이러한 논의와 맞물려 아동보호체계를 재구성하고 기존의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념적 틀로서 보호환경(Protective Environment)의 조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검토되고 있다(Landgren, 2005). 특히, UNICEF와 UN 아동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보호환경의 조성은 학대, 착취, 폭력 및 부적절한 양육환경 등에서 비롯되는 발달위기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데 핵심적인 8대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 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제2절 아동보호환경의 범주 및 보호체계 분석틀

1. 아동 보호환경(Protective Environments)의 범주

UN 인권위원회(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및 UN 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비정부기구(NGOs)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은 아동의 보호권(Protection Right) 보장 측면에서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근거한 강력한 보호체계의 구축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입장에서 안전한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호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기저에는 기존의 아동보호체계가 발달위기에 노출될 수 있는 발달환경 상의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에 대한 일시적인 치유책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UN 아동권리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보호권리에 위배되는 상황들 가운데 상당부분이 개별 국가의 정치·문화적, 사회·경제적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아동보호에 대한 기본입장은 아동보호환경의 조성과 보호체계의 구축이 발달위기에 노출된 아동의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결정적 예방책이라고 믿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개입 방안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보호환경의 조성에 대한 인식을 보편화함으로써 개별 국가나 개별 아동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아동보호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괄적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의 중요성을 담론화 하고자 한다.

담론화 과정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보호환경의 조성과 보호체계의 구축에 있어 국가와 사회의 책임 공유는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

와 국가발전의 유기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아동보호의 사회적 의의를 공유하고 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8대 역점과제를 [그림 2-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2-1] 아동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8대 역점 분야



주: UN 및 UNICEF에서 참고하고 있는 아동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8대 역점 분야를 재구성하였음.

자료: Landgren, K., The Protective Environment: Development Support for Child Protection, Human Rights Quarterly, 2005.

각 부문별 세부 추진전략 또는 정책방안 들을 살펴보면, 첫째, ‘정부 역량강화’는 유보조항 없는 UN 아동권리협약의 국가비준을 포함한다. 또한 아동보호에 대한 적극적 정부예산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명시적 아동친화정책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둘째, ‘입법조치·제도적 조치’ 부문에 있어서는 아동보호를 위한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s)을 수용하고 법적·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원과 경찰의 공조체제를 마련하거나, 아동보호관련 사건에 관해 아동의 입장에서 수사 및 법적 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셋째, ‘문화·관습의 고려’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녀훈육을 위한 체벌에 대한 수용적 문화가 아동학대를 방조하게 되는 결과를 우려한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강압도 용납하지 않는 문화나 관습을 형성해 나가는 사회적·대중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넷째, 아동보호 관련 이슈에 대하여 ‘사회적 공론화’는 지역사회와 대중매체 및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아동보호의 중요성을 교육·홍보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가 아동보호의 감시자이면서 동시에 적극 옹호자(advocate)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생존기술(survival skills)의 보급’은 아동 스스로가 자신들이 학대, 착취, 폭력 및 부적절한 양육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충분히 교육받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도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과 학습이 일상의 생활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에서 논의될 가족과 지역사회 단위의 적극적 참여와 활동을 필요로 한다.

여섯째, 아동보호체계 구축 및 보호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가족·이웃·지역사회 참여’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는 아동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감시체계의 역할도 병행하여야 하며, 가족은 아동보호의 일차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곱째, ‘보호서비스 전달과 자립지원’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즉, 피해아동을 위기상황으로부터 조속히 격리·보호함으로써 아동보호의 일차적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 더욱이 일차적인 보호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치료와 향후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아동보호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효과적으

로 보호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정책운영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니터링과 평가’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의 수집 및 투명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책수립의 기초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합적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보호체계의 역동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아동보호체계의 분석틀

앞서 논의를 통하여 아동보호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8대 중점 영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보호환경을 마련하는 제도적 과정이 구체화되고 체계화된 것이 바로 아동보호체계(Child Protection System, CPS)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아동보호의 개념에 대한 접근을 광의로 할 것인가 또는 협의로 할 것인가에 따라 아동보호체계의 범주도 국가별, 지역별로 상이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동보호체계(CPS)를 학대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체제로 간주하고 있어 협의의 아동보호체계를 수용하고 있다. 반면, 보호환경의 조성을 강조하고 있는 UN과 UNICEF의 입장에서 보면, 아동보호체계의 구축은 학대아동 보호 차원을 넘어서는 포괄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Munro(2005)는 학대, 착취, 폭력 및 부적절한 양육으로 인하여 외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아동보호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 상황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접근, 둘째, 이들 아동이나 가족과 관계된 공공 또는 민간지원체계, 셋째, 아동보호 관련 기관 및 기관종사자, 전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이 그것이다. 아동보호체계의 역할과 기능은 이러한 네 가지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과 연계,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실천을 통하여 위기상황에 노출된 아동을 보

호하고, 이들의 발달기회에 있어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서의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를 비교하는 분석 틀로서 보호환경 구축에 요구되는 주요 쟁점요인을 중심으로 4가지로 선정하였는데, 구체적 분석기준을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보호관련 법적·제도적 환경의 구축

둘째, 아동보호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

셋째, 아동보호체계의 모니터링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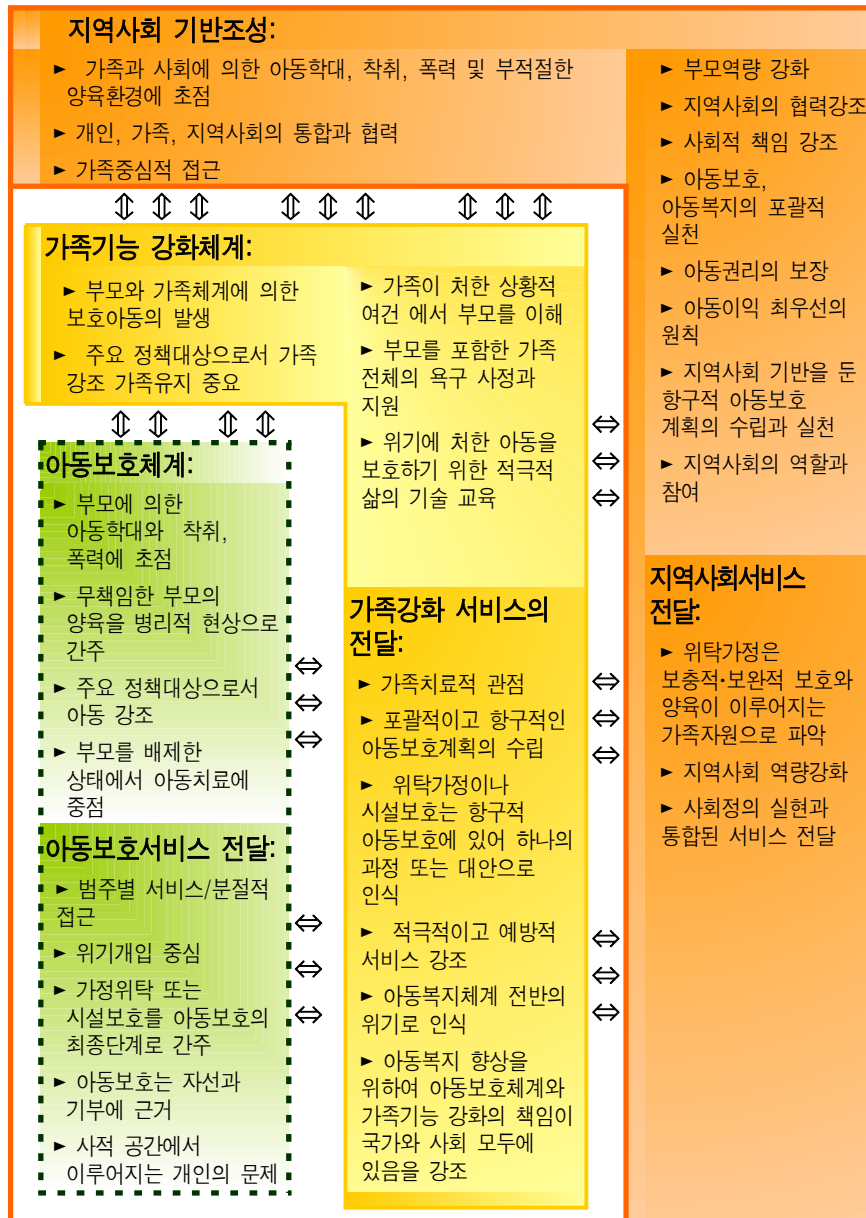
넷째,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와 민간협력

최근 선진국 아동보호체계에 있어서 관찰되는 가장 뚜렷한 변화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보호환경의 구축이다. 아동보호에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아동보호에 효과적인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단순히 복지사회 달성을 위한 목표 이상의 거시적 방향, 즉, 사회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비전에 의의를 두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 아동보호의 틀은 변화의 단계를 넘어서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의 노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병리적 현상으로 접근하지 않고 개별 아동, 개별 가족의 특성과 순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구체화해야 하는 과제를 포함한다. 아울러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있어서 위기상황을 야기한 부모라 할지라도 아동보호 계획의 수립에 있어 배제되지 않고 중요한 자원이자 파트너 또는 조력자로 이해되어야 한다.

아울러 아동보호는 특정 기관이나 전문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인지하고 사후 치료적 접근보다는 사전 예방적 기능의 강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전문적 기술과 지식의 통합·협력에 있어 지역사회의 책무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실천이 아닌 지역사회로부터 출발하는 아동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2-2] 아동보호체계의 개념 확장



[그림 2-2]는 아동보호체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면서 정책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학대, 방임, 착취, 폭력 및 부적절한 양육환경 등과 같은 특정 위기상황에 직접적 개입의 단계에서 보호서비스의 전달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동보호체계의 구축으로 가시화 되지만,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개입과 지원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원가정 보호의 중요성이나 생물학적 부모의 역할에 대한 임의배제가 우려된다.

아동보호체계가 아동발달의 측면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나고 자란 원가정에 대한 전문적 개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를 통합, 조정, 지원할 수 있는 보호환경의 조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배경을 기저에 두고 앞서 제시된 4개 분야의 주요 분석틀에 대한 중요 이슈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제시된 쟁점들은 궁극적으로 아동보호체계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근간이 되었다.

가. 아동보호 관련 법적·제도적 환경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폭력 및 부적절한 양육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보호체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서 선행되어야 할 필수 조건이다. 인간존중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나아가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구축함으로써 아동보호는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제도적 기반조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조계를 비롯하여 아동보호 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의 활동은 아동권리협약의 준수를 위한 법적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의 아동보호 의지가 법적·제도적 틀에서 구체화되지 못하는 것은 아동보호의 중요성과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부족, 그리고 이러한 인식부족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 및 교육이 미흡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아동보호 관련 국가 통계 등 현황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할 때, 법적·제도적 개선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적·제도적 개선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동보호 관련 법률 조항이 전체 사회에 산재되어 있는 전통적 관습과 충돌하면서 일어난다. 예를 들어, 가정 및 학교에서 훈육의 한 방법으로 체벌을 관습적으로 허용하는 문화에서는 성인의 신체적, 정서적 압력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를 통해 아동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훈련 및 홍보 프로그램의 공식적이고 정기적 제공을 통해서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의 마련 또는 정비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은 의회, 교육기관,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관련 부처 종사자와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에 아동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기준을 제도화하고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지원과 지지는 정부 실행을 촉구하는 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참여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나. 아동보호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

발달위기의 상황에 처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여건이 조성되면, 아동보호정책의 실질적인 집행 및 보호서비스의 전달은 공

적전달체계의 운영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아동보호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전달체계의 주체 가운데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공적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우선 논의해 보고자 한다.

공적전달체계 특성은 개별 국가의 복지인프라에 따라 상이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동보호 관련 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성이 제고됨으로써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사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주3)} 아동의 생활과 직·간접적 관련성을 갖고 있는 유관기관은 위기아동의 발견과 사례조사, 조정과 대처, 항구적 보호계획의 수립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 통로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보호환경을 마련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보호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기관의 교사나 관계자의 경우 아동의 일상생활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 착취, 폭력 및 부적절한 양육 상황에 대한 조속한 확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발견에 이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연계의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인 보호서비스가 전달되는 디딤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서비스 관련 공적자원의 효율적 배치와 전달이 궁극적으로 아동권리를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교사, 의사, 경찰, 지역사회 주민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와 협력이 아동보호체계의 운영과 보호서비스 전달의 효과성을 도모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학대, 착취, 폭력 및 부적절한 양육환경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고, 아동보호체계의 필요성 및

주3) 개별국가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이들 기관의 직접적 운영은 민간에 위탁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공공부문은 전체 또는 부분적 재정지원의 형태로 개입하고 있음.

서비스 전달에 있어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확한 교육과 정보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면서 실질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UN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보호 관련자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교육내용 중에는 피해아동이 가질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보상욕구를 충족시키고, 부정적 경험으로부터 벗어나 재할할 수 있는 방법과, 일상으로 통합될 수 있는 기술적 접근을 지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보호체계가 공적전달체계 상에서 이루어지는 위기개입과 상담, 가정위탁 및 시설보호 그리고 법정 개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일상적인 위기개입 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홍보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아동보호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다. 기존의 아동보호서비스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차적 변화’(first order change)와 ‘이차적 변화’(second order change)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 전자는 기존의 전달체계나 조직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반면, 후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최선의 실천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 실천방법 그리고 전달방법을 요구한다(Theobald, 1995).

공적전달체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Network)란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관련 조직들이 협력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관련 조직 및 단체, 기관들이 공식적인 권력구조를 갖지 않고 상호의존 하는 관계를 바탕으로 공통의 목표달성을 위해 연대하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연계방향성과 접근성 등을 중심으로 구조적 측면, 연계의 지속성과 연계정도 및 내용 등을 포함하는 상호작용적 측면, 그리고 네트워크가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살펴보는 기능적 측면에서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다(한인숙, 김희연, 2001).

최근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달에 있어 공적전달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적 전달 체계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아동서비스 관련 네트워크 구축은 아동학대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적이고 일반론적인 논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정윤수, 이정희, 2004). 예를 들어, 아동학대를 단순한 양육기술이나 분노조절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가정폭력, 가족해체, 알코올중독 등이 복합적으로 얹혀있다고 판단하고 사법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다양한 관련기관들이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근용, 2001, 윤혜미, 2000).

다. 아동보호체계의 모니터링과 평가

일반적으로 협의의 정책모니터링이란 정책의 순응여부를 검사하거나 제시된 정책의 수행과정을 추적하는 활동으로 파악된다. 광의로 접근할 경우, 기존 정책의 존립 필요성을 재검토하거나 정책운영의 변화를 제안하는 활동까지 포함한다(김명수, 2002). 즉, 정책모니터링을 통하여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정보를 향후 정책결정과정에 제공·공개하여 궁극적으로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와 목적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정책의 조정과정에 이용된다. 이러한 정책모니터링은 크게 성과모니터링(outcome/performance monitoring)과 프로그램 모니터링(program monitor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과모니터링은 정책에 대한 투입, 활동 및 산출물들을 측정하고 그 정책 성과들을 정책입안 이전에 설정하였거나 기대했던 목표치와 비교한다. 그리고 의도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시정함으로써 의도한 성과를 산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성과모니터링

은 다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성과모니터링(prospective outcome/performance monitoring), 과거추세에 대한 성과모니터링(retrospective outcome/performance monitoring), 지속적인 성과모니터링(continuous outcome/performance monitoring)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반면, 프로그램 모니터링은 정책수행 과정이 정책수립 당시의 기대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정책의 정확성 평가로 명명하기도 한다(김명수, 2002).

정책의 수행에 있어 모니터링이나 평가가 강조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황성원, 김용훈, 2004). 첫째, 책무성(accountability)의 차원으로 정책집행자와 전달자는 지속적으로 정책대상에 대한 책임을 진단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둘째,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의 차원에서 정책의 실패 또는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수집의 차원에서 수행중인 정책의 지속/중단 여부 또는 확장/축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보호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운영과정과 서비스 전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만큼이나 보호체계 자체와 체계운영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이들 결과의 환류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모니터링과 평가과정에는 사례발굴과 접수, 신고와 처리,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 이 과정에서 자료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공식화되고 제도화된 경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자료의 수집과 분석, 결과활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배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 공식통계로서 아동보호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심지어 아동보호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자체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용이하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체계를 정기적이고 과학적으로 모니터

링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아동보호체계운영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환류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료수집 및 보관(ie., Information Gathering System, data archive)에 대한 기술적 지원(technological assistance)이 절실하다. 뿐만 아니라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적극적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배치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정부차원의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권기관이나 비정부단체의 참여를 통하여 시민모니터링과 평가도 아동보호체계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모니터링과 평가가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만 있다면 말이다.

라.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민간협력

아동보호환경을 마련하고 보호체계의 효과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민사회의 참여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이는 보호아동의 발생이 단순히 개별 가정의 사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동 학대, 착취, 폭력 및 부적절한 양육환경은 피해아동이 생활하는 개별 가정의 문제를 초월하여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한계와 맹점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결과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 Swift(1995)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야기된 보호아동의 발생은 개별 가정의 차원에서 발생한 결과보다 훨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개별 가정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사회전체의 문제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폭력과 부적절한 양육환경의 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사회의 참여는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모두의 참여를 연계하고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조성 (community building)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정의되는데, 예를 들어 Naparstek(1997)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일종의 활동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Weil(1996)은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규범을 유지·강화시키는 종합적인 노력으로 정의하였다. 제시된 2가지 정의가 모두 아동보호체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개념적 틀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효과적인 아동보호체계의 구축 및 체계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 참여와 민간의 협력은 위기상황에 노출된 아동과 가족의 보호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종전의 개별 아동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가족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전문가의 협력과 서비스의 통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아동과 가족에 대한 포괄적 접근은 기관간의 또는 전문가 집단의 최선의 실천을 위한 협력과 통합이 중요하다. 아울러 아동과 가족이 생활하는 일상의 공간에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아동보호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환경의 변화가 요구된다. 아동보호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이 제고됨으로써 아동보호는 치료와 재활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예방과 조기개입을 통한 조정과 보완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아동보호는 기존의 제도적 패러다임을 대상자 중심,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전환시킴으로서 보다 구체화될 수 있다. 전문적·제도적 패러다임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중요시 한다. 반면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 패러다임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지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참여와 책임에 바탕 하는 보호계획의 수립을 중요시 한다. 또한 기존의 패러다임이 지역사회를 아동보호를 위한 추상적 해결책으로 간주한다면,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는 지역사회 자체를

문제의 핵심으로 규명하고 서비스를 구체화하며 실질적인 실천이 이루어지며, 협력과 통합의 장(場)으로 간주한다. 더욱이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준비를 강조한다. 이러한 과정의 전반에 걸쳐 아동보호는 전문가적 접근의 중요성만큼이나 일반적 접근이 강조되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개별적 접근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Ife, 1998).

제3장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

가출, 이혼 등에 따르는 가족해체의 증가, 소득수준의 양극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한 가정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현대 생활의 긴장과 스트레스 심화는 불안정한 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보호는 대부분 아동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둔 아동보호서비스는 시설보호, 위탁보호, 소년소녀 가정지원, 그룹홈 보호,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학대아동보호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서비스 대상은 아동급식 지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부자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제공되며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저소득층에 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입양아동에게는 교육비 및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최저생계비 이하 가정의 아동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공공부조가 제공된다. 또한 형법을 근거로 각종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폭력 및 학대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전반적인 제도적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 입양지원, 가정위탁지원 및 시설보호 지원 등을 중심으로 아동보호체계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특성과 한계를 제시하였다.

제1절 아동보호체계의 연혁^{주4)}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는 서비스의 기능과 성격을 중심으로 1950년대까지의 사회구호 단계, 1960~70년대의 선별주의 단계 그리고 1980년대 이후 보편주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장인협·오정수, 1990). 특히 2000년 이후는 보편주의가 확대되는 단계로 기존의 서비스 대상을 확장하고 서비스 확충이 추진·진행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1. 구호주의 단계: 1960년 이전

역사적으로는 삼국사기나 고려사의 등 문헌에서 신라나 고려시대에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아동을 국가나 사찰에서 수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도 유기아동이나 부랑아를 국가에서 수용 보호하거나 민가에서 양자 또는 노비로 삼는 것을 정황에 따라 허용하였다는 기록도 발견된다.^{주5)}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재와 같은 아동보호서비스는 과거 전통사회에서 보여 졌던 아동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전통이나 제도의 계승 발전 이라기보다는 외국선교사나 일제에 의해서 새로이 서구식 또는 일본식으로 변형된 서구식 형태를 받아 드려 우리의 실정에 따라 수정·실천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김현용, 1996).

근대적 아동복지의 시초는 갑오경장 이후 외국 선교사에 의하여 보육원이 설립되면서 육아 및 구제사업의 형태로 시작되었다.^{주6)} 이어 해방 이후에는 한국전쟁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사회혼란, 전쟁, 빈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수의 요보호아동에 대한 긴급구호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당시 아동보호 특성은 시설보호 중심의 보호서비스 전

주4) 보건복지부 제안에 따라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 연혁을 요약·제시하였음.

주5) 문헌은 숙종 때(1696) 제정된 收養臨時事目(수양임시사목)과 정조(1783)가 제정한 字恤典則(자휼전칙)임.

주6) 1885년에 천주보육원, 1906년 경성보육원이 운영을 시작하였고 1930년대 들어서 여러 보육원이 설립되기 시작하였음.

달과 외원 위주의 재원활용이라고 하겠다.

해방 및 전쟁 이후 많은 고아와 기아, 미아 발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로 외국원조에 의한 시설보호 중심의 구호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60년대에 이르기 까지 우리나라의 총 복지시설의 수는 472개소였는데, 이 가운데 80%가 아동복지시설이었으며 이러한 시설 운영예산의 42% 정도가 외국의 민간구호단체의 지원에 의한 것이었다(장인협·오정수, 1990).

시설보호 이외에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호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입양사업이었다. 특히, 입양정책의 경우, 한국전쟁 직후 미군 등 외국군의 주둔으로 인해 발생한 혼혈고아에 대한 대책으로서 처음 모색되었다. 아울러 1950년대 중반부터는 혼혈아 이외의 아동 해외입양이 시작되면서 홀트아동복지회, 십자군연맹, 한국봉사회 등의 민간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국외입양사업이 점차 확대되었다.

2. 선별주의 단계: 1960~1970년대

아동복지에 있어서 1960~70년대는 선별주의 원칙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의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960년대 초 생활보호법과 아동복지법의 제정으로 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 원칙이 최초로 법제화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정부가 아동보호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외국의 지원이 점차 감소하면서 국가가 아동보호에 책임을 더 많이 지게 되었다. 한편, 입양 및 가정위탁보호, 탁아사업이 장려되었고, 1970년대 후반에는 불우아동 건전육성 대책 수립 등으로 시설아동에 대한 결연사업이 시작되었다. 시설수용 아동수도 1967년 6만 5천명 수준이던 것이 1970년대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보호방식은 여전히 시설보호 위주로 진행되었다.

입양과 관련해서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 한국전쟁으로 인한

고아와 부모의 유기로 인한 아동을 외국인에게 입양함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하여 국외입양과 함께 국내입양도 동시에 권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 입양특례법으로 개정되었다.

탁아사업은 처음에는 영세가정 결손가정의 영아를 대상으로 196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1968년에는 탁아소를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968년 정부의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요령의 공표로 탁아소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후 탁아시설 운영부서가 보사부에서 내무부로 흡수되고 명칭도 새마을 유아원으로 개칭되었다.

3. 보편주의 도입 단계: 1980~2000년

1980년대 초에는 아동복지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아동복지가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요보호 아동이 아닌 전체 아동을 대상의 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증대되었고, 아동복지 서비스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지향하였다. 소년소녀가정 보호 실시, 가정위탁 시범사업 추진 및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의 설치 등이 이루어졌다.

한편, 요보호아동의 보호방식도 대규모 시설 수용보호로부터 소규모 수용보호나 재가보호의 형태로 점진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와 맞물려 단순 수용보호의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가적 서비스 제공을 추구하게 되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을 기숙사 형태에서 소숙사 형태로 개선하거나 공동취사 형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면서, 1997년에는 그룹홈(group home)제도의 도입을 결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아동복지적 접근에 더하여 여성복지 측면에서 1989년에는 모자복지법을 제정하여 저소득 모자가정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동 법

에 근거하여 18세 미만 자녀의 학비와 양육비를 지원하였고, 1995년부터는 부자가정의 경우에도 모자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제적인 보호 대상으로 포함되었다.^{주7)}

그렇지만 1990년대 이전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던 단순한 시설보호에서 대리가정 보호 등 보호방식의 다양화와 전문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는 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국제아동권리협약이었다(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유엔 국제아동권리협약은 43개 조항에 걸쳐서 보장되어야 할 다양한 아동권리를 담고 있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으로, 1989년에 출범한 이래 세계 191개 국가가 동 협약에 비준하였다.

우리나라도 1991년에 동 협약에 비준하였고, 2차례에 걸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 받았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조치들이 권고되었으며, 특히 시설보호 중심의 요보호아동 보호 체계, 대리가정 보호서비스의 미비, 국내입양의 부진, 소년소녀가정제도의 불합리성 등 요보호아동 보호 방식의 개선을 권고 받았고 이러한 권고가 요보호 아동 보호 정책방향 설정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4. 보편주의의 확대 단계: 2000년 이후

2000년 이후 제공되는 아동보호는 법적·제도적 측면이나 실천면에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하고 있다. 우선 2000년에는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및 예방체계 구축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학대아동 예방 및 보호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수의 감소 및 IMF 경제위기 이후 요보호아동 발생 원인의 변화 등에 따른 시설의 역할 변화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아동복지

주7) 2002년에는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하여 1995년부터 실질적으로 지원해 온 부자가정에 대한 보호·지원을 제도화하였음.

법상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및 기능을 확대 개정하여 아동복지시설의 다양화와 사회화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더불어 위탁가정의 범주를 친인척으로까지 확대하고 소년소녀가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가정위탁을 확대한다는 방침 하에 2003년에는 각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하여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 1월에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4년 7월 아동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주8)}. 위원회 산하 아동정책실무위원회에 아동권리, 아동안전, 빈곤아동·청소년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육성종합 계획”, “어린이안전종합계획” 및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 등 아동보호종합대책이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보호·육성종합 계획”은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아동정책의 목표 및 비전 제시와 체계적 시책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2년 제80회 어린이날을 계기로 5대 분야 48개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어린이안전사고 사망자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에 따라 2003년을 ‘어린이안전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003년 6월에 7대 분야 58개 과제를 수립하여 시행중이다. 마지막으로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은 빈부격차 심화, 가족해체 증가 등으로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빈곤세습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대응하여 대통령 직속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2004년 7월 6개 과제 45개 사업을 마련하여 수행 중이다.

주8) 위원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12개 부처 장관과 아동단체장·학계전문가 12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었음.

〈표 3-1〉 아동보호체계의 연혁

연 도	내 용
1961	- 아동복지법 제정으로 요보호아동 보호 법적 근거 마련 - 고아입양 특별법으로 해외입양 근거 마련
1976	- 불우아동건전육성 대책 수립 - 입양특별법으로 국내입양 근거 마련
1977	- 정부주도로 사회인사와 시설보호아동과의 결연사업 실시 • 1981년부터 민간주도로 전환 • 1992년부터 불우이웃 결연사업으로 대상 확대
1985	- 6월부터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 - 요보호아동 가정위탁 시범사업 추진
1986	-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를 설치·위탁 운영
1991	-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보육사업 활성화 시도
1989	- 모자복지법 제정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997	- 그룹홈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1999년까지 시범사업 실시 • 2005년 현재 60개 운영
1998	- 경제위기에 따라 결식아동 급식지원 실시
2000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근거 등 규정을 마련하고 학대아동 예방 및 보호사업 실시 - 아동복지시설의 다양화와 사회화 근거 마련
2001	- 위탁가정의 범주를 친인척으로 확대하고, 소년소녀가정 감소 정책추진
2002	-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 • 1995년부터 실질적으로 지원해 온 부자가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어린이보호육성 종합대책 마련
2003	- 가정위탁 지원센터 설치 - 아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2004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아동보호사업 활성화 - 영유아보육법 개정, 주무부서 여성부 이관, 육아지원방안 국정과제 보고회 보고 등으로 보육정책 활성화 - 빈곤아동청소종합대책 마련
2005	- 급식지원 확대

자료: 보건복지부, 각 사업 안내, 각 연도.

제2절 아동보호체계의 특성 및 주요 쟁점

1. 아동보호체계의 특성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특성을 아동보호관련 법적·제도적 측면, 아동보호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의 측면, 아동보호체계의 모니터링과 평가측면 그리고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협력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가. 아동보호관련 법적·제도적 환경

『아동복지법』은 우리나라 아동보호에 관하여 가장 기본적인 법률 근거가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1961년 12월 30일 『아동복지법』이란 이름으로 최초로 아동복지에 관한 직접적인 기본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1981년 4월 13일자로 일반 아동들의 건전육성과 복지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본정신으로 전문이 개정되었다. 이어 2000년도에는 아동권리에 관한 기본이념의 명시, 아동 안전의 보장 등 아동복지의 보편주의적 성격을 강화하고 다양화·전문화된 보호서비스의 제공 등을 포괄하는 아동복지법으로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목적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에 두고 있으며, 아울러 무차별의 원칙, 성장발달권 보장의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등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특히, 아동보호에 있어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보호자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아동에 대한 11가지 유형의 금지행위를 규정하였다(표 3-2참조).

〈표 3-2〉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개념 및 금지행위

구 분	내 용
아동학대 개념 (2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금지행위 (29조)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물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개정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그 유형에 따라 1~10년 이하의 징역 및 500~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하도록 하여 법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시설보호, 가정위탁 및 학대아동 보호 등이 모두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특히 2000년에 이루어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 및 아동학대의 발견·치료·보호·예방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의 설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조항을 추가하였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신고 절차를 법적으로 명시하였다. 이밖에 개정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위원회, 아동위원, 아동복지지도원의 자격과 역할 등에 대

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은 입양과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입양 및 입양알 선업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아동 폭력 및 아동학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아동복지법 이외에도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 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이 있다.

형법 제242조에서 미성년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제244조는 음란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제조, 소지, 수입, 수출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에 대하여는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1997년 12월에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가정 내 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접근행위의 제한,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 보호관찰처분, 보호시설 감호위탁, 치료기관 치료위탁, 상담기관 상담위탁 등의 조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가정에서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는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가정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아동복지법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보호등에관한법률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특히,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강간 등 성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외에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및 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윤락행위방지법은 윤락행위를 금지하고,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기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및 윤락행위를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그 처소제공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유해한 오락,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각종 유해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시킬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나. 아동보호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아동보호 관련 법적·제도적 환경을 바탕으로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중앙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 주무부처로 아동복지와 관련되는 정책을 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청소년의 올바른 심신발달을 저해하는 유해한 사회 환경을 제거하고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검찰을 통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동시에 유관 행정기관 및 민간 자원봉사자와 합동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홍보와 계몽 등의 사회운동을 함께 벌이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중·장기 청소년육성정책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2개 부처 이상이 연관되는 주요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담당한다.

그 밖에 정부 차원의 아동보호 관련 기구로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가 있다. 동 위원회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국가 정책이 여러 관련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수립되거나, 일부 중복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 1월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4년 7월 아동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주9)} 위원회 산하 아동정책실무위원회에 아동권리, 아동안전, 빈곤아동·청소년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방에서는 시도와 시군구 사회복지 또는 여성관련 부서에서 아동보호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주무부처는 지역의 특성 및 행정 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공공부문의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가 전술된 바와 같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동보호정책의 수행 및 아동보호서비스를 전달하는 업무의 상당부분이 정부와 민간이 혼합된 체계로 진행되고 있다. 즉, 아동복지시설의 대부분이 민간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재정 지원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앙과 지방에 사업 전달 기구로서 사업별로 별도의 기구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동학대예방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조직 역시 민간이 정부 사업을 위탁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외 아동권리 보호 업무를 포함하여 독립된 아동보호 업무를 포괄하는 인권보호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 동 위원회는 2001년 5월 24일자 법률 제 6481호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에 따라 설치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위원회는 법령(입법 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

주9) 위원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9개 부처 장관과 아동단체장·학계전문가 15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었음.

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인권침해의 유형·판단 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다. 아동보호체계의 모니터링과 평가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은 없다. 다만, 2004년 7월에 구성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아동보호 정책에 대한 부분적인 평가 기능을 갖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4조에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 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동 위원회 기능의 하나로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정부 출연연구기관도 아동보호 모니터링 및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정부가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2차례의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고, 어린이의 권리실태와 과제를 평가할 수 있는 권리지표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밖에 아동백서 기초연구, 어린이 보호육성 계획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1989년에 설치된 한국청소년연구원의 경우에도 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청소년의 건전육성·보호·선도 등에 관한 평가 및 조사, 청소년관련 정책수립, 청소년 수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 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보호위원회(Save the Children) 등 민간단체가 UN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아동보호 정책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라.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와 민간협력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아동보호체계는 민간의 참여가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현재에도 대부분의 아동보호사업이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국복지재단, 이웃사랑회,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수양부모협회 등 민간단체가 학대아동보호기관, 가정위탁 지원기관, 입양지원기관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인권단체로는 인권사랑방이 대표적인 민간기구로 아동권리 및 아동보호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기구는 다른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UN에 제출하는 아동권리협약 민간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외 학대아동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보면 2003년 11월 대한의사협회와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 공동으로 추진한 전국 병원 내 학대아동보호팀 발대 및 32개 병원에 학대아동보호팀 등이 설치되었다. 이들 조직의 설치의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2004년 12월에는 총 43개 병원으로 확대·설치되었다. 또한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아동학대예방사업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홍보하고 관련 이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서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명예직인 아동위원을 두고 있다. 이는 지역 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를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위원 자격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복지 관련 문제에 대해 지속적 관심과 열의를 갖고,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읍, 면, 동에 1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내 아동위원은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발굴, 추천, 식당 등 아동급식장소, 급식방법 발굴, 요보호아

동의 발생 즉시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 협조하여 아동상담 및 지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상담 및 지원,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으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한다.

경상남도의 경우 아동위원단체를 사단법인으로 허가하고 읍·면·동별로 아동위원을 위촉하여 요보호아동, 학대아동의 보호와 일반아동의 건전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관련 민간 감시단체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두고 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199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환경을 고발·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하였다. 현재 290개 시민단체와 730여개 학교, 약 3만 명의 감시단원이 경찰청 및 학교와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다.

2. 아동보호체계의 기능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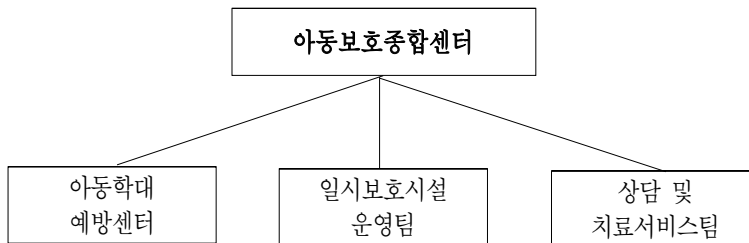
앞서 논의된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특성을 바탕으로 학대아동의 보호와 예방, 시설보호, 가정위탁지원 그리고 입양지원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가정위탁체계에서는 가정위탁 이외 가정유형의 보호방식인 소년소녀가정보호 및 그룹홈 지원을 함께 다루고 있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가. 학대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2000년 이전 학대아동보호사업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고 법적 근거나 정부의 지원은 미비하였다. 그러나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이후 빠른 속도로 중앙 및 지방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아동학대 24시간 신고전화를 운영하면서 아동학대 예방, 학대아동 보호 및 치료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00년 10월 전국 16개 시·도에 17개소의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001년 10월에는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2003년도 2개소 추가 설치)하여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4년부터는 소규모센터 19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및 학대예방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2004년 복권기금을 확보하여 아동학대예방부터 치료·보호 및 가정복귀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종합센터』를 전국 각 시·도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아동보호종합센터에는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치료실, 놀이실 등은 물론 보호시설까지 갖추어 아동보호를 위한 포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3-1] 지방의 학대아동보호 체계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아동학대 예방센터에는 총 4회선씩 아동학대 신고전화(국번 없이 1391)를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응급 조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센터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학대사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학대상황이 심각한 경우 아동을 일시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피학대아동 및 학대행위자(가족)에게 상담, 교육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대의 재발방지

를 도모한다. 행정기관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표 3-3참조).

〈표 3-3〉 아동학대예방 협력체계

구 분	협력 내용
복지부	- 아동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지정 승인, 인력 및 자격관리 -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보조금 집행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 -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신청에 대한 검토 및 지정
시도	-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신청에 대한 검토 및 지정 - 시·도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지도와 감독 -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한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지정신청 접수
시군구	- 시·군·구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지도 및 감독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피해아동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에 대한 협조 -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한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 빈곤으로 인한 아동학대 발생가정 및 부모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피해아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 등 - 학대아동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또는 의료급여 등 필요한 보호 및 양육 조치
사법경찰	-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사례개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112에 신고 된 아동학대사례를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의뢰 - 긴급전화 1391에 의해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 조사 시 동행 협조 - 아동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 응급조치를 요하는 아동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 기관에 조치 의뢰 - 아동학대예방센터로부터 의뢰받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조사 이후 현장조사서 사본 송부(관할 아동학대예방센터) 등

〈표 3-3〉 계속

구분	협력 내용
교육기관	- 아동학대사례 조기 발견, 아동학대예방센터 또는 경찰에 신고 - 피해아동과 부모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협조 - 피해아동의 학교생활, 가족력 등 관련자료 제공 - 피해아동에 대한 학교사회사업 서비스 제공 -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위한 지원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과과정의 포함 등 교육지원 · 초·중·고 교과과정 포함 및 교육을 통한 예방 및 홍보 · 부모교육프로그램 실시 - 부모로부터 분리된 피해아동의 보호 · 피학대아동의 입학, 전학 등의 신속한 조치와 편의도모 ·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관련 정보 비밀유지
의료기관	- 의료 행위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 · 의료체계 내에 소아과, 소아정신과, 외과, 내과, 산부인과, 의료사회사업가 등으로 구성된 학대아동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사법기관	- ‘아동이익의 최우선의 원칙’에 따른 사법적 소송 진행 - 피학대아동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에 대한 아동학대예방센터와의 긴밀한 협조 -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친권의 상실 또는 친권의 일시정지 선고, 후견인의 지정, 부모로부터의 아동의 격리, 학대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안내』, 2005.

한편, 관계자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2002년도에는 1391 신고전화 홍보 및 아동학대 인식 증진, 관계자 보수교육 시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실시, 공익광고 등의 실시 및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를 아동학대예방사업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홍보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관련 사업 예산은 2001년 9억 7,500만원에서

2004년에는 20억 7,4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2005년부터는 지방 센터 운영의 책임은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다. 한편, 아동학대 예방센터 설치 후(2000. 10월~2004. 12월) 아동학대 건수와 사례유형을 살펴보면 다음 <표 3-4>와 같다.

<표 3-4> 아동학대 건수와 유형

(단위: 건)

연 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입	유 기	중복학대	계
2000. 10 이후	180	30	23	205	26	-	464
2001	476	114	86	672	134	623	2,105
2002	254	184	65	814	212	949	2,478
2003	347	207	134	965	113	1,155	2,921
2004	364	350	177	1,367	125	1,508	3,891
계	1,621	885	485	4,023	610	4,235	11,859

자료: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각 연도.

2004년 실적을 보면 한 해 동안 1391 신고전화에는 총 7,488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4,880건(65.2%)이 아동학대 신고전화였고 나머지는 일반 상담전화였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중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개입하여 조사한 결과 3,891건이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었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중복학대를 제외하면 방임이 가장 많은 35.1%였고 신체학대 9.3%, 정서학대 9.0%, 성 학대 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81.4%는 부모이다.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파악한 결과, 부자가정 1,285건(33.0%), 일반가정 950건(24.4%), 모자가정 502건(12.9%)의 순으로, 모·부자가정에서 발생한 학대 건수가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45.9%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수의 학대가 모·부자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현재 관리 중인 사례 및 사후관리 사례 모두 개별상담이 가장 많이 제공되었는데,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등 상담서비스의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전문성이 필요한 놀이치료 및 미술치료, 심리검사, 가족치료, 기타치료 등 치료서비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나. 시설보호 및 자립지원

시설보호는 학대, 폭력, 착취 및 부적절한 양육으로 인해 외부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 중 가정보호가 적합하지 아니한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대리보호 제도이다. 만18세까지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아동직업훈련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중인 자, 학원에서 교육중인 20세 미만의 자, 질병, 장애 등을 이유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자는 연장 보호가 가능하다

아동복지시설에는 아동에 대하여 생계급여 및 교육보호 등 공공부조 이외에 부가급여(관리운영비)를 보호 아동수를 기준으로 직접경비, 간접경비, 공통경비를 통합 지원하여 집행의 자율성 부여하고 있다.^{주10)} 예산의 국고보조율은 서울의 경우 전체 예산의 50%,경우, 지방 70%이다. 관리운영비 권고기준은 <표 3-5>와 같다.

주10) ① 직접경비는 영아분유급식비, 육아특별간식비, 학용품비, 부교재와 교양도서비, 운동화, 이·미용비, 위생대, 생리대, 중·고생교통비, 교복비 등이고 ② 공통경비는 건물유지비, 화재보험료, 공공요금, 수용비, 의약품비,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도서구입비, 환경부담금 등이며 ③ 간접경비는 치료보호시설 및 직업훈련시설의 직업훈련 실습비와 재료비, 훈련복 등임.

〈표 3-5〉 아동복지시설의 관리운영비 권고 기준

(단위: 원, 인/월)

구분	양육시설		보호치료 시설	직업훈련 시설	자립지원 시설	일시보호 시설
	3세 미만	3세 이상				
운영비 기준	68,103	93,408	147,756	147,756	29,684	66,539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안내』, 2005.

또한 아동복지법 제9조(아동의 건강 및 안전)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및 재난대비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 중 호적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법률 제6148호)의 규정에 의거, 조속한 시일 내에 취적조치를 취하여 아동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령상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아동종합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2004년 현재 아동양육시설이 239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279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시설에서 생활하며 보호받고 있는 아동의 수는 19,014명이다. 시설보호 아동수는 과거와 비교하여 감소추세를 나타내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추세가 반전되어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6 참조).

〈표 3-6〉 연도별 아동복지시설수 및 보호아동수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시 설 수	269	273	274	272	271	269	274	277	279	279
보호인원	18,074	17,319	16,936	17,820	17,840	17,720	18,808	18,676	18,818	19,014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표 3-7〉 아동복지시설 유형별 현황(2004)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양육	직업 훈련	보호 치료	자립 지원	일시 보호	종합 시설	아동 복지관
시설수	279	239	4	6	13	11	2	1
보호인원	19,014	17,675	130	376	246	432	155	-

주: 종합시설은 일시보호시설과 아동상담소를 겸함.

자료: 보건복지부, 『2004년 보건복지통계연보』, 2005.

1997년도부터는 시설보호아동의 사회적응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군부 대입소, 자연탐방 등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시설보호에서 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숙사제도나 그룹홈 등 소규모 가정단위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여 보육사와 아동이 가정을 구성하여 보호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일반아동과 마찬가지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8년 사회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시설보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아동복지생활시설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국가인권법의 시행으로 시설보호아동에게 인권침해 진정권을 고지하고 진정함을 설치하는 등 시설보호아동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2년도에는 아동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규모시설의 인력기준과 설비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의 활성화와 미신고시설의 양성화를 적극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의 아동복지시설이 집단기숙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자립 지원의 규모나 수준은 매우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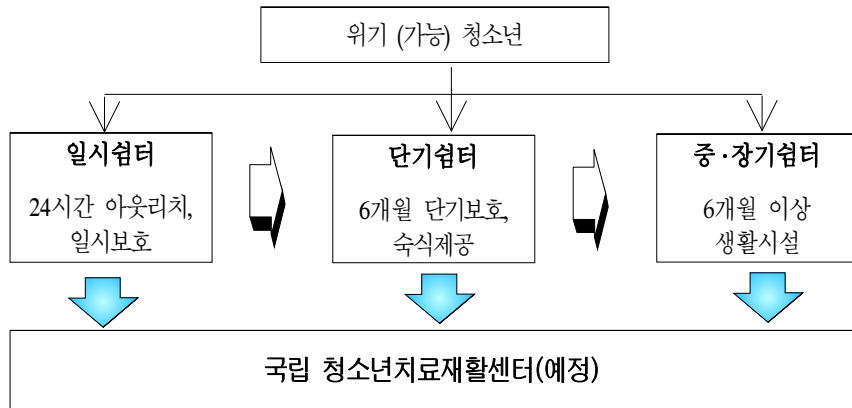
한편, 시설에서의 생활보호기간이 만료된 퇴소아동을 위하여 조기 자립유도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16개 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에서는 시설퇴소 대상 아동들에게 취업지도, 직업교육, 사회생활에 대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입소 대상은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중인 아동(우선),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 준비 중인 18세 이상 24세미만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24세미만인 자이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이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설 퇴소와 동시에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외에 자립준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호아동이 실질적 자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 최근 제정된(2005. 12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쉼터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의 생명·신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가출 위기에 처한 아동에 조기 개입, 전문적 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연계체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위기청소년의 특성 및 경로별, 보호기간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시쉼터(drop-in center), 단기쉼터, 중장기 쉼터로 구분하여 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청소년 쉼터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그룹홈, 성매매 피해 청소년지원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등 청소년 보호·복지 관련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연계 보호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미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한 사전 예방적 지원 및 위기청소년 조기 개입 시스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 판정을 위한 전문가 집단 구성 및 개입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치료, 재활 및 게임, 약물 중독, 심리적 개입 필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장기 치료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그림 3-2] 청소년 쉼터의 체계도



자료: 문화관광부, 2005.

다. 위탁가정지원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15세 미만 또는 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적으로 가정위탁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정위탁제도는 부모 이외의 의무부양자에 의한 대리양육가정과 부양의무자 이외의 친인척 위탁가정 및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위탁가정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을 살펴보면, 기본요건(친인척 및 일반인 공통)으로서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코올·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가정조사 및 이웃 확인에 근거한 위탁가정으로서의 적합여부 그리고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등이다. 다만,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에 의한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이수가 가능하다.

또한 일반인은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이웃 주민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것, 위탁받는 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해당), 위탁가정의 아동수가 위탁자 자신의 자녀를 포함하여 4인을 넘지 않을 것(18세 이상 친자녀는 자녀수에서 제외) 그리고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해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가정환경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 상황에서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위탁보호 아동에게는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현금급여가 제공된다.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로 보아 급여를 실시한다. 양육보조금은 2004년 기준으로 아동 1인당 월 70천원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위탁가정 발굴, 교육 및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정보호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국에 16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신설하였다. 이어서 2005년에는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18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2004년 7월부터는 중앙가정위탁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원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2004년 이후, 가정위탁단체에 대한 국고지원(2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 말 현재 9,577명의 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중 5,123명이 대리양육가정이고, 3,516명이 친인척 위탁이며 938명만이 일반위탁으로 일반위탁의 규모는 작다.주11)

그동안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위탁가정의 선정기준도 비교

주11) 대리 및 친인척 가정의 장기위탁보호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상당수의 위탁부모의 연령이 60세 이상이거나 소득수준이 50~100만원 수준이고, 교육수준은 무학이며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위탁가정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관계부처 합동, 2002).

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2005년부터는 선정기준을 입양아동 선정기준에 준하도록 한다. 재산이 충분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가정이 화목하고 위탁부모의 연령도 2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기준을 좀더 엄격하게 개선한 것이다.

가정위탁의 활성화와 함께 가정보호 중심의 보호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룹홈은 성인 보호자를 포함하여 보호아동 5명을 표준으로 하되 7인 이내로 구성하여 일반주택지 내에서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룹홈은 경제적 위기 또는 부부의 갈등이나 별거, 수감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자 또는 친·인척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아동의 단기보호, 기존의 소년소녀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 및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장기보호, 시설보호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정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설보호에 적합하지 않는 아동에게 치료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기보호 및 치료보호 그룹홈의 입주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3년 2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그룹홈이 시설의 종류에 추가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고지원 그룹홈 시설을 2004년 32개소에서 2005년에는 60개소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사업 시행초기에는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였으나 1999년 이후부터 주택임차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그룹홈 사업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2002년부터 그룹홈의 운영주체를 아동복지시설에 한정하고 있으나, 종전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던 경우는 그대로 유지토록 하고 있다.

〈표 3-8〉 가정위탁보호 아동 변화추이(2000~2004)

(단위: 명)

연 도 별	가정위탁현황								위탁아동유형			
	계		대리양육가정		위탁가정				계	소년 가정	일시 보호	시설 보호
					친인척		일반인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2004	7,169	10,198	3,450	5,196	3,057	4,133	662	869	10,198	6,787	3,308	103
2003	5,313	7,565	2,315	3,458	2,563	3,541	435	566	7,565	5,205	2,316	44
2002	3,985	5,577	1,249	1,796	2,453	3,387	283	394	5,577	4,257	1,296	24
2001	3,246	4,425	810	1,170	2,195	2,931	241	324	4,425	3,454	964	7
2000	1,307	1,772	27	39	1,166	1,584	114	149	1,772	1,401	371	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소년소녀가정제도는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기초생활급여외 학용품비, 이미용비 등 생활용품비 명목으로 월 7만원의 부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소년소녀가정 제도는 보호 대상인 아동이 스스로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모순을 가지므로 개선되어야 할 보호제도라고 권고를 받고 있다.^{주12)} 이러한 권고의 타당성 인식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등으로 2000년 이후 대리보호 및 친인척 위탁가정이 확대되면서 소년소녀가정 아동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주12)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1999년 제1차 및 2003년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권고 사항으로 포함되었음.

〈표 3-9〉 소년소녀가정 보호 아동 변화추이(1995~2004)

(단위: 명)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소년소녀가정 아동수	15,118	16,001	16,547	13,627	12,427	9,579	8,060	6,947	6,184	5,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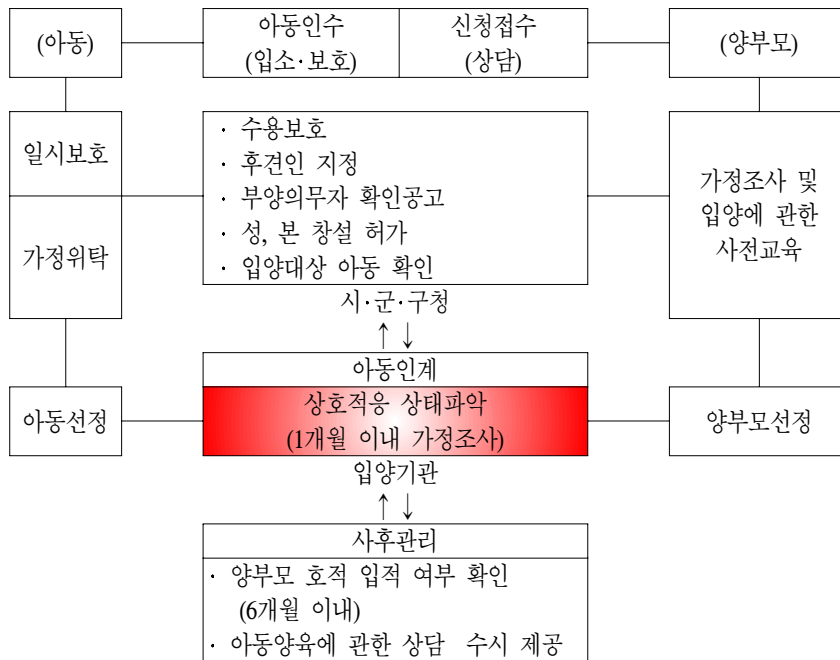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라. 입양지원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입양사업의 기본방향은 국내입양을 우선하며 국외입양을 차선택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책 강구를 통한 입양에 관한 국민인식 제고 및 대국민 홍보 강화에 두고 있다.

입양아동의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의 연령차이가 50세 미만이어야 하고(다만,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할 것),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일 것, 혼인중일 것 등이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입양기관, 아동상담소장 등이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양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그림 3-3 참조).

[그림 3-3] 국내입양 절차도



정부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으로서 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에게 중·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하고 있다.^{주13)} 또한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하여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하며, 장애아를 입양한 가정이나 입양당시 아동이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에 대하여 양육보조금으로 1인당 월 52만 5천원을 지원하고 이외에 의료비료 1인당 연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1997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지원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

주13) 양부모는 입양기관의 장, 시·군·구청장, 아동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양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학교에 이를 제출하면 됨.

법이 2003년 2월 9일 개정됨으로써 2006년부터는 모든 입양아동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입양기관에도 상담원 1인의 인건비 및 사무용품비를 지원하였으나, 동 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정부는 2003년에 입양가족단체인 한국입양홍보회에 대하여 사단법인 허가를 하였고 수시로 의견을 청취하여 입양가족의 욕구에 맞는 입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입양가족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유교전통이 잔재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혈연 중심의 자녀관이 고착되어 있어 국내입양보다 국외입양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 입양아 3,531명 중 2,287명이 국외입양이고 1,244명이 국내입양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입양아 2,258명 중 장애아동이 705명으로 장애아동의 비중이 높지만, 장애아동 국내입양은 2000년 14명, 2001년 16명, 2002년 20명, 2003년 7명, 2004년 16명에 불과하다.

〈표 3-10〉 연도별 국내입양 실적

(단위 : 명)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국내입양	1,025	1,229	1,412	1,426	1,726	1,686	1,770	1,694	1,564	1,641
국외입양	2180	2,080	2,057	2,249	2,409	2,360	2,436	2,365	2,287	2,258
전체	3205	3,309	3,469	3,675	4,135	4,046	4,206	4,059	3,851	3,899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및 내부자료.

제3절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시사점

2004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체계에서 이루어지는 대상아동의 보호 방법을 보면 시설보호가 55.3%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가정위탁이 27.8%, 소년소녀가정 지원이 15.8% 등을 차지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친인척 위탁의 실시로 과거에 비하여 가정위탁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소년소녀가정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탈시설화의 논의과정 중에 시설보호는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다.^{주14)} 그러나 그룹홈의 비율은 겨우 1%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다.

아울러 이들 대리보호 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결연사업과 보육료 면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연서비스는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으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통해 불우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한다는 목적에서 실시된 것으로 1985년부터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다. 결연은 결연자나 아동 모두에게 의미 있는 서비스이지만 아동에게 미치는 물질적, 특히 정서적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1〉 아동 보호방법별 아동 비율

(단위: 명,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전체	구성비	전체	구성비	전체	구성비	전체	구성비
대리보호아동	31,485	100.0	31,392	100.0	32,759	100.0	35,025	100.0
시설보호	18,808	59.7	18,676	59.5	18,818	57.4	19,014	54.3
가정위탁	4,425	14.1	5,577	17.8	7,565	23.1	10,198	29.1
그룹홈	192	0.6	192	0.6	192	0.6	369	1.1
소년소녀가정	8,060	25.6	6,947	22.1	6,184	18.9	5,444	15.5

주: 시설보호에는 양육시설(2001년 17,437명, 2002년 17,342명) 이외의 아동복지시설이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주14)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보호시설 생활아동 수는 증가추세이기는 하나 아동복지법 제정 초기와 비교하여 감소하였음을 의미함.

이밖에 소년소녀 가정 아동에게는 결연과는 별도로 후견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후견인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 문제에 대한 열의가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아동의 고민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로 아동위원, 종교인, 지역여성지도자, 공무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후견인은 결연기관의 직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소년소녀가정에 지급되는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후원금 사용에 따른 문제 최소화하고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서적 보호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3-12〉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 결연사업 실적

(단위: 개소, 명)

구분	대상자수	결연자수	결연율	후원금점수액	후원자
양육시설	22,903	20,072	87.6	3,946,678	27,070
소년소녀가정	5,475 (3,591)	5,331 (3,540)	97.4 (98.6)	10,715,566	7,474
가정위탁가정	9,404 (6,618)	8,651 (6,142)	92.0 (92.8)	3,787,459	12,414
모자저소득 가정	62,318	15,138	24.3	3,215,902	16,915

주: ()안은 가구수임

자료: 한국복지재단, 『사업보고』, 2003.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아동에게는 보육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그런데 시설보호아동의 무상 보육서비스 제공은 취학 전 2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 및 타 공공부조 대상 아동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같이 공공부조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부가급여의 성격에 머물고 있고, 경제적 급여 이외의 서비스, 아동의 다양한 측면의 삶의 질이나 아동의 참여 및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등 시민적 권리 등의 보장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를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도출을 대신하여 5가지 쟁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전체적으로 시설보호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아직 다수의 요보호아동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아동의 원가정이 가정으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보호 장소가 요구될 경우, 가능한 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여 아동과 가정에 제한적인 요소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국제아동권리협약에 나타난 아동의 안정적 가정·가족생활을 할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시설보호 중심의 대리보호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다.

둘째, 2004년도 통계의 경우 학대행위자의 81.4%는 부모 등 주 양육자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학대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높다. 그러나 학대행위자가 의무적으로 상담, 교육 등에 참여토록 하는 법적 강제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고, 또한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체계가 미흡하다. 아동학대행위자가 의무적으로 상담, 교육 등 전문서비스를 받도록 아동복지법령의 정비도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 아동보호 사업은 중앙·시도 및 시·군·구로 연결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대부분 개별 보호사업마다 별도의 전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복지정책은 중앙의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수립하면, 시·도를 거쳐 시·군·구와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한다. 아동보호 사업 가운데 아동학대, 가정위탁 등의 경우 개별 사업마다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동학대사업의 경우, 중앙에 1개소, 지방에 거점센터 19개소, 그리고 소규모센터 19개소 설치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학대아동 보호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위탁사업의 경우에도 중앙1개소, 지방에 17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또 입양기관 23개소가 입양

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시설아동의 퇴소 후 자립지원을 위해 한국아동복지연합회에서 자립지원센터 1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보호정책이 별도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됨으로써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체계가 가동되지 못하면서 보호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유사하게 아동정책이 복지, 보호, 교육, 문화, 체육 등 범 부처에서 산발적·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의 연계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우려된다. 이러한 업무조정과 연계를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는 바, 동 기구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아동보호체계의 특성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재원조달과 운영 및 서비스전달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인데, 일부 보호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재정도 민간에서 확보하고, 운영과 전달의 책임까지 민간이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운영주체는 사회복지 법인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예방센터나 가정위탁지원센터도 일부 직영하는 한 두 곳을 제외하면 모두 민간 법인체에 위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결연사업이나, 미아찾아주기, 입양기관 등도 모두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서비스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재원조달 및 운영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편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모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서비스 재정 분담을 비롯하여 사업 추진의 상당부분이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측된다.

〈표 3-13〉 아동복지서비스별 국고보조율

(단위: 개소, 명)

구분	2004년 까지		2005년 이후
	서울	지방	
시설아동보호 및 운영비	50	70	지방 이양
소년소녀가정지원	50	80	지방 이양
위탁가정 지원	50	80	지방 이양
그룹홈 지원	40	40	-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40	70	-
지방아동보호기관 운영	50	50	지방 이양
결연기관 지원	인건비 지원		지방 이양
입양기관 지원	인건비 지원		지방 이양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안내』, 2005.

보건복지부 소관사업 중 그룹홈 지원과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만이 국고지원사업으로 남고 이외 사업이 모두 지방으로 이양된 것이다. 과거에도 지역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담비율의 차이가 있고, 서비스에 따라서도 서울과 그 이외 지역을 차이를 두는 경우와 두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일정하지 않거나,^{주15)} 다른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이현주 외, 2003).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이양으로 지역간의 격차가 더욱 더 커질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상에서 논의된 우리나라 아동보호정책 및 체계의 내용적 특성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상으로는 보편주의적 아동복지를 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선별주의적 복지서비스의 범주에 머물고 있으며 서비스 수준도 상당히 취약하다. 아울러 전문적 보호서비스의 제공과 서비스의 다각화를 모색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보호, 위탁보호 등 단순보호의 형태가 지배적인 실정이다. 단순보호

주15)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비, 그룹홈 운영비 등은 지역 차이가 없음.

이외에 결연, 후원 등을 통하여 물질적 지원 이외에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로 그 효과는 크지 않다. 학대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보호와 더불어 치료 및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서비스에서도 대리보호 또는 격리보호의 서비스 전달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서비스는 미흡한 실정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현물급여가 보호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은 월 7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있다. 또한 입양아동 학비 및 장애입양아동 양육비 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또한 긍정적이지 못하다. 특히, 학비지원의 경우, 비밀입양을 선호하는 입양가족과 장애아동의 입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입양 풍토 속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아동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장애아동양육비 및 의료비 지원은 확대되었으나 장애아동 입양아 수가 년 최대 20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아울러 지방으로 이양된 아동보호 사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우려되는 부문이 많다. 따라서 지방 이양의 초기 과정에는 개별 사업별 모니터링 및 평가를 면밀하게 실시하여 지방재정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가 아동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4장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사례연구

제1절 미국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및 주요 쟁점

제2장에서 언급되었듯이, 아동보호체계는 아동복지의 일환으로, 더 넓게는 사회복지정책의 틀 안에 위치한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 새삼 주목하는 것은 한 사회의 아동보호체계를 사례 연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첫째는 한 사회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이해는 그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이해에 토대를 두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아동보호체계가 갖는 성격과 특성은 미국의 복지정책이 나타내는 기본적인 성격과 접근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유주의적 유형의 복지국가를 대표하는 미국의 복지정책은 잔여주의적이고 공공서비스보다 시장이나 가족의 서비스에 의존하는 접근방식을 취한다. 그 결과 미국의 아동보호체계 역시 잔여주의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방적 접근보다는 치료적 접근에 치우쳐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측면은, 한 사회의 사회복지정책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보호체계와 빈곤정책은 행정적인 측면에서나 영향평가의 측면에서나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1996년 개인책임및근로기회법(PRWORA,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이 통과되면서 미국의 복지정책은 크게 변화하였고, 결과적으로 아동보호체계도 복지개혁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1935년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으로 제도화된 미국의 복지 정책은 노인, 장애인, 피부양자녀를 둔 빈곤 모자가정의 여성 등을 공공부조의 수급권자로 하는 선별적이면서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대다수의 모자가정이 남편과의 사별로 인해 형성되었고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모자가정의 여성과 자녀들은 보호를 받을만한 대상으로 간주되었다(구인회, 2000).

이러한 미국의 사회복지제도의 기본체계는 1972년의 사회보장법 수정법안에 의해 대폭 수정되었다. 수정법안에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인 보충연금급여(Supplementary Security Income)가 마련되었고, 기존의 공공부조를 대체하게 되었다. 보충연금급여는 연방정부가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이 프로그램의 수급권자들은 전국적으로 단일한 체계의 현금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정익중, 2004). 수정법안 이전에 실시되었던 공공부조 프로그램 중 빈곤한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개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모자가정에 대한 급여인 피부양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은 연방정부에 의해 수급권이 보장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이지만 급여수준이 주(州)정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보충연금급여와는 달리 급여수준의 편차가 크다.

1996년의 복지제도 개혁은 빈곤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 개혁의 특성은 근로와 연계된 복지를 강조하고 복지수급의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수급권을 제한한다는 데 있다. 사별로 인한 빈곤모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부조의 기본 입장과 다르게 이혼이나 미혼모 출산으로 인해 형성된 빈곤 모자가정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약화되었던 것이다. 미국의 복지개혁은 복지수급자의 수를 감소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실제 빈곤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개인책임및근로기회법의 통과로 인해 복지수급사례는 감소한 반면,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빈곤모자가정의 자녀들이 사회안전망 없이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복지제도의 변화 환경을 고려하면서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의 측면들을 고찰하고, 미국의 사례가 우리나라 아동보호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아동보호체계의 특성

미국 아동보호체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호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을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UN 국가보고서, 2005). 여기에는 학대나 방임, 착취와 폭력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 입양가정이 필요한 아동, 소년범죄를 저질러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중에서도 아동보호체계의 주요 대상은 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보호아동이며, 이 때 학대와 방임은 “사망,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피해, 성적 학대와 착취, 심각한 피해 여부가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부모 혹은 보호자의 행위나 또는 이를 막지 못하는 행위에 가져오는 행위(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section 111)”로 정의된다.

미국의 전국아동학대및방임정보센터(National Clearing House on Child Abuse and Neglect Information)^{주16)}에 따르면, 2003년 미국 전역에서 아동보호 기관에 신고 되거나 의뢰된 아동사례는 약 2.9백만 건이며, 이 중 약 1.9백만 건이(약 66%) 조사에 착수되었고, 조사된 건수의 약 906,000건(30%)이 아동학대 및 방임 사례로 판정되었다. 신고 된 사례의 약 57%는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교사, 법률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주16) <http://nccanch.acf.hhs.gov/pubs/factsheets/canstats.cfm>

43%는 친구, 이웃, 친족 등에 의해서 신고 되었다.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의 약 60%는 방임의 경우로 가장 많았으며, 19%는 신체적 학대, 10%는 성적학대, 5%는 정서적 학대이며, 나머지 17%는 ‘기타’유형에 속하는 학대로 보고되었다. 연령별 학대피해율은 3세 미만이 가장 높아서, 동일연령 아동 천 명당 16.4건의 학대피해율을 나타내었다. 성별로는 여아의 피해율이 남아보다 다소 높았으며, 인종별로는 피해율이 차이가 있어서 백인의 경우 가장 낮은 피해율을(인구 천 명당 11.0명) 보였고, 흑인(20.4명), 아메리칸 인디언(21.3명) 등으로 보고되었다.

미국의 아동학대건 수는 1990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94년 가장 높은 1,029,118명을 기록한 후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900,000명을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주17)} 아동인구 천 명당 10명을 넘어서는 높은 아동학대 통계치는 미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 아동보호체계의 효과를 의심하게 하는 근거인 동시에 아동보호체계의 개혁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Barter, 2001; Steib & Blome, 2003).

특히, 보호아동 인구 중 소수인종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 소수인종 가족과 아동보호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어왔다.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는 이러한 주장을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아동보호 관련법을 제·개정하면서 예방 및 사후대처 체계를 제도화시켜왔다. 다음에서는 미국 내 아동보호 관련법의 변화를 통해 아동보호체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17) 미국 아동 및 청소년 복지 현황(Trends in the Well-Being of America's Children and Youth). 미국 보건복지서비스부 2000년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of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0). <http://aspe.hhs.gov/hsp/00trends/index.htm>

가. 아동보호관련 법적·제도적 환경

아동보호의 법률적 기반은 아동학대의 범위와 유형을 규정지음으로써 아동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호와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고, 아동보호 체계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국에서는 실질적인 아동보호서비스가 주(州)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주(州)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과 책임을 연방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주(州)정부가 임의로 서비스를 감축하지 못하도록 연방정부가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토대가 된다.

또한 아동보호의 법률적 기반은 적절한 보호 서비스를 받지 못한 아동이나 가족이 정부나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과 행정처리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미국 내 아동보호체계의 개선은 행정부에 대한 집단소송의 방법을 통해서도 이루어져 왔으며,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이나 아동권리프로젝트(Children's Right Project) 등의 기관은 이러한 활동의 중심기관으로 활약해왔다(Cohen, 2005)

미국의 주요 관련법은 미국의 아동보호체계가 토대로 삼는 복지철학과 관점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관련법의 변천은 미국 내 아동보호체계의 우선목표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여기서는 아동학대와 입양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미국 내 아동보호체계의 변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법률은 부모가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자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UN 국가보고서, 2005). 또한 아동에게 있어서 최선의 양육 장소는 가정이며 부모가 그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부모가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제공하지 못하여 아동의 권익이 위협받을 때 국가가 아동을 보호할 권위와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미

국은 아동보호체계에 권위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접근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동에 대한 일차적 책임과 양육에 대한 권리는 사회가 아니라 부모(가족)가 가지고 있으며, 사회는 오직 부모가 이러한 책임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이러한 철학은 아동발달 영역에서의 학문적 성과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아동의 발달적 측면에서 부모와 가정이라는 환경의 영향, 특히 이러한 환경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들은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의 설계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쳤다(Barter, 2001).

따라서 연방법이나 주법에서든 미국의 모든 아동보호 서비스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안전성(safety)과 영구성(permanency)이다. 즉, 아동이 양육되는 환경은 그것이 친부모가 있는 가정환경이든, 그 외의 다른 양육환경이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고, 보호기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향후 미래를 예측한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것이어야 한다.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의 조사 및 사정, 가정위탁 보호, 원래 가정으로의 복귀, 입양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고 영속적인 보호환경 제공 등의 아동보호 서비스가 연속선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이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와 복지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1) 아동학대예방및조치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of 1974)

아동보호에 관련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법안은 1973년에 통과된 아동학대예방및조치법이다. 이 법은 아동보호와 관련된 연방정부의 역할,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지침, 아동보호에 관련된 정책 기반조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의 아동보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아동학대예방및조치법에 의거하여 연방정부는 아동보호에 관련된 예방, 조사, 사정, 기소, 및 조치 등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주(州)정부

에 재정적 자금을 지원하며, 공공기관이나 사설기관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주(州)정부가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신고, 조사, 법정 기록 등과 같은 정보를 통해 연방정부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일반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예방및조치법은 매 5년마다 국회에서 재승인의 과정(re-authorization process)을 거치는데, 이때마다 내용이 다소 개정되거나 새로운 관련법과 연계되었다. 예를 들어, 1990년에는 홈리스가정(homeless families)의 아동들에 대한 보호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가정폭력과 입양, 가족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2002년 재개정이 이루어졌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개정은 2003년에 있었으며 아동가정안전법(Keeping Children and Families Safe Act)이라는 명칭으로 개정되었다. 아동가정안전법은 아동학대 및 예방에 대한 연구와 조사, 훈련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이나 부모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연장아동에 대한 입양지원, 유기된 신생아 중 약물중독 및 HIV에 감염된 신생아에 대한 우선적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에도 아동보호와 관련된 법들이 다수 있다. 1998년에 통과된 아동성폭력예방법(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Predators Act of 1998)은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이나 성매매 등 성문제와 관련한 아동보호를 다루고 있다. 이 법은 성과 관련된 활동에 이용하기 위해 16세 미만의 아동의 신상정보를 수집하거나 교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아동포르노그래피를 금지하며, 성매매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및방임법원강화법(Strengthening Abuse and Neglect Courts Act of 2000)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격리하여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성장·발달환경을 시

급하게 제공하기 위한 행정적 효율성과 법정에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로 2000년에 마련되었다.

2) 입양지원및아동복지법(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of 1980)

1980년에 통과된 입양지원및아동복지법은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의 형태를 크게 변화시킨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미국의 연방정부는 아동이 보호의 차원에서 원가정을 떠나 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 맡겨지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州)정부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주(州)정부로 하여금 아동을 원래가정이나 친척집에서 보호받게 하기 보다는 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가정 밖에서의 보호(out-of-home service)기간을 장기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가정에 남아있을 수 있는 아동이 대리보호로 배치되었고, 대리보호를 받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면서 전문화된 사례관리가 부족하게 되었다. 또한 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친부모가 자녀를 만나보거나 가정이 다시 합쳐질 수 있게 하는 가정보존(family preservation) 서비스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비판받게 됨에 따라 연방정부는 입양지원및아동복지법을 통해 아동이 원래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보호받는 것을 최소화하고, 일단 아동이 원가정이 아닌 곳에 일시적으로 보호받게 되었을 때, 자신의 가정으로 혹은 입양을 통해 빨리 영구적인 가정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아동이 원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보호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되었던 제4장-B(Title IV-B)부분은 1992년 원가정보존법(Family Preservation Act: FPA)으로 확대 개정되었다. 원가정보존법에서는 아동보호의 과정에서 격리보호를 최소화함으로써 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고, 가족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주

(州)정부에 대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으로 인해 사례를 위탁가정에 배치하는 대신,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가족상담이나 치료, 위기관리 등의 임상적 서비스가 개발 활용되었다.

입양지원및아동복지법과 원가정보존법은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아동보호체계가 아동중심이 아니라 생물학적 부모와 가족중심의 접근에 토대하였던 것을 반영한다(Mitchell, et al., 2005). 이 법에서는 부모의 권리 보장, 가정위탁 예방(placement prevention), 가족해체 예방 등을 강조하면서 이후 1997년 입양및가족안전법이 제정될 때까지 가족중심이라는 원칙을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에서 강화시켰다. 그러나 가정보존이라는 법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보호아동들은 원가정으로 복귀되지도 못하고, 입양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위탁보호에 장기간 머무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3) 입양및가족안전법(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

입양지원및아동복지법과 원가정보존법의 효과에 대한 회의와 파생된 문제점들에 비판이 거세지면서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다. 1996년 클린턴 대통령은 “입양 2002”라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2002년까지 입양아의 수를 두 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이는 입양및가족안전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Hollingsworth, 2000). 이 법은 입양지원및아동복지법을 개정, 대체하는 법으로서 주(州)정부가 아동의 입양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강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 법에서는 아동이 일단 정부의 보호체계에 들어오게 되면 위탁가정이나 시설보호 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시키고, 원래의 가정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받거나,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경우에 즉각적으로 입양가정을 찾아 입양되도록 조치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동시적 사례계획(concurrent planning)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가정보존을 위한 조치와 입양을 위한 조치를 동시에 계획할 수 있도록 유

도하였다. 이는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즉각적으로 입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위탁에서 보호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입양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동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원가정의 보존이 아동보호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추구되었기 때문에, 부모의 친권 박탈이 지양되었고 따라서 원래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아동들이 위탁가정을 전전하고 보호기간이 장기화되는 폐단이 초래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양및가족안전법에서는 부모의 친권이 박탈당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부모의 친권을 박탈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이 신속한 입양을 통해 영속적인 가정환경에서 양육되도록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입양부모에게 5,000~6,000불에 해당하는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주 정부에 대해서는 입양건수를 증가시킬수록 연방정부로부터의 보다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4) 다민족배치법(Multiethnic Placement Act of 1994)과 다민족입양법(Interethnic Adoption Provisions of 1996)

입양촉진이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에서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면서 입양과정을 단축시키고 입양건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노력이 강구되는 가운데 다민족배치법과 다민족입양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들이 제정되기 전,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에서는 인종 및 민족배경을 고려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관습으로 중시되어왔다(Mitchell et al., 2005). 즉, 백인아동은 백인 위탁가정이나 백인 입양가정으로 연결시키고, 흑인아동은 흑인 위탁가정이나 입양가정으로 연결시키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호를 제공받을 아동들 가운데 흑인을 비롯한 소수인종의 비율이 증가하고 이들이 가정위탁에서 보호되는 기간이 백인에 비해 길어지면서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소수인종의 아동들은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가능성과 입양의 가능성 측면에서 모두 불리

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조치의 결정에 있어 서로 다른 인종 간 가정위탁과 입양을 금지하는 법적 제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민족 배치법이 제정되고, 다시 다민족입양법으로 강화되었다. 동법들을 통해 인종 간, 민족 간 가정위탁 및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예를 들어, 소수인종 중 가정위탁 및 입양대상 가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집도록 유도하는 등)이 강구되었다.

5) 개인책임및근로기회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1996)

아동보호체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은 아니지만 미국의 복지정책의 근간을 규정하는 법으로서 1996년 「개인책임및근로기회법」이 제정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법은 1930년대 이후로 지속되어온 미국의 복지정책의 틀을 크게 변화시킨 것으로서 사회복지 개혁의 선봉이 되었으며,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법이다. 동법에 의해서 빈곤가족에게 제공되던 복지급여가 피부양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에서 빈곤가족한시부조(Temporary Assistant to Needy Families, TANF)로 전환되었고, 복지급여의 성격과 지급조건도 크게 달라졌다.

자격이 되는 빈곤가족에게 보장되는 복지급여의 수급권리가 폐지되어 수급자격이 되더라도 복지급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복지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근로의무가 강화되었다. 복지급여의 지급기간에 대한 제한도 강화되어 생애기간 중 복지수급기간이 5년 이상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며, 최초 수급으로부터 2년 이내로 취업하여 근로하는 규정이 새롭게 부가되었다. 특히, 영유아기의 자녀를 가진 빈곤 여성가장에게는 근로의무를 면제시키던 규정이 폐지되어 영유아기의 자녀가 있더라도 의무적으로 취업하거나 훈련을 받도록 강제하였다.

이상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수급의 조건이 강화되고 복지수급기간이 제한되어 빈곤가족이 복지수급을 받는 것이 훨씬 어려워졌으며, 복지정책의 구체적인 운영과 시책마련이 연방정부에서 주(州)정부로 이양되어 주(州)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결국 빈곤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어머니의 취업과 더불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과 발달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아동보호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나. 아동보호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

일반적인 사회복지 정책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는 연방정부와 주(州)정부의 이중 구조로 되어있다. 아동보호의 일차적인 책임과 구체적인 정책시행은 개별 주(州)정부에 주어지고, 연방정부는 법적 최저 기준 마련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며 개별 제도나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주(州)정부의 행정적, 법적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에서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주무 연방부서는 보건복지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내에 있는 아동가족관(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산하 아동청소년가족실(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내의 아동국(Children's Bureau)이다.^{주18)} 아동가족관 산하에는 아동청소년가족실 외에도 10개의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s)가 있어서 아동보호뿐 아니라 가족 및 아동복지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보호의 주무부서인 아동국은 각 주(州)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지원 및 프로그램들을 관할한다. 그리고 각 주(州)정부에는 아동보

주18) 미국 보건복지서비스 내 아동보호체계 관련부서의 조직체계는 우리나라 정부 부서의 조직체계와는 상이하나 편의상 관·실·국·과/사무소의 순으로 명명하였음.

호 서비스 담당부서(Child Protective Services)를 두고 있으며, 이 부서에서 아동학대와 보호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아동국은 5개의 과(Division)와 1개의 사무소(Office)로 구성되어있으며, 각각의 명칭은 정책과(Division of Policy), 연구혁신과(Division of Data, Research & Innovation), 주정부체계관련과(Division of State Systems), 아동복지강화과(Division of Child Welfare Capacity Building), 프로그램시행과(Division of Program Implementation)와 아동학대및방임사무소(Office of Child Abuse and Neglect) 등이다.

이중 아동학대및방임사무소는 아동학대예방및조치법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및 보호에 관한 연구, 자료수집, 평가 등을 담당하도록 설치되었다. 이 부서에서는 아동보호체계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아동보호에 관한 모든 정보 수집하고 있으며, 특히 보호받고 있는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인적 사항을 주(州)정부에서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개별 주(州)정부의 아동보호 자료를 포괄하여 연방정부에서 단일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실제 전국적 규모의 자료 수집은 1995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해졌으며, 이 자료에 기초한 전국 아동보호 보고서는 1996년 처음 발간되었다.

아동청소년가족실에는 아동국뿐만 아니라 가출청소년, 홈리스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가족청소년국(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 및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과 건강한 발달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헤드스타트국(Head Start Bureau)과 저소득층의 보육문제를 다루는 아동보육국(Child Care Bureau)을 설치하고 있어 각 국과의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들 네 부서간의 협력체계는 아동청소년가족실장(Assistant Secretary)의 책임 하에 조정 운영된다.

주(州)정부의 경우 일리노이주(State of Illinois)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주19)}. 일리노이주에서는 주정부의 부처조직 중 아동가

주19) <http://www.state.il.us/dcf/index.shtml> 참조

족서비스부(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에서 아동보호 업무와 보육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 부서는 총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동보호, 가정위탁 및 시설보호를 포함한 보호조치, 현장 기관 관리와 모니터링,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공, 임상서비스 제공, 후견 및 아동권리지지집단 관리, 기획 및 성과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 분담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1] 미국 일리노이주 아동가족서비스부의 조직 및 업무분장체계



아동보호 업무는 아동가족서비스부에서 총괄하여 시행하되, 구체적인 서비스는 민간기관들을(private child welfare agency) 통해 제공된다. 따라서 아동보호체계의 최종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는 민간기관이 되며, 민간기관의 운영을 감독하고 이들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공공부문 아동보호 업무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리노이주의 아동가족서비스부서에는 직접 아동학대 신고 핫라인(Child Abuse Hotline)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위탁 핫라인, 입양 핫라인, 청소년 핫라인 등 여러 목적의 핫라인을 개설하여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서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보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다. 아동보호체계의 모니터링과 평가

연방정부의 아동국(Children's Bureau)에서는 각 주(州)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보호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담당한다.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아동보호체계를 모니터링 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IV-E 평가”(IV-E Review)라고 불리는 평가로 주(州)정부의 아동보호사례 중 연방정부의 사회보장법 제4장-E (Title IV-E of Social Security Act) 기금을 사용한 사례에 대한 조사평가이다. 연방정부의 평가단은 특히 두 가지 측면에 관하여 법정기록을 포함한 각종 서류들을 상세히 조사한다. 첫 번째는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하여 사례관리자가 충분히 노력을 하였는가 하는 점과 두 번째는 아동의 가정 외 배치가 아동의 복지를 고려할 때 최선의 결정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연방정부가 아동보호체계를 모니터링 하는 두 번째 방식은 아동가족서비스평가이다(Child and Family Services Reviews: CFSR)(UN 국가보고서, 2005 참조). 아동가족서비스평가(CFSR)는 입양및가족안전법에 근거하여 제도화된 것으로서, 각 주(州)정부와 아동보호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아동들의 경험과 업무실적을 취합, 평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동 평가를 위하여 아동국에서는 모니터링 팀을 구성하여 각 주(州)정부와 실제 아동보호기관들이 연방정부의 최저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포괄적이고 엄격한 조사를 실시한다.

아동가족서비스평가조사는 통계자료, 주(州)정부가 준비한 보고서, 현장조사(on-site reviews) 그리고 이해관계자 면접 (stakeholder interviews)을 통해 다각적으로 이루어진다. 현장조사에서는 연방정부파견 평가자와 주(州)정부파견 평가자가 한 팀을 이루어 아동보호기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통한 평가 및 면접평가를 실시한다. 아동보호기관의 사회복지사, 판사나 보호경찰, 아동, 부모, 가정위탁부모 등이 면접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해관계자면접에서는 주(州)정부의 아동보호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련자나 위탁부모 등을 면접 조사한다.

동 조사에서는 6개영역, 즉, ① 원가정으로 복귀할 때까지의 기간, ② 입양될 때까지의 기간, ③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 조치된 아동이 다시 가정위탁을 받게 되는 확률, ④ 아동학대 재발률, ⑤ 위탁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 발생률, 그리고 ⑥ 가정위탁의 안정성 등에서 주(州)정부와 정책의 결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비추어 각 주(州)의 아동보호체계가 어떠한 영역에서 미흡한지 발견하고, 이러한 영역에 대하여 2년 이내에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개선책(Program Improvement Plan)을 제출하게 한다. 만약 주(州)정부가 스스로 준비한 개선책을 2년 안에 달성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삭감된다.

또한 동 모니터링 팀에서는 단지 평가결과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州)정부와 관련기관이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지원능력을 향상시켜 수준 높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아동학대 예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미국 내 아동보호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은 국회에 보고하는 연례보고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보고서에는 각 주(州)정부와

지방정부의 아동학대 정책 관련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조치 결과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가 수록된다. 특히, 아동학대와 방임의 반복발생과 위탁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라.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와 민간협력

현재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에서 학문적, 정책적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동의 문제가 개별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살고 있는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아동보호의 관점을 개별아동과 가족을 넘어 사회사회로 확대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Barter, 2001).

미국의 아동보호 및 사회복지 역사에서 정부, 학계, 민간기관, NGO 등의 파트너십은 쉽게 발견된다. 한편으로 이러한 파트너십은 민간, 정부, 학계의 공고한 협력관계를 반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역할과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에 복지서비스 제공책임을 이양하는 미국의 복지정책의 기본전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정부는 자원과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만을 제공하고 실제 서비스의 제공 책임은 민간기관에 맡겨지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과 전통으로 인해, 다양한 민간기관과 옹호집단, 종교단체들이 아동보호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달하여왔다.

미국이 제출한 UN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아동보호체계가 따르는 큰 틀은 공공보건에서 활용되는 접근법과 유사하다. 첫째, 문제의 정의와 모니터링, 둘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확인, 셋째, 예방 전략의 개발과 검증, 넷째, 예방 원칙과 추진 전략의 광범위한 채택을 단계별로 시행한다. 이 과정에서 질병관리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다양한 연구기관, 지역사회 기관, 종교단체, 기업 및 국제기구(UN, UNCEF 등) 등과 공조하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미국 내 다섯 개 주에서는 아동학대 감독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받았는데, 이 프로젝트는 지역 종교단체, NGO들, 지역 대학, 비영리 이익단체 등 서로 다른 유형의 조직들을 아동을 학대와 착취,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유용한 대안적 접근방법을 개발하여 서로 장단점을 비교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NGO와 관련 학회들에는 효율적인 훈육을 위한 센터(The Center for Effective Discipline), 학교체벌금지를 위한 전국연합(National Coalition to Abolish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전국사회복지사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전국학교상담가연합(the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미국아동복지리그(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등이 있다.

특히, 안전한 학교와 건강한 학생(Safe Schools and Healthy Students) 운동은 미국 내 교육부, 사법부, 보건서비스부의 협력체계 하에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로서 학교 및 지역사회 내 폭력과 약물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 프로젝트는 교육기관, 정신보건, 법률, 청소년 관련 단체들의 협력 하에 진행되며,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

2. 아동보호체계의 기능과 역할

미국의 아동보호는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한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의 조사 및 사정, 가정위탁 보호, 원래 가정으로의 복귀, 대안적 가정 제공 등의 아동보호 서비스를 연속선상에서 다루고 있다. 학대사례가 조사되는 동안 가정위탁 보호가 단기간 제공되고, 사정 결과에 따라 원래 가정으로 되돌아가거나,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에 입양 결정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학대아동 보호, 시설보호, 가정위탁 보호, 입양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아동학대 예방, 시설보호 및

자립 지원, 가정위탁, 입양에 관련된 체계를 구분하여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학대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미국의 학대아동 보호체계는 주(州)정부의 아동보호서비스 관련부서(Child Protection Services)와 이 부서로부터 위탁을 받은 지역사회 민간기관(communitary agencies)들의 협력체제로 이루어진다. 주(州)정부의 공공기관은 주로 학대에 관련된 신고접수, 조사 및 사정, 보호조치의 결정 등을 담당하고, 상담이나 치료, 사례관리 등은 민간기관에서 담당한다.

1) 신고(Reporting Laws)

연방정부 및 주(州)정부는 아동학대와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조기 개입을 위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을 상대하는 모든 전문가들, 즉, 의사 및 병원종사자,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복지시설 종사자, 교사와 교육기관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법률상담 관련자 등이 신고의무를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매우 넓게 정의되어 있다.

신고는 아동학대 관련 주(州)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핫라인이나 경찰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동과 부모에 대한 신상정보, 학대나 방임의 의심이 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의무가 있는 전문가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형이 부과되거나 아동에게 야기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실제로 이러한 신고의무규정이 아동학대예방및조치법에 의해 강제된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였으며, 이것이 오히려 관련기관의 업무과중과 질적 저하를 야기하는 문제로 발견되기도 하였다(Steib & Blome, 2003). 심각한 상해나 위험을 내포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에 연계하여 형사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며, 사회복지사 등 업무담당자는 법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만약 아동이 원래 가정에 남아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임시 보호조치(protective custody)를 취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으며 24~48시간 이내에 법정에 임시보호조치에 대한 청구를 해야 한다.

2) 신고접수와 조사 (Intake and Investigation)

신고사례를 접수하여 조사와 사정에 들어가는 과정은 주(州)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일부 주(州)에서는 신고접수와 조사를 같이 담당하는가 하면, 다른 주(州)에서는 신고접수와 조사를 담당하는 책임이 분산되어 있다. 최근에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형사기소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사와 경찰이 공동 조사를 하는 것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일단 신고가 들어 모면 조사를 실시할 것인가의 여부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신고 된 아동이 미성년이 아니거나, 신고 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학대의 내용이 주(州)정부의 범규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면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평균적으로 볼 때 신고 된 내용의 40% 정도만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이 되는데, 이는 모호한 범규정이나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미비한 조사, 불충분한 신고내용 등에 기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신고 후 조사에 착수하는 기간과 조사결과 이후 보호조치 결정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부분의 주(州)에서는 주법률이나 관련 규정에 명문화하고 있다. 대체로 신고 후 24~48시간 이내에 조사를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신고접수 후 30~90일 이내에 조사결과와 보호조치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조사 착수에 대한 규정이 아동학대의 유형과 긴급성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다. 켄터키주의 경우, 긴급한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긴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Kopels, Charlton, & Wells, 2003).

대부분의 주(州)에서 신고 접수 및 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지침을 담

은 매뉴얼을 업무담당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름, 연령, 학대상황의 정도, 원인, 성격 등의 내용과 더불어 가정 내 다른 자녀들에 대한 조사를 함께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매뉴얼은 조사자들이 아동이 처한 위험의 정도, 임시 보호조치가 필요한 지 여부, 사례를 법정에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상황에서 아동의 가족은 보통 방어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사례를 조사하는 일은 쉽지 않다. 따라서 심리치료사들이 아동의 정서상태를 진단하는 과정이 개입되기도 한다. 아동학대의 규정에는 가해자의 의도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부모나 양육자들은 학대의 의도성을 전적으로 부인하지만, 아동의 심리치료나 보호의 과정에서 부모가 얼마나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가는 부모의 의도적 방임이나 학대여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사례조사 결과, 아동학대로 판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에 대한 교육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는 부모의 자발적인 선택에 달려있다. 조사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 법정으로 인계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보통 심각한 신체적, 성적 학대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소년법정으로 사건이 인계된다. 또한 부모가 협조적이지 않거나, 아동학대를 반복하거나, 결정된 치료 및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법정으로 사건을 인계하게 된다.

3) 아동학대 예방서비스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가족과 아동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은 아동학대예방및조치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바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인 아동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및 심리치료가 제공되어야 하고, 가해자인 부모나 양육자에 대해서는 상담, 약물중독 치료, 심리 치료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들은 아동이 대안적인 보호를 받는 대신 원래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방식으로 사례가 종결될 때 더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에서는 보호조치의 결정, 즉, 원가정으로 복귀시킬 것인가, 가정위탁을 할 것인가, 그룹홈이나 시설보호를 할 것인가 등의 결정과 시행이 가장 중심적인 업무가 되며, 보호조치 이후의 서비스 제공은 상대적으로 간과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체로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모의 학대나 방임은 부모의 미숙이나 정서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 뿐 아니라 빈곤, 실직, 부모의 과도한 스트레스처럼 가족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과 관련된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Barter, 2001; Hollingsworth, 2000). 따라서 아동학대의 예방은 가족이 처한 긴급한 위기상황, 빈곤 등의 문제를 함께 다루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아동보호에 관한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뿐 아니라 보육 지원, 가정도우미 파견, 부모교육, 자조집단과 같은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 연방법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권장하기만 할 뿐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주(州)에서 다 실시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예방적 서비스보다 최소한의 사후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미국의 복지정책의 기초와 맞물려있다.

나. 시설보호와 자립지원

아동학대 조사 결과에 따라 아동은 원래의 가정으로 복귀되거나, 부모의 친권이 박탈된 후 입양되거나, 법적 후견인을 가지게 되거나, 시설에서 보호되거나, 16세 이상의 아동은 독립생활이 허용된다. 부모의 친권이 박탈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아동들에게는 일정기간동안 가정 밖에서의 보호(out-of-home care) 조치가 취해진 후 12~24개월 이내에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한다. 이것은 연방정부의 규정이 조치가 취해진 지 18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아동에 대한 조치를 계속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법정에서 청문회를 가지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일반

적으로 아동이 보호조치 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입양의 가능성은 낮아지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일시적 보호조치의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시설보호는 쉼터(emergency shelter), 그룹홈(group home), 치료시설(residential treatment center) 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쉼터는 아동이 가족으로부터 긴급하게 피신해야 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되는 장소이며, 그룹홈은 아파트 등의 장소에서 소수의 아동들이 생활지도사나 사회복지사와 함께 생활하며 보호받는 유형이다. 치료시설은 아동이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행동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배치된다.

다른 복지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시설보호는 마지막으로 선택되는 대안이다. 아동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가정위탁으로 보호되기 어렵거나, 가정위탁에 여러 번 배치되어 위탁이 장기화되거나, 심리치료나 약물중독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임신을 하여 보호받아야 하는 경우 등 일반 가정위탁으로 배치될 수 없는 아동들이 배치된다. 2000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50%는 학대나 유기로 인해 조치되었고, 11%는 소년범죄 때문에 조치되었으며, 21%는 부모의 사정으로 인해 조치되었고, 2%는 장애 때문에, 나머지는 기타 이유로 인해 조치되었다.

2000년에 제정된 아동건강법(Children's Health Act of 2000)은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에게 위기관리훈련, 행동장애치료 등을 제공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시설에서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집중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실험적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2만 명의 아동들이 영구적인 가정환경(원가정이든 대안적 가정이든)을 찾지 못한 채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보호되다가 성년이 되어 독립하게 된다(Goerge, Bilaver, Lee, Needell, Brookhart, & Jackman, 2002). 1980년대에 사회보장법 제4장-E(Titile IV-E)가 개정

되면서 성년(대체로 18세)까지 아동보호체계에 있는 아동들에게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육이나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독립된 생활에 필요한 주거나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서비스나 재정적 지원을 살펴보면, 주(州)정부가 아동보호체계에서 독립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내역은 매우 미미하였다. 위탁아동의 독립프로그램(Independent Living Program)의 취약성으로 인해 가정위탁에서 독립하는 18세 청소년들이 제대로 자립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피부양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것이 가정위탁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999년 가정위탁자립법(the Foster Care Independence Act)이 제정되었다. 이법으로 인해 연방정부는 위탁아동의 독립을 위한 예산을 두 배로 늘려 140만 달러를 배정하였으며, 연방정부에서 받는 지원에 주(州)정부의 대응자금을 20% 이상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주(州)정부의 자립지원 프로그램들을 장려하였다. 주(州)정부는 아동보호체계에서 독립하는 18~21세의 청소년들에게 고교졸업, 직업훈련 및 탐색, 직업 배치 등의 목적으로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명시하였다. 특히 생계와 주거비 지원을 위해 기금의 3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료지원(Medicaid)도 21세까지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법에서는 프로그램 평가와 연구를 위해 별도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어서, 주(州)정부들이 다양한 독립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다. 위탁가정지원

가정위탁은 원가정에서 나온 후 다시 복귀할 때까지 혹은 입양될 때까지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가정적인 환경에서 보호와 양육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가정위탁은 이민가족의 아동들이 거리에 방치되는 것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19세기 초 뉴욕에서 시작되

었으며, 점차 하나의 운동으로 동부지역에 확산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야 가정위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가정위탁을 하는 부모들이 기관의 감독을 받게 되었다.^{주20)}

1) 가정위탁의 절차

가정위탁의 목표는 방임이나 학대로 인해 원가정으로부터 분리 배치되어야 하는 아동들을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아동이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동안 원가정에 대한 사례 관리가 이루어져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지만, 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에는 대안적으로 입양이 선택하기도 한다.

민간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위탁가정을 모집하고,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자격을 갖추게 한 후 위탁가정 면허를 제공한다. 위탁가정의 자격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정환경조사와 신상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조사가 끝나면 가정위탁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으로 대체로 20시간~30시간의 교육훈련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연간 10시간~20시간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세한 자격조건과 교육훈련시간은 주(州)정부에 따라 편차가 있다.

위탁가정은 아동을 보호 위탁하는 대가로 일정한 위탁료를 정부로부터 지급받고, 아동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서비스와 지원을 받는다. 또한 아동보호기관의 감독과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이러한 위탁가정으로서 받는 다양한 서비스 지원은 위탁부모의 권리로 되어있으며, 앨라배마주를 비롯한 11개주(州)에서는 위탁부모의 권리를 법령으로 제도화하여 보호하고 있다.^{주21)}

가정위탁은 시설보호의 대안으로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한

주20) 미국수양부모협회 웹사이트 참조. <http://http://nfpainc.org>

주21) 이들 11개 주는 앨라배마, 콜로라도, 일리노이, 조지아, 미시시피, 메릴랜드, 미주리, 오클라호마, 오레곤, 테네시, 워싱턴 등임.

편으로는 가정위탁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위탁가정을 모집하는 것이다. 아동에게 대안적 보호를 제공할 때 아동의 친부모가 방문할 수 있도록 지리적으로 가까운 가정에 배치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위탁가정도 다양한 지역에 골고루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낮은 위탁료, 위탁기간 연장아동의 증가, 여성을 위한 다른 취업기회의 증가, 위탁가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위탁가정을 모집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가정위탁의 유형

미국의 위탁가정은 아동과 위탁가정의 관계에 따라 크게 일반가정위탁과 친족가정위탁으로 구분된다. 일반가정위탁(regular foster care)은 아동과 친분관계가 없는 가족이 아동을 일시적으로 위탁 보호하는 유형을 의미하며, 친족가정위탁(kinship care)은 아동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대부모관계, 계부모관계, 혹은 친분이 있던 사람이 아동을 위탁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가정위탁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일반위탁가정의 수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수급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보호체계는 아동의 친인척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친족가정위탁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미국의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1998년 미국에서는 부모 없이 친인척과 함께 사는 아동의 수가 2.1백만 명에 달하였다. 이 중 23%는 아동보호체계를 거쳐 친인척에게 위탁된 아동이고, 나머지 77%는 개인적으로 친인척에게 맡겨진 아동이다(Casey Family Programs, 2004). 아동보호체계를 거쳐 친족가정위탁이 이루어진 경우는 공식적 친족위탁(formal kinship care)이라고 명명되며, 일반위탁가정에 지원되는 것처럼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친족위탁자가 위탁가정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빈곤가족한시부조기금(TANF Block Grant)에서 위탁료를 지원받

고, 위탁가정 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위탁지원금에서 지원을 받는데 후자의 위탁료가 조금 더 높다.

라. 입양지원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에서 입양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은 1980년에 제정된 입양지원및아동복지법(AACW of 1980), 1997년에 제정된 입양및가족안전법(ASFA of 1997), 2003년 제정된 입양촉진법(Adoption Promotion Act of 2003)이다. 아동보호체계의 법적·제도적 환경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양지원및아동복지법에서는 가정위탁이나 시설배치를 최소화하고, 입양이나 원가정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으로 말미암아 미국에서는 비로소 가정위탁으로 보호되던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입양수당(Adoption Assistance)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보장법 제4장-E(Title IV-E)에 의해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을 입양할 경우에는 입양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을 일시금으로 상환해 주고(최대 \$2000), 아동이 가정위탁 기간 동안 매월 지원받았던 비용을 입양된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아동이 특수한 욕구를 가졌다는 것은 위탁가정에서 보호되었다가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고, 나이가 많거나 소수민족인종에 속하거나, 정서적·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형제가 함께 입양되어야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동법은 입양아동수당을 결정할 때, 입양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입양수당의 액수를 결정할 때는 아동의 필요와 입양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National Adoption Information Clearinghouse, 2004).

만약 아동이 연방정부의 사회보장법 제4장-E에 의해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주(州)정부는 아동에 대해 의료지원이나 3~6개월 동안의 한시적 보충입양수당, 아동의 필요에 따른 입양수당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주(州)정부의 의지와 자원에 따라 결정되므로 편차가 크다.

한편, 1997년의 입양및가족안전법은 1980년 후반 이후 가정위탁이 증가하고, 가정위탁 보호가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이 법을 통해 연방정부는 아동이 보호체계에 들어온 후 입양될 때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 그 기간을 제한하였고, 입양건수를 증가시키는 주(州)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입양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재정적 인센티브는 연방정부가 제시한 기본 건수 이상으로 입양을 증가시킨 주(州)에 대해 초과 건수 당 \$4,000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대 \$43만 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입양건수가 1995년 25,693건에서 1999년 46,072건으로 79% 증가하였다.

2003년의 입양촉진법은 입양및가족안전법에서 주(州)정부에 지원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향후 5년간 연장하고, 특히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9세 이상의 연장아동들이 입양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연장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있다.

입양은 친권의 포기나 상실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1989~1995년 사이에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동 중 자발적으로 친권이 포기된 아동은 1%가 채 안 된다(National Adoption Information Clearinghouse, 2005). 즉, 대다수의 아동들은 친권이 강제로 박탈된 상태에서 입양으로 연결된다.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친권이 박탈된다.

우선 가장 보편적인 경우는 자녀를 유기한 경우이다. 유기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자녀를 한 번도 보지 않거나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된다. 또한 부모에게 심각하고도 장기적인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중독 상태인 경우, 반복적으로 학대나 방임으로 신고 되고 판정되는 경우 등에 친권이 박탈된다. 친권박탈의 결정은 주(州)정부에 주어져 있는데, 원가정 보존이라는 아동보호의 목표 때문에 친권이 제

한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제한되지 않아 부작용을 일으키는 종종 발견되고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아동학대예방 및조치법이 1996년 개정되면서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될 수 없고, 친권을 신속하게 박탈해야 하는 경우를 명시하였다. 여기에는 부모가 배우자나 가족 내 다른 구성원을 살인한 것으로 기소된 경우, 자녀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자녀가 아닌 다른 아동을 살해하거나 살해·기도하여 기소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1) 입양의 유형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입양은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 또는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민간기관을 통해 하는 일반입양(regular adoption)경우이다. 두 번째는 입양기관을 통하는 대신 친부모가 직접 양부모를 찾아 자녀를 입양시키거나, 의사, 변호사 등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독립입양(independent adoptions)이다. 세 번째는 암시장 입양(black market adoptions)인데 독립적 입양의 특별한 경우로서 종종 관련된 의사나 변호사에게 상당한 액수의 입양료가 지급되는 비밀입양이다.

입양의 종류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국적에 따라, 아동과의 관계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연령은 신생아, 영유아, 학령기, 청소년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신생아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에 입양을 신청한 후 입양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기간이 길고 입양기관에 지불하는 비용도 가장 높다. 신생아 입양은 일반적으로 민간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독립입양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반면,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아동의 입양은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National Adoption Center, 2005).

아동의 국적에 따라서는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으로 구분되는데, 국제입양의 경우에도 신생아들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국제입양의 경우 국내입양보다 입양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이 훨씬 더 높음에

도 불구하고, 국내 신생아 입양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국제입양이 선택되기도 한다.

아동과의 관계에 따라서는 친분관계가 없는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와 재혼 후 새로운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위탁 보호하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친인척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아동보호체계와 관련되는 입양은 위탁 보호하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와 친인척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이다. 현재 미국 내 입양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위탁보호로부터 연결되는 형태의 입양이다(National Adoption Center). 친인척 위탁의 경우, 만일 아동이 다른 사람의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다면, 아동보호기관의 협조를 얻어 입양절차를 받아야 한다. 아동이 친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아동보호기관이나 입양기관의 개입 없이 직접 입양할 수 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하는 경우,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home-study)가 이루어지지만 친인척 입양인 경우에는 조사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이루어진다.

2) 입양 절차

입양을 계획하는 가족은 먼저 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인가받은 민간 입양기관에 입양을 신청하게 된다. 입양의 종류에 따라 전문화된 입양기관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원하는 입양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입양이 신청되면 가정환경조사가 이루어진다. 가정환경조사는 주로 입양기관이나 아동보호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이 입양하고자하는 부모들을 면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주로 혼인관계, 아동학대범죄 여부 등의 신상적인 측면과 입양부모로서의 심리적 준비정도 등을 알아본다. 여러 번의 면접 중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사회복지사가 아동이 입양될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일반적으로 부모를 같이 면접하고, 또 각자 따로 면접하여 입양의 의사를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 상담이나 부모교육 훈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한다.

가정환경조사가 끝나고 입양부모로서 적합성이 확인되면 입양할 아동을 찾는 과정이 시작된다. 입양기관에서 자체 내에 아동들을 보호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입양기관들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해 입양 대상아동의 리스트가 공유되는 경우도 있다. 적합한 아동이 선정되면 아동의 정보에 대한 소개를 받고, 아동을 만나보게 된다. 입양이 결정 되면 아동의 친권이 확실하게 박탈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입양의 공식 서류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입양이 확정된다. 입양이 확정된 이후에는 몇 개월에 걸쳐 입양기관으로부터 사후서비스가 제공된다.

3) 입양 사후서비스

아동이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 아동보호체계의 일차적 목표는 아동을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입양이 확정된 후에는 아동과 입양가족이 새로운 가족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달라진 가정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아동보호체계의 목표가 된다.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에서 입양사후서비스는 크게 사례관리와 교육으로 구분된다(Casey Family Services, 2004).

사례관리에는 입양보조금 지급, 입양아동의 교육비 지원, 입양 사례별 관리 외에도 입양지원센터의 운영, 입양정보검색 데이터베이스 운영 등의 정보제공 지원과 약물남용치료, 가족치료, 주간보호, 위기중재, 의료/행동치료, 정신건강치료, 집단상담, 자조집단 형성, 사회적 기술훈련, 특별 캠프 등과 같은 정신 건강 서비스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입양된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외에도 입양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지역사회교사, 변호사, 의사, 보호경찰 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교육, 입양기관 종사자 교육, 공공 입양기관 교육 및 연구 지원 등은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되는 입양 사후서비스라 할 수 있다. 2003년의 입양촉진법에서는 입양관련연구, 기술적 지원에 관한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특히 입양사후서비스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및 치료를 위한 다학제적인 복지서비스 모델 개발, 특정한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족서비스 효과 연구, 과양을 최소화하는 모델의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Casey Family Services, 2004).

3. 미국 아동보호체계의 시사점

이상에서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내용을 법률적 환경과 실제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는 가장 빈번하게 비교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편이다. 미국의 사례가 빈번하게 준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우선 미국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와 그만큼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친숙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보호체계를 비롯한 여러 복지정책을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제도적으로 발전시켜온 유럽의 OECD 국가들에 비하여 미국은 잔여주의적 복지정책과 제도를 발달시켜왔기 때문에 복지 인프라와 전통이 아직은 취약한 우리나라 복지정책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고, 사회적 저항이나 거부감 없이 수용될 수 있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70년대 중반 전 세계적인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응하여 복지정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들과는 다소 차별되는 행보를 보인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전성기를 누리며 복지정책을 확대시켜온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이 복지정책의 대상을 재규정하거나 예산을 축소하면서 복지국가를 재편해온 반면, 미국은 복지예산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유주의적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개혁해왔다(이혁구, 2002).

이러한 경향은 1996년 복지개혁에 잘 반영되어있다. 미국의 복지정책은 점점 더 받을만한 대상(the deserving)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점점

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성인에 비해 복지정책의 대상으로서 ‘도움을 받을만한 존재’이며, 특히 아동보호체계의 대상이 되는 보호아동은 더욱 그렇다. 1996년 복지개혁이 학계나 정치권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찬반의 입장을 첨예하게 대비시켰던 것이 비해 아동보호정책에 대한 일련의 개혁은 그와 유사한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이는 미국의 아동보호정책이 철저히 요보호아동중심으로 형성되어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자유주의적 복지이념과 상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근로연계형 복지개혁 정책의 일환으로서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보육서비스와 보육지원 재정을 확대된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학대, 방임된 아동들에 대한 아동보호정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지 않는 것은 미국식 복지국가의 재편 혹은 유지 노력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도전이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향이 심화되면서 노동시장의 완전고용체제는 종식되었고, 계층의 양극화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송호근, 2001; 이혁구, 2002). 노동시장이 유연해지고, 계층의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실직, 빈곤은 가족생활의 불안요인이 되고 특히 가족 내의 아동의 안정성이 위협받는다. 부모의 학대나 방임이 빈곤, 실직, 부모의 과도한 스트레스처럼 가족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과 관련된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Barter, 2001; Hollingsworth, 2000). 신자유주의 흐름의 침단에 있는 미국사회에서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일견 당연한 선택이며 입장일 것이다.

실제로 1996년 복지개혁이후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는 공공부조 복지체계와 더욱 긴밀한 공조관계를 구축하였다(Romero, Chavkin, & Wise, 2000). 공공부조담당기관과 아동보호기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급조건을 따르지 못해서 빈곤가족한시부조(TANF) 지급이 종결된 사례에 대한 연계가 체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또한 빈곤가족한시부조 기금의 일부를 친족위탁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

적인 연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복지개혁 이후 공공부조기관으로부터 아동보호기관으로 연계된 사례뿐 아니라 아동보호의 일반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itchell et al., 2005; Romero et al., 2000).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일련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전문가들은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Barter, 2001; Hollingsworth, 2000; Steib & Blome, 2003). 이런 부정적 평가는 미국의 복지정책의 전반적 기조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대, 요보호아동의 양적 정체현상, 각종 아동보호정책의 시행착오, 제도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의 부족 등에 근거한다. 즉, 미국의 잔여주의적 복지정책은 아동학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접근을 배제한 채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만을 가져올 뿐이며(Barter, 2001), 따라서 요보호아동의 숫자는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종종 고발되는 사례들의 심각성 역시 아동보호체계의 문제를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Steib & Blome, 2003). 또한 신고의무자 규정은 법적으로 강제한 반면, 신고의무자들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신고를 소화해낼 수 있는 인력의 확충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인력의 전문성 역시 제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Steib & Blome, 2003).

이러한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와 사회복지체계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미국의 아동보호와 관련된 법체계의 변천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아동보호정책이 시설중심, 가족중심, 아동중심으로 그 초점이 변화해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보호체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동의 복지이며,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아동의 권리보장이다.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는 아직도 시설중심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단지 대규모시설을 지양하고 소규모 시설(예를 들면, 그룹홈)로 전환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방향의 전환이라기보다는 규모의 전환이

라는 점에서 시설보호가 가지는 문제점과 한계점들을 크게 완화시켜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시설보호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입양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 사회의 상황에서 가정위탁보호는 시설보호를 대체하는 의미가 있으나, 가정위탁보호는 원래 일시적인 보호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가정위탁이 장기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 가정에서 위탁 보호받는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보다 여러 위탁가정을 전전하면서 보호가 장기화되는 것이다. 가정위탁보호는 일시적 형태의 보호이기 때문에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가정환경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 아동에게 원가정을 대신하여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입양이며,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와 아동복지환경에서 입양을 장려해야 하는 필요성에 부딪히게 된다.

미국의 가정위탁제도에서 주목할 만한 점 중 한 가지는 친족위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위탁가정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공식적 친족위탁이 증가하여 가정위탁으로 보호받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였다. 물론 친족위탁 중에는 아직도 비공식적, 사적 친족위탁이 훨씬 더 많은 실정이지만, 비공식적 친족위탁이 공식적 친족위탁으로 전화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Casey Family Services, 2004b).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가까운 친인척이 아동을 대신 돌보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전통적으로 존재해왔다. 미국 내에서는 확대가족에 토대한 넓은 친족관계망 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소수 민족인종의 가족에게서 친족위탁의 전통이 보다 잘 나타난다.

친족가정위탁이 가지는 장점은 첫째 아동의 양육환경이 크게 변화하지 않도록 가정환경의 연속성을 부여해줄 수 있다는 점, 둘째 아동이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위탁 보호받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친인척

이 아동을 맡아 보호할 때 아동의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존중되고, 아동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으며, 아동이 속한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친족위탁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미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친족위탁으로 전환되고 친족이 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아동보호체계에 있는 다른 아동들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확대시키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의 관점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러한 변천이 단지 이념의 변화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학문적 연구결과의 반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즉, 아동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학문적 연구 성과의 축적은 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족환경이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대중적으로 인식시켰고, 이러한 인식은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원가정보존 원칙과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하고도 포괄적인 평가를 시도한 연구들은 원가정보존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별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동의 이익에도 반한다는 증거들을 발견하면서 철학으로서의 가족보존과 서비스로서의 가족보존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었다(Courtney, 1997).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다시 원가정중심이 아닌 입양중심의 아동보호체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하였다. 입양중심의 아동보호체계 역시 평가와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입양이 부모의 친권박탈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현재 미국의 입양정책은 친족위탁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친족위탁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소수 민족이나 인종에게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연구결과 역시 만만치 않다(Hollingsworth, 2000). 이러한 연구들의 축적은 다시금 입양을 둘러싼 아동보호체계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의 아동보호체계 및 사회복지체계의 현황을 살펴보면 얻는 또 다른 시사점은 지역사회중심의 접근에 관한 것이다. 전반적인 복지개

혁의 기조 아래, 아동보호체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지역사회에 토대한 접근을 지향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Barter, 2001; Honberger & Bia-Lawson, 2005). 이러한 접근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빈곤, 실업 등 각종 위험요인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족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고, 공동체성에 기반한 연대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의 철학과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는 복지정책의 이념의 적절한 타협점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Bottom-Up) 사회적 개혁을 실천하는 전략으로서 지역사회 기반을 혁신을 통해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한다(Cohen, 2004). 지역사회기반 접근법은 미국의 전반적인 복지정책의 기조에 부합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없이 아동보호체계를 개선시킬 수 있으나, 그 결과가 매우 느리게 발현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제2절 영국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및 주요 쟁점

자유주의적 다원주의를 기초로 하였으며 사회보장 사상의 이정표가 된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의 즉각적 실천을 공약으로 제시한 노동당이 1945년 총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영국의 아동보호 체계는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 특히, 커티스위원회(Curtis Committee)는 부모의 보호 하에 아동이 양육되도록 다양한 시설보호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빈법의 열등수급 조치가 아닌 아동의 능력과 적성을 적절히 발전시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시설보호 보다는 가정과 환경이 유사한 위탁 가정 지원 체계를 장려하도록 건의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70년대 초반까지 영국 아동보호의 중심은 아동

에 대한 보호태만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었으나, 1970년대 중반에 마리아 코웰 사건 이후 아동보호의 중심은 아동학대로 전환되었다. 이후 1975년 아동법이 제정되었고, 원래의 가정에서 아동학대의 위험이 있는 경우 지방 정부가 조속히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등, 친부모의 권한을 약화시키게 되었다. 이 법은 친부모와의 연계를 중시한 과거의 관례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가 친부모의 권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과 위탁가정에의 보호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는 법과 질서를 위반하는 범죄자로 여겨지고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는 처벌되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이런 경향은 대만하게 방치된 아동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 전략을 더 이상 선호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런 시대적 조류는 사업사회국의 포괄적 아동보호 업무를 소수 고위험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87년에 다시 한 번 아동보호의 방향을 전환시킨 클리블랜드(Cleveland)사건이 발생하였다. 클리블랜드의 사회사업가와 의사가 성적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아동을 가정에서 데려와 지방정부의 보호 하에 두었는데 조사결과 아동학대는 심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정되었다. 이 사건으로 지나친 사회사업가의 권한에 대한 비판이 증대되었고, 1989년 아동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의 사회사업가들은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실패하면 이에 대하여 비판을 받았고, 학대받는 아동이 발생하여 적극적으로 아동의 가정에 개입할 경우 사생활의 침범으로 비난받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직면하였다(이영찬, 2000).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영국 아동보호체계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아동보호체계의 특성

가. 아동보호관련 법적·제도적 환경

2차 대전으로 영국은 많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고 전쟁고아와 같은 심각한 사회보호의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은 빈곤의 원인이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소에 있음을 인식하고 국가적 책임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수당, 포괄적 보건 및 재활서비스, 고용의 유지라는 3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대표적인 것으로 가족수당, 국민보험, 국가보조, 국민보건, 고용, 직업에 관한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사회보호 방식에 대한 논의와, 사회문제의 원인규명 차원에서의 접근, 그리고 자선적 수혜 차원의 접근을 바탕으로 한다.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 최근까지 영국의 아동보호와 양육에 관련된 법은 분산되어 있었으나 1989년에 아동법(The Children Acts)의 재정을 통하여 대체적으로 정리되었다. 1991년 10월 14일 효력을 발생한 영국의 아동법은 부모의 이혼에 따른 아동의 보호,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제반 관련법을 한 곳에 모은 법이다. 1989년 이전에는 지방법원 차원의 법규, 고등법원 차원의 법규, 보호받을 아동의 종류별로 다른 법규로 구분되어 있어서 다소 혼란스러웠고 형법과 민법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러나 1989년 아동법이 만들어진 이후 형법과 민법이 하나의 법으로 규정되었으며 아동보호에 대한 모든 양상을 다루게 되어 아동보호부터 아동 입양까지를 모두 다루고 있다.

아동법은 한마디로 “부모의 책임”,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 그리고 “동반자적 관계”라는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입법이다. 아동법을 근거로 요보호 아동(child in needs)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동법은 어떠한 상황

에서도 아동의 복지가 최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부모와 가족이 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고, 가족과의 협의를 통한 아동보호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즉, 아동법의 기본정신은 부모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상호적 개입이라 할 수 있다.

1989년 만들어진 아동법의 특징을 보건사회부는 다음과 같이 여덟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아동을 양육하는 1차적 책임은 가족에게 있으며, 대부분의 아동의 경우 아동의 이익은 그들 자신의 가족 속에서 성장할 경우 아동의 이익이 가장 잘 충족될 수 있다. 아동이 가족과 떨어져 살 경우에도 만남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인종, 문화, 언어 및 종교는 법원이나 지방정부가 아동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이 가정이나 시설, 어느 곳에서든 지방정부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때에는 아동과 가족 및 지방정부의 관계는 협조와 참여의 관계이어야 한다.

넷째, 아동은 자신에 대한 결정이나 조치들에 대해 충분한 참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는 법정에서나 전문인이 아동을 상담할 때 아동의 희망이나 견해를 충분히 고려하고, 아동 자신에게 법원의 명령을 청구할 권리, 치료나 평가를 위한 의료적 정신적 시험을 거부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 다섯째, 가정위탁보호는 장기적인 가족의 파탄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족과 아동을 위한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강제가 아닌 자발적 방식으로 지방정부에 의하여 수용 보호되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보아야 한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이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면 강제적 방법이 아닌 자발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지방정부에 의한 서비스 제공방식은 종합적이어야 한다. 여러 기관 간, 여러 업무 간 및 전문인들 간의 협력이 강조되어야 된다. 일곱째, 국가가 가족생활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을 통하여, 그

리고 아동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거나 겪을 것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아동보호에 대한 일차적 예방단위로 지방정부에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여덟째, 아동과 관련한 공법 및 사법을 최초로 통합하였다. 공법은 가족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위하여 지방정부 및 법원의 아동보호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것을 탈피하여 민사법과 형사법을 명확히 구분 짓고 민사법 관계만 규정하고 있다.

아동법상 부모는 아동을 소유물처럼 가지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돌볼 책임을 가지게 된다. 가족이 지방정부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때나 아동이 지방정부에 의하여 보살펴질 때에도 이와 같은 부모의 책임이 유지된다. 따라서 아동을 위해 일하는 전문인들은 부모와 협력하여야 한다. 어머니 및 결혼한 아버지는 입양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책임이 없어지지 않으며, 결혼하지 않은 아버지는 어머니와의 계약이나 친권책임이라는 법원의 명령으로 이 책임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영국의 아동법은 2004년에 일부 개정되어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다.

나. 아동보호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

아동보호서비스의 골격은 주로 지방의 사회복지국이 담당하고 있는데, 지방사회복지국이 담당하고 있는 예방적 프로그램은 빈곤, 아동학대, 맞벌이 부부에 의한 아동방치 등의 이유로 위험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현금 및 현물급여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요보호아동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예방사회복지국의 보호프로그램에는 부모나 후견인이 아동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당국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임의적 보호’와 소년재판소의 보호수속 절차와 형사수속 절차와 같은 ‘강제적 보호제도’ 등이 있다.

영국의 아동법은 요보호아동을 장애아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박탈에 관련되는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

거나 학대 또는 방치된 아동은 지방당국에 의해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가정으로부터의 아동분리는 가능한 일시적이어야 하며 신속한 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 약 50%의 아동이 1년 이내에 가정으로 복귀되며 1990년 3월 가정을 떠나 지방당국에 의해 보호를 받은 아동은 약 6만 명이었다. 요보호 아동의 약 60%가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며 나머지 아동들은 지역사회시설, 자원봉사자 가정,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립위탁가정 등에 배치된다. 지역사회시설인 아동보육원에 배치되는 아동의 보호기간은 비교적 길며 아동보육원은 아동법에 따라 제정된 아동복지시설 시행세칙에 의해 운영된다. 보육원에서는 일체의 체벌이 허용되지 않으며, 개별 아동이 가정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등 각종 보호관련 기록이 모두 문서화되어 있어야 된다.

아동법은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예방 및 지원 업무가 대부분이고, 지방정부는 학대 및 보호태만이 의심되는 경우에 그 사안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와 아동의 자발적 협조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구역아동보호위원회는 보호조치에 대한 권고사항, 법원의 보호명령 신청여부, 아동보호 등록대장의 등재여부 등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이 위원회는 사회사업국 소속 사회사업가·학교 보건관계자·경찰·의사 등의 관계자들로 구성되며, 여러 기관 간에 협조를 유지하면서 조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조사과정에 부모와 아동이 참여하게 되며, 아동에게 해악을 미치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보호태만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보유한 아동보호 등록대장에 아동을 등록하고, 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보호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등록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의 효력은 아동관련 전문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심을 유지하게 하는 정

도이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긴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히 아동보호를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지방정부가 수용보호하고 있는 아동 및 그의 보호자는 조치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불복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는 긴급보호명령이나 아동평가명령을 신청하여 아동을 대신하여 법적으로 부모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법에 의하여 내려질 수 있는 법원의 사법상 조치는 아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내려지는 아동평가명령, 아동의 거주지를 결정하는 거주명령, 아동이 누구와 몇 번 또는 어느 정도 만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접촉명령,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특정한 일을 하도록 부과하는 특별과제명령, 다른 사람들이 아동에 접촉하지 못하게 하거나, 학교 및 특정 장소에서 데려갈 수 없도록 하는 접근금지명령, 폭력이나 괴롭힘으로부터 아동이나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령 등이 있다.

공법상 조치로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유기의 위험이 있을 경우, 지방정부 및 자원단체인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전국협회’는 법원에 보호명령 또는 감독명령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아동이 심각한 해악에 직면해 있고, 지방정부 등이 보호조치가 합리적 보호방안이 되는지를 ‘아동의 복지수준 확인목록’에 따라 점검한 후에 명령을 내리게 된다. 보호명령이 부과되면 지방정부가 친권자의 책임을 공유하게 되며, 지방정부는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의 친권책임을 어느 정도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감독명령이 부과되면 사회사업가인 감독자는 아동을 정기적으로 만나 평가하고 특정 교육이나 훈련을 받게 하거나 조언하고 아동과 친구가 되어줄 의무를 지게 된다. 감독자는 아동의 주소를 알아 항상 적절한 접촉을 하게 된다. 이들 명령은 법원의 심리가 오래 지속될 경우 약 8주간의 임시명령으로 우선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교육감독 명령은 아동이 의무교육을 게을리 하는 경우 학교출석 등을 잘 하도록 조치하는 명령으로 약 1년간 지속되며 의무교육

이 종료되면 해제된다. 이와 같은 법원의 심리과정에서는 아동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자격 있는 사회사업가가 임시 후견인으로 임명되어 아동의 가정 밖 보호를 신청한 사회사업국과는 독립적으로 아동이나 가족들의 이익과 의견을 고려해 대변하는 역할과 법원의 보호조치에 대한 조언 등 객관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도 불복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또, 이와 같은 명령이 부과되어도 친권자와의 접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향후 복귀할 경우를 생각한 조치로 복귀하지 않더라도 정신적 건강효과를 고려할 때 부모와의 접촉은 필요하며 지방정부는 이를 촉진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2002년 기준으로 아동보호 등록대장에는 약 35.6천 명의 아동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방정부에 의한 아동보호는 자발적 또는 법원명령으로 지방정부의 보호 하에 들어온 경우에 발생한다.

자발적인 경우는 고아 및 기아인 경우, 편모가 병원에 입원하여 아동을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며, 단기적 비상시에 제공되는 것이 원칙으로 부모는 언제든지 아동을 가정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 지방정부가 아동에 대한 친권을 갖는 것이 아니며, 아동에 대한 어떤 계획도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보호 중인 아동은 약 5만 5천명(잉글랜드 및 웨일스, 1999년) 이상이었으나 2000년에는 약 4만 6천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18세 이하 아동 천 명당 4.6명의 비율이다. 특히, 1989년에 아동법 실시 이후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여 보호아동의 규모가 감소하였는데, 가정에서의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극단적 경우에만 지방 정부가 보호하도록 관행이 변화되었고 보호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다. 아동보호체계의 모니터링과 평가

영국은 1991년 12월에 의회의 적극적 지지아래 아동의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권리 증진을 이행하기로 하는 UN 아동권리협

약을 비준한 바 있으며, 협약 당국들이 비준 후 2년 내 초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관례에 따라 2002년 9월에 유엔보고를 위하여 정부 아동권리위원회 주도로 영국의 아동권리 진전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때, 정부 아동권리위원회는 보건부, 내무부, 교육기술부의 고위 관료들과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즈의 관리들이 참여하여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영국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으며, 그 뒤 잉글랜드 아동권리연대(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 CRAE)가 주도하여 아동들 세상(The Children's Society), 세이브더쉴드런(Save The Children's), 청년권리연맹(The Young People's Rights Network) 등 아동권리 관련 주요 NGO 단체들과 만나 공식적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 단체들은 각기 영국 내 아동권리 진척상황에 대한 증거 자료들과 함께 아동권리 모니터링 연례보고서 및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NGO 선택 권고안을 제출하였다.

이와 함께 영국 정부 아동권리위원회는 청년권리연맹(The Young People's Rights Network)이 구성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청문회에 80여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참여하게 하였다. 동 청문회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아동권리 판무관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면서 영국 수상이 아동권리 증진에 성실한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 아동권리 증진에 성실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려 수상에게 유죄를 선언하였으며, 그 판정내용이 NGO 단체들의 증언과 함께 2002년 10월에 출간된 영국정부의 아동권리위원회의 분석에 포함되도록 한 바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천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1999년 아동권리협약 사항에 따른 제2차 영국정부 유엔보고서 이후 2002년 영국정부 자체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오기까지 민간 아동권리증진의 산과 역할을 하고 있는 잉글랜드아동권리연대(The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의 증거 및 권고사항을 비교·검토하였다.

1999년 UN 아동권리협약 이행의 일반적 장치 강구에 관한 유엔 권고안에 따라 영국은 아동권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가동을 위해 2000년부터 의견수립 및 제도 검토를 거쳐 2001년부터 영국 내 자치권역별로 시행하였다. 웨일즈 지역이 아동권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가동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는데, 웨일즈는 2001년 웨일즈 아동판무관법을 입안하여 웨일즈 지역의 아동, 청소년을 위한 독립인권 기관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안에 따라 2001년 4월에 웨일즈 북쪽에 한곳, 남쪽에 한곳 총 2개의 아동인권기관을 설립하여 연간 20억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북아일랜드는 2002년 11월에 같은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스코틀랜드도 2002년 12월에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북아일랜드는 2002년에 독립 아동권리기관 설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아동 음브즈만 법을 통과시켰다.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법안은 아동권리판무관의 업무지침을 명시하여 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의 적극적 추진을 도모하고, 기관운영에 아동과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사법기관과 공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아동관련 법과 정책에 조언할 수 있도록 하고, 북아일랜드의 경우는 발생된 아동과 청소년관련 사안에 대하여 감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권리 향상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간부분에서는 전국아동에대한잔혹금지협회(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의 기금으로 잉글랜드 아동권리연대가 창립되어 아동권리판무관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보들을 잉글랜드 전역의 아동들에게 배포하는 역할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200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수준의 보호시스템의 가동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잉글랜드 아동 자문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역아동보호국을 설치하여 갑작스런 아동사망의 경우 사망원인을 밝혀내도록 검시집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와 보호를 위해 진일보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초기 입안과정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영국의 아동권리관련 중요 단체들은 국제아동인권보호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130개국 1,400개 아동권리관련 기관들에게 아동권리관련정보 공유 네트워크로 역할하고 있는 아동권리정보네트워크(The Child Rights Information Network), 1991년 UN 아동권리협약이 비준된 이래 영국정부의 2차 보고당시 유엔아동권리 위원회에 NGO 선택보고서를 제출한 기관들을 개괄하고, 영국정부에 의해 아동권리증진을 위해 정부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설립된 아동권리판무관 제도를 통해 영국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천의 모범사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 아동권리 정보 네트워크(The Child Rights Information Network)

아동권리정보네트워크(The Child Rights Information Network)는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130개 국가의 1,400개 기관/단체들(비정부기관(NGO), 유엔 산하단체들, 지역기관, 정부 내 산하기관 그리고 정부기관에게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는 국제 연맹이다. 재정지원은 세이브더칠드런 영국 본부와 스웨덴 본부, 월드비전, UNICEF 등에서 지원한다. 1995년에 설립되어 아동권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기관과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거나 증진하며, 아동권리 관련 정보 전달체계를 개발, 훈련, 출판, 배포 기관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아동권리정보네트워크(CRIN)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아동권리 관련 서비스로는 전 세계 아동을 위하여 일하는 기관정보, 아동권리관련 보고서, 최신 뉴스 및 중요행사 내역을 웹상에서 공개,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국의 NGO 보고서 열람, 이메일 리스트에 등재된

기관 혹은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아동권리 관련 문제와 출판소식, 그리고 중요행사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전달, 그리고 년 1회 아동권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내용을 담은 뉴스레터를 캠페인용으로 발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아동법 센터(Children's Law Centre)

1997년에 설립된 NGO 단체로서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아동, 부모, 법조계 전문인들이 이해하는 것을 돕고, 아동권리관련 타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아동권리와 법 관련 총괄적 법률서비스를 목적하는 기관이다. 아동법 센터는 북아일랜드의 벨페스트에 본부를 두고 있다. 아동권리 증진을 위하여 주로 북아일랜드의 아동권리 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북아일랜드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이행되는 상황을 모니터링 한 결과를 매년 연례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주로 아동의 관점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세이브더칠드런(The Save the Children)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아동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는 독립 NGO 기관으로서 약 100여개 나라의 아동관련 단체·기관들과 협력하며 27개 국가지부를 두고 있다. 비록 UN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하는 사업에만 매진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제아동구호 개발기구로서 아동문제 전반에 걸쳐 해결 및 해소를 목적하며 일하고 있다. 앞서 소개된 아동권리정보네트워크(CRIN)의 중요한 재정적 자원이기도 하다.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은 아동권리협약 관련 영국 정부의 2차보고 작성 당시, 독자적으로 NGO 선택보고서를 발표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영국정부의 정책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며, 아동권리보다 아동복지에 정책적 초점이 있고, 북아일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에 공통적으로 아동관련 기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사실 들을 지적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4) 아동들 세상(The Children's Society)

아동들 세상(The Children's Society)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약 90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동권리 향상을 위해 지방정부를 비롯한 각종 유관단체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아동들 세상(The Children's Society)은 아동·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재원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아동과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그들을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시행한 주요사업으로서는 1989년 아동법의 성공적인 수행을 돕도록 장애아동 관련 사업을 정부와 함께 주도하면서 대규모의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밖에 18세 이하 아동의 구금을 금지하고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난민 아동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마약 또는 알코올 사용문제 등 위기아동 문제 등에 적극적인 개입활동을 하고 있다.

5) 청년권리연맹(The Young People's Rights Network)

청년권리연맹(The Young People's Rights Network)은 영국 내 청소년 단체 연합 네트워크로서 연령에 대한 차별 철폐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는 단체로서 투표권을 현행 18세에서 16-17세로 낮추고, 영국 전역에 아동권리이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아동권리판무관(Children's Rights Commissioner)제도를 만들어 법적·독립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를 근거로 아동의 신체적 처벌은 인권의 명백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정부로 하여금 최저임금보장 나이를 18세 이하까지 하향조정 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영국 정부가 영국 내 모든 아동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압력을 넣는 일에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6) 잉글랜드아동권리연대(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

잉글랜드아동권리연대(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 CRAE)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에 헌신된 영국 내 275개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권리 이행을 위해 법 개정과 정책개선을 위해 운동하는 단체이다. 주요 기능은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사항에 대한 영국정부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일반 대중에게 아동권리 정보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5년~2008년까지의 중기 사업목표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 조직의 개편,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아동의 실질적 참여, 입법기관 관련자들에게 아동권리 정보제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잉글랜드아동권리연대(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의 활동을 위하여 13~17세까지 27명의 아동 패널을 구성하여 정책자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05년에는 잉글랜드 내 아동권리 협약 이행에 관한 광범위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라.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할

1991년 아동권리협약의 비준 이래 영국 정부는 아동권리 향상을 위해 보호아동의 실질적 학업성취 방안 마련, 입양법 개선을 통하여 부모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권리 보장, 아동 빈곤의 구체적 개선 전략 방안 마련,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유포방지 방안 마련, 2004 아동법 개정을 통한 아동권리관무관의 제정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아마도 영국 내 280여개에 이르는 아동권리 NGO 기관 및 단체들의 역할이 지대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자국 내 아동권리 향상을 위해 활동할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아동권리 단체들과 연대를 위해 노력하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보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동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국가들 가운데 독보적인 활동이었다고 평가된다.

그간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영국정부의 상당한 노력과 진전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아동권리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은 영국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판을 멈추지 않고, 매일 계속되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기관별 활동뿐 아니라 매년 아동권리 모니터링 결과를 발간·유포하고 있고, 영국정부의 정기적 유엔보고 시에도 아동 관련 연대 및 중요 기관들은 선택적 기관 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실질적 비교와 비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영국의 아동권리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동보호 체계에서의 지역사회 역할과 참여는 주로 아동학대의 보호 및 예방대책에서 볼 수 있다.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을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보호위원회(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단체의 인식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학대받는 아동을 예방, 발견, 치료하는 사회사업가, 의사, 교사, 경찰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지방정부 기관의 하나가 1970년에 구성된 지역아동보호위원회(ACPC)이며 이 단체는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실무를 맡고 있다.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요원과 자원봉사요원들은 1986년 정부에서 설립한 아동학대 관련 중앙연수원에서 전문적인 연수를 받는다. 연수과정에는 보건방문요원, 지방정부의 사회사업가들을 위한 아동학대의 인식과 전문기관 의뢰, 성적학대에 관련된 의료적 치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베르나르도(Barnardo's UK)

베르나르도(Barnardo's UK)는 영국에서 아동보호를 위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1866년 토마스 베르나르도(Thomas Barnardo)

에 의해 창립된 이 기관은 런던의 빈민촌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영국 전역에 8개의 지역본부에서 5,000명의 유급직원, 25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창립된 수 현재까지 약 170여년의 기간 동안 보육원을 영국 전 지역에 확산시키고 가정위탁제도를 개발·보급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으며 현재는 아동의 성 착취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약 300종류의 아동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년 동안 1억 파운드의 예산이 소요된다. 1억 파운드 중 5천만 파운드는 정부예산으로 충당되며, 나머지 5천만 파운드는 자체 모금활동으로 조성된다. 자체 모금활동을 위해 전국에 수백 개의 자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베르나르도 단체의 주요업무는 입양, 가정위탁 등의 가족지원업무, 약물남용문제, 보건교육 등의 보건업무, 지역센터 운영 등의 지역사회업무, 행동장애 아동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정학·퇴학처분을 받은 아동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업무 등이다.

3) 전국아동에대한잔혹금지협회(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아동보호를 위한 영국의 대표적인 민간기관으로 전국아동에대한잔혹금지협회(NSPCC)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정서적 학대나 방임에 이르기까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기관이나 전문가들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일과 학대를 받고 있거나 학대를 받을 위험한 상태에 처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소송절차 등도 담당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부모로부터 아동을 격리시킬 수 있는 유일한 민간기관이다. 학대받은 아동위한 Help-line을 운영하여 아동학대 사례를 개입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연구 및 조사활동, 전국규모 모금 활동, 전국 140개

이상의 아동보호팀과 함께 프로젝트 진행, 정부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중요의제로 다루도록 압력행사, 아동복지 실무자에게 교육 및 훈련,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한다.

4) 아동과 여성학대 연구소(Child and Woman Abuse Studies Unit,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런던 대학의 부설 연구소인 아동과 여성학대 연구소(Child and Woman Abuse Studies Unit, CWASU)는 영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학대에 대해 조사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각종 연구를 토대로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1987년에 설립되었다. 특히, 여권주의적 관점에서의 조사방법론, 이론, 실천방법 및 성폭력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 뿐 아니라 정책개발, 훈련프로그램 개발, 자문, 네트워킹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아동과 여성학대 연구소(CWASU)의 명성은 영국 내에서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최근, 영국의회로부터 전 세계의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와 대학생에게 훈련과 지침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았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정폭력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평가, 성폭력 가해자 등록 및 지역사회 신상공개에 관한 검토,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에 대한 연구(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및 경험 등),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자기훈련매뉴얼 개발, 유럽 아동 성착취에 대한 조사, 성폭행 사례의 고발과 조사에 대한 연구 검토, 성인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자기방어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5) 유괴아동지원센터(Reunite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Centre)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아동유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자선단체로서, 1986년에 조직되어 1990년에 자선단체로 등록되었다.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일부는 정부로

부터 지원 받으며, 또 다른 일부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특정한 연구사업을 의뢰 받음으로써 예산을 지원받는다. 아동유괴는 형사범죄 행위든, 아니든 간에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는 철학 아래 아동이 유괴되었거나 유괴될 위험에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주요사업으로는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및 정보제공, 아동유괴에 대한 가이드(Child Abduction Prevention Guide)제공, 조언 및 훈련 제공 등이 있다.

2. 아동보호체계의 기능과 역할

가. 학대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영국에서의 아동학대의 법률적 정의를 살펴보면, ‘육체적 손상, 지적·정서적·사회적 또는 행동의 발육의 손상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법률에서는 그 문제가 아동의 건강 또는 발육에 손상을 입히는지, 그리고 그 손상이 심각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비슷한 동등한 아동과 비교해야만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전국아동에대한잔혹금지협회(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NSPCC)에서는 아동학대를 아동들에게 필요 없거나 과도한 신체적 고통을 부당하게 안겨주는 모든 처치 또는 행위, 그리고 그 결과로서 생명, 신체의 부분에 해가 오거나 희생이 강요되는 행위 및 도덕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행위, 아동의 생명연장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의식주의 해결 및 양육환경의 제공을 소홀히 하는 행위, 무리한 시간대나 날씨에 아동들을 부적절한 상행위의 목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 아동의 취업이 부적합하여 인격적인 손상, 불법 또는 부도덕하다고 규정될 수 있는 행위, 아동의 신체적 능력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중노동, 또는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그리고 아동들을 구걸 행각에 내보내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동일한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민간단체인 전국아동에 대한잔혹금지협회(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나 지방정부 등에서 신고전화를 함께 받는다.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신고의무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장조사는 지방 정부 소속의 사회복지사에 의해 수행되며, 현장조사가 끝나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아동보호위원회(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에서 사례회의를 개최한다. 사례회의를 통해 현재 아동이 처해있는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며, 사례담당자를 결정한다. 또한 아동보호등록대장(Child Protection Register)에 아동을 보호아동으로 등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례개입 과정에서 아동의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며, 더 이상 개입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아동으로 등록된 파일을 삭제한다.

아동학대 초기 조사 시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 경찰의 경우 43개의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구청별 지역방문간호사제도가 운영되어 의료적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국(Social Service Department)과 경찰, 전국아동에대한잔혹금지협회(NSPCC)에게 있으나 현재 전국아동에대한잔혹금지협회(NSPCC)는 격리 권한을 거의 행사하지 않고 있다. 아동을 격리할 때 긴급 아동학대사례인 경우에는 경찰이 임의로 분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72시간 내에 판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실시하는 의료적 검사도 판사의 승인 후 실시되는데, 여러 기관에서 아동을 여러 번 검사할 경우 그 자체가 아동에게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 한번만 시행되도록 하고 있다. 아동보호에 관한 법

률은 반드시 가정법원에서 다루게 규정되어 있다.

부모로부터 격리된 아동은 대부분 위탁가정에서 보호된다. 장기보호가 결정되어 아동이 원가정에서 격리보호 되더라도 지역아동보호위원회(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는 아동에게 해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과 부모간의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보호기간 동안의 모든 보호내용과 상담에 대해서도 부모와 아동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정기적으로 경찰에 자진 출두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학대행위자가 거주지를 옮길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 아동학대사례에 개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관련 기관간의 파트너십 또는 협력체계라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와 관련 있는 기관들은 사례의 진행상황을 함께 공유해야 하며, 사례 개입을 위한 전략도 함께 논의하고 행동지침에 대해서도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아동보호위원회(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 역시 관련기관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영국의 중앙정부의 담당 부처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이다.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중앙정부 역시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기관을 설치하고 지도·감독하는데 사회감독관(Social Services Inspectorate)을 설치하여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Social Services Department)에 대한 감독 및 조언을 하고 있다.

특히, 보건부는 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자질향상과 아동보호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을 제공한다. 훈련의 목적은 모든 전문직들이 아동보호 사업의 전반적인 틀을 이해하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역할과 책임을 각 전문 집단이 모두 적절히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훈련은 1986년에 설립된 아동학대 관련 중앙연수원에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아동학대와 관련된 실질적 업무를 보건부의 하위조직인 아동안전국(Head of the Children's Safeguard Unit)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아동안전국(Head of the Children's Safeguard Unit)은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중앙정부차원의 기구로 내무부, 교육기술부 내에 있는 아동학대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아동안전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경찰,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포함되는 협력기관에 대한 협력지침(Working Together)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이다. 이 지침은 1989년 아동법의 구체적인 시행법규라고 할 수 있는데, 세부내용에는 학대예방 및 부모방임에 대한 교육, 특별한 상황에서의 아동보호, 공동협력에서의 중요원칙, 관련분야간의 교육과 개발, 아동을 상대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협력지침에 근거하여 학대아동의 보호는 지방정부와 가정재판소 판사를 통하여 긴급보호명령, 아동사정명령, 보호명령, 감독명령을 받아 이루어진다.

- ① 긴급보호명령: 긴급한 상황에 처한 아동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안전명령으로 아동이 학대로 고통 받고 있다고 믿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지역당국과 전국아동에대한잔혹금지협회(NSPCC)의 사회사업가들이 신청한다.
- ② 아동사정명령: 긴급보호명령과 같은 긴급 상황은 아니나 아동의 학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충분한 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기간이 7일로 제한되어 있다.
- ③ 보호명령: 보호명령이 내려지면 지역당국은 부모와 보호자에게 책임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지역당국은 양육인이 법적인 지위를 잘 숙지하는지, 지역당국과 연락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숙지시켜야 한다. 일단 보호명령이 내려지면 지역당국은 권한 행사에 대한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18세 전에 취소하지 않는 한 지속된다.
- ④ 감독명령: 감독명령은 아동뿐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보호자 역할수행인에게 요구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정된 시간동안 지정된 곳에서 살아야 하는 것, 아동이 주기적으로 가족지원센터(Family

Center)를 방문하는 것, 치료에 참여하는 것 등이 있고, 보호자에게는 아동이 앞에 열거된 것들을 잘 따르고 있는지, 부모와 아동이 정기적으로 가족지원센터(Family Center)를 방문하고 있는지 등이 해당된다. 감독 명령 하에 이루어진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감독은 많은 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감독명령은 18세가 되면 자동 소멸된다.

나. 시설보호 및 자립지원

영국에서 아동에 대한 시설보호는 1970년대 전까지는 사회사업가가 있는 수용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장기수용의 부정적 결과로 퇴소 이후 사회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없다는 단점으로 인하여 입양이나 단기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도록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시설보호의 대상은 노인, 지체 또는 정신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 등으로 구분하며, 다시 대상별로 시설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그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살펴보면, 지방정부가 아동법에 의하여 설치한 지역시설, 영리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등록된 아동시설, 자원단체가 운영하는 자원아동시설이 있다. 그리고 기숙학교가 있는데 이는 1994년 1월 이후 사립학교에서 3명 이상 아동을 1년에 295일 이상 숙소를 제공하면서도 교육법에 의한 특별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로 승인받지 않고 아동시설로 등록한 곳이다.

이들 중 일부는 공적 자금을 지원받고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며, 또 다른 일부는 공적 자금과 개인 자금의 혼합 형태로 운영 된다. 다양한 연령의 아동을 수용하며, 신체장애나 발달 또는 행동 문제를 가진 특수집단의 아동을 돌보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아동양육 시설은 친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거나 새 가족에게 배치되지 못한 아동을 위해 장기간 양육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실제로 단기간 배치의 수요량이 아이를 양육하려는 가정의 공급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시설은 종종 단

기간 보호와 장기간 보호의 욕구 둘 다를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영국의 시설보호 양상은 변화하고 있다. 영국 시설보호의 가장 큰 특징은 시설보호 아동의 수가 점차 감소한다는 것이다.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시설에서 양육되는 것은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생후 1년 이내의 아동이 8개월 이상 대규모 시설에서 자라는 경우 사회성, 운동성, 언어 발달에 있어 지체 현상을 보인다는 연구와 일부 시설에서 아동이 착취와 학대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알려졌다. 동시에 요보호 아동에 대한 예방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면서 시설보호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공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지고 시설보호가 아동의 요구에 따라 전문화되어야 되고 지역별로 특색 있게 배치되어야 된다는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다. 위탁가정지원

가정위탁보호는 자신의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위한 일시적, 포괄적 서비스로, 아동을 일시적으로 건강한 가정에 위탁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함으로서 가능한 모든 아동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가정위탁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보호의 극대화,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 아동이 친부모와 재결합 할 수 없을 때 위탁아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위탁부모나 다른 가족에게 입양되도록 하거나, 위탁아동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영국은 19세기 이후에 요보호아동들을 빈민이나 부랑인 시설에서 분리하여 따로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작업장에 수용된 요보호 아동을 성인들과 분리하여 요보호아동을 위한 소규모의 그룹홈, 주거홈 등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현대적 의미의 가정위탁보호는 1948년에 아동법 제정의 기초가 된 커티스 위원회(The Curtis Committee)의 영향이 크다. 커티스 위원회의

보고서는 요보호 아동을 위한 서비스는 가정위탁 보호가 시설보호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가정위탁 보호에 의한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조건을 선호하였다. 1948년 부모들이 돌볼 능력이 없거나 돌보지 않는 모든 아동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규정한 아동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의 발달에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하였다. 개정된 아동법은 요보호아동을 위한 보호 방법으로서 시설 보호보다는 지역사회내의 가정위탁보호가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아동들은 대규모시설에서 퇴소하여 위탁가정에 배치되었다. 영국의 경우 1950년대에는 요보호아동 중 약 35%가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었으나 1995년도는 약 65%(31,500명)로 증가하였다. 현재 영국 내에 위탁 가정 수는 27,000으로서 약 31,500명의 아동이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다. 특히 연령이 10세미만인 아동의 경우는 약 90%가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 가정위탁은 기본적으로 단기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약 40~50%의 아동이 12주 이내에 가정으로 돌아간다. 특히, 10세 미만의 아동 중 약 50%가 위탁가정에 입소한지 평균 14일 정도 만에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보호 된 아동의 약 1/3은 8주에서 2년까지의 중기간의 보호기간을 가지며 약 15%정도의 아동들이 영구적인 보호 또는 장기간의(2년 이상) 보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위탁가정에 머무르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정에 되돌아가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사업국의 조사에 의하면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의 12%는 3회 이상 위탁가정을 이동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아동이 문제가 많을수록 그리고 오랜 기간 위탁가정에 머무를수록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아동의 잦은 이동은 위탁가정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와 배치, 부적절한 아동보호계획, 그리고 위탁가정의 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이점에서 가정위탁의 기본적 전제는 위탁보호의 수준이 자신의 친부모에 의한 양육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아동이 가정 분위기에서 보호됨으로써, 친부모와 영구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발달적인 손상을 줄이려는데 의의가 있다. 선진외국에서는 아동 자신에게 발달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해당 전문성을 갖춘 위탁가정에게 위탁보호를 하기도 하고 아동이 직업적 능력을 연마하여 사회적으로 자립하는 동안 고용 위탁되기도 한다. 가정위탁보호는 입양의 전단계로 활용되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가정이 해체되었거나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들은 위탁보호시행령(Foster Placement Regulations)에 따라 지방당국이 위탁보호를 알선하며 요보호아동의 약 60%가 위탁가정에 배치된다. 위탁가정은 지방당국의 승인을 받아 아동을 보호 양육하며 아동보호에 대해 지방당국에 서약서를 제출한다. 예를 들어, 북아일랜드에서는 가정이 해체된 아동들에게 가정의 경험을 주기 위해 시설보호 보다는 가정위탁보호를 강화하여 1997년까지 가정이 해체된 요보호아동의 75% 이상을 시설이 아닌 가정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요보호아동 가운데 15%의 아동만이 시설에 배치되고 77%의 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치되고 있다. 북아일랜드의 1968년에 제정된 아동·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은 청소년원 또는 직업학교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지방당국은 공적 보호하의 아동들을 6개월마다 관찰할 의무를 지니며 각 아동 당 3명의 심의관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보호되어야 하나 요보호장애아는 적절한 위탁가정을 알선하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 장애아들의 위탁가정보호가 성공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국이 그 책임을 지고 있으나 민간단체들도 장애아를 위한 전문적인 위탁가정 알선에 노력하고 있다.

1981년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그리고 1980년의 스코틀랜드 교육법은

장애아 특수교육의 수준을 향상시켰다. 1989년의 아동법은 장애아들을 장애유형별로 대리보호 할 것을 규정하였다.

위탁가정의 자격기준으로는 위탁모의 연령은 31~55세이어야 하고, 두 명의 부모가 모두 있어야 하며, 부모 중 한 명은 집에 있어야 되었고(최근에는 맞벌이 부부도 가능), 부모가 정규직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되고, 위탁되는 아동보다 더 나이가 어린 아동이 있어서는 안 되며, 3개 이상의 침실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어야 한다. 위탁부모의 아동학대 기록, 가정폭력 기록, 범죄기록, 약물중독 등에 대해 경찰이나 관계기관의 기록을 통하여 필수적으로 조사하고 그 외에 아동을 위한 방, 부모의 성장배경, 아동양육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며 부모가 위탁가정으로 적합한가를 보증하는 가까운 몇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위탁가정조사는 위탁가정운영 기관이나 지방정부단체의 사회복지사가 위탁가정을 신청하여 위탁가정으로 선정되기까지는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위탁가정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게 된다. 위탁가정으로서의 교육이 끝나면 주 정부에서 발급하는 위탁가정 교부서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심도 깊은 조사와 훈련을 받은 후에 위탁가정으로 선정됨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의 위탁가정에의 부적응, 위탁가정을 자주 옮기는 것, 그리고 위탁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등이 심각한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모두 다양한 형태의 좋은 위탁가정을 선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위탁가정의 날 등과 같은 지속적인 홍보와 정기적인 오리엔테이션 등을 갖고 있다(허남순, 2000).

1) 위탁 수당의 지급

아동을 위탁 보호할 때 위탁가정은 아동의 생활비를 충당할 급여를 받게 된다. 또한 아동이 다시 친부모 곁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가정은 아동과 친가족에게 항상 우호적으로 대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회사업가들은 이런 관계를 유지시켜 주려고 노력한다. 즉, 사회사업가는 위탁아동과 위탁가정, 그리고 친부모간에 상호 신뢰를 쌓고 거리낌 없는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담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한국수양부모협회, 2001).

위탁 서비스는 저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형성되었다. 초기에 위탁 양육자는 시설보호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정을 제공해주었던 자원봉사자였고, 위탁은 밖에서 일하지 않았던 여성들을 위한 취미활동으로 간주되었다. 1980년 말, 영국에 위탁된 아이들의 비율이 1980년 37%에서 1991년 57%로 증가하였다. 2002년 영국의 약 2/3의 보호대상 아이들이 위탁되었다. 현재 위탁 양육자들은 보호시설에서 심각한 어려움과 복잡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많은 아동을 돌보고 있다. 위탁된 아이들을 돌보는 비용은 아이의 생계 유지비를 위해 지급되는 지급금의 형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위탁 서비스에 의해 정해진 지급금만으로 아동의 양육비용을 충당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위탁서비스 수당은 위탁이 복잡하고 전문화된 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불되는 것이다. 위탁서비스 수당은 부모로서의 역할, 전문적 지식, 훈련, 경험에 대한 보수이다. 영국의 경우 아동을 위탁 양육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주는 위탁양육은 거의 없었으나 최근 위탁에 대한 성격이 부분적으로 변화하였고, 위탁을 다루는 독립적인 기구의 성장으로 위탁 양육자들에게 위탁에 대한 수당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위탁 양육자들은 여전히 아동에 대한 생계 유지비만을 지급받고 있다.

위탁 양육자의 약 17%가 친족과 친구에 의한 위탁 양육자이고 이러한 유형의 위탁양육자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친척들에 의해 특수아동을 위탁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들 위탁 양육자들은 대부분 아동의 생계 유지비는 지급받기를 원하지만 그들 자신을 전문적인 위탁 양육자로 생각하지 않으며, 위탁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도 생각하

지 않는다. 위탁에 대한 수당은 비혈연 위탁 양육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2004년 영국 위탁가정에 대한 위탁가정협의체(The Fostering Network) 조사에 따르면 약 49%의 위탁 양육자들이 양육에 따른 일종의 보조금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위탁 양육자의 3/4이 일주일에 200파운드 이하를 지급받으며 거의 40%는 일주일에 100파운드 이하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위탁 양육자들은 아동의 복잡한 욕구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양육자이지만, 수당은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의 위탁 양육자들은 사회 보호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가정위탁서비스에 관한 한 연구에 의하면 위탁수당은 위탁에 대한 수당과 아동의 생계비 사이에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위탁 양육자의 의사결정과 책임을 불분명하게 하고, 아동의 생계비 지급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불분명한 경계가 위탁양육자들에게 개인연금을 계획하고, 용자를 얻거나 이직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위탁수당이 아동과 위탁 양육자간에 불공평함을 피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위탁가정협의체(Fostering Network)에 의하면 위탁수당은 최소 임금과 적어도 동등한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양육기준법(The Care Standards Act, 2000)과 전국위탁서비스최소기준(The National Minimum Standards for Fostering Services, England)의 29조 1항에 나온 위탁보호의 표준 기준에 의하면 모든 위탁 양육자는 위탁된 아동을 돌보는데 지불된 모든 비용과 수고비를 규정비용에 의해 지급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양육기준법(The Care Standards Act, 2000) 9조의 위탁가정지정 서비스(Foster Care and Family Placement Services)에 의하면 위탁양육자는 위탁된 아동을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할 지급금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은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동을 돌보는데 필요한 비용에 기초하여 정해진다. 한편, 위탁가정협의체(Fostering Network)는

1988년에 최초로 최소권고 지급금을 공표하였으며, 최소 권고 지급금은 매년 상향조정된다.

〈표 4-1〉 영국의 위탁수당 수준

(단위: 파운드)

연령	2003/2004년 주당 권고 지급금
0~4세	105.74
5~10세	120.45
11~15세	149.94
16세 이상	189.48

단기간 아동을 위탁하는 위탁 양육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기본적인 생계비인 직접경비 이외에 부가적이지만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간접경비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간접경비의 내역은 주로 교통비, 생일이나 기념일, 특수아동 보호비, 회의 참석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위탁가정협의체(The Fostering Network)의 최소 권고 지급금은 가정위탁을 실시하는 필요한 직접비용과 추가 비용 또는 간접비용으로 구성된다.

라. 입양지원

친부모와 재결합할 희망이 없는 아동에게는 입양을 알선하고 있는데, 입양관련법에는 1976년의 입양법(Adoption Act), 1983년 입양기관 시행령(Adoption Agencies Regulation), 1984년 입양세칙(Adoption Rules), 그리고 1989년의 아동법(Children Act) 등이 있다.

영국위탁입양기관(British Agency for Adoption and Fostering)은 대표적인 전문 입양 알선기관이며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부모맺기운동(Be my Parents Program)을 전개하고 있다. 1991년 5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정보호의 일환인 입양아를 위한 친가

연결프로그램(Adoption Contact Register)이 입양아와 그의 친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접촉을 용이하게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매년 약 6천명이 입양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1세 미만 5%, 1~4세 26%, 5~9세 38%, 10~14세 24%, 15~19세 7%로, 10세 미만의 아동이 전체의 64%를 차지한다(이영찬, 2000).

양부모의 자격은 결혼한 부부 또는 독신자로서 25세 이상이어야 하나 입양을 원하는 아동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21세 이상의 자도 가능하다. 다만, 독신 남자가 여아를 입양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연간 입양아 8천명 가운데 2천명은 이미 이전에 대리보호를 받던 아동들이며 입양아 가운데 심신장애아가 입양이 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 양부모는 위탁가정에 지급되는 수준의 입양아보호에 따른 생계비수당을 지원 받고 있다.

영국에서는 18세 이하의 아동이 입양이 가능하고 일단 입양이 되고 나면 출생가족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불가능 하다. 입양과정은 아동의 출생가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입양을 통해 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입양가정에게 이양된다. 입양이 되고 나면 출생부모는 아동에 대해 더 이상 법적 권한이 없고, 아동을 다시 되돌아오게 할 자격이 없다.

아동 이익의 최우선의 원칙(Best Interests of Child)이 입양기관과 재판에 의한 모든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수용되고 있으며, 입양기관과 재판에 의한 결정 과정에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종교, 인종, 그리고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배경이 결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법원이 입양을 승인하기 전에 부모가 가지는 책임과 권리는 법원이 그렇게 할 만한 증거와 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부모의 동의와 무관하게 법원에 의해 면제된다.

1) 입양신청(Freeing)

법원 입양신청서(Freeing)는 지방 정부의 입양담당 기관에 의해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승인 후 모든 부모의 책임과 권리가 출생 부모로부

터 박탈된다. 한편, 지방 당국이 부모의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는 출생 부모와 양부모 사이에 논쟁적인 입양 사례를 피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도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은 지방 당국이 아동보호에 대한 특정한 의무를 가지는 아동들로, 정부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아동들의 복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다.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격리될 때, 지방 당국은 아동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집으로 보내는 것을 포함한 조치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작업은 영속성계획이라고 불린다. 만약 아동이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없다면, 어떻게 집으로부터 떨어져 장기의 영속적 계획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영국의 입양은 크게 기관 입양과 친척 또는 계부모 입양(relative and step-parent adoptions)으로 나누어지면, 구체적인 입양자격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입양자 대한 연령 상한제한은 없지만 입양기관은 아동의 발달과정을 고려하여 입양자격 평가에 연령을 고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연령상한 제한은 없지만 연령하한에는 제한이 있어, 21세 이하는 입양할 수 없다(예외적으로 18세 또는 그 이상의 친부모는 자신의 아동을 자신이 배우자와 함께 입양 할 수 있다. 계부모 입양에서 계부모는 그 아동을 보호하고 입양에 동의하는 출생 부모와 결혼 사람이라면 계부모는 입양할 수 있다.). 또한 입양자의 혼인상태는 결혼한 부부이거나 독신이어야 하며, 결혼하지 않은 동거커플은 입양할 수 없다.

2) 입양 절차

입양대상자는 신청서가 작성 당시, 18세 이하의 결혼하지 않은 아동만 입양될 수 있다. 또, 기관입양이나 계부모 입양에 관계없이 모든 입양대상 아동은 적어도 한 살 이상이어야 하고 양부모 둘 다 혹은 한명과 적어도 1년 이상 동거했어야만 한다.

입양기관은 아동의 항구적 보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사례회의를 위하여 입양 패넬을 구성해야 한다. 기관의 의사결정자는 입양을 진행시

킬 건지 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 기관에서는 아동의 입양에 결정을 위해 시간을 가지고 출생 부모와 다른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만약 출생 부모가 일정한 시간 내에 아동의 입양에 동의하면, 기관은 계속하여 입양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에 입양 신청은 법절차에서 가능하다.

아동을 입양을 하면, 입양 부모는 법적인 부모가 된다. 입양 후부터 아동은 부모의 성을 따르고, 친자식과 똑같이 재산이나 권리를 상속 받는다.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는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어떤 권한이나 책임도 없게 된다. 입양은 인생에 있어 중대한 결정이므로 완벽한 법적 검토 후에 고려되어야 하며, 입양신청 이전에 변호사와 입양신청에 대해 상의하거나 입양 배심원단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영국 아동보호체계의 시사점

영국의 아동보호체계는 아동보호의 임무가 국가와 개별 가정의 공동 책임이라는 기본적 합의에 바탕한다. 특히, 다양한 아동보호서비스 가운데 가정위탁의 경우는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역할이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아동에 대한 책임을 중앙정부의 행정조직 안으로 포함시켰고, 아동과 관련된 기존의 여러 위원회의 업무를 지역사회 책임분야로 이전하였다. 아울러 자격을 갖춘 아동복지사를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하였다. 또 아동보호의 탈시설화, 대리 양육보다는 친부모에 의한 원가정 양육을 권장하며,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보호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입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시설종사자의 전문화, 아동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등도 특징적이다.

첫째, 영국의 아동보호는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어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가족의 책임을 강조한다. 가정위탁의 경우에도 국가에서는 위탁부모들이 위탁아동에게 양질의

양육과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고, 위탁보호자들에 대한 개인기록을 작성하여 위탁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회적인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방법을 도입해야만 한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위탁보호자의 교육 욕구 및 실태에 대한 검토와 차별화된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위탁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영국의 아동보호체계는 위험에 처한 아동을 파악하고 전문가들 간의 상호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절차를 만드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기관들 간의 협력의 필요를 수용하지만 특히 영국은 각 전문분야 협력이 보다 확고하고 모든 수준에서 확실하게 수립되어 있다. 또한 지방기관들과 중앙정부 간의 협력체계가 정부지침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 사례로 보건부, 내무부, 교육기술부 등 관련부처가 함께 작성하는 지침인 협력지침(Working Together)은 아동학대 관련기관들이 원활하게 협조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지역의 아동관련 기관들이 아동보호를 위해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에 대해 매우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아동관련 기관들이 함께 협조하며 사례에 개입하고 있다.

셋째,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있어 현장조사와 사례판정, 보호조치는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상담 및 치료 등의 서비스는 전문민간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 아동학대신고는 민간기관과 함께 접수받고 있기는 하지만 민간기관에서 신고 받을 경우에도 반드시 지방정부에 알려야 하며,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보호조치는 모두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신고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민간기관에서 모두 담당하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각국에서의 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분담은 현장조사 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학대행위자를 대응하는 민간기관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이는 곧 상담 및 치료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동보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었다.

넷째, 아동보호 관련법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아동보호사례에 개입하고 있다. 특히,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바로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즉각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구체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는 아동을 격리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도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격리된 아동에게 학대행위자인 부모가 접근할 경우에도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미약한 우리나라와 비교해볼 때 크게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아동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체계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그 가족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찰, 법원, 지역사회, 민간단체 등 다양한 체계의 협력아래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3절 스웨덴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및 주요 쟁점

스웨덴은 1793년에 제정된 구빈법에 의해 부모를 잃은 아동을 포함한 요보호자들을 구빈원에서 수용·보호하기 시작했으며 근대적 의미의 아동보호서비스는 1902년의 아동복지법 제정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아동복지법은 1934년 제정된 청소년보호법과 함께 아동 및 청소년복지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어 1956년에 종래의 구빈법을 공적부조법으로 개정하여 요보호자를 위한 생활보호를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1963년에는 국민보험법의 제정에 따라 16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오늘날의 스웨덴의 사회복지에는 1981년에 입법화된 사회사업법을 근간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렇듯 스웨덴의

사회복지의 변화와 발전에 영향을 받은 아동보호서비스는 안전하고 적절한 성장 환경에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아동을 지도하는 일과 이를 통해 자녀를 가진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는데 그 목적을 두는 데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전국 284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아동보호체계를 구성·관리하고 있으며, 보호서비스를 기획·전달한다. 이러한 보호체계의 운영 및 보호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재원은 지역별 지방정부예산과 중앙정부의 보조금 및 지역사회 후원금 등으로 충당된다(김현용 외, 1997). 아동의 연령을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스웨덴의 아동·가족복지정책은 아동수당, 아동건강보호, 고도의 유아교육 및 학교교육과 같은 일반적인 조치와 요보호아동 및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보호와 같은 특별조치 등이 대표적이다.

1. 아동보호체계의 특성

가. 아동보호관련 법적·제도적 환경

1793년에 제정된 구빈법에 의해 고아를 포함한 요보호자들을 구빈원에서 수용·보호하기 시작한 것을 시발점으로, 아동에 대한 스웨덴 정부의 관심은 1902년 아동복지법 제정으로 이어져 근대적 의미의 아동보호가 시작되었다. 특히, 아동복지법은 1934년 제정된 청소년보호법과 함께 아동 및 청소년복지의 기초가 되었으며, 1956년에 종래의 구빈법은 공적부조법으로 개정되어 요보호자를 위한 생활보호장치가 되었다. 스웨덴의 아동보호관련 제도는 단일의 법 또는 제도로써 발달한 것이 아니며, 인권보호운동의 전개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같은 아동을 둘러싼 환경요인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맞물려 수립·시행되고, 조정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UN의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 Act)과 아동보호특별법(Care of Young Persons Special Provision

Act)은 아동이 성장·발달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고려를 하고 있다.

아동보호특별법은 아동폭력과 관련한 소송에 있어 국선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모든 법적 문제와 관련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에 의해 제공이 되며 아동이 법률자문을 얻을 경우 비용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 이는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경우, 그 권리의 회복에 있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동 법에 근거하여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에는 후견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도 아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보호서비스가 제공되며, 이는 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주22)}

아동보호체계와 관련된 단일 법령을 마련하고 있지 않 으면서도 아동 권익의 최우선 원칙(Best Interests of the Child)이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달 및 일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이유는 모든 법령에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아동보호특별법에 아동보호체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 규정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일반 시민과 따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동을 포함한 모든 시민은 사형과 태형 및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기본권과 자유권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주23)} 뿐만 아니라 스웨덴 형법은 불법적 간섭과 위협, 폭력 등과 같은 아동폭력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기본법 상에서 아동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폭력행위의 처벌에 대한 전반적인 규범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동관련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을 규정한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아동보호특별법 이외에 다른 개별법에 의해

주22) 아동의 연령이 15세 이상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 본인 스스로의 동의 하에 보호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주23) 폭력은 불법적인 자유의 박탈, 폭행, 강제 착취, 불법적인 협박, 간섭, 명예훼손, 모욕감을 주는 행위 및 성추행 등이 포함됨.

서도 아동의 권익이 보호된다. 부모자법(Children and Parents Code)에 따르면 아동은 개인적 성향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으며, 신체적 처벌이나 다른 굴욕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와 무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법 5조 1~3항은 이러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에 따른 모든 아동보호 서비스는 아동과 그 가족의 협력을 원칙으로 자원봉사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제공된다.

또한 불법행위책임법(Tort Liability Act)의 규정에 의하여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사회체계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여기서 완전한 보상이란 신체적, 정서적 고통 또는 영구적인 장애 및 상해와 같은 비금전적인 피해를 포함하며, 피해 아동은 형사상해배상법(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ct)에 따라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국가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형법조항에 준한다. 형법 3조, 4조 및 6조는 평소 안면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반복적 폭력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면, 가중 폭력에 해당하는 형벌인 최소 6개월에서 최대 6년의 구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가해자는 폭력 행위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사건의 정황에 따라 형량은 경감될 수 있다. 한편,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유해 매체에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범죄적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입법 내용은 모든 종류의 매체에 적용되고 있으며, 인터넷 등의 정보 환경에도 적용되고, 아동 포르노 영상물의 수출입도 금지된다. 아동 포르노 범죄에 대하여 최대 2년간의 구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만일 그 범죄가 본질상 사소한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가중 포르노 범죄의 경우 6개월 이상 4년 이하의 구금형이 가능하다. 이때 가중범죄인지의 여부는 범행의 규모 및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그리고 동 행위의 잔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형법 16조 10항 또한 유해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 법 16조 12항에 따라 아동에게 협박성 사진, 글, 기타 기술적 기록을 배포하는 사람도 벌금형에 처하거나 최대 6개월의 구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영상심의국가위원회(The National Board of Film Classification)는 조사법(Act on Examination)과 영상물에 관한 규제 하에서 공공전시를 목적으로 한 영상물을 사전 조사할 권한을 가짐으로써 아동 포르노에 대한 제재 기반을 갖는다.

방송법(Radio and Television Act)에서는 폭력, 잔인한 장면, 포르노 이미지의 명확한 묘사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은 방영 전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동이 쉽게 볼 수 있는 시간대에 상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마련하여 간접적인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밖에 미디어폭력위원회는 아동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매체의 영상물, 게임 등의 위험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동보호에 관한 스웨덴의 법적 여건은 서서히 변화 및 진화를 겪어왔는데, 최근 이루어진 변화는 우선 1999년에 아동학대방지위원회(Committee on Child Abuse)가 발족되면서 학대받거나 착취상태의 아동 및 폭력발생 등의 유사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해 강제 조사권을 갖게 된 것을 꼽을 수 있다.

또한 2001년에는 예비수사절차와 관련한 규정을 발의했는데, 이는 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18세 이하이거나, 사건 자체가 피해자의 삶, 건강이나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 예비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2001년 아동학대방지위원회는 학대 및 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 원가정의 가

족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협력과 연계를 구축하는 법적 체계를 정비하였다. 이어서 2002년에는 아동보호특별법이 제정되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아동보호서비스의 제도적 측면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 수는 1960년대에 비해 크게 늘어 약 50배에 달하고 있으며 투입되는 예산도 GDP의 2.4%에 이르고 있어 아동보호서비스의 규모가 상당히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주간보호서비스가 확대되어 1992년 현재 6세 아동 전체의 96%, 5세 아동의 63%, 4세 아동의 58%가 탁아소나 파트타임그룹, 기타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여가활동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다. 한편 병원에 입원중인 아동들을 위한 놀이치료, 유아교육, 여가활동센터 프로그램 등이 확대되어 있다.

나. 아동보호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

스웨덴은 아동보호서비스를 공공부문에서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복지국가위원회(the National Board), 시설보호국가위원회(the National Board) 등을 중심으로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호서비스의 전달을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각급 학교, 자원단체들이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

1) 보건복지국가위원회

보건복지국가위원회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평가센터(Center for Evaluation of Social Services)운영하는데, 동 조직은 스웨덴 국민의 삶에 있어 가장 폭넓은 영역에 걸쳐 복지적 중재(intervention)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식된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평가센터(Center for Evaluation of Social Services) 프로그램은 스웨덴에서 운

영하는 대표적인 아동학대 보호프로그램을 사회서비스 및 의료보호 시스템과의 협력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의 결과 중 하나는, 실질적인 학대아동의 보호, 단순한 의료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보호와 치료, 상담 그리고 재활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거주 지원 및 취업기술 훈련이나 취업알선 목적의 중재와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 보건복지국가위원회(the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는 아동육구의 강조(Children's Needs in Focus)라는 아동학대 사례 판정·사정, 치료 및 보호 계획과 평가를 포함하는 포괄적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즉, 아동의 보호육구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아동을 위한 전문인력 보충 시스템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다. 이는 아동복지 분야의 일원화된 사정(assessment), 계획(planning) 및 평가(evaluation) 시스템을 개선하여, 개별아동의 욕구 및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동 프로그램은 영국 아동보호시스템(British Looking After Children System)에 그 기원을 두고 스웨덴의 현실에 맞게 조정된 것인데, 크게 두 가지 하위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첫째, 사정, 계획 및 검토 시스템과 아동보호서비스를 위한 기초 통계의 개발과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다 정확한 사업계획 및 육구과약을 위하여 아동보호 관련 기초 통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통계생산 단위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몇몇 시범 도시만 활발하게 참여했는데, 프로젝트 참여 연구진 및 실무자에 따르면 2005년에는 아동보호 관련 국가통계 생산을 위한 과정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서 체계적인 지식생산과 서로 다른 지역의 교육·훈련, 조사 및 실습 영역에서의 효과적인 지식 보급을 창출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국가위원회가 정부에 의해 2001년 사회서비스에 있어 지식 개발을 위한 국가 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위임받았다.

한편, 보건복지국가위원회를 비롯하여 경찰국가위원회(the National Police Board), 교육국가위원회(National Agency for Education)가 곤란을 겪고 있거나 위협에 처한 아동과 관련이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 협력관계에 바탕한 연대 형태의 전략 입안을 위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협력전략은 특히 지역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학대, 착취, 폭력 및 부적절한 양육환경 하의 아동을 위한 가장 보호기능이 결국 지역사회에서 구성되고 전달 될 때, 그 효과성이 가장 높아질 수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사무국은 유관 기관이 협력하기 위한 법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사회서비스법, 보건·의료서비스법, 의료분야전문활동에관한법, 교육법에 이러한 협력과 관련한 조항 삽입이 검토되고 있고 경찰법에는 이미 이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2) 아동학대방지위원회

아동학대방지위원회(Committee on Child Abuse)에 따르면 10%의 아동은 때때로 가정폭력을 경험했으며, 이 중 5%는 종종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에는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환경을 바꾸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바로 여기에 사회서비스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3) 국가범죄조사부(National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NCID)

최근 정보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형태의 아동폭력 및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 방송매체와 인터넷 등을 통한 아동포르노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전담반을 조직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이 인신매매, 섹스관광, 아동 포르노, 아동성폭력 등에 연루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아울러 국가범죄조사부(National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NCID)는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정보 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폭력 피해 아동의 배경정보 등을 자료화하여 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잠재적 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에 효과

적으로 이용되며, 인터넷 등 기타 매체를 이용한 아동폭력 관련 자료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4) 아동 음부즈만제도

아동 음부즈만은 개인의 고충이나 불만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지는 않지만,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접수 될 때, 혹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서비스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사회서비스 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5)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는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 Act) 규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 또는 그 가정이 욕구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각인시키는 역할을 한다. 위험에 처한 아동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다른 관련 조직과 협력하게 되는데, 보건복지국가위원회(the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는 이러한 협력전략을 위해 정부에 의해 조직된 기구이다.

이러한 협력은 폭력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지지와 보호가 필요한 어느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정부와 보건복지국가위원회의 감독 하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는 전국의 사회서비스를 감독하는 국가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유럽형 복지모델의 선두가 되고 있는 스웨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큰 규모의 지역사회 그룹 및 단체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시스템에 관련시킴으로써 보호서비스 전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다. 아동보호체계의 모니터링과 평가

아동보호체계에 있어 모니터링은 아동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도구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미처 다루어지지 못한 사례, 또는 보호의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이에 대한 처방 및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아동보호 및 복지의 수준이 높고, 아동의 인권보장 수준이 비교적 높은 스웨덴이지만 모니터링 및 평가 부분에서는 보완 및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스웨덴은 아동이 위험에 처한 경우 신고 및 보고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고 및 보고에 대한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있다.

대표적인 모니터링 기구는 옴부즈만 제도이다. 옴부즈만은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접수받거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이 필요하다고 가정될 때, 사회서비스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즉, 사회서비스와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 것이다. 한편,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여러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위원회에 보고된 건수는 실제 폭력의 위험에 처한 아동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보고 비율은 보고 의무가 있는 집단간 차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낮은 수준이다. 이렇듯 보고 비율이 낮은 것은 첫째로,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법상 ‘보호’의 의미를 ‘아동이 보호를 필요로 할 때’로 모호하게 규정해 보고의무자가 보고 시기 등에 대해 판단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호’는 ‘보호 또는 지지’로, ‘아동이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아동이 보호 및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로 재정의 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아동학대 보고와 환류라는 것이 그 자체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는 점이다. 아동이 폭력 및 학대로 말미암아 인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이 추후 어떠한 조치를 받았는지, 2차적인 폭력 및 학대는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피해아동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이는 매우 개인적인 정보이므로 공적

으로 정보가 다루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사실상 보안법(the Secrecy Act(1980:100))은 사회복지위원회가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정보를 거리낌 없이 노출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서비스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대중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유치원과 초등교육, 아동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등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각 분야의 법규에 있어 보다 친밀할 것으로 가정하고 또 다른 집단보다는 그 분야에서 더욱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러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각 분야에 있어 아동폭력에 대한 신고의무를 지니게 되며 신고의무와 관련한 이슈는 관리계층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

신고의무를 소홀히 한 민간 종사자에 대한 잘못된 직권남용 방지에 대한 이슈 또한 제기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신고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사실은 중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형법상 공적인 직권남용 신고나 노동법 규정 하의 징계를 받도록 하는 등 보다 강화된 범주의 대응이 필요하다.^{주24)}

한편, 스웨덴은 아동과 사회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즉, 아동이 교육현장에서 삶의 조건과 자신의 권리, 학대 상황의 식별 등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고 인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온 것이다. 이는 아동이 인권을 인지하고 아동으로서의 자존감을 확립하여 학대 상황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스웨덴에서는 아동폭력 신고자나, 피해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정보유출이 조심스럽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동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용이하

주24) 실제로는 민간사업자가 신고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공적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지 않다. 따라서 아동폭력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또한 넓은 범주에서의 모니터링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과 아동 폭력 상황, 피해아동에 대한 폭넓고 깊은 이해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적절한 경험을 갖추고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들이 전문성과 폭넓은 수용성을 갖추고 협력하는 것은 높은 질의 아동보호서비스의 초석이 될 것이다.

라.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민간협력

스웨덴의 아동보호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단체는 아동권리사회(Children's Rights in Society, CRIS),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여러 아동인권 조직들이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비영리 민간 시민단체 사이에 공식·비공식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적기에 충분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

특히, 아동권리사회(Children's Rights in Society, CRIS)는 아동을 위한 신고전화인 핫라인을 운영하는데, 전화상으로 아동이 자신의 고민을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 내용 및 현황자료에 대하여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한편, 스웨덴 상속기금(Swedish Inheritance Fund)은 NGO 단체들로 하여금 아동과 장애인등을 위한 서비스와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스웨덴에서는 유언이 나 유족 없이 사망한 사람의 경우 재산이 국고에 귀속되는데, 이중 매년 약 20,000,000유로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해 활용된다.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위기에 노출된 아동을 지원하는 데에도 동 기금이 이용된다.

한편, 여름가족 프로그램(Summer Families Program)은 개별 지역사회

를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동학대 예방서비스 중 하나이다.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이 시골의 가정에서 방학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으며, 여름 캠프 등을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한 달간 지낼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도시의 저소득층에게 보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으나, 동시에 아동학대의 예방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즉, 부모에게 스트레스로부터 일시적인 해방감을 제공함으로 아동학대 및 가족해체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동 서비스는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걸쳐 저소득층 가정에게 그들의 자녀와 함께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면서 확대되었으나 최근에는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어 서비스의 전환이 요구된다.

한편, 결연자(Contact Person) 또는 결연가족(Contact Families)으로 불리는 자원봉사활동이 아동보호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들이 제공하는 결연서비스는 사회적 지지와 임시 보호의 혼합형태로 제공된다. 자원봉사자들은 매달 소정의 수당을 받는다. 부모들은 아동 양육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결연자로부터 받을 수 있어 의도하지 않은 학대의 발생을 예방하게 된다. 특히, 미혼모는 양육 기술의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기 위한 주요 서비스 대상이 된다.

최근의 한 연구는 국가가 사회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갖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에도 아동보호체계에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에 있어 정부의 강력한 역할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무관심하게 한다’는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스웨덴 성인 인구의 약 50%는 자원봉사 형태의 활동으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삶의 질이 높은 강한 복지국가라는 다른 사람을 돕는 데에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하여 자유로울 것이라는 가정의 설득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아동보호체계의 기능과 역할

가. 학대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학대, 방임 또는 다양한 형태의 부적절한 양육의 배경은 매우 복잡한데, 이러한 아동학대의 배경이 복잡하다는 점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범주의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 아동학대 예방체계는 가족단위가 이용할 수 있는 정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의 강제 개입이 이루어지는 사례로의 전환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특징을 갖는다. 즉, 아동과 이들의 원가정이 공식적이고 일차적인 아동보호체계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와 존중의 원칙 하에 모든 신고·접수 사례가 관리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아동학대의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외부의 개입을 통하여 가족 내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동보호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위탁보호(foster care)조차 아동이 부적절한 부모나 부적절한 양육환경에 맡겨져 비사교적으로 변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으며, 이 때문에 역사적으로 “예방적 서비스”로 불려져 왔다.

한편,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 보조금 지급 방식의 아동 보호(Subsidised Child Protection), 학교 등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간접적인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아동 발달상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가족 해체 및 청소년기의 반사회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국가위원회(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로부터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아 지방 정부는 지역 내 운영되고 있는 모성보호, 아동 보건, 유치원, 아동복지 센터와 협동을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체계의 기반을 확충하였다. 이러한 서비스의 목적은 위기

에 처한 가정에게 정서적, 도구적 지지를 제시하고,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사회적 조언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법에 의해 중앙 정부에서 지급된 보조금을 이용하여, 특별법에 기초한 업무 즉,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지방정부의 전체 예산 중 아동관련 예산이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중 절반 정도가 아동보호에 사용되고 있다.

나. 시설보호

시설보호국가위원회(The National Board of Institutional Care-SIS)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조직이다. 49개의 LMV 홈^{주25)}과 스웨덴 내의 특별 허가된 홈에서 사회에 부적응한 성인과 아동을 돌본다. 시설의 대부분의 청년들과 실질적인 약물중독자들은 본인의 동의 없이 이곳에 수용되는데, 이는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해하거나 삶을 포기하려는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법 하에서 자발적으로 허가를 얻어 입소한 경우도 있다.

영아의 시설보호에 있어 입소 기준을 분석한 연구(Gunilla Larsson and Gunilla Ekenstein, 2003)에 따르면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십대 미혼모의 자녀이거나, 입양의 경우, 부적절한 주거환경, 모의 병원입원이 원인이 된 시설입소 아동의 수는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모의 알코올 및 약물중독, 정신적 장애와 같은 이유로 시설에 입소

주25) LVM Home은 성인 또는 실질적 학대자의 보호를 담당함. LMV home은 알코올, 마취성 약물 중독자를 위한 보호소이다. 어떤 보호소는 잠재적으로 폭력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거나 이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들을 돌보는 데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이 곳의 치료 방법은 각 LMV home마다 다양하며 개인의 요구에 따라 다름. 이곳의 보호는 최대 6개월까지인데, 절반정도는 3개월 미만까지 입소가 허가됨. 사회서비스와의 협력 하에, 한번 입소하면 이후의 치료를 위한 자발적 보호가 가능한 적절한 장소를 찾는 것을 지원함.

한 아동의 수는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즉, 모의 건강 문제나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로 인한 자발적 아동입소 건수는 모의 중독과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입소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다. 위탁가정지원

스웨덴에서 위탁가정지원은 오랜 기간동안 시설보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선호되었다. 부모로부터 격리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일찍이 1700년대부터 위탁가정에 배치되었는데,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진 위탁가정 제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매우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즉, 위탁부모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가 법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규제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입원 치료 후 회복기에 자녀를 조부모와 같이 사는 것을 희망한다 할지라도 조부모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매년 보호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순응하지 않으면 기소당할 수 있다. 스웨덴 아동복지 당국은 실제로 주간 보호 아동이나 양육보호소 등을 제외한 일반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지난 30년간 친족 위탁보호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 왔는데, 이는 사회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세대간 전달 이론이 실생활에 명백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친족 위탁가정의 정치적 캠페인을 통해 1997년도에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들의 주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살피고 있는 경우, 대안적인 양육자로서 친족들에게 기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일정 계약기간 동안 위탁보호를 단기간 또는 긴급 배치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2002년 현재,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대부분은 부모의 실질적인 학대에 기인하는 경우가 전체 사례의 25~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정신적 장애를 가진 부모의 무능력과 무관심으로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약 20% 이다. 또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이 위탁보호체계에 하에서 보호받는 경우가 전체의 15% 정도이며, 가족해체로 인해 위탁보호를 받는 경우는 전체 위탁보호의 30~40%에 이른다. 그 밖에 유기되었거나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경우이다.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심한 갈등이 부모로부터 격리되어 위탁보호에 처하게 된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라. 입양지원

1960년대 까지 스웨덴 내에서는 국내입양이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아동복지당국은 미혼모의 자녀가 입양되지 않도록 설득하는 일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입양을 희망하는 부부는 주로 국제입양에 의존 해왔다. 현재는 부모의 동의나 아동 입양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은 입양을 제외하고는 모든 입양이 허용된다. 그러나 친부모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입양을 제안하거나 장기적으로 위탁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입양을 장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간 일천여 명의 아동이 입양되고 있으나, 입양아동의 90% 이상이 국외입양아이며, 주로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국외입양아동의 출신국은 콜롬비아가 가장 많고(3,262명), 인도(2,984명) 그리고 한국(2,686명)순이었다. 반면 국내 입양은 일백여명에 그치고 있으며, 보편적인 입양 연령은 1세 전후이다. 현재 전체 17세 미만의 아동인구 중 20,000여 명이 해외 입양된 아동이다. Richard Barth(2005)는 스웨덴 입양제도의 부실은 삶에 있어서 가족의 필요에 대한 모든 아동의 기초적인 욕구를 고려 할 때, 아동복지 현장에서의 치명적인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3. 스웨덴 아동보호체계의 시사점

스웨덴의 높은 수준의 아동보호 규정은 1970년대 초부터 이루어진

일련의 정책적 노력이 축적된 결과이다. 여기에는 상호 연관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 맞벌이 부부의 요구를 만족시키려는 것, 둘째 여성의 노동참여를 가능케 해 양성 평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취학연령 전의 아동과 취학연령 아동을 위한 보호 서비스가 지방정부(commune) 내에서 시작되었는데, 취업모, 학생모,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공적 재원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는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주간보육센터, 종일반 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하였는데, 부모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한 아동보호서비스는 남녀 인구 모두의 높은 취업률과 연계되어 1970년대 중반부터 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재정적 압박과 함께 아동보호서비스의 개혁이 요청되었다. 이에 더불어 아동 권리의 보장이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는 점차 강화되었다.

따라서 스웨덴의 아동보호서비스의 개혁은 첫째, 유엔의 아동보호권리협약의 영향과 둘째, 교수법 및 학습에 대한 장기적인 논의, 그리고 셋째,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의사결정의 분권화라는 세 가지 요인이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을 거친 스웨덴의 아동보호관련 법체계는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며 아동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복지법이 근간이 되어 아동보호를 하고 있으나 폭력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1998년 청소년선언서 개정, 2000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적토대 구축 등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시기적으로는 비교적 늦은 편이며 보편적 보호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아동의 보호 및 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스웨덴에서 보여 지고 있는 국가의 적극적 책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및 자원단체, 학교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성 노력은 수용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에 발전방향

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보호서비스의 전달체계에 있어 보건복지국가위원회와 시설보호국가위원회 하의 사회서비스 등 관련 기관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 의무가 부여된 조직으로부터 접수를 받는다. 경찰과 두 위원회는 피해 아동에 대한 수사 및 사정을 시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사정 결과에 따라 아동은 시설/위탁가정/입양가정에 보내지거나 부모와 함께 살게 된다.

한편, 모니터링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기본적인 접근이다. 스웨덴의 아동보호체계에 있어 모니터링 및 평가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및 아동폭력 신고자의 권리 침해 또는 인권의 문제 발생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침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배포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보호하며 존중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Jachim Theis, 2003).

이러한 권리 기반의 모니터링은 인권, 정의, 평등과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활동을 수반한다. 본래 모니터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권리를 요구 할 책임 및 권한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로써 주어지는 것을 요구하는 모니터링 체계는 인권을 달성하고 보호하며 존중할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 및 아동의 권리가 바탕이 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를 둘러싼 성, 장애, 참여, 변호, 정책과 법의 변화의 영역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의 보상체계는 직원 및 파트너에게 유인을 주는 것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신의 일을 개선시키며 결국 인권 기반 프로그램 접근이 강화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폭력에 대한 모니터링은 아동학대연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감은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보고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를 가해자의 종류별, 특성별, 피해자 연령,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별로 분석하고, 아동폭력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

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직 현황파악 수준에 그치고 있어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스웨덴은 아동보호를 비롯한 사회복지 관련 제도를 국가가 주도하고 있어 자원(voluntary) 조직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회의와 재정적 압박, 지역사회 모델에 대한 새로운 시도 등으로 인해 자원조직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로부터의 수정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에 대하여 시민단체의 성장이 필요하다. 배경은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과거 국가의 광범위한 역할에 대하여 시민단체의 비중이나 존재감은 매우 약했다. 현재, 점점 늘어가는 지출규모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내의 각 전문 분야간,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

스웨덴의 아동학대 예방은 학교 교육으로부터 시작한다. 학교 교육을 통하여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학대 상황에 대하여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 교육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데, 지방정부, 지역 내 모성보호센터, 아동의료센터, 아동복지센터, 유치원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와 협동을 강화하여 아동이 폭력 및 유해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스웨덴은 국가의 역할이 매우 컸으나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민간 조직, 학교 조직, 자원조직 등과의 연계를 꺾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의도와 배경은 다르지만 강한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가는, 선도적인 조직 위주의 사업 추진이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 체제를 구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아동보호체계를 검토하는 과정은 자료 및 언어의 한계로 다른 사례분석 국가와 비교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없었지만, 가장 분명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즉, 아동보호체계의 운

영 및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달은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사회적 투자와 관심에 기초하여, 아동과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원가정에 대한 복지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동시에 여성과 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제4절 일본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및 주요 쟁점

일본의 아동보호 정책은 아동학대 사건의 급증,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헌장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면서 최근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상담소에서 처리되는 아동학대 관련 상담처리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990년 1,101건이었던 것이 2001년도에는 23,274건으로 2만 건을 넘어섰으며, 아동학대의 내용도 큰소리로 꾸짖는다거나 가볍게 엉덩이나 머리를 때리는 행위에서 아동을 무시하거나 양육을 거부하는 행위, 성적학대 행위, 심지어는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까지 다양하며, 국제적인 아동인신매매 등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지역적 범위도 확대되었다(이경원, 2004).

이에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0년 5월 아동학대방지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어서 지난 2004년 4월 14일에는 일부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아동학대방지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동 법의 개정은 점차 다양화, 광범위화 되고 있는 아동보호 관련 문제에 대하여 더욱 세밀하고 효과적인 정책의 필요성과 국가간의 연계를 포함한 폭넓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03년 1.29명을 기록하여 ‘小子化時代(소자화시대)’라는 말로 표현되는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

두되었다. 저출산 시대의 아동보호 문제가 국가의 미래 세대 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출생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3년 7월 16일 차세대육성지원기본법을 수립·시행하였으며, 2003년 7월 30일에는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였다.^{주26)} 이 두 법률은 일본 사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자녀를 안심하고 출산하여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전체가 양육환경을 정비할 것, 아동을 심신 건강하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우선 육아를 담당하는 보호자(주로 여성)가 육아고독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전체의 의식을 바꾸고 협력해야 하며, 특히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기업이 협력하여 모든 사람이 가정생활과 지역,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목적 하에 제정되었다.

동법에 근거하여 현재 일본 시정촌(市町村)의 지방공공단체와 기업들은 차세대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이경원, 2004). 기본 계획의 성립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면 아동학대의 방지와 예방 그리고 학대아동의 조기발견을 비롯한 아동보호 정책이 저출산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차세대 육성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1970년대 들어오면서 아동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의 증진과 더불어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특히, 1989년 UN총회 참석국가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아동학대와 방임을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각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체계를 수립하도록 촉구하면서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이봉주, 이호균, 2004).

일본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분위기에 속에서 1990년에는 오사카(大阪)에 '아동학대방지협회'가 설립되었고, 1991년에는 동경(東京)에 '아동학대방지센터'가 설립되었다. 또한 정부에서도 아동권리헌장을 비롯

주26) 동 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한 다양한 국제인권기구의 아동폭력에 대한 입장과 주장을 수용하여 아동권리가 증진되고 보호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과 행정 조치를 수행하게 되었다. 아울러 아동권리헌장이 적절하게 구현되도록 1997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였는데, 동 법은 아동의 시설 입소에 대하여 개별 지방정부 또는 아동복지국의 의견 청취(27조 3항), 시설에 입소하는 것에 대한 아동 본인의 의견 청취(26조 20항), 그리고 아동의 유아원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24조)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법제화하였다.

1. 아동보호체계의 특성

일본의 아동보호체계는 아동학대 및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문제에 대한 개입은 물론이거니와 소자녀화에 따른 차세대건전 육성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고 UN 아동권리헌장 정신을 반영하고자 한다. 사실 아동 잠재력의 적극적 개발과 발휘를 위한 정책을 포함하여 아동보호 정책의 포괄적 운영과 실행이라는 급변하는 사회적 과제를 갖고 있다. 또한 아동보호정책이 단순히 한 국가 안에서 자국의 아동만을 적절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관심과 참여를 필요로 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각국에서 아동권리가 보장하는 아동보호 환경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에 따라 국력이 판가름되는 중요한 국가 경쟁력의 지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가. 아동보호관련 법적·제도적 환경

일본 아동보호의 근간이 되는 법은 아동복지법과 최근에 제정된 아동학대방지법이다.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적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주로 시설보호와 위탁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된다. 한편, 아동학대방지법은 학대 아동의 보호, 그리고 입양법은 입양아동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동보호법, 학교교육법, 형법, 민법, 양성평등법, 법원조직법 등 다양한 법이 아동보호와 연결되어 있다. 각 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1947년도에 처음 제정되어 몇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재 적용되고 있다. 아동복지의 기본이념에 따르면 국민은 모든 아동이 심신 건강하게 태어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평등하게 인가다운 생활을 보장 받고 사랑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아동의 보호자와 함께 아동의 심신을 건강하게 육성할 책임을 갖고 있으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국가와 보호자의 공통책임으로 밝히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포함되는 아동복지시설에는 조산시설, 유아원, 모자생활지원시설, 보육소, 아동후생시설, 아동양호시설, 지적장애아시설, 지적장애아통원시설, 맹·농아시설, 지체부자유아시설, 중증심신장애아시설, 정서장애아단기치료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및 아동가정지원센터 등이 포함된다. 아동복지법은 일본 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국적 불명의 아동 및 무국적 아동, 나아가 일본체류 비자 미소지 아동에게도 필요한 상담과 일시적 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아동학대방지법(Child Abuse Prevention Law)

최근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현장에서도 여러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1996년에는 일본 변호사연합회와 아동학대방지연구회 등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적 정비를 요청하는 지적과 건의가 지속되었고, 당시 후생성(厚生省, 현재 후생노동성의 전신)은 아동복지법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

였다. 그러나 1999년 12월 중의원(衆議院) 청소년특별위원회가 정부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법 개정을 포함하여 시급하게 법제도를 정비할 것을 강구한다는 내용의 특별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관련 단체들의 요구가 가시화되었다. 더욱이 아동학대 발생 건 수 뿐만이 아니라 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의 숫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2000년 5월 24일에 아동학대방지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이경원, 2004; 影山, 2002:252).

아동학대방지등에관한법률은 아동학대가 아동의 심신의 성장 및 인격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해 아동에 대한 학대금지에 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조치 등을 정함에 따라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의 정의는 ‘보호자’(친권을 행사하는 자, 후견인, 또는 실질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에 가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 ① 아동의 신체에 외상이 생기고,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폭행을 가하는 일, ② 아동에게 외설적인 행위를 하는 일 또는 아동에게 외설적인 행위를 시키는 일, ③ 아동의 심신의 정상적인 발달을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불충분한 섭식 또는 장시간의 방치, 그 외의 보호자로서의 감독 보호를 현저하게 태만하는 경우, ④ 아동에게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주는 언동을 행하는 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에 대한 학대의 금지는 물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통고, 경찰관의 지원, 출입조사 등에 관한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아동학대방지등에관한법률을 일부 개정한 개정아동학대방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정의에서 아동과 함께 사는 보호자 외의 사람에 의한 신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에 대한 묵인도 아동폭력의 정의에 포함하였다. 아울러 아동에게 배우자에 대한 폭언·폭행 장면을 노출시키는 것도 아동에게 간접적 상해를 주는 행위로서 아동이 심각한 정신적 상

처로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을 폭력으로 간주하는 등 아동학대의 범주를 확대하였다. 또한 예방과 조기발견에서부터 아동의 자립촉진지원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의 모든 단계에 시도 정부의 책임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아동학대사건의 신고의무의 대상을 “학대받은 아동”에서 “학대 의심 아동”까지 확대하고, 아동상담센터장과 각 지방 지사는 지역 경찰서장으로부터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요청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지역 경찰서장은 이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동학대로 학업이 뒤떨어진 아동이나 상위 단계의 교육을 받고자하는 아동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아동에게 시도정부는 지원조치를 구축할 책임이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3) 아동매춘과아동포르노관련행위처벌및아동보호법

아동매춘과아동포르노관련행위처벌및아동보호법은 매춘과 포르노그래피 등 유해환경으로 인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상담·지도, 일시적 보호 및 시설 입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아동이 손상을 극복하고 자아존중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조직체의 구축과 재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시도정부는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래피 등의 영향으로 고통당하는 아동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에 기초하여 학대아동의 보호에 관한 연구를 진작시킬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아동보호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긴급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간의 협조와 소통 강화 및 학대아동보호를 위한 민간조직과의 협조 네트워크 구축과 조직화 등을 통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4) 형법

형법은 강제적인 외설 행위, 강간, 살인, 신체 상해, 물리적 폭력, 협박 등의 경우, 아동의 직접적인 피해 여부에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되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 176조(강제적 외설 행위)와 177조(강간)는 이러한 행동에 대한 타당한 동의가 필요한 최소연령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신체적 폭력 또는 위협을 통해 13세 이상의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해 강제적으로 행위를 하는 사람은 6개월 이상 7년 미만의 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남녀에게 같은 행위를 가한 자는 같은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신체적 폭력과 위협으로 13세 이상의 여성에게 성기삽입을 강제로 가한 자는 2년 이상의 제한된 형기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13세 미만 성에 대한 같은 성행위를 한 자에게도 같은 벌을 가하고 있다. 또한 2000년에는 동 법의 235조 개정으로 인해 강제음란, 강간 등의 범죄에 대한 기소기간 제한이 폐지되었는데, 이는 아동에 대한 같은 범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5) 학교법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아동보호를 위해 교사의 체벌과 학생들의 비행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법이 마련되어 있다. 학교교육법에서 체벌이 엄격히 금지되자 문부과학성은 교육위원회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사실파악을 통해 그것이 경미한 사안이라 해도 상처를 낸 체벌 교사에게 엄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아동의 비행(bullying)에 대한 법적 조항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문부과학성은 교육위원회를 통해 비행사태를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고 ① 비행이 절대 용납되지 않음을 각 학생이 충분히 납득하도록 교육하며, ② 학교는 비행 피해아동에 대해 철저히 보호하는 자세를 가지고 친절히 대하며, ③ 가족들과 지역사회간 친밀한 협조를 증진시키며, ④ 심각한 비행의 경우 관련기관이 협조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정학시키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한다. 특히 정학제도의 실시와 관련한 훈령을 통해 일정 정도를 넘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어떠한 비행행위에 대해서도 정학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6) 민법(Civil Code)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보호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아동학대와 같은 비행의 혐의가 있을 때, 가정법원은 아동의 친척, 검사, 아동상담센터의 기관장 등의 부모 친권 몰수 집행 신청(adjudgment of the forfeiture of the parental power)을 의뢰받으면 가정법원은 아동의 이익을 위해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집행 이전에 예방조치로 혐의가 있는 사람이 자기의 힘을 행사하는 것을 정지시키고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 역할을 대신 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834조).

또한 폭력 피해아동은 폭력 가해자(709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가 연령 미만으로 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지할 능력이 없으면, 부모, 교사, 고용주 등 그 가해자의 감독내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714조).

나. 아동보호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

일본의 아동보호체계의 중앙 운영주체는 후생노동성의 학대방지대책국, 법무성의 인권위원회와 이민국, 경찰청, 문부과학성 등이며, 지방정부의 관련 전달체계 및 사법부의 가정법원, 그리고 입법부 지원조직 등이 관여하고 있다.

1) 후생노동성의 학대방지대책국

후생노동성의 학대방지대책국(Abuse Prevention Countermeasures Department)이 아동학대 대응조치 계획과 초안을 구상하는 책임을 갖고 있으며, 개별 현이나 지정 도시의 아동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아동에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 가족과 문제를 논의한다. 또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보호를 위해 각 지방자치정부는 학대방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련 단체들이 정보를 나누고 관계 아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적절

히 협조하도록 한다. 그밖에도 후생노동성의 평등고용·아동·가족국(Equal Employment, Children, Families Bureau)과 총무부가 아동학대방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2) 법무성의 인권위원회

국가적인 인권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비롯하여 일반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운영체제로 법무성의 인권위원회(Human Rights Organs of the Ministry of Justice)가 있다.

법무성 산하 인권위원회는 아동폭력을 포함한 인권에 관한 여러 종류의 조회에 대해서 인권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조회 내용 중, 인권 침해가 의심 가는 사례가 발견되면 관련 인권조직에 조사를 받도록 의뢰한다. 일반사람이 한 기소(청원)에도 같이 적용된다.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 법무부 인권위원회는 사건을 해결하고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사건과 관계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과정에 대한 조언과 정보를 준다.

또한 시군구의 인권 보호 활동을 수행하도록 인권자원봉사자를 임명하고 있는데, 인권자원봉사대 중에 는“아동권리보호 자원봉사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임무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보호아동의 교정(치료)역할을 수행한다. 단, 이들 조직이 행하는 조사는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3) 국립경찰청과 지방경찰서의 청소년부와 청소년보호실 및 청소년지원센터

국립경찰청과 지방 경찰서에 마련된 청소년부는 피해 청소년의 보호와 청소년을 표적으로 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부(Juvenile Divis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에 청소년보호실(Office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을 통해 청소년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각 경찰서는 청소년 범죄문제를 다루는 특

별조직으로 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동 센터에는 약 1,000명의 청소년보호관과 100명 정도의 청소년 상담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지도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다. 아동보호체계의 모니터링과 평가

명백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아동보호체계의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확한 기초 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연구, 정책 홍보와 교육, 그리고 평가가 필수적이다.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모니터링 및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동보호에 대한 연구 조사: 일본 아동 폭력 피해 전국조사

법무부의 연구훈련소(The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발생 실태와 그 영향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2002년 전국적인 아동폭력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에 거주하는 18~40세 남녀 15,000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와 면접조사도 병행한 조사에서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신적 폭력, 폭력 방치와 목격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이는 가족원 안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목격 경험 등을 조사한 것이다.

전국 조사는 아니지만 후생노동성은 아동상담센터에서 이루어진 아동학대 상담 건수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행정정보를 통하여 아동보호센터의 조사, 결정, 보호, 심리적 조치, 상담 등에 대한 사례수를 관리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5년간 정부가 행한 아동폭력 문제에 대한 과학적 조사 프로젝트로는 일본 청소년 비행 피해 경험 연구가 2000년에 실시되었으며, 2002년~2003년에 행해진 아동학대에 대한 학교조치에 관한 연구(결과는 일반인 열람가능), 아동폭력대응 법률적 조치에 대한 연구조사, 학교비행조사 등이 있으며, 학대받은 아동 보호자를 위한 지도방법 개발과 같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거기에도

폭력에 의해, 또는 폭력이 의심되는 아동사망자에 대해 NPA는 일년에 두 번(6월말 12월말) 각 시군구 경찰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 체포에 관해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폭력으로 인한 아동의 사망실태를 조사한 모니터링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폭력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또는 아동의 사망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의 사망을 구청에 신고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신고에 근거하여, 생명통계조사(Vital Statistics Survey)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가족등록법(Family Registry Law)에 따라 가족원이나 친척은 모든 사망에 대해 의사의 사망확인서를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경찰청에는 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대책의 발전과 진행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피해청소년에 대한 지방경찰의 대책 수립에 대해 연례 보고하고 있다.

2) 아동보호서비스 평가

아동보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있어서 복지서비스의 평가기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2002. 3. 29. 후생노동성 아동가정국). 동 보고서에 의하면, 후생노동성에서는 사회 복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서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 분야에 대한 제3자 평가 사업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복지서비스의 질에 관한 검토위원회」가 1998년에 설치되어 1999년 3월에는 「복지서비스의 질의 향상에 관한 기본방침」, 2000년 5월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 한 법률」 제정, 2000년 9월 「복지서비스의 질에 관한 검토위원회」 검토상황을 기초로 하면서 아동복지시설에 있어서 복지서비스의 평가 사업을 검토해왔다.

주요 평가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복지시설 가운데 보육소, 아동양호시설, 모자생활 지원시설 및 유아원에 제공되고 있는 복지서비스이다. 제3자 평가기준의 시안을 근거로 15개 도도

부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개별 서비스 제공자가 사업운영에 있어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촉진하고, 이용자가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자 평가에서 그 기본은 ①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향상하도록 유도하는 것, ② 평가결과가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하며, ③ 보호서비스의 내용이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감사와 중복되는 항목 및 운영관리에 관한 항목은 간소화 하고 있다. 즉, 복지서비스의 구체적인 서비스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최저기준과 같이 시설을 운영해가면서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 보육소 보육지침 등에 준거하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라.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할

일본에서의 아동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시민단체에 의한 활동이고, 둘째, 대중매체에 의한 홍보·교육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시키는 활동 등으로 구분된다.

1) 아동보호에 대처하는 시민단체의 역할

가정내 아동학대와 방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 보호체계가 만들어진 계기는 나라마다 아동의 희생과 민간단체의 활동이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봉주, 이호균, 2004). 일본에서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민간단체이다. 1990년에는 오사카(大阪)에 아동학대방지협회가 설립되었고, 1991년에는 동경(東京)에 아동학대방지센터가 설립되었다. 두 단체의 활동내용은 학대신고 핫라인을 이용한 상담과 원조활동, 심포지엄 개최, 연구회, 네트워크 확보, 사례

검토, 보고서 발행 등 다양하며, 현재도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그 외에도 아동학대방지와 관련된 많은 민간단체와 특정비영리활동법인단체(NPO) 등이 활동 중이다. 이들 단체는 현재 지방자치공공단체와 협력하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이경원, 2004).

민간 미디어 회사는 아동학대에 관한 특집프로그램이나 특별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아동보호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정부도 TV 광고 등을 통해 공공의 인식을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아동이 아동보호에 참여하는 활동

정부는 국민과 긴밀히 연계된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 때론 시민의견을 직접 받기도 한다. 아동도 시민의 일원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기 위해 시민의사표현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도록 기대되어진다. 가령 내각(cabinet office)은 2002년 4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12~24세의 청소년들로부터 그들의 의견과 기타정책에 대한 소견을 듣기 ‘청소년 전자모니터링’(Electric Monitoring by the Youth)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의 의견이 아동보호기관운영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견해가 현(縣)정부의 아동보호기관 감사활동에 반영되도록 한다. 즉,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기회가 주었는지도 감사한다. 이는 아동보호기관운영에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여 아동권리현장의 목적을 이루도록 한 것이다. 기관들은 아동에게 기관에 살면서 생긴 불평을 해소하는 체계를 고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아동에게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최선의 보육을 아동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3자에 의한 평가조직을 소개하도록 노력한다. 한편, 청소년(학대아동포함)보호대책,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자의 예방과 피해축소를 위해 피해 청소년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고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3) 보호아동 관련 단체간의 연계

일본은 시정촌을 중심으로 구성된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활동하고 있다. 2004년 개정 아동복지법의 기본 방침에도 확대를 받고 있는 아동을 비롯하여 요보호아동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들이 대상 아동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하여 효과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관계기관과 원만한 연계·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중심이 되는 관계기관 간의 상호 연계와 역할분담 조정을 하는 기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정보 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의 요청과 관계기관에 있어서 정보 공유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04년 개정아동복지법에 있어서 다음의 규정이 정비되었다.

- 지방공공단체는 요보호아동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요보호아동 및 그 보호자에 관하여 정보 교환이나 지원내용의 협의를 하는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지역협의회를 설치한 지방공공단체장은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 관계기관 중에서 지역협의회가 운영의 중핵이 되고, 요보호아동 등에 대한 지원 실시상황의 파악과 관계기관 등의 연계조정을 하는 요보호아동대책조정기관을 지정한다.
-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 관계기관 등에 대해, 개인의 비밀을 지키는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지역협의회는 요보호아동 등에 관하여 정보교환이나 지원내용의 협의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 및 정보제공, 의견 제시,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가 있다,

이러한 개정에 의해 관련 기관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고, 의사나 지방공무원 등 비밀엄수 의무가 존재하는 것에

서 개인정보의 제공에 신중하여 요보호아동의 적절한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 관계기관 등에 비밀엄수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은 민간단체를 비롯하여, 법률상 비밀엄수 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관계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가와 적극적인 정보 교환과 연계가 기대되어진다.

2004년 아동복지법개정법에서는 지역협의회의 설치 의무는 아니었다. 다만 관련 기관들과 연계에 의해 조직이 요보호아동의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의 법정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참의원후생노동위원회의 부대결의에서도 모든 시정촌에서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의 빠른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경위를 근거로 하여, 시정촌에서 지역협의회의 설치 촉진과 활동 내용의 충실하게 하는 지원에 힘써야 한다.

지역협의회 보호 대상 아동은 학대를 받았던 아동뿐만 아니라 비행아동 등도 포함된다. 소년비행문제를 취급하는 네트워크로서는 지역협의회, 기타 학교·교육위원회가 조정기능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경찰이 조정역인 네트워크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네트워크는 각각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기관이나 사례 담당할 때의 시점, 그리고 접근 방법 등이 다르다. 따라서 실제로 소년비행사례를 취급할 때에는 사례마다 그 아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최대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역협의회로서도 다른 네트워크와의 연계와 협력에 힘써야 한다.

4) 정부의 시민참여 지원 프로그램

다양한 관련단체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는 아동보호를 위해 정부와 민간부분이 함께 협력하고 아동복지법의 조항에 명시된 지방공공정부와 경찰력, 학교, NPOs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합하도록 노력한다. 가령 NPOs 등의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재단의 후원을 받는 아동보육등과 관련된 NPO 집단 지도자들의 연구와 훈

련에 비용을 보조한다. 그리고 재단에 대한 현금 보조금이나 연간 모금 금액의 할당에 사용될 금액의 증액을 위한 경제활동에도 참여한다.

또한 학교를 통해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과 학생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 지원팀 구성, 학교 참여, 교육위원회 와 그 외 관련단체의 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가정교육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증진 프로그램(부모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사용하는 가정교육에 관한 노력의 기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증진시킴)과 새 가정교육 지침서를 만들고 배포하여 부모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방지법에 대한 강연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상담기술의 향상을 목적으로 소년·소녀 범죄자 보호와 보호자의 지원 분야에 종사하는 경찰직원들을 위해 전문 지식과 기술에 관한 강의를 제공한다. 또한 아동학대 유형(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방치 및 정신적 학대), 아동학대의 실태, 아동학대 조기 발견법 및 아동학대 발견사례의 상담과 보고 등에 대해 언급한 인쇄물을 만들어 보호자, 학교, 지역사회 등에 배포하여, 아동학대를 조기발견하고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아울러 국립교사개발센터(The National Center for Teacher's Development)에서도 전국의 학교 장학사 등에게 아동학대, 비행, 기타문제의 행동을 다루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보호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들 프로그램은 국제인권헌장 등 대한 정보와 업무추진 시 주의를 기울여야할 필요성이 있는 아동피해자 또는 아동대상의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에 대한 정확한 집행에 대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한편, 후생노동성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국민의 아동학대방지법에 대한 인식을 증진, 전파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양성평등·아동·가족국에서는 2004년 아동에 대한 폭력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계몽 및 연구와 조사를 위하여 45백

만 엔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2. 아동보호체계의 기능과 역할

가. 학대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1)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아동학대방지법에는 근거하여 아동학대를 목격한 사람은 즉시 관계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형법에 규정된 비밀정보의 개방금지 조항과 그 밖의 면책특권이 있는 정보의 개방금지와 관련된 법률규정에 대한 조항이 학대아동보고 의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후견인 없는 아동이나, 아동보호와 감독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견인을 둔 아동을 목격한 자는 복지사무소, 또는 아동상담센터에 직접 신고하거나 아동위원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를 신고의무 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현장 조사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상담소는 보호자와 아동에 대한 임의 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필요하면 관계기관 관계자도 함께 동행하여 조사를 수행하며, 이 조사를 통해 아동을 긴급일시보호의 필요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3) 판정 및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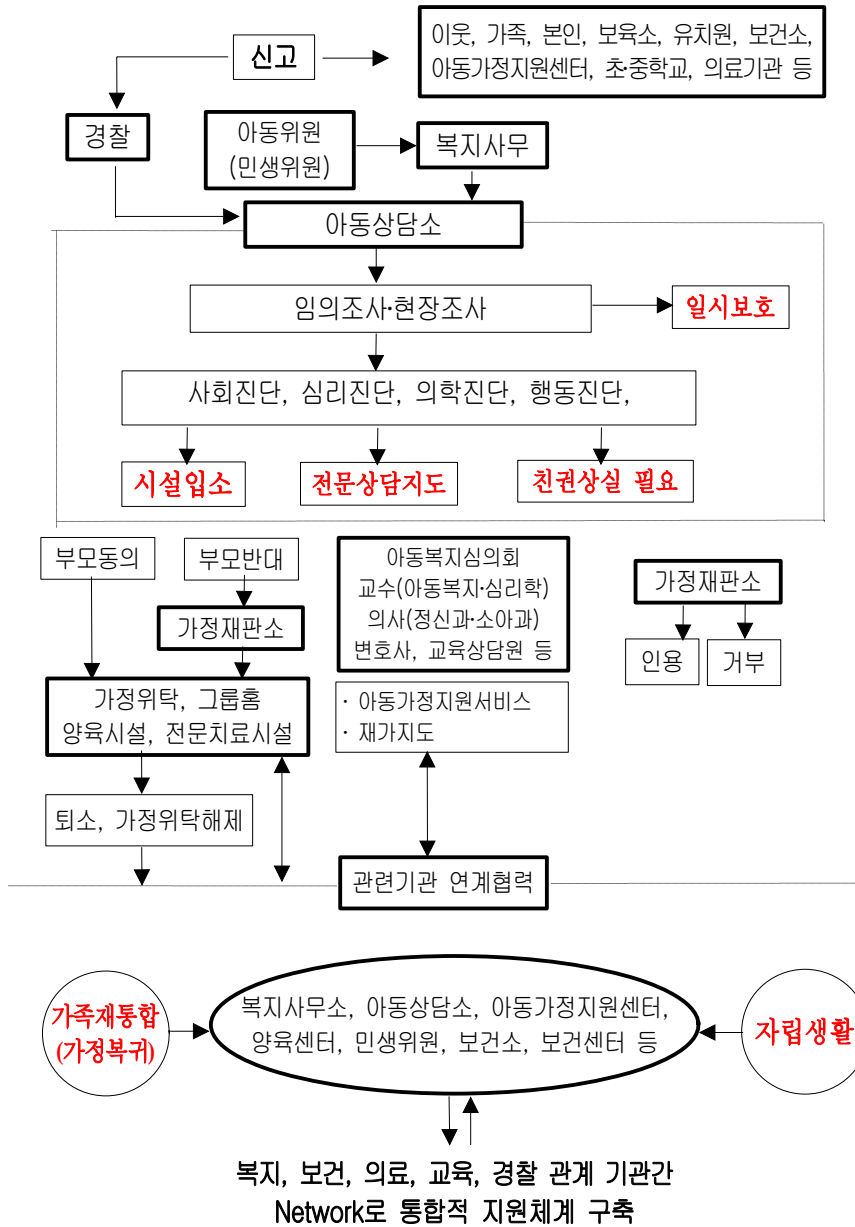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지내는 재가지도나 보호자로부터 분리되도록 하는 판정을 받게 된다. 아동복지법은 27조에 따라 지방 정부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또는 위기 상황에 경찰서에 이관된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 사례에 대하여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위탁부모 또는 후견인 인도: 위탁부모(지방정부가 보호자 없는 아동이나 아동보호와 감독자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보호자와 지내는 아동을 양육하기를 원하는 사람)나 후견인(의무 교육을 마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집에 데리고 있거나 자기 집에 통원하도록 원하는 사람. 아동의 소질에 따라 사회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를 주는 사람)에게 인도 조치
- 아동복지시설로 인도: 유아원, 아동보호기관, 인지장애아동기관, 지적장애 아동보육시설, 시각, 청각, 언어 장애아동 기관, 신체장애아동, 심각한 신체적, 지적 장애 아동 기관, 단기 정서장애 아동치료기관, 아동독립지원기관 등에 인도 조치
- 친권박탈: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보호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아동 학대와 같은 비행의 혐의가 있을 때 가정법원은 아동의 친인척, 검사, 아동상담센터장 등의 신청에 의해 친권을 몰수

4) 교육 및 상담

보호아동이 학업이 부족하거나 또는 상위 단계의 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시도정부는 이를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학교 등의 교육기관이 주관하여 지역정부의 교육센터에서는 폭력에 의한 아동 피해자를 위한 가능한 교육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 가해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림 4-2] 일본 아동보호체계의 진행도



2002년도의 아동학대상담 현황은 통계자료 수집하기 시작한 1990년도와 비교해 보면 21배 이상이나 된다. 그 요인은 2000년도에 성립하여, 시행한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에 의한 영향이 크다. 또한 국가나 지방의 행정 광고, 개발, 민간 활동을 통해서 아동양호문제, 학대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환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淺倉新一 外1人 (2005)의 책에서 소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일본의 학대 발생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2〉 학대에 관한 상담처리 건수의 추이

(단위: %, 건)

1990년	1992년	1994년	1996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100)	(125)	(178)	(373)	(630)	(1,056)	(1,609)	(2,114)	(2,156)
1,101	1,372	1,961	4,102	6,932	11,631	17,725	23,274	23,738

주: ()안은 1990년도를 100%로 한 비율임.

자료: 「각년도 후생성보고例年度報(아동복지관계)에 대해서」 이하 같음, 재인용.

〈표 4-3〉 아동학대 유형

(단위: %, 건)

년 도	총수	신체적 학대	보호태만 방임, 무시	성적학대	심리적 학대
2000	(100.0) 17,725	(50.1) 3,692	(35.6) 6,318	(4.3) 754	(10.0) 1,776
2001	(100.0) 23,274	(46.5) 10,828	(37.8) 8,804	(3.3) 778	(12.3) 2,864
2002	(100.0) 23,738	(46.1) 10,932	(37.7) 8,940	(3.5) 820	(12.8) 3,046

주: ()안은 전체 대비 비율임.

자료: 「각년도 후생성보고例年度報(아동복지관계)에 대해서」 재인용.

〈표 4-4〉 학대상담의 처리종류별 내역

(단위: %, 건)

년 도	총 수	시설입소	수양부모 위탁	면접지도	기 타
2000	(100.0)	(14.3)	(0.5)	(76.7)	(8.5)
	17,725	2,527	91	13,596	1,511
2001	(100)	(12.3)	(0.6)	(78.9)	(8.2)
	23,274	2,857	149	18,398	1,906
2002	(100)	(11.3)	(0.7)	(80.1)	(7.8)
	23,738	2,698	172	19,118	1,869

자료: 「각년도 후생성보고例年度報(아동복지관계)에 대해서」. 재인용

이상의 내용을 볼 때 일본에서의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주된 학대내용은 신체적 학대와 보호 태만, 거부, 무시 등이 80% 이상이며, 주된 학대 가해자는 친모가 60% 이상이며, 아동의 연령은 초등학생이 가장 많아 35% 정도이며 다음으로 3~5세 아동이며, 3세 미만 아동도 21%에 달한다. 아동학대에 대해 아동상담소에 상담을 신청하는 주된 사람은 다양하여, 가족이나 아동복지사무소, 아는 사람, 학교 등이 많고 상담에 대해 면접지도가 가장 많고(80%) 시설입소 비율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에 아동학대방지법이 시행된 후 일본의 각 시는 아동학대방지 대책을 설명한 책자를 발행해 아동들이 모이는 장소, 즉, 병원, 보육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아동관, 아동육아지원센터, 아동위원 등에 배부했다. 책자에는 공통적으로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일본의 아동학대의 실태,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기발견하기 위한 체크항목,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아동학대의 재발방지와 원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동 책자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표 4-5 참조).

〈표 4-5〉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위한 체크항목

아동의 행동	보호자의 행동
부자연스러운 상처(타박상, 불에 덴 자국 등)가 있으며, 치료가 충분하지 않다 상처에 대한 설명이 석연치 않다	기분의 변화가 심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방 폭언이나 폭력을 사용한다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자의 안색을 살피나 떨어져 있을 때는 전혀 무관심이다	부자연스러운 상처(타박상, 불에 덴 자국 등)에 대해 설명하기 꺼려하며 설명이 석연치 않다
무표정하며 생기가 없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밀착하거나, 아니면 방임하거나 극단적이다
화를 잘 낸다 공격적이다	자녀의 능력 이상의 것을 지나치게 요구한다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거나, 항상 청결하지 않다	보호자와 연락을 취할 수 없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발육·발달이 늦다	어린자녀를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하는 일이 잦다
과도로 긴장하거나 침착하지 못하다	아동이 상처를 입거나 병이 나도 의사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의 신체접촉을 극단적으로 싫어 한다	병원에 입원시키고 싶어 하며, 일부러 자녀에게 상처를 입힌다
옷 벗는 것을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한다	욕아에 지치고 초조해 한다
거짓말을 많이 한다	얼굴에 표정이 없다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가출을 되풀이 한다	어려울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할만한 가까운 사람이 없다
작은 동물을 학대한다	지역에서 고립되어 있다
음식에 탐욕적이고 만족하지 못한다	알코올, 약물, 마약 등에 의존 경향이 있다
이유가 확실하지 않은 지각과 결석이 잦다	항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녀를 큰소리로 꾸짖는다
성행동에 관하여 극단적인 관심을 보이거나 거부감을 나타낸다	어린자녀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난폭하게 행동하거나 끊임없이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을 한다	보육교사와 접촉을 꺼리고 면담을 거절한다
언제나 울고 있거나 큰소리로 외치는 경향이 있다	영유아의 건강진단을 거절하고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는다

〈표 4-6〉 아동학대의 예방에서 지원까지

	예방	발견	초기대응	지원내용
보육원 유치원	부모교육 육아상담 조언·원조	평소 접촉을 통한 조기발견	아동상담소·복지사무소 에 통고 직원회의 등을 통해 정보공유 및 역할분담	복지사무소, 보건소, 市町村, 민생위원, 아동위원, 아동상담소와의 연대에 의한 학대피해 아동을 주시하고 양육자 지원
학교	학생 상태와 행동 관찰 학생이 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	평소 접촉을 통한 조기발견	아동상담소·복지사무소 에 통고 학급담임 양호교사 관련교사와 연락망 구축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에는 같이 관찰기록일지 작성	상동
市町村 아동복지과	모자보건·양육 지원사업 강연회·연수회 등 개최 부모 대상 육아교실 개최 가정방문 등을 통한 가족지원	각종업무를 통해 조기발견 영유아 건강진단 육아교실 개최 가정방문 아동·가정지원 상담	상황과악을 위한 가정방문 실시 아동상담소에 통고·정보제공	신뢰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면서 실태를 파악, 지원 위한 가정방문실시 모자보건사업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을 주시, 양육자 지원 관계기관과의 역할 분담에 따라 학대상황에 대응
아동상담소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강연회·연수회 등 개최 학대방지대책 관련책자배부	상담업무 중 조기발견	발견자로부터의 신고접수 수리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수집 접수·수리 후 회의를 통해 방침결정 상황과악을 위한 가정방문	가정방문과 상담소 방문에 의한 상담 및 가족지원 보호자와 아동의 분리가 필요할 경우 피해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 가정법원에 법적 대응 신청

과거 일본의 아동학대 예방체계는 첫째, 아동학대의 정의가 애매하다는 점, 둘째,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아동이 있어도 아동의 보호자가 면담을 거절할 경우에는 아동상담소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아동학대방지법 제9조에는 도도부현지사는

아동학대의 우려가 인정될 때는 아동위원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아동의 주소 또는 거주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 및 질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현장조사 규정이 있다. 동 법의 제정 후, 현장조사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건수는 1998년에 13건, 1999년에 42건 그리고 2000년에 9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실제로 아동의 보호자가 출입조사를 거절 할 경우에는 단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그 결과 아동상담소가 학대사실을 우려해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른 아동이 1998년에 8건, 1999년 5건, 2000년에 11건에 이른다. 이러한 배경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자녀와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고, 아동상담소에서 아동의 일시적 보호를 청해도 보호자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나. 시설보호 및 자립지원 체계^{주27)}

200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41조에서는 ‘아동양육시설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유아 제외. 다만 안정된 생활환경의 확보, 그 밖에 이유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유아를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 학대받은 아동, 기타 이유로 양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양육, 또한 퇴소한 자에 대해 상담 및 그 밖의 자립을 위한 원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라고 하였다.

아동복지법에서 관할하고 있는 일본의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보호아동과 관련된 유(乳)아원, 모자생활지원시설, 아동양호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등을 중심으로 시설보호와 자립지원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시설보호 아동과 관련된 아동복지시설의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표 4-7 참조).

주27) 이 절의 주요 내용은 浅倉新一 外1人 (2005)의 新・子どもの福祉と施設養護,에서 번역하여 참고하였음.

- 유(乳)아원: 유아(건강상의 이유나 그밖에 이유에 의해 특별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략 2세 미만의 영아 포함)를 입소시켜 이것을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모자생활지원시설: 배우자가 없는 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여자 및 그 밖에 감호해야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람의 자립 촉진을 위해서 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양육(호)시설: 유아를 제외하고 보호자가 없는 아동,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 그 밖에 환경의 이유로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서 이것을 양호하고 덧붙여 그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자립지원시설: 불량 행위가 없거나, 비행의 우려가 있더라도 그 원인이 아동 및 가정환경에 있어 생활지도 및 보호 등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원가정에서 통원시켜 개개인의 아동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지도를 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일본의 양육·보호 시설은 아동복지법(1947년)에 나타난 기본적인 대리보호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시대의 변천 및 사회·가정환경의 변화와 함께 시설입소의 요구가 다양화됨으로서 각 시설의 역할규정과 실태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대 들어와서는 학대아동의 입소증가로 보호시설 간의 차이가 불명확하게 되었고 시설 간의 경계선도 없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을 근거로 후생성의 『아동미래 21플랜연구회보고서』(1993년) 등 각종 연구회 보고서를 통해 공통으로 보호시설의 재편성·통합화를 제언하고 있다. 전국양호시설협회는 『양호시설의 미래상』(1995년)에서 현실의 양호시설과 제도상의 정책이 크게 어긋나 있어 점점 더 양호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사회적양호서비스체계에서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표 4-7〉 아동복지 보호시설 현황(2005. 1)

종 별 법 령	목적·기능	대 상	기타 기능
乳아원 (아동복지법 37조)	건전한 발육을 촉진하 여 그 인격형성에 이바 지하기 위한 입소 및 양육	만 1세 미만의 영아 (보 건 상 안정된 생활환경의 확보, 기타 이유에 의해,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 유아를 포함하며, 필요에 따라, 유아가능)	-1개월 미만의 단기입소 -유아원에서 병약아의 처우가산 -가정지원전문상담원 -피학대아동에 대한 적절한 처우체제의 확보
모자생활 지원시설 (아동복지법 38조)	보호(사생활을 존중하고 사회공공생활을 적응시 키는 생활지도)하여 자 립촉진을 위해 그 생활 을 지원. 퇴소한 자의 상담 기타 원조	배우자가 없는 여자 또는 이것에 준하는 사정에 의 해 여자 및 그런 자가 감 호해야하는 아동(경우에 따라 만20세까지 연장가능)	-원산장(援産場)운영 -병후아 데이서비스모델 사업 -가정지원전문상담원 -피학대아동에 대한 적절한 처우 체제의 확보
아동양호 시설 (아동복지법 41조)	보호(아동의 자주성을 존중, 기본적인생활습관 을 확립하여, 여유 있는 인간성 및 사회성을 양 육하는 생활지도, 노동 의 기초적인 능력 및 태도를 키우는 지도)하 여 퇴소한 자의 상담과 기타 자립을 위해 원조. 가정환경조정	보호자가 없는 아동, 학대 받는 아동 그밖에 환경상 양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경우에 따라 만 20세까 지 연장가능)	-연장아동의 처우체제강화 -분원형자활훈련사업 -중학졸업후, 취직하는 아동에 대해 조치계속 -자립상담원조사사업 -양호시설에서 등교거부아동보호 지도 -도시가정재택지원사업 -육아양육지원단기이용사업 -가정지원체제긴급정비촉진사업 -피학대아동에 대해 적절한 처우 체제의 확보
아동자립 지원시설 (아동복지법 44조)	입소 혹은 보호자의 밑 에서 다니거나 개개인 의 아동상황에 맞게 학 습지도, 생활지도, 직업 지도 및 가정환경을 조 정하여 그 자립을 지원. 퇴소한 자의 상담 그 밖의 원조	불량행위가 없고 개선할 경향이 있는 아동 및 가 정환경 그 밖에 환경 상 이유에 의해 생활지도를 요하는 아동(경우에 따라 만 20세까지 연장가능)	-자립상담지원사업 -시설장에게 아동을 취학시키는 의무

자료: 淺倉新一 外1人, 2005, pp.77~79.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서비스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일본

은 1947년 아동복지법이 실시된 이래 50년 만에 1차적으로 1997년 6월 11일 대폭 개정되었고, 2차 2000년 6월, 3차 2001년, 4차 2002년 7월, 그리고 5차 개정법이 2004년 12월에 공포되어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마지막 5차 개정의 취지는 최근에 소자화의 진행, 맞벌이 부부의 일반화,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양육기능의 저하로, 아동 및 가정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하고 보육수요의 다양화와 아동에 관한 문제의 복잡·다양화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렵게 되어,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아동가정 복지제도를 개혁하여 장래 국가를 담당할 아동들에게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보육시책을 재검토하여, 아동의 자립지원시책에 충실을 기하며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질 높은 육아지원제도로써 재구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 양육의 방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주된 대상으로 보고 일반적인 아동양육지원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 둘을 연속적인 것으로, 일체적인 시책의 추진을 도모하여 보다 효과적인 아동건전육성과 아동학대방지 등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보호의 경우, 아동의 입장에 서서 대규모 집단생활이 아니라 보다 가정적인 환경에서 개별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치료기능 등이 있는 기간시설을 통해 고도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대응이 가능한 전문적인 직원을 배치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소규모시설로서 지역 분산화, 케어(돌봄)단위의 축소와 가정적 양육환경을 확보하며, 소규모 시설의 기능을 보완·지원하는 기간시설을 가지도록 하는 셈이다. 기간 시설은 지역 소규모시설의 운영·관리를 포함한 지원기능 것뿐 아니라 위험성이 높은 가정이나 양육수양부모 등의 지원도 포함한다.

앞으로는 시설양육의 경우, 시설의 소규모화 및 케어단위의 축소화는 당연히 필요하며, 또 목표로 하는 과제이다. 「케어단위축소」가 필요

하기 때문에 대체로 모든 시설이 6인 단위의 소규모 아동양육시설로 전환하고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특성에 따라 소규모 보호시설이라도 12인 정도의 중간 규모 형태의 시설이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善多一憲, 2003).

입소아동은 여러 가지 이유, 가족의 문제, 그것에 동반되는 자신의 문제 또한 학교에 대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가지고 입소한다. 이것이 때로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되기도 하고, 혼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외톨이가 되기도 한다. 또한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생활리듬을 고쳐서 등교를 할 수 있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설을 퇴소한 후에 또 다시 같은 문제가 되풀이하게 된다.

아동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시설에 보호되기도 하고,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등으로 등교 거부를 하고 가출하여 보호되기도 한다. 이들의 부모 중에는 학대를 한 부모, 시설입소에 부정적이었던 부모, 알코올, 약물로 의존하는 부모, 인격 장애나 정신질환이 있는 부모, 양육능력이 없는 부모, 양육방기(放棄)를 선언하는 부모, 전혀 연락이나 면접을 끊어버린 부모, 경제적인 곤란에 처해 있는 부모, 일 때문에 면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모 등 다양하다. 물론 적극적으로 시설과 직원에게 협력적인 부모도 있다. 그러므로 아동이 가족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는 작업도 필요하다.

가족지원은 입소아동의 부모에게 부모-자녀와의 지속적인 관계 회복을 재구축하여 아동문제와 과제를 확인하여 그 해결책을 도모하고, 또한 모든 문제에 대해 상담에 응하여, 조언과 원조, 가정복귀로의 준비, 면회시의 면담 등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동양호시설의 경우, 이러한 역할에 맞는 적정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직원의 틀에서 배치해야 하므로 곤란한 경우가 많고, 경험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세력을 가진 시설장과 주임 직원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淺倉新一 外1人, 2005).

한편, 시설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자립지원이라 하여 아동이 사회인으

로서 생활해 나가기 위해 종합적인 생활력을 키우는 것을 돕는 것이다. 1998년 4월 아동복지법개정에서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자립지원」의 개념이 첨가되었다. 그리하여 후생성아동가정국가정복지과장 통지(1998년 3월5일) 兒家第 9호 「아동양호시설 등에서 입소자의 자립지원 계획에 대해서」에서 이 아동자립지원계획 책정에 대해 아동이 입소하고 있는 시설의 아동상담소의 처우지침에 따라, 아동 및 보호자의 의향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근거로 작성하여, 아동 및 그 가정의 지원계획을 한다고 되어있다.

후생노동성은 이 통지에서 ① 평가, 의향청취, 계획, 실천, 재평가로서 케어경영컨설팅의 관점이 불가피한 점, ②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조치 등을 취할 때,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청취가 법정으로 인정되지만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의 취지를 더욱 구체화하는 관점에서 시설에 입소해서도 의견조사가 필요하다는 점, ③ 관계기관과의 연계와 가정환경의 조정이 중요하다는 점의 3가지 점을 중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상담소와 양육시설간의 업무나 역할의 연계에 대해서 종합적인 방침이 필요하며, 아동상담소 인력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며, 입소시설의 실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립지원계획 프로그램의 책정은 우선 입소아동들을 이해하고, 직원들과 아동들과의 인간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아동과 그 부모의 의향을 존중한 가정조정이 필요하다. 더욱이 졸업한 원생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필연적으로 중시해 나가야 한다(淺倉新一 外1人, 2005).

〈표 4-8〉 시설 입·퇴소에 관련 아동상담소·시설의 회의 검토사항

	아동상담소에서의 검토사항	시설에서의 검토사항	회의 참가자
입소 결정 회의	처우선택 및 이유 보호자·아동 등의 의향 아동복지심의회의 의견 단기적과제와 원조방법 중장기적 과제와 원조방법 차기검증시기	아동의 입소이유확인 부모·아동의 의향과 건강 등 담당그룹·직원결정 단기적 목표와 지원방법 중장기적 목표와 지원방법 퇴소시기의 설정 가족관계와 가정조정 등 아동상담소와 앞으로의 연계	보육사, 아동지도원 심리담당직원, 영양사 조리사, 간호사 시설장, 아동복지사
문제 행동 사정 회의	아동상담소에서는 담당 복지 사 및 심리관정원 등이 참가 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조언 필요에 따라 일시보호 또는 심리관정을 실시	문제행동과 태도 문제행동과 원인, 배경 담당자로부터 현상 보고 입소 후에 있어서 문제특성 기타 문제행동, 태도 등	보육사, 아동지도원 심리담당직원, 영양사 조리사, 간호사 시설장, 아동복지사 심리관정원
중간 회의	시설에서 하는 중간회의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또는 출석가능하다면 되도록 참가 하여 검토	시설생활사 및 적응 상황 부모자녀관계 등의 변화 학교 등의 취학상황 취미·특기·장점·단점 목표수정 등의 확인	보육사, 아동지도원 심리담당직원 영양사, 간호사 시설장, 아동복지사
퇴소 준비 회의	시설퇴소 후의 가정복귀도 생각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복지사와 함께 가정조정 등을 실시 퇴소 후의 진로 및 애프터서비스 등의 연계 관련 논의	퇴소까지의 처우경과 퇴소의 진로에 대한 검토 퇴소 후의 애프터서비스 퇴소 후의 생활, 각오 향후 사례 대비	보육사, 아동지도원 심리담당직원, 영양사, 조리사, 간호사 시설장, 아동복지사 학교담당

자료: 浅倉新一 外1人 (2005), 新・子どもの福祉と施設養護, p.138.)

다. 위탁가정지원

위탁가정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일본의 수양부모제도가 있다. 수양부모는 친부모에 의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사회적으로 구제하는 제도의 하나로 아동복지법 제6조 3항은 수양부모를 보호자가 없는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감호 받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을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자로서, 도도부현 지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즉, 수양부모제도는 원가정에서 적절한 양육을 기대할 수 없는 아동에게 그 인격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 따뜻한 애정과 아동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를 가진 가정을 부여하는 것으로 애착관계의 형성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수양부모는 양육수양부모, 친족수양부모, 단기수양부모 및 전문수양부모 등으로 구분된다. 양육수양부모는 양자 결연을 희망하는 부모로 아동을 위탁할 때에는 양육수양부모와 아동과의 영속적인 관계성을 만들어 위탁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배려한다.

친족수양부모는 아동을 감호하고 있는 자가 사망, 행방불명, 구속 등에 의해, 아동의 감호가 불가능하여 친족에게 그 양육을 위탁하지 않으면 그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켜 보호를 해야 하는 경우, 그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보다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적당한 경우라고 생각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의 유무에 관계없이, 3촌 이내에 있는 자에게 아동의 양육을 위탁하는 제도이다. 수양부모희망자에 한해서 친족수양부모로서 위탁한다.

단기수양부모는 아동의 생활환경의 변화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아동상담소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한 다음, 되도록 그 아동의 보호자의 거주지 근처로 하여, 단기수양부모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수양부모에게 아동을 위탁하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동위원, 사회복지사로부터 아동상담소장에게 전화 연락 등에 의해 仮위탁으로서 처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단

기수양부모에게 위탁하는 기간은 1년을 넘지 않으며, 도도부현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탁아동이나 위탁아동의 보호자, 아동상담소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탁조치이유가 소멸했다고 생각될 시기에는 아동복지사가 보호자를 방문하여, 실정을 파악하고 위탁해제 등의 조치를 원활히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한편, 아동에게 가정적 체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을 대상으로 여름휴가와 주말을 이용하여 단기간위탁을 단계적으로 하는 수양부모도 단기수양부모에게 포함되어있어 적극적인 운용을 도모한다. 이 경우의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해당아동복지시설장이 아동상담소에 알려서 단기수양부모와 협의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수양부모는 심신의 유해한 영향의 정도가 심한 아동에 대해서는 전문수양부모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아동상담소는 관계기관의 협력을 얻어서 위탁아동과 전문수양부모와의 사이를 충분히 조정 한 다음에 위탁한다. 아동이 건전한 발달을 위해 필요한 애착관계 등 관계성을 형성해 가는 관점에서 전문수양부모에게 위탁하는 아동은 유아 등 되도록 연령이 낮은 아동이 바람직하다. 전문수양부모에게 두 번째 아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아동이 충분히 안정을 했는지, 두 번째 아동에 대해 납득을 하고 있는지, 또한 첫 번째 아동이 가정 복귀를 위한 준비와 조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가 바람직하다.

일본 수양제도의 상황을 보면, 등록 수양부모의 수는 1960년도에 약 19,000명을 최고로 2001년에는 약 7,300명으로 1/3 가깝게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실제로 아동의 양육을 위탁하고 있는 수양부모의 수는 1,700명에 지나지 않고, 위탁아동 수는 2,200명이라는 실정에 있다. 또한 수양부모위탁은 요보호아동전체의 6%에 지나지 않는다.

수양부모제도의 운영은 도도부현 지사, 아동상담소장, 복지사무소장,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시설장이 아동복지법(1947년 법률 제164호), 아동복지법시행령(1948년 政令 제74호), 아동복지법시행규칙(1948년 후생성령 제11호), 수양부모의 인정 등에 관한 省令(2003년 후생노동성령 제

115호) 및 수양부모가 하는 양육에 관한 최저기준(2003년 후생노동성령 제116호) 등에 준하여 각자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도도부현 지사로부터 아동을 수양부모에게 위탁하는 권한을 위임 받은 아동상담소장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 도도부현 지사에게 보고하며, 아동상담소장, 복지사무소장, 아동위원, 아동복지시설장, 시구정촌, 학교 등을 비롯하여, 수양부모회, 기타 민간단체와 긴밀하게 연락을 가져, 수양부모제도가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노력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장은 수양부모와 파트너로서 상호연계를 취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도록 수양부모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유아원에 배치되어 있는 가정지원전문상담원 등은 수양부모의 지원 등에 힘써야 한다.

한편, 수양부모 희망자는 거주지의 도도부현 지사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신청해야 하며, 省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하고, 그 외에 필요에 따라 건강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건강진단서, 경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아동상담소장은 신청이 있는 경우, 아동복지사 등을 수양부모희망자의 집에 파견하거나 복지사무소장 또는 아동위원에게 조사를 위촉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수양부모는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성실히 할 것이며, 도도부현 지사는 위탁아동에게 적절한 사회적인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아동상담소, 수양부모, 아동위원, 아동복지시설, 복지사무소 등에 의해 양육 팀을 편성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동양육에 대해 협의하여 수양부모가 하는 양육향상을 도모한다. 또 아동상담소는 양육계획을 수양부모에게 제시할 때, 수양부모가 위탁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 수양부모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야만 한다.

그리고 아동에게 친부모에 대한 일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으며, 이때, 아동상담소와 충분한 연계를 도모한다. 수양부모는 아동양육에 대해, 연수를 받아서 자기평가를 하는 등, 보다 나은 양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수양

부모는 아동과 보호자와의 통신, 면회, 일시귀택 등에 대해서는 아동상담소와 협의를 한 다음,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법을 취한다. 수양부모는 아동양육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아동양육에 대해 의문이나 고민을 혼자서 하지 말고 신속하게 지도담당자에게 연락을 함으로써 아동상담소 등, 공적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상담을 청하도록 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수양부모에 대해 지도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아동양육에 관한 필요한 지도를 한다. 아동상담소장은 수양부모에게 지도할 때, 지도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언을 한다. 지도담당자는 방문 등을 통해 수양부모에게 지도한 사항을 아동상담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도도부현 지사에게 보고한다. 지도담당자는 아동양육에 관해 필요한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양부모가 이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아동상담소장을 걸쳐 도도부현 지사에게 의견을 첨부해서 보고한다.

수양부모가 하는 아동양육은 개인적인 양육이 아니라 사회적인 양육이기 때문에 도도부현 지사와 아동상담소장은 아동양육의 모든 것을 수양부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회자원을 이용하면서 수양부모가 하는 양육을 지원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수양부모의 상담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정비에 노력하며 수양부모로부터 상담과 지원을 요구받을 경우, 신속하게 적절한 대응을 도모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수양부모로부터 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재 위탁조치(일시적인 휴식을 위한 원조 조치) 신청이 있을 경우 또는 수양부모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로 인해 도도부현 지사에 의해, 재위탁(일시적인 휴식을 위한 원조 조치)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아동양육을 배려하여 신속하게 적절한 대응을 도모한다. 도도부현 지사에 의해, 재위탁(일시적인 휴식을 위한 원조 조치)조치를 받으려고 하는 수양부모는 이 조치에 의해 아동이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아동이 위탁된 수양부모와 아동복지시설과 좋은 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한다.

한편, 수양부모에게 지급되는 위탁비는 수양부모수당, 일반생활비, 교육비, 기타비용 등으로 구분된다. 수양부모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체에서 국가기준에 의해 일반생활비나 교육비, 수당 등이 지급되나 그 외에 학교급식비, 견학여행비 등은 지방자치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비용은 국가와 도도부현·政令지정도시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수양부모위탁에 있어서 위탁에 드는 비용을 보호자의 소득에 의해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보호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표 4-9 참조).

그러나 일본의 수양부모제도는 아동보호체계의 일환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가족제도가 혈연관계를 중시하고 있어 혈연이 다른 아동을 양육하는데 저항감을 가지고 있고 아직 편견이나 차별을 발생하기 쉽다. 둘째, 육아불안이라는 표현이 생길 정도로 일반인의 정도로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심각하다. 셋째, 수양부모 희망자 중에는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 양자결연의 후보가 적다. 넷째, 수양부모에 대한 지원체제, 위탁비(조치비)등의 지원수준이 미흡하다. 다섯째, 국가의 사회적 양호나 양육이념 중, 수양부모제도를 제일 선택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아동상담소 혹은 아동복지사가 수양부모 위탁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수양부모회보고서」에 의하면, 수양부모의 사회적 양호의 실수의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수양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서는 국가에게 「수양제도의 개발·보급을 위한 방책」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사회적 양육 시스템에 있어 수양제도의 자리매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① 시설과의 연계·상호 보완, ② 수양부모의 사회복지사업화의 검토, ③ 복지전문으로서의 수양부모, ④ 수양부모사업에 있어서 시정촌의 역할, ⑤ 수양부모기능의 확충(연장 아동의 자립지원수양부모·수양부모 그룹홈 등의 신설)의 검토를 요구와 수양부모제도에 의한 양육은 개인적인 양육이 아니라 사회적 양육

으로서 『수양부모지원의 강화』를 강하게 요망하고 있다.

〈표 4-9〉 수양부모 위탁에 있어서 위탁비 내역(2003)

(단위: 엔)

비 용	보 호 단 가		
	경상적	일시적	일할(日割)
수양부모수당	30,000		
수양부모수탁지도비		31,500	
전문수양부모수당	90,200		
일반생활비, 일반분(영아를 제외)	47,780		1,586
유아분	48,170		1,599
원조서비스(보살핌)			5,600
교육비 소학교	2,110		
중학교	4,180		
맹·농아양호학교	4,180		
교재대가산	실비		
교통비가산	실비		
학교급식비	실비		
건학여행비 소학교 6학년		20,600	
중학교 3학년		55,900	
양호학교·고교 3학년		108,200	
입학진학지도금 소학교 1학년		39,500	
중학교 1학년		46,100	
고교 1학년		55,500	
특별육성금 (공립고교)	22,270		
(사립고교)	32,970		
여름 특별행사비		3,000	
기말일시부조비		5,130	
의료비		실비	
직업보도비 교과서비용 등	4,800		
교통비	실비		
아동용채난(採暖)비		1,270	
취업지도비		63,000	
취업지도비(특별기준)		138,380	

자료: 庄司順一(2003). フォスターケア, 里親制度と里親養育

라. 입양지원

일본의 입양지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르는 양자제도를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양자제도의 의미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 및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에게 따뜻한 가정을 부여하여, 그 아동의 양육에 대한 법적안정성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양자결연에는 민법(明治 29년 법률 제89호) 제782조 이하에 있어서, 규정하는 보통양자결연과 민법 제817조의 2 이하에 있어서 규정하는 특별양자결연 등이 있다.

보통양자결연은 양자가 15세 미만일 때는 그 법정대리인이 양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모든 것을 대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15세 이상일 경우에는 양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에게 의사확인이 우선된다. 보통양자결연에서는 입양대상 아동은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가 부양의무와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호적에 대해서도 보통양자로 기재되어 친부모와 양부모의 쌍방이 기재된다.

양부모가 살고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가정재판소에서 양자결연의 신청을 하면, 가정재판소의 조사관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양자결연을 할 아동에 대해 복지가 적당한지를 확인한다. 조사관의 조사를 거쳐 부모-자녀의 적합성, 아동의 요보호성 등을 심리하여 양자결연의 결정을 심의한다. 보통은 1회 심판으로 끝낸다.

보통양자결연의 경우는 가정재판소에서 양자결연의 허가를 얻은 후, 호적에 의거하여 서류를 준비해서 양자결연의 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수락하는 것으로 보통양자결연이 성립된다.

수양부모에게 위탁된 아동의 경우, 관계 기관에 서류를 제출한 다음 날, 아동복지법에 의해 수양부모로서의 위탁이 해제된다. 위탁한 아동이 성인이 된 후, 수양부모와 양자결연을 하는 경우는 가정재판소에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쌍방의 호적 본을 준비하여 「양자결연신고서」

를 구청이나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면 양자결연이 성립된다. 관계기관에 서류를 제출 할 때에는 혼인신고서와 마찬가지로 증인 2인이 필요하다.

한편, 1987년(昭和 62)년의 민법개정에 의해 신설되어 1988년에 시행된 특별양자결연제도는 6세 미만의 아동(예외로서 6세에 되기 전부터 양부모가 되려고 아동을 감호한 경우에 한해서는 8세 미만까지 인정한다)에 대해서, 아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항구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종래의 보통양자결연과 다르게 양부모는 부부가 같이 있어야 하며,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성립된다. 특별양자결연에 성립에 의해서 특별양자와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호적상 특별양자는 실제 친자식과 똑 같이 기재된다. 아동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해서 해제할 수가 있다.

특별양자결연에 대해서는 대략 6개월 정도의 시험양육(아동상담소가 알선한 경우는 아동복지법의 수양부모위탁)을 걸쳐 심판이 이루어진다. 가정재판소에 특별양자결연 신청을 하게 되면, 아동상담소에서 양자가 되는 자의 요보호성, 양부모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적합성, 양자와 양부모의 적합성 등의 조사가 이루어진다.

아동상담소장은 요보호아동의 대책의 일환으로써, 아동 보호가 결여되어 있는 아동을 적당한 양부모를 찾아내어서 걱정한 양자결연을 맺도록 노력한다. 입양 및 해지절차와 이 과정에서의 상담소의 역할에 대해 庄司順一(2003)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양자결연의 알선에 관한 수속에 대해서 ① 자기에게 양자 알선을 희망하는 자(이하 「양자결연희망자」라 함)의 상담을 받은 아동상담소장은 그 가정을 조사하여 그 자가 양부모로서 적당한지를 인정한다. ② 자기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시키기를 희망하는 자의 상담을 받은 아동상담소장은 그 아이에 대해 조사를 한다. ③ 아동상담소장은 아동 및 양자결연희망자에 대해서 조사 및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양육수양부모에 관한 조사, 인정의 경우와 같다. ④ 아동상담소장은 양자결연희망자 및 아동에 대한 조사, 인정을 한 후, 양자결연희망자 및 아동(아동복지법(1947년법률 제164호)등의 규정에 따라, 통고 및 송치된 아동을 포함)에 대해서 양자결연의 알선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된 자가 있을 때는 다음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이 경우, 양자결연희망자에게 아동을 적어도 6개월 이상 양육수양부모로서 양육할 것을 권한다.

湯澤雍彦(2005)은 수양부모제도와 마찬가지로 입양제의 진흥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서 양부모가정의 폐쇄성, 비밀성, 사회적 인식의 부족 등을 들고 있다. 수양부모제도를 이용하여 양자결연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이를 맞이하면 주위에 아무도 모르게 이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아동상담소의 연락, 방문에 대해서 「결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냥 관습하지 않고 내버려두세요」라고 하며 아동상담소와 수양부모사이의 관계를 극도로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당연한 것처럼 통지 등에도 소홀히 한다고 한다.

3. 일본 아동보호체계의 시사점

한국과 일본 모두 요보호아동에 대한 관심이 학대아동의 증가라는 아동복지에 바람직하지 못한 제반 사회적 현상의 증가와 저출산과 미래인력 양성이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요보호아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점에서도 서로 공통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요보호아동을 위한 시설의 경우, 거주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은 소규모화하여 가정과 같은 환경을 갖추도록 하는 점에서 그 방향이 같다. 특히 일본의 경우, 소규모화한 몇 개의 보호시설을 묶는 기간시설을 두어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도록 한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요보호아동에 대한 전문 인력의 중요성과 인력의

부족 및 시설장과 종사자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아동이 처한 여건을 조사하고 아동과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는 아동복지사와 어려움을 가진 아동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아동상담사의 전문성과 충분한 배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 입소아동의 등교거부문제를 다루기 위한 심리요법 담당자를 직원으로 배치하는 등 아동복지에 관련된 경험과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요보호아동처럼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필요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지속적인 연수 및 자기연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아동상담소가 요보호아동과 아동복지시설, 지역사회, 관련 행정부처나 사법기관과의 연계를 맺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모든 아동복지시설에서 마찬가지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각 보호내용에 따라 다른 주무기관이 있다. 가령 중앙/지방 가정위탁지원센터나 입양정보센터 등과 같은 단체가 있어 각 사안에 대한 아동문제를 다룬다. 이는 아동문제에 더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문제가 개별적으로 일어나기 보다는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합적,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때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아동보호체계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 동일한 아동에 대해 중복, 반복 대처하는 과정에서 오는 아동에 대한 조치의 과다나 비일관성, 행정력과 재정적 효율성의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요보호아동을 다루는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및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조정하는 아동상담소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본다.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입양문제에 있어 친족입양을 원하고 입양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등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의식하며, 가족제도나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풍토로 비혈연 입양이 활발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슷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수양부모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 그 유형도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수양부모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 친부모에게서 양육되지 못하는 경우의 아동이 가족과 같은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요보호아동보호를 위해 수양부모제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에만 있는 위탁제도로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민법상 부양의무에 관계없이 3친 이내에 있는 자에게 해당 아동의 양육을 위탁하는 친족수양부모위탁이나 1년 이하의 위탁을 하며, 시설 아동에 대해 여름휴가나 주말 등의 기간만 가정적인 체험을 하게 하는 방안인 단기수양부모위탁, 부모의 학대로 인해 심신이 유해한 영향을 받았을 경우의 전문수양부모위탁 등은 다양한 위탁사유를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위탁보호를 할 수 있으며, 더 적절한 위탁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일본의 아동복지시설에는 아동가정지원센터가 있어 지역아동의 복지에 관하여 각반의 문제에 대해 아동, 모자가정, 그밖에 가정, 지역주민들에게 상담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조언과 함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에 대해 참여한다. 아울러 아동상담소와 아동복지시설 등과의 연계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하여 지역아동과 가정복지의 향상을 도모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앞으로 세워질 육아지원센터와 그 기능이 유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센터를 관할하는 부처가 여성부이고 아동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보육시설도 아동복지시설로 후생성관할만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아동가정지원센터는 일반아동의 보육서비스뿐 아니라 요보호아동의 양육까지 담당하는 종합적인 아동양육지원체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아동과 요보호아동에 대한 정책과 전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종합적인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거나 차별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요보호아동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행·재정적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비슷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의 정비 및 관련 부처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체계 수립과 역할분담 및 협력에 대한 지침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사회복지시설의 관리를 위해 두고 있는 불평해소절차나 평가제도도 아동보호 시설의 관리와 질적 향상을 위해 도입을 검토해야 할 제도일 것이다. 일본의 불평해결제도·평가제도(자기(자주)·제 삼자)는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안 속에 정책적으로 제언되어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2000년)에서 제도화되었다.

아동양호분야의 평가제도는 시설이 하는 서비스를 자기 평가함으로써 스스로 서비스의 수준을 인정하며,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해 명확해지고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이다. 그 기본 이념은 「아동을 권리주체로서 자리매김하여,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배려하는 원조」를 하는 것이다. 기본방침으로서 ① 아동의 의사를 존중, ② 아동의 자립지원, ③ 지에서 양육가정지원, ④ 서비스 질의 향상과 투명성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평가는 자체평가기준 작성으로부터 시작한다. 제 삼자 평가는 아동양호시설의 경우 수심접수 → 자기 평가·이용자 앙케이트 → 서면심사·사전 협의(첫번째) → 실시조사(1회) → 평가결과 조사의 검토 → 실시조사에 근거한 과제 제시 → 개선방안(약 6개월) → 서면심사·사전 협의(두번째) → 실시조사(2회) → 최종 평가결과 검토 → 최종 평가결정 → 평가결과통지송부 → 평가결과 공포의 순으로 이루어진다(淺倉新一 外1人, 2005).

아동양호시설 평가가 일본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고 평가항목의 문제, 평가기간 및 비용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동보호시설의 질 향상과 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그 실시에 대해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제5장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종합 비교

제4장에서는 주요 OECD 국가 중 사회정책의 특성이 뚜렷하게 구별되면서 동시에 아동보호체계의 성격도 상이한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등 4개국의 아동보호체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본 장에서는 기타 OECD 회원국의 아동보호체계를 개괄적으로 비교하였다.

주요 분석자료는 UN의 아동폭력연구에서 수집된 국가보고서로서 전체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 사례분석이 이루어진 5개국을 비롯하여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국가보고서의 내용이 입체적으로 분석 가능한 경우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들 자료의 분석에 앞서 국제연합의 아동폭력연구(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자.

본 연구는 국제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국제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등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아동의 성장발달이 이루어지는 가정과 교육시설 및 각종 아동보호시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여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기초한 적극적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3년 후반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최종 연구결과는 2006년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을 바탕으로 수행되고 있는 동 연구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세계폭력및보건보고서(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에서 정의하고 있는 폭력의 정의를 적용하고 있다. 즉, 폭력은 신체적 압력 및 협박 등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아동에게 신체적·심리적 상해를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로 폭력에 대한 광의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제1절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비교

1. 아동보호관련 법적·제도적 환경의 비교

아동권리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24년 국제연맹 총회(League of Nations) 시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채택되면서 부터이다. 이후 국제연합은 1979년을 ‘세계 아동의 해(The International Year of the Child)’로 결정하고, 이를 기념하여 아동권리선언을 더욱 구체화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조약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아동권리에 관한 선언적 내용에 머물던 논의를 아동 인권의 실질적 보장과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통해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1989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동 협약은 아동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사회 최초의 조약이다. 이어서 법적 발효에 필요한 20개국의 비준이 이루어지면서 1991년 9월에 국제법으로 공포되었다.

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인류의 관심을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고, 동 협약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하였다.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백하게 제시하고, 이에 준하는 각종 보호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현재까지 동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OECD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없다.

아동권리협약 이외에도 각 국은 국내법 규정에 준하여 아동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요 OECD 국가들의 아동보호관련 법체계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각국의 법적 체계는 고유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첫째, 국가 헌법이나 연방법과 같이 기본법 차원에서 아동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경우이다. 둘째, 아동보호의 문제를 형법에서 주로 논의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도의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존재하거나 기본법 또는 형법에서 아동보호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아동보호와 관련된 특별법을 갖고 있는 경우 등이다.

<표 5-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과 같이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및 제제를 형법에 준하여 관리한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의 경우 아동폭력의 예방과 폭력으로부터의 아동보호,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일반형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형법상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규정이 존재한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주로 형법에서 아동폭력과 관련된 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 및 주정부는 아동권익의 최우선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별 아동보호법을 제정하고 있다.

반면, 헌법이나 연방법 또는 각국의 기본법에 아동보호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아동권익 최우선의 원칙을 명시한 나라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이다. 이탈리아의 기본법 3조는 모든 이탈리아 법과 재판 체계의 초석이 되어 아동보호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기본법상에서 아동권리 최선의 보호, 아동생명·생존의 보장, 그리고 아동의견의

존중을 보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에 관련된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는 헝가리,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미국, 영국 등이다. 일본은 형법에서 강간, 살인, 신체 상해, 신체적 폭력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아동보호법, 아동학대방지법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 아동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아동복지법, 성폭력처벌및피해자보호법, 가정폭력처벌특별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 학교폭력방지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포함된다. 헝가리의 경우에도 아동학대 및 성폭력 범죄 등과 관련된 구체적 형법 조항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발달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아동보호법을 구축하고 있다.

〈표 5-1〉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관련 법적 체계

아동보호 관련 법적환경	기본법차원에서 논의	형법에서 주로 논의	아동보호관련 특별법 존재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헝가리,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미국, 영국, 스웨덴

주: 호주의 경우 지역별(territory) 고유의 법체계를 갖고 있음.

한편, 각국의 아동보호에 관련된 법률들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아동 보호방안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다.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으로 각종 불법·유해정보가 범람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이 제작 및 전파되며, 일부 매체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창구로 변질됨에 따라 인터넷상의 아동보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 포르노그래피 및 유해정보와 관련된 법령은 대체로 아동보호체

계 관련법 체제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아동보호관련 규정을 형법에서 주로 논의하고 있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등은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금지 규정도 형법상에서 논의하고 있다. 특히, 호주 형법에서는 인터넷상으로 배포되는 아동관련 음란물의 소지 및 배포를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2002년 형법 개정을 통하여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발송, 상용화, 수출 등을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아동 포르노그래피 등 온라인상의 유해정보 차단을 위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헝가리는 아동보호법에 준하여 아동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력물 및 포르노그래피에 의한 혐오상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헝가리 방송법에서도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 아동에 대한 유해정도 등급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교와 도서관에 아동에게 유해한 사이트의 단속을 의무화한 인터넷아동보호법을 마련하였다. 동 법은 사이버 범죄, 아동 포르노그래피 방지, 13세 이하의 아동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전용도메인(kids.us)의 구축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법무부와 합동으로 성인을 아동으로 묘사한 음란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한 아동외설및포르노방지법안을 마련하였다.

이탈리아와 뉴질랜드 등에서는 아동 포르노그래피 및 유해정보 관리·감독을 위하여 관련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비롯하여 아동의 성적 착취(매매춘, 인신매매 포함)와 관련한 모든 종류의 행위를 노예제도로 규정하고, 이를 퇴치하기 위한 노예척결법을 입안한 상태이다. 노예척결법에서는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형태이든지 1인 이상을 강제에 의거하거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기만함으로써 착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뉴질랜드에서도 영화·비디오·출판물분류법을 입안하여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금지하고자 한다.

2. 아동보호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 비교

학대, 착취, 폭력 및 부적절한 양육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아동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정책 수립은 중앙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정책시행 및 서비스 전달의 책임은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경우이다.

중앙정부, 특히 사회정책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아동보호 정책 및 제도를 운영하는 OECD 국가는 호주, 체코,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뉴질랜드, 독일 등이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진행되더라도 그 특성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에서는 아동보호법 규정에 따라 아동보호서비스가 중앙정부의 사회부 관련 업무로 구분되어 있으나, 독립기구인 아동보호사무국(Government Agency for Child Protection)이 설치되어 있어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달에 관련된 부처들을 포괄한다. 또한 아동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조정·보완의 역할과 아동복지위원회에 대한 아동보호법의 시행과 해석, 지도·감독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가족노인여성아동부(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Children)가 아동보호 관련 주무부처로서 아동복지사무국을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중재(intervention)를 실시하고 있다. 또 가정법원과 경찰이 아동보호의 주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각 지방정부는 중앙에서 수립한 계획하의 사업들을 수행할 책임을 갖고 있다.

반면, 일본은 아동보호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담당하여 총괄하는 부처가 없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개별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폭력 등이 범죄로 고발된 경우

에는 검찰이 범죄수사권을 갖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기소권을 갖는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시설 내에서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협력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에는 학대예방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복지관련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지만 대체로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실질적인 집행 및 서비스 전달의 책임을 갖고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위탁운영하면서 아동폭력의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UN 아동권리협약의 비준과 함께 정부 부처간 범정부적 논의를 위하여 아동보호위원회 및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아동권리를 도모하고 각종 보호 정책의 조정역할을 담당한다.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은 아동보호체계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의 수립·집행 그리고 서비스의 전달을 지방정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가족관련 중앙 부처인 고용연대부(Ministry of Employment and Solidarity) 장관에게 아동권리협약 이행방법에 대한 정부조정기능을 위임하였지만, 대부분의 아동보호 관련 업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효율적인 아동보호 업무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아동보호와 관련된 국제통상 문제나 외교문제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무수행 역량의 균형을 고려하고 있다.

〈표 5-2〉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관련 공적전달 체계

	대부분 중앙정부 담당	대부분 지방정부 담당
아동보호 관련 공적전달체계	호주, 오스트리아, 체코,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¹⁾ , 이탈리아,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 등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 영국

주: 1) 한국의 경우 아동보호 사업의 대부분을 중앙에서 지방정부로의 이양되고 있음.

그러나 중앙집권적 또는 지방분권적 아동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동보호체계의 구축과정과 보호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정책의 수립과정에 적극적 의사전달과 아동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이 시민단체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정책이 입안된 이후에도 구체적인 서비스 전달에 있어 민간의 참여가 없었다면 아동보호 자체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영국과 스웨덴 등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아동보호관련 정책 수립과 입법 활동이 전개되지만, 각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대면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전달은 민간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을 통한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 질 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아울러 민간단체의 활동에 따라 아동보호분야에 대한 재원확보의 규모도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개별 활동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와도 상당히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서 실질적인 사업구상 및 서비스전달은 물론 예산확보까지 전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즉, 정부가 추진하는 아동보호 사업의 상당수가 민간에 위탁운영 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일부 보호사업의 경

우 순수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아동보호사업의 대부분이 지방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의지에 따라 아동보호 사업에 대한 그 나머의 재정지원 규모도 변동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아동보호사업의 재정적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서비스 전달의 일관성 및 보호대상에 대한 보호내용 확충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더욱이 지자체의 재정규모 및 아동보호정책 수립·집행 역량 등에 대한 사전평가나 준비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보호체계의 구축 및 서비스 전달에 있어 지역간 편차가 확대될 수도 있다.

3. 아동보호체계의 모니터링과 평가 비교

아동보호체계의 모니터링은 아동보호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보호체계의 변화 및 활성화를 제안하는 일련의 생산적 과정이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보호체계가 지향하는 목표와 목적을 보다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정책목표를 향한 성과와 집행과정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체계의 수립과 전달체계의 운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모니터링 과정 자체만큼이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수집을 위한 실태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표 5-3〉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모니터링 및 평가

	모니터링 관련 조직 또는 위원회 구성	모니터링 전담 조직 없음
정기적 자료수집	프랑스, 뉴질랜드 ¹⁾ , 미국	네덜란드*
부정기적 자료수집	독일, 캐나다, 아일랜드, 스웨덴,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호주, 핀란드, 일본, 한국
제한적 자료수집	호주,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주: 1) 뉴질랜드는 모니터링 전담 조직을 설치 예정이며 네덜란드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예정임.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관련 모니터링 체계를 비교해본 결과, 모니터링 또는 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와 별도조직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어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평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모니터링과 관련된 조직적·제도적 설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모니터링 관련조직의 설치여부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모니터링 또는 평가를 위한 별도의 자료수집이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관련 조사·연구사업이 한시적·제한적으로 진행된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표 5-3 참고).

아동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나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국가는 프랑스, 뉴질랜드, 독일, 캐나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호주, 오스트리아, 미국 등이다. 이 가운데 프랑스, 캐나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은 아동옴부즈만 제도를 통해서 UN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수준 검토하면서 동시에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아동옴부즈만제도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모하기 위한 독립적 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시민단체의 모니터링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니터링 기구가 설치된 국가들에서도 아동보호관련 국가통계가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프랑스의 경우 아동옴부즈만 위원들을 통해 발간되는 연간보고서에서 아동폭력 피해 사례가 관리되고 있고, 뉴질랜드는 향후 독립적인 모니터링 평가기구를 설치하여 아동보호서비스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할 계획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부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실태조사 및 연구조사 등에서 아동보호서비스가 필요한 학대, 착취, 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

드 등은 검찰 또는 경찰 조직을 통하여 작성되는 국가 범죄관련 통계를 통하여 아동피해자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한국은 아동학대연감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를 가해자 유형별, 특성별, 피해자 연령별, 피해 특성별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학대아동에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정리하자면 주요 OECD 국가의 사례를 볼 때, 전반적으로 아동보호 체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지 않다. 정책수립 및 수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과정에 대해 각국 정부가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체계운영의 효율성과 발전적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수행 및 서비스 전달과정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와 판단,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 실태 비교

아동보호체계의 효과적 운영과 보호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민간단체 및 각종 기관/조직들이 아동보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서비스 전달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 관련 이슈에 대한 미디어의 참여는 대체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민간단체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실질적인 서비스 전달이 활발하게 전달되고 있는 호주,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한국 등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아동보호관련 사건에 대한 보도나 사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대중매체가 갖는 사회통합의 기능과 광범위한 교육 및 홍보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

동폭력의 유해성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전체 사회가 모색하며, 아동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매체로 활용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라디오와 TV 방송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아동폭력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면서 10.6백만 달러의 아동보호기금을 조성하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뉴질랜드는 공중파방송강령(The Broadcasting Conduct for Free to Air Television)을 바탕으로 대중매체에 의한 아동피해 사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5-4〉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 실태 비교

	적극적 민간참여	소극적 민간참여
적극적 미디어 역할	캐나다, 체코,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미국	
소극적 미디어 역할	호주,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제2절 OECD 국가 아동보호체계의 시사점

UN 아동폭력연구에서 수집된 아동보호 현황 관련 국가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를 법적 체계, 공적전달체계,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 등을 중심으로 비교·검토해 보았다. 각국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향후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아동보호체계 관련 법적·제도적 환경을 비교해 본 결과 우선 UN 아동권리협약의 비준과 비준내용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법체계 및 제도적 여건 조성의 중요성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도 아동보호 관련법을 재정비하여 아동보호에 대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관련법이 통일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고 일부에서는 이들 법의 통합방안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물론, 본 연구가 아동보호 관련법의 입법 체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어렵다. 다만, 단일법 제정을 위한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현 입법체계 안에서 관련법의 연계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한다.

둘째,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달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호체계의 구축 자체가 민간의 역할에 상당부분 의존하였고, 구체적인 보호서비스의 전달이 사실상 민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과 아동보호체계 있어 공공부문의 명확한 자리매김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재원확보와 투자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 요구된다.

셋째,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모니터링의 역할과 기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체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니터링 기능을 구축하고 평가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보다 면밀한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와 민간협력 방안에 있어 지역사회 아동보호 관련 물적·인적 자원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양한 연계방안의 수립이 검토될 수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협력을 기획·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을 이용할 경우, 새로운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 론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아동보호의 개념을 학대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에 초점을 두는 일반적 협의의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협할 수 있는 일련의 발달위기(developmental risks), 즉, 학대를 비롯한 착취, 폭력 및 부적절한 양육환경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아동이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기회의 형평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지지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아동 보호체계에 접근하였다.

모든 아동에 대한 보호와 성장발달의 지원이 국가와 사회의 역점시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그 법적 근거나 제도적·정책적 바탕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 2004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아동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본바탕을 마련하였다지만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저출산 시대에 아동인구의 감소 등을 고려한다면 이미 태어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는 것은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 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사회적 과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아동보호정책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아동보호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자 과제였다. 자료수집의 한계와 정보의 편차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으나, 주

요 국가의 아동보호관련 법적·제도적 여건을 살피고, 아동보호서비스의 공적전달체계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검토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 사회의 참여 현황과 민간협력 내용을 비교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러한 비교의 틀이 궁극적으로 아동보호가 추구해야 할 보호 환경(protective environment)의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이었다는 점에서 갖는 함의 또한 적지 않다고 본다. 아동보호환경의 구축은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에서도 강조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공유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의 견지에서 향후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호환경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은 사회정책의 영역아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만 한다. 거미줄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보호 망 속에서 아동이 경험하게 될 불행한 기억·그것이 학대이든, 착취 또는 폭력이든, 나아가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빈곤의 문제이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안정장치가 될 것이다.

국가 미래의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이자 우리의 시대적 사명으로서 모든 출생한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예방적 접근이 제1차적 임무일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현대 생활에서 예측가능한 모든 위험을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정책을 수립하고 그로부터 적절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상황을 파악, 위기상황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적,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2차적 숙제이다. 동시에 이러한 개입과 보호의 바탕에는 아동이 나고 자란 원가정으로 복귀하여 가족원들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족의 기능과 책임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아동보호체계의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마무리 짓고자 한다.

제2절 아동보호체계의 발전방향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는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기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어 각종 발달위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조차 용이하지 못한 실정이다. 보호체계 아동에게 바람직한 보호환경을 제공하여 정서, 신체, 인지 등 전인적(全人的) 발달을 지원하고, 이들의 잠재적 발달기회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가정이 증가하고 이혼·별거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가 증가하여 가정의 아동양육 및 보호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들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여 전문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전달하는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선 폭력, 착취, 학대 및 부적절한 양육환경에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구체적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체계의 구축 및 보호서비스의 개발·보급은 아동발달 및 아동보호에 대한 명백한 이론적·학문적 근거를 기초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위기상황 및 긴급 상황에 대한 보호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기상황의 조기 진단을 위한 위기로인(risk factor), 발달위기별 아동성장·발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와 이러한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보호환경 구성 요인, 그리고 위기상황 또는 발달위기의 경험으로부터 회복력(resiliency)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 등을 논리적으로 연계하고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

는 이론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보호는 발달위기에 처한 아동이 경험하게 될 물리적, 정신적 위험요인(risk factors)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발달위기로부터 사전에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를 예방하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의 마련이 강조되어야 한다. 빈곤·가정 이라든가 해체가정 등 고위험 집단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아동이 학대, 폭력, 착취 및 부적절한 양육의 경험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부모의 소득계층 및 가정환경과 관련 없이 모든 아동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보호요인을 개발하는 작업이야말로 아동보호체계 구축의 기본방향으로서 가치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서비스는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개입 또는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한 치료중심의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개입과 사후 치료 중심적 대처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2차 피해나 잠재적 피해의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는 비용대비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없다. 예방적 접근이 최적화되지 않은 아동보호체계에서는 아동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셋째, 보호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회, 제도, 문화, 정치 등 사회 전반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포괄적 아동보호체계의 구축 및 통합적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기상황에 대한 가족 생태학적 접근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발달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족생태이론(Family Ecology Theory)이 중요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였듯이,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발생 및 아동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는 아동이 처한 가족환경은 물론 주변 환경적 여건과 자원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지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태학적 관점에서 아동보호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개별아동이 처한 가족상황, 가족이 처한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포괄적으로 접

근할 수 있는 복합적이고 집중적이며 전문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대, 착취, 폭력 및 부적절한 환경으로 의심되는 상황의 아동에 대해서 문제와 욕구에 대한 정확한 사정·진단의 결과에 근거하여 아동보호서비스와 가족복지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는 종합적 보호기능이 필요하다. 다만, 새로운 기관 또는 조직의 신설의 측면에서 논의를 시작하기 보다는 기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기관들이 상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서비스 조정과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의 궁극적 목표는 보호대상 아동들이 발달위기의 부정적 경험을 빠른 시일 안에 치유하여 밝은 미래를 희망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보호아동의 발달기회에 대한 형평성 제고의 차원에서 각종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삶의 기회는 담보되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배제의 가능성이 높은 보호체계 대상 아동의 목소리에 좀더 귀 기울여야 한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받는 애정, 관심에 근접한 형태의 보호와 지지를 제공하고,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업의욕을 고취시켜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굴·발전시키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비 및 능력개발 지원 확대를 통하여 스스로의 삶을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기본 토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아동보호체계의 지원 아래서 모든 아동이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미래 사회에 대한 전략적 투자, 특히 인적자본에 대한 장기적 안목의 투자가 확충되어야 한다. 이러한 미래지향적 투자를 통해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배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논의된 기본 방향과 본 연구에서 검토된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관련 경험을 토대로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아동보호체계의 구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1. 법적·제도적 측면의 아동보호체계 발전방향

아동보호체계의 구축과 보호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동보호 및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이미 아동보호 및 복지 관련 법령이 9개 이상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단일법령으로 집중화할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과 그 과정의 소모적 논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주28)} 그러므로 통일된 하나의 법령으로 통일화하는 노력보다는 관련 법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통합적 법령 집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화의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대아동의 보호 등을 포괄하는 아동복지법의 경우 법적 대상인 아동의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법적 대상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그 연령대상을 9~24세로 제시하고 있어 아동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대상구분에서 조차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대상별 맞춤형 보호서비스의 전달을 위해서 아동인구의 연령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단일 연령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간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고 특히, 아동인구 관련 통계자료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아동관련 입법 활동은 물론 각종 아동보호 정책의 수립과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하는데 과학적 정책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증 자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아동 통계는 매우 제한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국가통계 생산과정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의 연령구분에 의해 부차적으로 생산되고 있을 뿐, 별도의

주28) 아동복지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보호시설에 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목적은 갖고 아동통계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생산되고 있는 아동관련 통계의 대부분도 일정한 연령기준이 없이 생산·발표 되면서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체 아동관련 통계 생산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외부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통계 자료 생산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현재 매년 발표되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통계는 당해연도 시설보호아동,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등 정책사업 대상으로 확인된 아동의 수를 합산하여 제시하는 수준이다. 다시 말하면 학대, 폭력, 착취 및 부적절한 양육환경으로 인해 발달위기에 노출된 아동을 조기발견하거나 아동보호체계를 작동하여 아동의 욕구와 특성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대상의 규모조차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아동보호서비스의 공적 전달체계 개선

우리나라 아동보호 업무의 대표적 성격을 갖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는 주로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중앙 1개소, 지방 19개소, 그리고 소규모 센터 19개소 등 총 39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수가 절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후관리 및 학대예방교육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못한 실정이다.^{주29)} 따라서 학대 관련 업무를 제외하고는 포괄적인 보호업무의 추진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현 상태의 시설 및 인력 규모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아동학대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만으로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29)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전문인력 규모는 중앙센터 총 9명이고 지방 센터의 경우에도 센터 1개소 당 9명이 배치되어 있지만 소규모 센터의 경우에는 개소 당 4명에 불과함.

미국은 이와 유사한 상황을 앞서 경험하였다. 학대아동 보호서비스를 담당하던 아동보호체계(Child Protective Service System)가 학대관련 업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업무 가중에 따르는 업무부담으로 인한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에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사회복지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즉, 학대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역사회 사회복지 협력체계를 활용하는 지역사회보호체계로의 전환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제외하고 학대피해 아동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협력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치료 및 보호 그리고 예방을 담당하는 예방센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사회기관·사법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을 연계하는 아동보호네트워크를 구축이 시급하다. 일부 지역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시설장들의 정기적인 모임과 선언적 협력 의지를 발표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보호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사회기관에 대한 아동보호의 역할과 기능을 개발·보급하고 이 기관들의 적극적 참여와 효율적 업무분담에 대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학대아동의 조기 발견,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관리의 실시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량강화는 물론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한다. 이로써 아동학대 발생시 긴급 보호활동을 제공하고 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기능을 전담하도록 아동학대예방센터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이미 정부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아동보호종합센터의 확충을 통해 학대아동에 대한 긴급조치 및 아동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5년 현

재 전국 800여 개소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의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및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을 위하여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현재는 지역사회 빈곤아동에 대한 보호와 교육, 급식전달과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지역특성에 맞추어 개발·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확충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동보호체계의 기능을 핵심 기능으로 부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호체계의 내실화 및 보호서비스 제공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별도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된다. 다만 아동학대에 방센터의 핵심 업무와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의 중첩 및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서비스 개발 및 보급과 업무분담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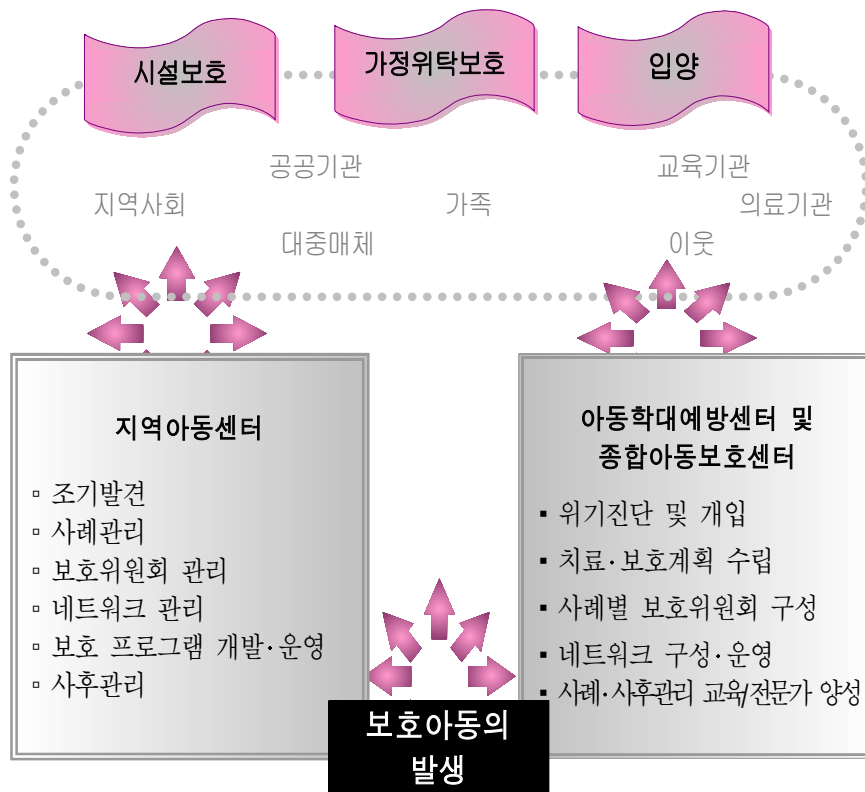
이러한 전략적 아동보호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관 간의 연계·협력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의 협조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처간 정보공유 및 업무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지역사회 단위의 독자적 업무협력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설령 지역사회단위의 보호체계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지역별 보호서비스 제공의 일관성과 체계성이 약화되면서 총체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보호서비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영국에서 실시하는 바와 같은 협력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구체적 실천방법이 될 수 있다. 영국의 협력프로그램은 아동보호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자치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관련 부처 실무진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대상 아동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와 안정적인 보호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활발한 정보교환 및 사례관리 회의(case conference) 등을 운영한다. 즉, 지역사회 보호네트워크가 사례관리의 차원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통합적·지속적 서비스의 제공을 아동보호체계의 발전 방향 최우선순위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아동보호서비스를 전달하게 될 경우, 종합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설확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기 설치된 인프라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아동보호정책에 대한 국민적 만족도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1]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협력체계 구축 모형



3.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분절적 아동보호서비스의 개선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보호서비스의 전달이 단순한 위기개입이나 치료적 접근으로 진행될 경우, 그 효과성과 효율성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 기존의 아동보호서비스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학대아동 보호와 단·장기 시설보호, 위탁가정 보호, 입양 등의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간의 연계체계가 취약하고,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사례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발생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아동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사례관리는 현 아동복지 체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방법이다. 사례관리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정(assessment)결과를 근거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보호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어서 아동이 생활하는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아동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호서비스의 조정과 점검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심층적인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달을 위하여 사례관리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체계의 높은 접근성이 요구된다. 보호체계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은 위기상황의 조기발견 및 진단 과정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대상 아동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 상황에 대한 문제파악 및 지속적인 관리가 용이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호체계의 접근성제고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의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다. 대표적인 방식이 공공이 정책의 계획·수립 및 관리·조정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은 재정참여 또는 운영지원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역할분담은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제 그 협력구조를 보다 체계화하고 효율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가정보호 중심의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공공의 역할규명이 필요하다. 특히, 현시점에서 구체적 논의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문이 소숙사 및 그룹홈(group-home)제도일 것이다. 기존의 대규모 시설보호가 그룹홈이나 소숙사 형태로 전환·운영되면서, 미흡하나마 가정과 같은 환경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보육사와 아동이 가정을 구성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일반아동과 마찬가지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의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그룹홈 생활아동은 전체 시설생활아동의 1%수준으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숙사 및 그룹홈 제도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함께 시설보호 이전의 중간과정으로서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공공부문의 적극적 개입을 통하여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위탁 또한 대리 및 친인척 가정의 장기위탁보호가 대부분으로 일반인에 의한 실질적인 가정위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가정위탁이 보편적인 요보호아동 보호방식인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탁가정의 빈번한 교체와 이로 인한 아동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4. 아동보호체계의 모니터링 활성화와 모니터링 결과의 환류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기본적 보호권과 발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호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아동보호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호체계의 전문적 운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현재 진행중인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모니터링의 과정이다. 아울러 모니터링 과정 자체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 결과의 원활한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끊임없이 보

호체계의 수정·보완을 통한 보호수준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아동보호체계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력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별 기관과 연계된 각 부처는 소관분야 정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성과평가 등 모니터링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물론 모니터링이 반드시 공적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당위성은 적지만, 통합적 보호서비스 제공의 초반에 정책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평가·모니터링의 결과를 공유하고 활용할 경우, 부처간, 사업부서간, 또는 유관기관이나 지역사회의 정책조정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식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모니터링 기관/조직 또는 시민평가단 등의 모니터링과 중복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분담 또는 지역사회 자원의 통폐합을 계획·추진한다.

최근, (정책)고객 중심의 정책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책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모니터링 과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이나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탁상논의에 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체계의 구축과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는 주무 부처 및 관련 부처에서는 각 부처의 특성과 조직에 부합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활용한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하는 관계자의 태도 또한 중요하다. 모니터링은 지도·감독의 단순한 성과평가를 위한 정책수행 과정이 아니라 체계자체의 검증 및 자기정화 작용을 가동함으로써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5.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 도모

아동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지역사회 전체가 아동보호체계의 바탕이 되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간부문과 공공체계가 의도하고 계획한 정책목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참여가 관건이 되는데,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일차적인 참여의 통로가 될 것이다. 우선 아동권리에 대한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아동보호체계의 중요성을 공유하여야 한다. 또 보호아동에 대한 발달기회 및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종 보호·복지자원이 연계되고 협력할 수 있는 정치적·제도적 기틀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참여가 가시화되고 지역사회의 역할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인 지역사회의 참여를 기대한다면 전통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아동보호체계의 특성은 전문화되고 특화된 지역중심의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참여는 다양한 보호·복지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대상중심의 정책수행 및 서비스 전달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참여만으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민간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공공의 역할-예컨대 지역사회 자원의 질적 모니터링, 참여과정의 공정성과 정당성 등에 대한 관리 등-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민간의 참여와 역할마저도 본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 또한 기능적인 아동보호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발달위기의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에게 보호와 존중, 수용의 가치를 전달하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미래인구에 대한 투자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데 필요한 임파워먼트의 역할까

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지역사회의 활동 주체 가운데 대중매체가 갖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대중매체는 현대사회에서 대중의 태도와 가치를 형성하고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매체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 기능을 수행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물론 아동 폭력이나 학대 또는 착취 관련 내용을 대중 매체를 통하여 전파했을 경우, 반드시 긍정적 효과만을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아동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거나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대중매체의 효과를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특히, 교육·홍보 캠페인 콘텐츠의 개발에 있어 대상별 특화된 접근법이 요구된다. 아동 학대, 폭력, 착취로부터의 아동을 보호하는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뿐만 아니라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제고, 가족기능의 강화 등과 같은 간접적인 접근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아동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보호체계의 구축 및 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정책의 발전방향을 법적·제도적 측면, 서비스 전달체계의 측면, 모니터링 측면, 그리고 지역사의 참여 측면 등에서 살펴보았다.

최근 출산율의 하락에 따라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미래에 대한 사회투자를 확대하고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미 출생한 아동의 보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아동보호에 관련된 사회적 관심과 투자 또한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아동보호정책은 그간의 한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아동보호정책이나 그 관련 서비스는 보편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추구하는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동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학대, 폭력, 착취 및 부적절한 양육환경으로 야기되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나아가 그들이 처한 환경적 여건이나 경험과는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발달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의 기저에는 아동보호의 과제는 개별 가정이나 개별 기관 또는 단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아동을 둘러싼 가족-지역사회-정부가 함께 나서야만 가능하다는 명백한 사실에 대한 강조가 포함되어 있다. 모든 아동이 밝은 미래를 희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과 의지를 되새기며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강철희, 「시설 보호 아동의 자립준비 실태에 관한 연구」, 시설보호아동의 자립 강화방안, 『한국아동복지학회 제 15회 학술대회』, 2001, pp.3 ~ 45.
- 공계순 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4.
- 구인회, 「복지에서 근로로: 미국 사회정책의 이행과 그 교훈」, 『사회보장연구』, 16(2), 2000, pp.1 ~ 28.
- 김명수, 『정책평가와 정부개혁』, 박영사, 2002.
- 김승권 외, 『아동학대 사정척도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김현용,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사회정책 방향」, 『사회보장연구』, 1996.
- 김형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체 체계적인 접근」, 『한국사회복지논총』, 제 7호, 2002.
- 김현용,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사회정책 방향」, 『사회보장연구』, 1996.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안내』, 2005.
- _____, 『보건복지백서』, 각연도.
- _____, 『보건복지통계연보』, 각연도.
- 서문희·조애저·박세경 외, 「어린이 보호 육성 종합계획 평가 및 아동백서 발간에 관한 연구」, 2004.
- 송호근, 『세계화와 복지국가』, 나남, 2001.
- 이경혜, 「일본의 아동학대 실태 및 보호체계」, 아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2004.
- 이봉주·이호균,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실태 및 보호체계」, 아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2004.

- 이정희, 「아동학대예방과 보호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아동학대 예방 센터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논문, 2004.
- 이현주·강혜규·서문희 외,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장인협·오정수,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 정윤수·이정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네트워크 분석」, 『한국아동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제14호, 2003, pp.7~13.
- 정익중, 「미국의 복지개혁이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18호, 2004, pp.181~215.
- 한국복지재단, 『사업보고』, 2003.
- 한인숙·김희연, 「네트워크이론에서 본 지역사회복지」, 『한국행정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pp.227~252.
- 황성원·김용훈, 『행정서비스 모니터링제도 활성화방안(A Study on Facilitating the Monitoring System in the Public Service)』, 한국행정연구원, 2004.
- 高橋重冠 外, 『こども家庭対策の動向』, 東京: 創營圖書, 1996.
- 高田正己, 『兒童福祉基本法制(兒童福祉文獻ライブラリ-兒童福祉法の解説と運用)』, 第8卷, 東京: 日本圖書センタ-出版, 2005.
- 今村理一, 『新しい時代の社會福祉施設論』, 東京: ミネルヴァ書房, 2003.
- 福田志津枝, 『これからの兒童福祉』, 東京: ミネルヴァ書房, 2001.
- 一番ヶ湖康子 外, 『日本の兒童福祉』, 東京: ドメス出版社, 1993.
- 日本辯護士聯合會こどもの權利委員會編, 『こども虐待防止・法的實務マニュアル』, 東京: 自治體研究社, 2004.
- 川湖憲子, 『市町村合併と自治體の財政』, 東京: 自治體研究社, 2001.
- 湯澤雍彦, 『里親入門(制度・支援の正しい理解と發展のために)』, 東京: ミネルヴァ書房, 2005.

厚生労働省,『社会保障審議會兒童部會議事録』,12月號,2003.

厚生省編,『厚生白書,東京:廣濟堂』,2003.

厚生省編,『兒童白書,東京:廣濟堂』,2004.

ABT Associates, *Children at the Center: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Day Care Study*, ABT Associates, Cambridge, 1979.

Allen, M., *Whose Children?* London: Simpkin Marshall, 1945.

Armstrong, D., *The Political Anatomy of the Bod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Bagnell, K., *The Little Immigrants*, Toronto, MacMillan of Canada, 1980.

Barter, K., *Services for Vulnerable Children: A Conceptualization of Child Protection*, Canadian Social Welfare, Toronto, Pearson Education Canada, 2000.

Barter, K., "Building Community: A Conceptual Framework for Child Protection," *Child Abuse Review*, Vol.10, 2001, pp.262 ~ 278.

Belsky, J., "Child maltreatment: An ecological integration". *American Psychologist*, 35(4), 1980.

Boss, P., *Explorations in Child Care*: London, RKP, 1971.

Brennan, D., & O'Donnell, C., *Caring for Australia's Children: Political and Industrial Issues in Children's Service*, Allen & Unwin, Sydney. 1986.

Browne, K., & Strattan, P., *Early Prediction and Prevention of Child Abuse*, Chichester, John Wiley and Sons, 1994.

Brown Cohen, Peter Moss, Pat Petrie & Jennifer Wallace, "A New Deal For Childcare: Re-forming education and care in England", Scotland and Sweden, The Policy Press, University of Bristol, U.K., pp.135 ~ 180, 2004.

- Casey Family Services, *Creative Strategies for Financing Post-Adoption Services, Strengthening Families and Communities*, A White Paper, 2004a.
- Casey Family Services, *Commitment to Kin: Elements of a Support and Service System for Kinship Care*, 2004b.
- Cohen, B. J. Reforming the Child Welfare System: Competing Paradigms of Chang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7, 2005, pp.653 ~ 666.
- Courtney, M., *Reconsidering Family Preservation: A Review of Putting Families Firs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9, 1997, pp.61 ~ 76
- Cooter, Rodger. (ed.). *In the Name of the Child : Health and Welfare, 1880 ~ 1940*, London, Routledge, 1992.
- Cox, E., 'Pater-patriae: child rearing and the state,' *Social Welfare and the State*, Allen & Unwin, Sydney, 1988.
- Crow, R., *Child care and the people's front against fascism*, Join Hands, Winter/Spring 1983.
- Charlitta Lindell & Carl Goran Svedin, "Social service provided for physically abused children in Sweden: background factors and interven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13, pp.340 ~ 349, 2004.
- Frase, M.(Ed.).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An Ecological Perspective*, Washington, D.C.: NASW Press, 1997.
- Gunilla Larsson & Gunilla Ekenstein, "Institutional care of infants in Sweden: Criteria for admission in 1970, 1975, 1980", *Child Abuse & Neglect*, Vol. 7, Issue 1, 1983, pp.11 ~ 16.
- Garbarino, J., "The human ecology of child maltreatment: A conceptual Model for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4), 1997.

- Gifford, J., 'Child Care Funding Reassessed: Operational Subsidies, Fee Relief And Taxation Issues,' Australian Early Childhood Association and National Association of Community Based Children's Services, Canberra. 1992.
- Greenblat, E., & Ochiltree, G., Use and Choice of Child Care, AIFS Early Childhood Study Paper No.4,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Melbourne, 1993.
- Harding, F. M., *Family, State, and Social Policy*, London, MacMillan, 1996.
- Hollingsworth, L. D. Adoption Policy in the United States: A Word of Caution, *Social Work*, 45(2), 2000, pp.183 ~ 186.
- Hornberger, S. & Biar-Lawson, K. Advancing 21st-Century Child Welfare Through Community Building.. *Child Welfare*, LXXXIV(2), 2005, pp.101 ~ 104.
- Houseden, L. G.,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London, Jonathan Cape, 1955.
- Ife, J., *Rethinking Social Work: Towards Critical Practice*, South Melbourne, Longman, 1998.
- Joachim Theis, *Rights-based Monitoring and Evaluation*, Save the Children, 2003.
- Kopel, S., Chalton, T., & Wells, S. J. Investigation Laws & Practices in Child Protective Services. *Child Welfare*, LXXXII(6), 2003, pp.661 ~ 683.
- Mass, H. J., & Engler, R. E. *Children in Need of Parent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0.
- Martha F. Davis and Roslyn Powell,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 Catalyst for Innovative Childcare Policies", *Human Rights Quarterly*, Vol. 25, pp.689 ~ 719, 2003.
- McFadden, E. J., "Practice in Foster Care," *Handbook for Child Welfare: Context, Knowledge, and Practice*, New York, Free Press, 1985.

- Mitchell, L. B., Barth, R. P., Green, R., Wall, A., Biemer, P., Berrick, J. D., Webb, M. B., & the National Survey of Child and Adolescent Well-being Research Group. Child Welfare Reform in the United States: Findings from a Local Agency Survey, *Child Welfare*, LXXXIV(1), 2005, pp.5~4.
- Morgan, J., & Zedner, L., *Child Victims: Crime, Impact and Criminal Justice*, Oxford, Clarendon Press, 1992.
- National Adoption Information Clearinghouse Adoption, *Assistance for Children Adopted from Foster Care: A Fact Sheet for Families*, 2004.
- Orlebeke, B., Wulczyn, F. & Mitchell-Herzfeld S., *Improving Public Child Welfare Agency Performance in the Context of the Federal Child and Family Services Reviews*. Chapin Hall Center for Children, 2005.
- Romeo, D., Chavkin, W., & Wise, P. H. The Impact of Welfare Reform Policies on Child Protection Services: A National Study. *Journal of Social Issues*, 56(4), 2000, pp.799~810.
- Rooke, P. T., & Schnell, R. L., *Discarding the Asylum: From Child Rescue to the Welfare State*, D.C.,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3
- Ross, S. M., "Advocacy and Empowerment: An Approach to Clinical practice for Social Work,"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1998, pp.41~45.
- Steib, S. D., & Blome, W. W. Fatal Error: The Missing Ingredient in Child Welfare Reform: Part I. *Child Welfare*, LXXXII(6), 2003, pp.747~750.
- Swift, K., "Missing Persons: Women and Child Welfare,"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Vol.25, 1995, pp.486~502.
- Theobald, R., *Reworking Success: New Communities at the Millennium*, Gabriola Island, BC, New Society Publishers, 1995.

- Tommy Lundstrom, "Child Protection, Voluntary Organizations, and the Public Sector in Sweden",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Vol.12. No.4, 2001, pp.355 ~ 371.
- Wiltse, K. T., *Community Practice: Models in Action*, New York, Haworth Press, 1985.
- Woldfogel, J., *Rethinking the Paradigm for Child Protection*, 1998.
- Woodhead, M., & Faulkner, D., "Subjects, Objects or Participants?," *Research with Children: Perspectives and Practices*, London, Falmer, 2000.
- Wulczyn, F., & Hislop, K., *Growth in the Adoption Population*. Chaplin Hall Center for Children, 2002.
- United Nation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Response to the questionnaire received from the Government of Japan, 2003.

부 록

§ 1.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비교

§ 2. UN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전문

부록 1.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비교

〈부표 1〉 OECD 국가의 아동학대, 착취, 폭력 등의 실태

국가	2001~2003 아동폭력 피해자 발생 현황	2001~2003 아동폭력 관련 범죄 현황
호주	NA	.NA
오스트리아	아동폭력 신고 건수(2001~2003년) 2001년 : 11,859건 2002년 : 7,999건 2003년 : 9,481건	형법에 규정된 범죄 유형과 발생 건수(2000~2002년) 2000년 : 23건(방임), 103건(신체적 학대), 121건(성적 학대) 2001년 : 18건(방임), 60건(신체적 학대), 112건(성적 학대) 2002년 : 25건(방임), 90건(신체적 학대), 99건(성적 학대)
캐나다	2000년 : 18세 이하의 아동이 피해자가 된 폭력범죄는 총 30,117건에 이르며, 아동폭력 범죄발생률은 십만 명당 1,050건 2001년 : 총 33,017건의 범죄에 의해 18세 이하의 피해아동이 희생당했으며 아동 폭력 범죄 발생률은 십만 명당 1,026건 2002년 : 총 34,048건의 범죄에 의해 18세 이하의 피해아동이 희생당했으며 아동 폭력 범죄 발생률은 여성의 경우 십만 명당 1,053건이며 남성의 경우 십만 명당 1,141건	1998년 : 135,573건의 아동 학대(maltreatment)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매년 천 명의 아동 당 21.52건의 수사가 진행됨.

국가	2001~2003 아동폭력 피해자 발생 현황	2001~2003 아동폭력 관련 범죄 현황
체코	- 신체적 폭력(maltreatment): 2000년 : 530건(이 중 4건은 아동사망 사건임), 2001년 : 648건(이 중 1건은 아동사망 사건임), 2002년 : 527건 - 정신적 학대: 2000년 : 213건, 2001년 : 236건, 2002년 : 171건 - 성적 학대: 2000년 : 614건, 2001년 : 522건, 2002년 : 537건	NA
덴마크	아동폭력 신고 건수(2001-2003년) 2001년 : 1,662건, 2002년 : 1,773건, 2003년 : 1,957건	NA
핀란드	아동폭력 신고 건수(2001-2003년) 2000년 : 2,841건, 2001년 : 2,565건, 2002년 : 3,545건, 2003년 : 3,683건	NA
프랑스	아동폭력 피해자 신고 건수 1994년 : 17,000건, 1995년 : 20,000건, 1996년 : 21,000건 1997년 : 21,000건, 1998년 : 19,000건, 1999년 : 18,500건 2000년 : 18,300건	아동폭력 유형 1995년 : 성폭력(5,500건), 신체적 폭력(7,000건), 방임·정서적 폭력(7,500건) 1996년 : 성폭력(6,500건), 신체적 폭력(7,500건), 방임·정서적 폭력(7,000건) 1997년 : 성폭력(6,800건), 신체적 폭력(7,000건), 방임·정서적 폭력(7,200건) 1998년 : 성폭력(7,000건), 신체적 폭력(7,000건), 방임·정서적 폭력(7,000건) 1999년 : 성폭력(6,500건), 신체적 폭력(6,500건), 방임·정서적 폭력(7,200건) 2000년 : 성폭력(6,600건), 신체적 폭력(6,600건), 방임·정서적 폭력(6,200건)
독일	NA	NA
헝가리	아동폭력 피해아동 수(2000~2002년) 2000년 : 1,182명, 2001년 : 1,316명, 2002년 : 1,582명	아동폭력 신고 건수(2000~2002년) 2000년 : 1,644건, 2001년 : 1,579건, 2002년 : 1,552건

국가	2001~2003 아동폭력 피해자 발생 현황	2001~2003 아동폭력 관련 범죄 현황
아이슬란드	폭력 및 방임 피해아동 건수(아동복지위원회 조사). 2000년 : 방임(507건), 신체적 폭력(31건), 정서적 폭력(35건), 성적 학대(83건) 2001년 : 방임(555건), 신체적 폭력(48건), 정서적 폭력(50건), 성적학대(107건) 2002년 : 방임(342건), 신체적 폭력(42건), 정서적 폭력(42건), 성적학대(77건)	아동폭력의 정도나 폭력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연구는 아직 행해진 바 없음.
이탈리아	아동 100,000명당 피해자 수 2000년 : 6.9명, 2001년 : 3.9명, 2002년: 3.9명	아동폭력으로 법원에 신고 된 사례 건수 2000년 : 신고건수(623건), 기소건수(344건) 2001년 : 신고건수(444건), 기소건수(312건) 2002년 : 신고건수(389건), 기소건수(221건)
네덜란드	아동폭력 신고 건수 2002년 : 7,212건	2002년 : 7,212건이 아동학대
뉴질랜드		아동폭력 신고 건수(2000~2004년) 2000/2001년 : 22,868건, 2001/2002년 : 23,805건, 2002/2003년 : 27,394건, 2003/2004년 : 36,066건
노르웨이	아동폭력 피해아동 수(2000~2003년) 2000년 : 363명, 2001년 : 449명, 2002년 : 491명, 2003년 : 542명	아동폭력 신고 건수(2000~2003년) 2000년 : 신체적 학대(168건), 성적 학대(99건), 정서적 학대(96건) 2001년 : 신체적 학대(232건), 성적 학대(107건), 정서적 학대(110건) 2002년 : 신체적 학대(261건), 성적 학대(112건), 정서적 학대(118건) 2003년 : 신체적 학대(298건), 성적 학대(89건), 정서적 학대(155건)

〈부표 2〉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관련 법적·제도적 환경

국가	아동보호 측면에서 아동권리협약 이행수준	아동보호 관련 법적·제도적 특성	아동포르노그래피 및 유해정보 관련 법령	아동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관련 법령
호주	호주 아동보호 및 복지는 지역별 (territory)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아동 보호에 대한 시설보호(out-of-home care)와 관련된 고유의 법체계와 정책, 시행령을 규정하고 있음.	호주 아동보호체계 시행에 대한 최적의 검토안은 호주 보건복지연구원의 “호주의 복지”와 “호주 아동 보호” 임.(aihw.gov.au) 2002년에는 아동 청소년의 새로운 입지를 구축하였는데,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연방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의 스펙트럼에 걸쳐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접근을 통합하는 것이었음. 또 다른 주요한 연방정부 발의는 가족 및 지역서비스부의 설립을 가시화하였음. 이 부서는 1998년에 설립되어 아동과 가족과 관련한 이슈에 대하여 연방 정부의 리더십을 위한 욕구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호주 정부는 인신매매와 아동의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음. 2003년에는 정부는 2천만 호주달러를 투입하여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범죄자를 구속·처벌하며,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대응방안을 마련하였음.	NA

국가	아동보호 측면에서 아동권리협약 이행수준	아동보호 관련 법적·제도적 특성	아동포르노그래피 및 유해정보 관련 법령	아동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관련 법령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정부는 1992년 8월 6일에 UN 아동권리협약을 승인하였고, 오스트리아 연방법 Gazette no. 1993/7에 수록하였음. 전쟁의 위험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협약의 유보규정은 2002년 2월 1일에 승인되었고 오스트리아 연방법 Gazette no. III Nr. 92/2002에 수록하였음. 아동착취의 금지와 관련한 ILO 협약은 (No. 182) 오스트리아 연방법 Gazette Vol. III No. 41/2002에 수록하였음. 다국적 범죄와 그 예방,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에 대한 유엔 협약 그리고 영아의 보호 관점에서 수용 가능한 법과 권한에 관한 1961년 10월 5일의 헤이그 협약을 오스트리아 정부는 따르고 있음. 헤이그 협약은 1975년 3월 12일에 승인하였고 1975년 5월 11에 실효되었음.	형법 아동 폭력의 예방,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이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일반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구체적인 형법 조문에서 아동폭력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음(형법 Section 92; 18세 미만이거나 도움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형법 Sec. 207;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학대, 학대의 실행 여부 는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님. 오스트리아의 모든 종류의 아동폭력에 관하여는 3개의 기관(경찰, 가정 폭력중재센터, 가정법원)에서 중재. 청소년 복지법의 Section 2에서는 청소년 복지권을 의무화했는데, 특히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 또는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과 일반 아동의 권익을 행사하기 위한 것임. 구체적인 규정이 가정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연방법 하에 채택(1997년 5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었으며, 적용범위는 1999년 9월의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에 회부된 5차 오스트리아 보고서에 광범위하게 기록되어 있음.	호주 형법 Sec. 207은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음란물 작성 또는 음란 행위를 유죄시하고 있음. 또한 인터넷상으로 다운로드되는 아동의 음란물 소지 배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이 법정은 아동 인신매매, 아동 매춘 및 음란물 제작에 대한 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선택 규정같이 관련 국제법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음. 호주 행정부는 1997년 인터넷상의 아동 성매매와 전쟁을 위해 조직을 결성하였음. 형법 Sec. 207 part 3.에서는 보수 교환을 목적으로 한 성적 접촉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으며, 형법 Sect. 215a에서는 “수수자의 외설행위와 조선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있음. 한편, 호주는 EU텔레비전에 관한 협약에 승인했는데, 주요 내용은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발달을 손상시킬 여지가 있는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는 지양하기로 한 것임. 1950년의 음란물법은 글, 그림, 사진, 영화 등의 형태의 음란물, 배포, 운반, 수출, 편집, 제작, 공표, 유통, 그리고 16세 이하의 아동의 성적, 정신적 발달 또는 건강에 해를 끼치기 쉬운 출판물의 유통에 대한 행정규칙을 포함함.	구체적인 고충 처리 절차는 존재하지 않지만, 보호소(감옥)의 아동의 경우 다른 수감자, 기관장의 폭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한편, 2000년 이후 가정 폭력의 희생자들은 법정 출두와 관련한 정신적, 사회적, 법적 보호를 받아왔음. 이 서비스는 70여개의 전문 상담 센터에 의해 제공됨. 무료 법률 서비스 또한 센터의 중재로 받을 수 있으며 국내폭력 희생자들이 상담할 수 있음. 전문 조직에 의해 받는 이러한 서비스와 더불어 일반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법정 비용과 법적 출석 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음. 보호아동의 발생시 신고의무를 갖는 관련기관에는 연방 교육·과학·문화부, 오스트리아 청소년 적십자, 학교 심리·교육 지도/학생 심리 보조(assistance), 지역 아동 및 청소년 상담부즈만사무소, 아동 및 청소년 학대 방지 센터, 긴급 핫라인, 아동보호센터 등이 포함됨

국가	아동보호 측면에서 아동권리협약 이행수준	아동보호 관련 법적·제도적 특성	아동포르노그래피 및 유해정보 관련 법령	아동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관련 법령
캐나다	1991년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승인하였고, 아동의 전쟁 개입에 관한 아동권리협약의 유보규정은 2001년 11월에 승인하였음. 한편, 아동의 매매, 아동 매춘, 아동의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유보규정도 승인하였음. 캐나다는 국가간 조직범죄에 반대하는 협약과 예방을 위한 추가적 규정, 아동과 여성 등의 인신매매 억제와 처벌,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력 착취와 관련한 ILO 협약에 동참하고 있음 ^{주30)} .	헌법을 구성하고 있는 캐나다 자유와 권리 조항의 12장은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우 또는 대우에 대하여 국민 모두를 보호하고 있음. 아동 폭력은 주로 캐나다 형법 규정을 통해 기술되는데, 이 법은 연방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실체적 요소를 따르고 있음. 형법은 또한 범죄를 행한 성인에게 부과되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연방 경찰은 아동 학대 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 다양한 법적 강제 도구와 전략을 개발하고 있음. 지방 및 주정부는 아동 폭력에 대하여 최선의 아동 권익에 대한 원칙에 초점을 맞춘 고유의 아동 보호법을 제정하고 있음. 일반적 형태의 범죄는 아동폭력법에 의해 적용되지만, 형법에 보다 구체적인 규정하고 있음 - 성희롱; 성적 목적의 직접 및 간접적 접촉(§151, 최대 10년)	1993년 형법 - 제작, 프린팅, 출판, 목적의 소지 등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 포르노그래피는 금지. 이를 어길시 최대 10년의 징역이 부과. - 수입, 배포,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소지 등 어떠한 형태라도 아동 포르노그래피는 금지. 이 경우 역시 위반시 최대 10년의 징역이 부과. -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소지 또한 금지. 이는 최대 5년의 징역이 구형 2002년 개정형법(추가내용) -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발송, 상용화, 수출 또는 이같은 목적의 소지는 금지. 최대 10년의 징역이 부과. -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접근 금지. 위반시 최대 5년간의 징역이 부과됨. 개정 형법에는 아동 성학대를 유발할 목적으로 아동과 인터넷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등의 컴퓨터 시스템	아동 복지/보호법은 지방 및 준주정부의 책임이며 각각은 아동 방치 및 학대의 혐의가 있거나 단언할 수 있는 경우 조사하기 위한 권한을 가진 아동보호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함. 폭행혐의에 대한 수사는 아동보호사무소 뿐만 아니라 경찰에 의해 수행됨 경찰은 형법 위반으로 여겨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수사할 수 있는 반면, 아동보호사무소는 아동의 욕구가 적절하게 만족되는지 결정하는 데 아동의 양육환경을 조사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수사는 경찰과 아동복지사무소 사이의 협조 하에 수행되고, 이러한 접근은 수사과정의 하나로써 어린 피해자가 반드시 겪어야 하는 면접과정의 횡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됨. 또한 이러한 면접은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피해자가 겪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종종 비디오 녹화를 하기도 함.

		- 14세 이하의 아동에게 성적 접촉 유인(§152, 최대 10년) - 신뢰 및 권위관계로써 14-18세 아동의 성적 착취(§153, 최대 5년) - 근친상간(§155, 최대 14년) - 아동 앞에서 수치스러운 행동(§160(3), 최대 10년) -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관련된 범죄 (§163.1: 소유 및 접근은 최대 5년, 제작, 배포, 전달, 사용 가능케 하는 행위는 최대 10년) - 부모 또는 보호자의 매춘 주선(§170, 아동의 연령에 따라 2-5년) - 가구주가 성적 활동을 허가하는 경우(§171, 아동의 연령에 따라 2-5년) - 아동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행위(§172, 최대 2년) - 성범죄를 행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172.1: 14세 이하의 아동에게 성적 목적으로 생식기를 노출하는 행위) 성범죄정보등록법: 성범죄 유죄판결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국	템의 사용 또는 유인에 대한 새로운 범죄생성을 금지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등록된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삭제 section 161에는 14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성학대를 인해 구형을 받을 당시 중신형보다는 아동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갈 수 없도록 또는 아동에 대해 신뢰 또는 권위를 수반하는 유급 또는 자원봉사자 지위를 금지하는 금지처분 선고할 수 있음. 2001년 2월, 캐나다 정부는 안전 향상을 위한 캐나다의 전략과 현명하고 책임있는 인터넷 사용이라는 전략을 착수. 이 전략의 5가지 목적은 사용자를 교육시키고 권한을 부여하며; 산업의 효과적인 자가 규제를 진작시키며; 사이버공간에서의 법적 강행을 강화하며; 핫라인과 고충 처리 시스템의 시행;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임. 2000년 9월, 연방·지방·준주정부(FPT)의 사법부는 새로운 매체와 비	한편, 신고관련 방법이나 절차는 주마다 다양
--	--	---	---	---------------------------------

		내 성범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성범죄 발생 시 범죄 조사를 빠르고 원활히 하기 위함. 캐나다의 지방법은 가정 폭력의 희생자에 대해 시민 처방의 범주를 제공하여 단기적으로는 보호나 긴급 중재를, 장기적으로는 희생자 지원 규정을 포함하며 형법상 과정을 보충함. 아동복지를 결정하는 데 기본적 고려는 “아동의 최우선 원칙에 기초”	디오 게임에서의 폭력을 검토하기 위해 관리를 명령했음. 이러한 FPT 작업그룹의 마지막 권고를 따라서 비디오 게임의 소매점의 자가 규제; 비디오 게임 분류에 있어서의 분야간 교차 접근; 교육과 인식 홍보; 다른 제 3자와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관련 연구가 제안되고 있음.	
--	--	---	---	--

국가	아동보호 측면에서 아동권리협약 이행수준	아동보호 관련 법적·제도적 특성	아동포르노그래피 및 유해정보 관련 법령	아동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관련 법령
체코	체코는 아동권리 협약뿐만 아니라 2001년 11월에 아동권리협약의 전시 상황의 아동의 개입에 대한 유보규약을 승인하여 최소 18세가 되어야 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아동 노동착취 철폐 금지와 이를 위한 즉각적 대처에 관한 협약이 2001년 6월에 승인되었고 “국제 조약 모음집”에 수록되었음. 국제협약의 국내법 적용에 관하여는 조심스럽게 접근되고 있는데, 일례로, 형사절차법과 형법은 아동권리협약을 반영하여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정의를 확장시켰음. 한편, 형사절차법상 아동 성학대 처벌과 관련하여 피해 아동의 부담을 줄이고 2차 피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다 간소한 절차를 마련하였음.	형법 6장에서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아동 유기, 양육의 포기, 유괴, 위탁 아동의 학대, 아동의 인신매매, 아동 발달에 치명적 위험을 끼치는 행위, 아동에게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아동에게 주류 판매, 유해물질의 제공 등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은 최소 6개월에서 3년까지 징역형을 받게 됨. 아동 학대에 대한 보호는 형법 21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학대를 하는 사람은 6개월에서 3년간 징역을 선고받음. 가해자는 특히 잔인한 살인이나 2명 이상에 대해 학대한 경우, 범죄활동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2년에서 8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음. 한편, 위와 같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막지 않는 경우도(방임) 유죄에 해당함. 또한 가족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현행 형법 Sec. 205는 아동 또는 인격 모독 및 폭력을 표현하거나 동물과의 성교를 표현한 사진, 비디오 녹화, 음성 녹음, 문서 및 다른 형태의 윤리를 파괴하는 포르노그래피의 배포, 유통, 출판, 생산, 수출, 배송 또는 수입 또는 이러한 목적의 어떠한 소지도 금지하고 있음.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새로 재·개정되는 형법에서는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하는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소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3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며 전문활동의 금지 또는 벌금형을 내릴 수 있음. 아동에게 유해한 정보 접근과 관련하여서는 법 No.273/1993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음성·시각적 자료의 제작과 생산, 배포에 관한 제약을 제시.	아동의 사회적·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모든 공무원, 관계전문가, 학교, 교육시설 및 의료기관 또는 아동을 다루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일반적인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들은 특정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즉각적으로 지방정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음. 한편, 정부 및 학교, 교육시설 등은 아동의 사회·법적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무료로 배포해야 하며 이러한 배포는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됨. - 고충처리 절차: 아동폭력이 발생하면 발생한 장소에 관계없이 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고는 경찰이나 지방정부에 접수됨. 한편 또 다른 폭력 보호 기구는 “공적 권리수호”인데, 이 기구는 정부나 법에 의해 등록된 기관에 의해 상해를 호소하는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과도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아동의 존엄성과 인격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훈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동의 사회적·법적 규제를 하고 있는 법 # 359/1999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감시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법 No.468/199은 라디오 및 TV 방송에 있어 공중도덕에 반하는 상업적 방송은 금지됨.	체코 경찰청의 형사 경찰과 수사 서비스는 체코의 분야간 협력과 EU 부서간 협력 프로젝트의 틀 안에서 여러 강의를 조직하였음. 특히 아동폭력의 기소를 위한 특별한 증거와 절차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15세 이하의 증인 조사와 관련한 규제는 존재함. 15세 이하의 아동이 증인으로 서야 하는 경우, 이것이 정신적 또는 도덕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재조사 실시를 피하기 위한 특별 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	--	---	---	---

국가	아동보호 측면에서 아동권리협약 이행수준	아동보호 관련 법적·제도적 특성	아동포르노그래피 및 유해정보 관련 법령	아동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관련 법령
덴마크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법적으로 덴마크에 거주하던 하지 않던 상관없이 아동에게 주어진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에 관한 통합법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음. 전시상황에 노출된 아동의 전쟁참여에 관한 유보규정은 2002년에 승인했고, 아동의 매매, 아동 매춘, 포르노그래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보 규정은 2003년에 승인하였음.	형법 210조에 따르면 근친상간은 2년에서 6년까지의 징역에 처함. 성행위를 강제하는 경우 강간죄가 적용되며 8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짐.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위치에 두는 것 또한 폭력과 동등하게 취급됨. 또한 S 244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음.	형법 Sec. 230 및 235에 따르면 판매하거나 유포의 목적으로 18세 이하의 아동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거나, 사진을 찍거나 기록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특히, 아동의 삶이 위협에 처하거나 현저한 폭력이 가해졌거나, 아동이 중대한 상해로 고통 받고 있거나 피해기록이 관례화된 특성을 지니는 경우를 포함함. S 325(2)에서는 18세 이하의 아동의 영상, 음란한 사진을 소지하는 경우 또는 돈을 지불하는 경우 1년이 않는 한도에서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단, 15세 이상의 아동 음란 사진을 개인의 동의 하에 소지하는 경우는 적용될 수 없음.	18세 이하의 아동이 학대받거나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에 처할 경우, 이를 지방정부에 알릴 의무가 있음. 일반 국민은 모두 신고의 의무 가 있으며,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경우 이러한 의무가 가중됨. 그러나 일반 시민에 의해 제기된 범죄 보고에의 처벌이 뒤따르는 의무는 존재하지 않음. 아동의 권익과 필요에 대하여 개인적 환경에 대한 결정은 아동의 후견인만이 내릴 수 있는데(후견과 접근에 대한 법S2) 후견인의 동의 없이 아동이 불만을 호소할 경우와 같이 특수한 상황일 때에는 아동의 연령 및 개별 상황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아동 폭력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아동은 비디오녹화를 통해 증언 을 대신할 수 있음.

국가	아동보호 측면에서 아동권리협약 이행수준	아동보호 관련 법적·제도적 특성	아동포르노그래피 및 유해정보 관련 법령	아동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관련 법령
핀란드	1980년대부터 아동권리협약은 핀란드 국내법 상 지도 원리로서 역할을 하 고 있음.	헌법 Sec. 6 및 7에서 평등과 삶에 대 한, 개인적 자유와 인격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면서 모든 개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 연령, 출신, 언어, 종교, 의견, 신념, 건강, 장애 상의 이유로 차별받 지 않으며 아동 또한 발달 수준에 따 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밝히고 있 음. 한편, 개인의 존엄성은 존중되며 이 또한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형법 ch17: 근친상간, 아동 포르노그래피,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의 유포 ch20: 강간 및 음탕한 강간, 아동의 성적 학대 및 16세 이하의 아동의 음 탕한 성학대, 권위에 의한 18세 이하 의 아동에 대한 성학대, 18세 이하의 아동으로부터의 성매매 ch 25: 개인적 자유의 침해 체벌금지는 1926년부터 금지되어 왔 으며 학교 또는 기관에서 권위에 의 한 희롱이 이루어졌을 경우 형법은 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성학대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을 규정 한편, 기본교육법(628/1998)은 안전한 학습환경에 대한 권리를 정의하고 있 으며 교육시설 및 장비는 안전해야 하며 학생이 학교 활동에 있어 폭력 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상업적으로 아동이 성적으로 이용되 는 경우(ch20, s6-7), 아동의 성매춘 (20 s8), 매춘의 중개(s9)는 금지된다. 아동 포르노그래피는 ch 17, 19에 의 해 죄로 인정되며, 15세 미만의 아동 의 경우 음향영상 분류프로그램에 대 한 법에 따라 음향영상프로그램의 내 용은 심의를 받게됨. 또한 ch17과 18a에 의해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 를 받음. 16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은 구체 적인 필요가 평가되고 교육이 이러한 필요에 따라 특화된 특별학교에 배치 되기도 함.	아동복지법 40항에 따르면 모든 일반 및 선출 공무원은아동에게 필요한 경 우 지역 아동 복지 사무국에 신고하 도록 되어있음. (기초단체)지방 복지국에 신고가 접 수되면, (광역단체)지역정부는 불만을 접수하고, 지방법정->상고법원->대법 원에 회부함. 의회 ombudsman은 독립 적이고 중립적인 독자기구로 공식적 이고 공적 기능의 수행에 있어 법의 준수를 감독하며, 만약 교육자가 안 전한 학습환경의 확립이라는 의무를 경시한 경우, 행정적 고소가 가능함 아동의 법정 출두가 필요한 경우, 직 접 출두할 필요 없이 비디오 녹화로 대신할 수 있음.

국가	아동보호 측면에서 아동권리협약 이행수준	아동보호 관련 법적·제도적 특성	아동포르노그래피 및 유해정보 관련 법령	아동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관련 법령
프랑스	프랑스는 1990년 26일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고, 프랑스 헌법 30조와 2조 및 1조, 시민·정치권에 대한 국제규약의 27조에 협약을 유보했으며 이 유보는 철회할 수 없음.	프랑스법은 기본적으로 차별금지, 아동권익의 최선의 보호, 생명·생존·발달의 보호, 아동의견의 존중을 보장하고 있음. 혼외출생 아동과 혼내출생 아동 사이의 차별이 철폐되어 혼외출생 아동 역시 혼내출생 아동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이와 더불어 자식확인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출생과 동시에 아동의 부모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임신부 보호를 보장하고, 가족수당 체계를 통해 가정 간 보편적 삶의 질을 보장함. 이 체계는 아동에 초점이 맞추어진 법제이며, 결혼 지위에 관계없이 부모의 양육책임을 강화시켜 아동의 건전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10대의 가치관 형성에 보다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함.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출판물은 아동의 도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은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포르노그래피, 폭력, 마약매매 등 아동과 청소년에 유해한 정보를 포함한 출판물을 금지하고 있음. 영화산업법 19-22조는 영화는 상영 전에 배포되어서는 안되며 아동의 발달을 고려해 등급을 결정함. 2000년에 개정된 언론활동의자유법 15조는 TV를 통해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개별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발달을 해하는 것은 금지됨(등급을 규정하고 있음). 광범위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미니텔(Minitel)과 전화의 사용에 있어서 부모의 지도와 통제는 필수적이다. 미니텔·오디오텔의 성인을 위한 서비스는 규제를 받으며 서비스 제공 회사 또한 규제를 순응하도록 되어있음. 이밖에 아동에게 유해한 비디오의 제작, 배포, 소지 또한 금지됨.	NA

국가	아동보호 측면에서 아동권리협약 이행수준	아동보호 관련 법적·제도적 특성	아동포르노그래피 및 유해정보 관련 법령	아동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관련 법령
독일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은 비폭력적인 환경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독일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가정 내 폭력적 부모로부터의 보호 가능성이 보다 확대되었음. 한편 아동의 노동력·성·포르노그래피의 매매 금지에 대한 선택적 규정(Optional Protocol)을 승인하여 형법에 반영하였음. 폭력방지법이 2002년 1월부터 시행되어 폭력 피해자를 보호함.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자연권이며 의무임(보통법 6조(2)).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아동이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제한될 수 있음. 형법에서는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규정이 다수 존재하며, 절차법에서는 소송에서 아동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아동을 상대로 한 조사와 법정 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함. 만약 그러한 경우에도 부모가 아동을 대변해 그 이익을 구할 수 있으며, 단 14세 이상 아동의 경우 직접 증언할 수 있음. 아동에 대한 폭력 행사 시(성폭력 및 성학대 포함) 5년-10년, 혹은 1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됨.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폭력방지법은 폭력피해자가 증언과 관련해서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우를	형법 184b에 의해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배포, 소유는 포괄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아동포르노그래피는 인터넷 등의 매체에 의한 것을 포함하며,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음: Central Office for Spontaneous(ZaRD), Office for Criminal Investigation. 관계 법령은 형법 130조, 11조, 연방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미디어 보호협정 등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규정 및 위반 시 처벌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이미 일어난 범죄에 대하여 국민의 신고 의무는 없으나 범죄적 행동(criminal offences)은 검사, 지방정부, 경찰, 지방법원에 구도로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음. 아동폭력은 처벌이 가능한 법적행동으로 아동의 불만 의사 표시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음.

		받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가정법원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안녕이 부모의 학대 및 방임에 의해 침해당했을 때, 부모가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없을 때 이를 피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해야 함. 이러한 조치는 부모로부터의 격리, 모든 개인적 보호의 철회 등을 포함할 수 있는데, 개인적 보호의 철회는 위험을 피하기에 불충분할 경우에만 가능함.		
--	--	---	--	--

국가	아동보호 측면에서 아동권리협약 이행수준	아동보호 관련 법적·제도적 특성	아동포르노그래피 및 유해정보 관련 법령	아동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관련 법령
헝가리	UN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을 공포하고 승인하였음. 수용 과정에서 정부 조치는 이전의 정부 헝가리의 법규정이 협약의 규정과 상응하는지 조사하였음. 현재는 이 협약과 상충하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아동 보호와 보호 행정에 관한 1997년의 법 X X XI의 시행을 통해 협약의 모든 규정은 헝가리 법에 통합되었음. 국제 조직적 범죄에 대한 유엔 협약 규정: 아동과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의 처벌과 규제, 예방을 위함. 국제 아동 유괴에 대한 시민의 견해에 대한 헤이그 협약, 아동의 생활유지 상태의 인식과 이에 대한 강행 협약, 아동 노동착취 철폐 및 금지 협약	헌법으로 결혼과 가족제도를 보호하며, 아동의 생활의 안전, 교육, 발달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아동의 이익을 보호함. 광범위한 사회복지를 욕구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며, 모든 국민은 생존에 대한 고유한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임의로 이러한 권리가 부인되지 않음. 모든 국민은 학대, 비인간적 또는 인권 모독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으며,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본인의 동의 없이 의료 또는 과학적 실험에 이용될 수 없음. 헝가리의 모든 아동은 만족스러운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발달을 위해 가정 및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 반면, 부모는 아동의 교육 형태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 아동 보호 및 보호행정법 아동은 신체적, 자능적, 감정적, 도덕적 발달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자신의 가정환경에서 자라도록 되어있음. 아동은 개인의 인격과 자신의 발달을 막는 환경의 회피, 사회적 규범 및	아동의 포르노그래피 이미지를 소지하거나 비티오로 녹화하거나 영상 또는 사진 장비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 제작하는 경우 유죄로 인정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됨. 그러나 만약 이러한 이미지가 제공되거나 유포되면 보다 중대한 범죄로 여겨져 5년까지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음. 아동의 포르노그래피 이미지를 소지하거나 비티오로 녹화하거나 영상 또는 사진 장비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 제작하는 경우, 또는 이를 유포하거나 공공연히 획득가능하게 하는 경우 유죄이며 2년에서 8년까지의 징역이 선고할 수 있음. 미성년자가 포함된 포르노그래피 쇼를 소지하는 사람은 동등하게 처벌받게 됨. 아동보호법에 정의된 아동의 권리에 따라 아동은 정신적 발달, 지식의 확장, 헝가리 언어와 문화의 가치 보존에 맞는 매체 프로그램에 접근할 권	일반 국민은 형법상의 신고의무는 없으나, 다만, 아동보호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보호 당국은 아동보호법 17조에 의해 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 익명성 고지 또는 탄원에 따라 아동 보호와 보호절차에 관한 정부 명령 # 149/1997의 8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러한 규정 하에서 절차는 탄원서에 기술된 조건에 따라 아동의 위험성이 가장 지속될 것 같은 경우 시작되어야 함. 신고 의무는 순환되는 의무인데, 결과적으로 아동 복지 서비스는 의료기관 관계자, 공교육 기관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편, 반대로 이들은 측정자에게 정보를 공급해야 함. 신고의 경우, 아동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부 기관, 교육기관 및 시설, 가정, 사관학교, 의료 서비스 시설 등에 의무를 부과함.

		자신의 독립적 삶의 구축을 위해 자신의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야 하는데, 아동발달에 해로운 환경적, 사회적 영향과 아동의 건강을 손상시키는 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아동은 폭력·신체적, 성적, 감정적 학대·유기 및 정보적 손상으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함. 아동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지위를 떨어뜨리는 체벌, 훈육 또는 대우를 받아서는 안되며, 연령, 건강, 성숙, 기타 다른 욕구에 따라서 단기 또는 장기 요양 보호에 있는 아동은 특별히 안정성과 정서적 안전, 적절한 교육과 보호를 보장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형법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다음의 사항을 죄로 규정하고 있음: 강제, 개인의 자유 억압, 유괴, 인신매매, 아동을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 강간, 품위에 대한 모욕, 근친상간, 매춘 중개, 난폭한 거동. 형법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18세 이상의 가해자가 14세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를 하거나 유인하는 경우 죄질의 정도에 따라 1년에서 최대 8년까지의	리가 있으며 아동은 더욱 나아가 폭력, 포르노그래피,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해로운 영향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이에 방송법(1996)은 방송되는 모든 각 프로그램은 -미리보기, 뉴스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스포츠 및 광고는 제외-등급을 결정함. 상업광고는 광고 상품이 아동으로 하여금 부모 또는 어른에게 직접적으로 구매요청을 하게 해서는 안되며, 영화의 경우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등급을 결정함. 이 등급은 라디오 및 TV방송 등급과 같음.	
--	--	---	---	--

		정역이 선고됨. 아동보호법은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특정 행동, 부적절한 양육환경의 결과로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지적, 도덕적 발달에 방해 내지는 장애가 생기는 조건이라고 규정하였음. 원칙과 체계, 아동보호법의 설정한 아동 복지의 틀 안에서의 정책적 입장은 아동이 학대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임. 아동복지서비스는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구상된 특별 체계임. 가정 내 아동의 양육을 도모하고, 아동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며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옮기거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아동복지 서비스가 중대한 아동방임의 사안을 감지하면, 이는 행정 절차를 시작한다. 행정 절차 중에서 아동 복지 서비스는 보호하에 아동의 거쳐 또는 임시거처 또는 입양가정을 공증할 수 있음.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험이 아동을 위협하는 경우 아동복지서비스는 가정 상담과 아동의 권익 수호에 필요한 다른 임무들을 지속 수행함.	
--	--	---	--

국가	아동보호 측면에서 아동권리협약 이행수준	아동보호 관련 법적·제도적 특성	아동포르노그래피 및 유해정보 관련 법령	아동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관련 법령
아이슬란드	UN 아동권리협약의 비준은 1992년과 2000년에 이루어졌고, 두 가지의 선택적 권고를 승인하였음 : 1)전시상황에서의 아동의 전쟁참여에 관련한 유보사항, 2)아동 포르노그래피, 아동 성매매, 아동 인신매매에 관한 유보사항. 아이슬란드에서의 UN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에도 적용이 되어 2003년 아동복지법과 2002년 아동보호법이 협약에 준하여 개정되었음.	기본적으로 아동은 인간의 존엄성, 기본권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등하게 갖고 있으며, 아동은 지속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이에 해로운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야 함. 따라서 각종 국내법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아동보호법, 아동복지법), 일반 형법# 19/ 1940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함.	아동보호법 94조에 따르면 부모는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정도에 따라 아동을 포르노그래피와 이에 대한 접근, 그리고 폭력에 대하여 보호할 의무를 가짐. 한편 95조에 따르면 아동복지위원회는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즉, 정체를 알 수 없는 오락물, 폭력적 매체이나 접근 제한이 없는 경우와 같이-을 발견하는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동보호법 16조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아동이 수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는 아동이 위협 또는 폭력에 노출되었다고 볼 이유가 충분히 있으므로 아동보호 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신고의 의무는 아동보호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아동과 관련하여 일을 하는 사람, 경찰은 아동에 대한 폭력, 학대, 유기 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가 있음.

국가	아동보호 측면에서 아동권리협약 이행수준	아동보호 관련 법적·제도적 특성	아동포르노그래피 및 유해정보 관련 법령	아동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관련 법령
이탈리아	협약의 승인: 1991년 추가적 권고안 승인 및 내용: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에 대한 보호, 2000년 밀입국자에 대한 추가적 권고안.	국내법에의 적용: 기본법 Ex 3조의 차별금지. 이는 이탈리아 법과 재판 체계 의 초석이 되고 있음. 이탈리아는 국 내법에서 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1) 아동보호 의 기준 및 척도, 매춘의 정의 및 매 춘과의 전쟁, 2) 이동관리국과 국회 아동위원회 설립, 아동 매춘으로 인 한 성학대·포르노그래피·성관광 및 현대판 노예제로부터의 아동의 보호, 이민과 외국인의 지위, 인신매매, 매 매된 임시거주자의 사회보호. 한편, 실제적인 관점에서 이탈리아의 법은 다수 유럽법이 수입되었는데, 아동에 대한 성희롱과 아동 포르노그 래피와의 전쟁, 인신매매(특히 여성) 와의 전쟁, 아동·청소년·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해로운·불법의 콘텐츠 접속 방지에 의한 건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 조성 의 채택.	아동포르노그래피 및 유해정보와 관 련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은 없으나 이탈리아의 법체계 전반에서 아동의 성학대와 성적 착취(아동매 춘, 아동 포르노그래피, 성관광, 이갈 은 목적으로 한 아동 인신매매 등)와 관련한 모든 종류의 행위를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퇴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한편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에 게 유해하고 불법인 콘텐츠 접속 방 지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아동폭력 피해 사례 발생시 신고의무 에 관한 규정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 는다. 다만, 피해아동 발생 시 청소년 (juvenile) 사법부의 청소년 복지 서비 스는 의무적으로 피해 아동을 보호한 다.

국가	아동보호 측면에서 아동권리협약 이행수준	아동보호 관련 법적·제도적 특성	아동포르노그래피 및 유해정보 관련 법령	아동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관련 법령
일본	일본정부는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과 기타 국제 인권 기구가 아동 권익의 보호와 증진에 공함을 인정하고 수용하였음. 교육·문화·스포츠·과학기술 부는 아동의 기본 인권을 충족하는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을 써왔으며, 특히 교육부문에 있어 학교폭력과 학내 따돌림 추방을 위해 가정과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 한편 학내 체벌은 엄격히 금지됨.	형법은 강간, 살인, 신체 상해, 신체 폭력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사안에 따라 6개월에서 10년의 징역, 300,000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아동학대 방지법은 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 신체상 외상을 유발할 수 있는 폭력, 아동에게 불법적 행위를 가하거나 불법적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정상적 신체 및 정신적 성장에 불충분한 음식을 제공하거나 장기간의 유기, 보호자로서 보호에 대하여 극단적인 방치를 하는 경우, 아동에게 심리적, 정신적 외상을 입힐 수 있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아동 학대 방지법은 2004년 아동학대의 정의를 더욱 확대했는데, 보호자뿐만 아니라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에 의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학대도 보호자의 극단적인 유기로 간주됨. 또, 아동 앞에서 배우자에 대한 간접적 상해를 유발하는 것 등도 아동의 극단	인터넷을 통한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단속을 위해 필요한 제안을 포함 인터넷상으로 성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동 포르노그래피 및 아동 매춘 관련된 이미지를 전송할 경우 처벌을 받게됨. 관련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콘텐츠 안전 마크”제도를 시행해 인터넷 상에서 아동에게 유해한 정보 유입을 막는 노력을 하고 있음.	아동보호법: (6조)아동학대를 목격한 사람은 아동복지법 제 25조에 따라 즉시 관할당국에 신고해야 함(1947. No. 164). 형법에 규정된 분류된 정보의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과 기타 특정 정보의 공개금지와 관련된 입법규정은 아동복지법 25조에 따라 아동학대보고의무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 아동복지법: (25조)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보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부적절하게 보호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복지부 사무소 또는 아동 상담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범죄를 행했고, 14세 이상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아동학대보호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공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의무불이행에 따른 처벌규정은 없음.

		적인 심리 정신적 외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이동학대에 속함. 이동학대 방지를 위해 이동학대 방지 개정법은 지역사회와 정부, 아동복지 서비스 공급자등과의 협력 하에 조사, 연구, 검토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학대 아동의 사회 복귀 및 재통합을 위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고 학대로 인해 뒤쳐진 학습을 보충하고 혹은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	--	--

국가	아동보호 측면에서 아동권리협약 이행수준	아동보호 관련 법적·제도적 특성	아동포르노그래피 및 유해정보 관련 법령	아동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관련 법령
한국	정부는 UN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하여 1998년 청소년 선언서의 개정, 2000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음	아동보호와 관련된 제 법률은 다음과 같음: 아동복지법, 성폭력처벌및피해자보호법, 가정폭력처벌특별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 형법, 아동의성적학대방지법, 청소년보호법, 성매매철폐및피해자보호법, 성매매방지법, 학교폭력방지법 등 전술된 법령을 통해 모든 형태의 신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 및 상해 또는 학대, 유기 또는 방치, 성적학대를 방지하고자 함. 보호에 대한 규정: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함. 아동복지법, 학교폭력방지법, 청소년보호법, 아동 및 청소년의성적학대보호법, 아동복지법, 형법	아동 포르노그래피는 형법과 청소년성학대방지법에 의해 금지되며 처벌됨. 청소년성학대방지에 관한 조항은 전자게임과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아동포르노그래피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청소년보호법은 유해정보 및 매체(녹화, 비디오, 전자 게임, 연극, 출판, 인터넷 콘텐츠, 광고, 방송프로그램 포함)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처방하고 있음.	아동학대의 경우 누구나 아동학대에 방센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법은 교사, 사회복지사, 의료 전문가, 아동보호시설의 직원 또는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센터의 상담자는 그들의 전문적 임무가 수반되는 가정아동폭력의 경우 신고할 수 있음. 가정폭력처벌특별법과 학교폭력방지법은 위와 비슷한 신고규정을 두고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규정은 없음.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권리참여센터를 운영하는 데, 청소년폭력의 형태와 관련한 고충을 다루고 있음. 형사소송절차법은 피해아동의 부모는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증인이 16세 이하의 아동인 경우 증인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증인의 건강상태, 연령 등에 따라 별도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성폭력처벌및피해자보호법은 13세 이하 아동의 비디오테입 입증은 공개법정에서의 입증 대신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음.

국가	아동보호 측면에서 아동권리협약 이행수준	아동보호 관련 법적·제도적 특성	아동포르노그래피 및 유해정보 관련 법령	아동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관련 법령
네덜란드	아동은 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형법, 국회법 및 민법은 아동의 성학대, 성매매, 포르노그래피, 신체적 학대 및 유기에 대하여 보호하며, 처벌은 금지되고 있음.	아동 양육 환경이 아동에게 현저히 위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정은 부모로부터 양육권리를 박탈하고 아동의 양육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도와줄 사람을 요청하게 됨. 아동이 긴급한 위험상황에 처해있다고 판단될 때 아동학대·유기에 대한 조언 및 신고센터 또는 경찰, 다른 조직으로 구성된 아동보호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음. 학교폭력과 따돌림 방지는 정부의 주요한 책임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깨끗하며 적합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과학부는 보다 적절하게 학교 환경을 갖추기 위해 협력하려 노력하고 있음. 네덜란드에서는 16세 미만 아동의 노동은 금지되며, 13-15세 아동은 엄격한 제한 하에서만 근로가 가능함. 12세부터 아동의 근로는 경량의, 비산업적이고 보조적인, 교육적 성질을 띠는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함.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인터넷상으로 유포하는 행위 금지를 위한 법안이 입안 중. 형법 하에서는 기소 또는 조사는 특정 자료에 대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기회를 갖도록 하며 범죄 발생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조직들은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고충처리 위원회를 가지도록 되어있음. 사례관리자나 상담가는 아동학대 피해 신고를 받을 수 있음. 주지사(governor)의 결정에 대한 공식적 이의신청은 독립적인 고충처리위원회에 위임될 수 있음.

국가	아동보호 측면에서 아동권리협약 이행수준	아동보호 관련 법적·제도적 특성	아동포르노그래피 및 유해정보 관련 법령	아동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관련 법령
뉴질랜드	뉴질랜드 정부는 행정적 측면과 입법적 측면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가족법(1989)과 보호법(1968)에 반영. 또한 정부정책과 법안 개발은 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하여 국제법상 뉴질랜드의 의무와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함. 아동권리협약 하의 의무 또한 공식적 의사결정에 존중받아야 하고, 국내 보통법에 의해 병행되어야 함.	아동·청소년·가족법1989는 아동 학대와 방임의 영역에서 각각의 법안을 구속하는데, 보호의 경우 가정폭력법 1995, 형법1961, 후견인법 1967, 뉴질랜드 권리장전1990, 인권법1993과 같은 중요 법률에 의해 제공. 이러한 법률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 상해 및 학대, 방임과 유기, 성학대의 예방과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뉴질랜드는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하여 폭력 피해 아동의 효과적인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뉴질랜드 정부는 영화, 비디오, 출판물 분류법을 입안하였는데, 이는 영화, 비디오, 출판물 분류법1993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수정안임. 새 법안은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관련한 아동의 인신매매에 대한 선택적 규약의 요구와 잘 부합되며, 수정 법안은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인터넷 유포까지도 금지하고 있음.	뉴질랜드 정부는 아동·청소년, 가족 서비스부(the Department of Child Youth and Family Services)가 모든 유형의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아동성폭력 및 심한 신체학대 조사·보고를 위한 사무국 간 협약 하에서 아동·청소년, 가족 서비스부는 신고를 받은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함. 일반 시민이나 전문적 조직에 게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는 없음.

국가	아동보호 측면에서 아동권리협약 이행수준	아동보호 관련 법적·제도적 특성	아동포르노그래피 및 유해정보 관련 법령	아동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관련 법령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아동의 권익 향상을 위해 오래 전부터 아동 폭력 방지 규정을 가지고 있음. 아동권리협약에 동의하고 승인할 당시 이미 아동인권은 일반적인 국내법 원칙 중 하나였음. 2003년도에 아동권리협약의 선택적 조항은 1999년 개정 인권법에 구체화되어 있음.	아동에 대한 신체적 성적 폭력은 형법 22조에 따라 범죄로 규정함. 아동복지법은 모든 종류의 폭력과 가족에 의한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재정적 손해 및 비금전상 특성을 지니는 상해에 대하여 구상권을 소유함. 또한 피해자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아동에 대한 신체 및 성폭력은 형법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 아동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폭력이 어떤 장소에서 행해지느냐에 상관없이 적용가능함.	국가 범죄 수사서비스는 성폭행 수사를 위해 정보부를 두고 있음. 정보부는 노르웨이 컴퓨터 범죄 센터와 함께 온라인 범죄 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면밀히 수사할 수 있음. 한편 국가 범죄수사서비스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와 협력하여 아동의 성적 학대를 포한 하는 사건을 포함한 사이트 접근을 예방하도록 구상한 필터를 개발하고 있음.	모든 국민은 아동의 신체적, 성적 학대 예방을 위해 신고의 의무를 가짐. 형법 Sec. 139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 및 성폭력 예방에 있어 경찰이나 아동복지서비스 기관에 적시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음. 모든 종류의 아동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신고는 아동 복지 서비스에 접수되어야 함. 의심이 가는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서비스가 이러한 신고를 가능한 빨리 검토하여 1주일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밀의무에도 불구하고 정부(public authority)는 아동 복지 서비스에게 아동의 방치사실 여부를 알릴 의무가 있음. 아동복지서비스에 의해서 피해 아동에 대한 정보는 해당 아동의 안전을 위해 비밀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공개

			될 수 있음. 보호명령: 아동이 심각한 결핍 속에 생활하는 경우, 부모가 아동 부양의 의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아동이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 부모가 아동을 적절하게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 상태가 열악한 경우 아동복지법 s4-12에 의해 보호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시설: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폭력이 행사되었거나 시설운영이 아동에게 적합하게 운영되지 않았을 경우, 아동복지법 5장에 의해 시정 또는 시설폐지 결정할 수 있음. 아동의 성폭력의 경우 무료변호를 받을 수 있고, 가쁜 경우에는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무료변호를 제공함. 14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법정에서 심문을 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인터뷰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짐.
--	--	--	---

주30) 관련 자료는 http://www.pch.gc.ca/progs/pdphrp/docs/crc_e.cfm 참고

〈부표 3〉 OECD 국가의 아동보호서비스 공적전달체계

국가	아동보호체계 주관 부처	아동보호 관련 기관	아동보호 관련 주요 정책
호주	연방정부 수준: 아동·청소년부, 가족·지역서비스부, 연방경찰, 아동발달·건강·복지 특별위원회 (아동과 관련된 정책 조정을 목적으로 함). 호주 경찰 장관 회의	전국아동보호정보센터: 모든 수준의 정부 정책결정자, 서비스 공급자, 교육자, 법률·의료전문가, 미디어, 학생에게 서비스를 공급한다. 정책의 교차점으로 역할을 하며, 아동 학대 예방과 아동보호에 있어 실행과 연구의 집산지 전국아동보호인정협의회	아동을 위한 국가 의제: 강화된 가정과 지역사회 전략 및 아동 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국가 전략과 실행 입양아동, 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한 국가전략 아동보호 및 보육 서비스(연방정부역할) 가정폭력을 위한 파트너십 프로그램
오스트리아	연방정부 수준: 사회보장, 세대, 소비자 보호부(The Federal Ministry of Social Security, Generations and Consumer Protection): 부모의 교육, 상담, 양육프로그램의 인지, 네트워킹의 론칭, 예방, 보호, 폭력피해 도우미활동에 대한 규정 개발, 정보 제공, 검토, 연구 및 조사, 기준의 개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옴부즈만 센터 연방정부 수준의 청소년 복지당국과 기관은 가정과 아동을 보호하는 데 책임이 있다. 소아과와 관련이 있는 병원	각 주와 연방정부 수준의 옴부즈만시스템: 아동과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문제와 이슈에 대한 연락점의 역할을 함. 아동과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표하며 아동상담, 부모와 법정 보호자 상담제공. 의회 수준에서는 아동보호에 관한 특정 기구는 없으나 1997년 가정폭력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음.	오스트리아 연방 보건, 여성부의 이슈 참고.

국가	아동보호체계 주관 부처	아동보호 관련 기관	아동보호 관련 주요 정책
캐나다	가정폭력발의(Family Violence Initiative) Health Canada 가정 정의에 대한 연방-지방-준주정부 협동위원회(Federal-Provincial-Territorial Coordinating Committee of Senior Officials on Family Justice)	각 주의 위원회, 대변인, 옴부즈만제도 캐나다 인권위원회 캐나다 각 부 위원회: 제 1차 아동의 상업적 이용 퇴치 세계 회의 이후 발족. 성매매에 있어 아동유린 퇴치를 위한 국가간 프로그램과 활동을 조사 외교·국제통상에 대한 상원 상임위원회	Family Violence Initiative Framework for Action Against Family Violence
체코	노동사회부 교육·청소년·체육부 보건부 내무부 사법부 국가실행계획(National Plan of Action) 각 지방정부 지역사무소(Municipal Office)	the Office of the Public Defender of Rights Human Rights Council the Permanent Commission for Family and Equal Opportunities in the Chamber of Deputies the Committee for Education, Science, Culture, Human Rights and Petitions in the Senate	2007년까지 시행될 Government Policy for Children and Youth The Strategy of the Fight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Beings for the Purpose of Sexual Exploitation in the Czech Republic
덴마크	NA	NA	2003년 덴마크 정부는 아동 성폭력 퇴치를 위한 행동 계획(action plan)을 제시했다. 이 전략은 기존의 또한 새로운 규칙과 규제, 발의, 아동성폭력 퇴치와 예방을 위한 방법, 피해아동의 치료 및 사회복지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국가	아동보호체계 주관 부처	아동보호 관련 기관	아동보호 관련 주요 정책
핀란드	지방정부의 복지담당국	보건복지부 정부 프로그램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term 걸쳐 자원을 배분할 것임. 시민의 안전을 증진시키고 폭력을 줄이기 위한 행정부간 협동 프로그램이 정착되었음.	NA
프랑스	가족관련 부처인 고용연대부(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Solidarity) 장관에게 협약 실행방법에 대한 정부조정기능을 위임, 외교부(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또한 협약의 국제적 측면의 이행에 책임이 있음. 프랑스는 대부분의 아동보호, 아동복지, 모성보호에 관한 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보다 효율적인 아동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지만, 아동보호와 관련된 국제통상의 문제나 외교적 문제는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두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분배 균형을 이루고 있음.	NA	프랑스의 아동보호 정책은 가족 모형의 변화 등 전체적이고 전반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2차대전 이후 인구증가의 경험, 일하는 여성의 증가 및 인구의 감소, 다양한 가족의 형태 등장 및 이러한 다양성간의 사회적 합의 등 급격한 사회적 변동을 포괄하는 아동보호 정책을 수립하였음.

국가	아동보호체계 주관 부처	아동보호 관련 기관	아동보호 관련 주요 정책
독일	독일 기본법은 양육의 책임은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state)도 지니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연방정부 수준에서는 가족·노인·여성·아동부(the 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가 주무 부처로서 아동 복지 사무소를 운영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중재를 하고 있으며, 가정법원과 경찰 또한 아동보호의 주된 역할을 수행함. 지방정부의 아동복지 공급자는 연방정부의 계획 하의 사업들을 수행할 책임이 있음.	성폭력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관은 존재하지 않지만 아동의 권익을 위해 설립된 연방정부 수준의 아동 위원회(the Children's Commission of the German Bundestag)가 의회 및 의회 이외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아동정책이 모든 업무 영역에 걸쳐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모든 영역의 정책을 다루는데, 전국 최대 규모의 로비단체인 이 위원회는 의회 내외의 영역에서 아동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정보 투어, 홍보활동을 하고 있음.	“Violence against Children”을 주제로 한 “아동친화적인 독일 2005-2010을 위하여”라는 국가행동전략(NAP)은 5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폭력 없는 양육환경, 교육을 통한 기회의 평등, 건강한 삶과 환경의 추구,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 모든 아동의 삶과 국제적 의무에 대한 걱정 기준 개발. 한편, 이 전략은 아동폭력의 범위로 양육에 있어서의 폭력과 아동방임, 부모 사이의 폭력에 대하여 아동이 증인이 되는 경우, 아동 및 청소년 사이의 폭력, 대중매체와 폭력을 규정하고 있음. “Local Alliances for the Family”는 보다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연방정부 주도로 국가행동전략을 지방정부 수준으로 분권화한 형태로, 기업, 지방정부, 의회, 협회, 교회 및 기부단체로 구성된 이 연합체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 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가	아동보호체계 주관 부처	아동보호 관련 기관	아동보호 관련 주요 정책
헝가리	아동폭력에 대해 특별히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기관은 없음. 아동·청소년·체육부, 교육부, 내무부, 보건복지 가족부, 사법부, 평등국(Government Office for Equal Opportunities)의 권한 하에 이루어짐.	옴부즈만같은 제도는 없지만, 시민권을 위한 대표 이사가 이러한 임무를 맡고 있음. 자료 보호와 소수민족의 권리는 국회에서 입안하고 있으며, 아동보호법 하에서 아동보호를 받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함. 폭력으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위한 의회 기구는 없음. 다양한 영역에 걸쳐 협력하고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이러한 임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데, 이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주된 시행주체가 지방정부이므로 포괄적 수준에서의 이행 척도 개발이 요구됨.	1) 의회 결의안 45/2003: 정부의 가정폭력의 예방과 효과적인 통제 전략을 보다 상세한 수준으로 발전시켰음. 2) 의회 결의안 115/2003: 사회 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전략을 보다 상세한 수준으로 발전시킴 - 사회정책 및 가족정책의 측면; 각 아동보호서비스 주체간 협력, 가정 폭력 예방보조프로그램의 마련, 가정과 임시보호시설의 네트워크 구축, 홈리스 아동을 위한 사회적 보조 지원, 가정생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개설, 가정폭력 금지 통지 체계 구축, 피해자의 사회복귀와 훈련 지원, 피해아동과 그 가정을 위한 의료·법률·심리상담 보조, 가정 치료, 맞춤 훈련 및 교육 서비스 제공 등 - 아동 보호의 측면; 어떠한 사회적 이유에도 아동은 부모로부터 적합한 지지를 받으며 부모로부터 유리되지 않을 것임. 전문성을 갖춘 책임을 증진시키고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회·아동보호 기관의 연계와 아동의 폭력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증진이 요구됨. - 다양한 지역기반 환경 내에서의 범죄 예방 임무; 지방정부/비영리단체/매체 및 홍보

국가	아동보호체계 주관 부처	아동보호 관련 기관	아동보호 관련 주요 정책
아이슬란드	아동보호법 하에서 아동보호는 사회부의 소관. 독립기구인 아동보호 사무국(Government Agency for Child Protection)은 관련 부처들을 포괄한다. 아동보호 방법의 개발과 조정, 아동복지위원회에 대하여 아동보호법의 시행과 해석 및 교육적 조언적 기능, 감독 수행.	아동 옴부즈만제도 운영: 아동권리협약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아동센터: 아동보호 사무국에서 성폭력피해 아동을 위해 별도로 운영하는 기구.	사회부는 아동보호에 관해 4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지방정부 또한 자체 정책을 가지고 있음. 지방정부의 아동복지위원회는 폭력피해 아동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의 보조금이 특정 비영리기구에 지급됨. 아동보호 사무국은 폭력과 폭력의 결과 처리에 관한 논의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며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아동 센터를 운영.
이탈리아	평등부/평등기회국(Ministry for Equal Opportunities/ Department of Equal Opportunity)를 통해 수상비서실(The Prime Minister's Office)은 아동폭력퇴치를 위해 아동폭력의 제 이슈와 관련된 부처를 조정. 외교부는 국제경찰과의 협조를 논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 노동사회정책부는 아동 및 청소년 모니터링 센터, 소수 외국인 위원회를 조정. 보건부는 이탈리아 거주 외국인을 위해 인권 프로그램 차원에서 의료 치료를 제공	아동을 위한 의회 위원회 국가 아동 관찰국(Observatory): 고용 사회정책부에 의해 설치된 기구로 중앙, 지역, 지방정부 간 조정, 시설 및 전문가집단, 비영리단체 등 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구의 조정을 도모함. 아동·청소년 분석 및 연구센터: 국가 아동관찰국 산하에 설치됨. “CICLOPE”: 아동의 폭력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 이탈리아 행정부 11개의 대표로 구성됨.	국가 사회정책은 국가 사회서비스 계획 및 실행 2001-2003에 의해 정의됨. 이는 아동폭력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비중을 두었는데, 동 계획은 복지체계, 복지공급주체의 다원화(모든 수준의 정부), 조직간 인력자원의 교환 및 이동의 용이성 증진, 자원단체, 지역사회 및 가족과 개인의 협력 증진, 공적 지원과 기부 기관의 역할 증대를 포함한다. 이 계획은 사회정책을 위한 국가기금을 운용해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 분배함.

국가	아동보호체계 주관 부처	아동보호 관련 기관	아동보호 관련 주요 정책
일본	사법부의 인권 조직 검찰은 범죄 수사권, 형사사건의 기소권, 법정으로부터의 법적 절차 의무 요청권한 지방정부 수준의 경우 각 시·정·촌의 교육부는 특히 학내 폭력 방지를 위해 경찰, 아동지도 센터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하고 있다. 국가수준에서는 교육·문화·스포츠·과학기 술부에서 관할하고 있음. 보건부, 노동·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학대예방대책본부를 두어 아동학대 대책에 대한 계획과 안을 제시.	사법부 산하 인권위원회(Human Rights Bureau)는 중앙기구로서 일반 공공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행정기구임. 이 밖에 사법 위원회, 지역 사법위원회, 사법부의 소기구인 지역 사무소가 등이 있음. 아동의 권리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인권자원봉사단에 의한 아동권리보호 자원봉사단 또한 아동폭력 예방 및 처벌에 관련 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 아동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가정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정학습 비망록을 신설·배포하여 부모의 역할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음. 학교에서는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위해 지역사회, 스포츠 팀, 학교관련자, 교육자,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한편, 경찰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상담을 제공함.	청소년 개발 국가정책(National Youth Development Policy):수상과 각료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개발본부(Headquarter for Youth Development)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정부의 기본 원칙과 중장기 정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한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따돌림 방지와 아동 학대, 청소년 복지를 손상시키는 범죄 예방대책, 다양한 매체와 인터넷상의 불법적/불건전 유해정보 유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더불어 일본정부는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국가	아동보호체계 주관 부처	아동보호 관련 기관	아동보호 관련 주요 정책
한국	범부처가 참여하는 아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아동 권리 도모를 위한 정책을 조정하고 있음. 정부부처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며 아동폭력의 영역에서 조정을 담당. 개별 부처 및 사무국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아동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적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아동복지법에 근거)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유해 물질 및 활동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책임이 있다(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성폭력 방지법에 근거).	국가인권위원회(NHRC): 국가인권위원회법의 19조 4항에 규정된 아동의 상황에서 인권에 대한 연구를 수행.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관련법 검토(2002)”, “청소년 소송체계에서의 아동과 청소년 권리 보호계획(2002)”, “한국의 이민아동의 상황(2004)”. “기지촌 출생 혼혈아동의 상황(2004)” 등 발표. 한편, NHRC는 NGO에 의한 인권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아동폭력에 대한 프로그램을 포함. 또한 조사 및 수사권을 가지며 정부 조직, 지방정부 또는 보회기관의 공식적 의무 수행과 관련된 아동폭력에 대한 처방을 제시함. 그러나 아동폭력에 관련된 사례는 아직 없음. 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부는 200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NA

국가	아동보호체계 주관 부처	아동보호 관련 기관	아동보호 관련 주요 정책
네덜란드	보건복지체육부, 사법부, 지방정부는 아동 폭력 방지에 대한 정책에 책임을 공유하며 특히 지방정부는 정책 실행의 책임(아동학대 및 유기 조인·신고센터 운영). 한편, 성폭력 방지 정책에 따라 정부는 비영리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도움에 대한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혁신이 필요.	네덜란드 보호 복지 기관(Netherlands Institute for Care and Welfare, NIZW): 보호와 복지 분야에 있어 혁신적인 독립 조직이다. 사회 서비스 고용 서비스 주택 관련 조직 및 경찰과 학교와 같은 고유의 영역 외의 조직에게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며 아동학대에 대하여 전문 센터를 운영. TransAct: 보건보호 영역의 성관련 문제와 성·가정폭력 예방 센터로 전문성을 지닌 5개 기존의 비영리조직을 합병한 조직 RAAK action group: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 전략을 찾기 위해 아동과 부모의 참여를 도모 아동학대와 유기 조인 및 신고센터(Advice and Reporting Centre for Child Abuse and Neglect), 가정폭력 조인 및 지지 센터, 가정폭력 예방 협동그룹, JONG 등이 있음.	가정폭력:2000년 사법부는 의회의 주문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보다 확고하고 효과적인 규정을 마련하게 됨. 2002년 4월 12일에 의회에 보고됨 아동 성폭력:1996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첫 유엔 세계회의에 부응하여 정부는 아동의 성학대 방지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음.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보다 나은 보조 제공, 학대의 사인을 초기에 식별하고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아동과 주변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게 함, 경찰, 검사, 보호 서비스 간의 전문적 발전 도모, 성학대의 재발 방지, 아동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식건을 키워줌

국가	아동보호체계 주관 부처	아동보호 관련 기관	아동보호 관련 주요 정책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청소년개발부, 사법부, 보건부, 교육부, 아동·청소년·가족서비스국, 노동국, 교정 및 내무국, 경찰, 아동위원회 (Ministries of Social Development, Youth Development, Justice, Health, Education, Pacific Island Affairs, the Departments of Child·Youth and Family Services, Labour, Corrections and Internal Affairs, Police, Te Puni Kokiri and the Office of the Children's Commissioner)가 아동보호에 주요 책임이 있다. 이 중 아동·청소년·가족서비스국이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하여 주요 책임이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른 서비스공급자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한편, 부처간 보다 효율적 협력과 조정, 의사소통을 위해 Te Rito New Zealand Family Violence Prevention Strategy의 프로그램과 Care and Protection Blueprint 2003이 운영되었고, 정부의 재원조달 과정을 조정하는 지역 발의인 Family Violence Funding Circuit Breaker는 조직의 순응비용을 줄이는 데 일조. 사회개발부 소관의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service-line은 정부 및 비정부영역에 걸친 광범위한 가정지원 서비스를 조정.	아동위원회(The Office of the Children's Commissioner)는 아동의 권리에 주요 책임이 있는데, 아동학대와 폭력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된 역할. 위원회는 아동폭력과 관련된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수사하며, 법령상 보호체계 및 절차적 공정성을 감시. 2003년 개정 아동위원회법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	Te Rito New Zealand Family Violence Prevention Strategy: 가정폭력으로부터의 해방을 목적으로 한 정책으로 5개의 주요 목표를 두고 5개년에 걸친 18개의 세부 실행목표를 세우고 있다³¹⁾. Care and Protection Blueprint 2003: 위험에 처한 아동이나 학대 및 방임으로 고통 받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개선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음. “아동과 청소년을 안전하고 편안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정, 지역사회, 정부의 협력추구”가 이 계획의 목표임³²⁾. The Agenda for Children: 총체적 관점에서 아동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지침을 제공³³⁾.

국가	아동보호체계 주관 부처	아동보호 관련 기관	아동보호 관련 주요 정책
노르웨이	아동폭력 신고 및 처벌에 관하여는 경찰과 사법부가, 아동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은 각 지방정부의 아동보호서비스 부서에서 담당한다. 한편, 아동가족부(the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Affairs)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	옴부즈만: 공공 및 민간 기관에 대하여 아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아동이 성장하는 상황과 조건을 감독하는 것이 옴부즈만의 역할. 특히 법과 정책 그리고 집행에 있어 아동권리협약의 충실한 이행이 이루어지는지 감독. 기관: 법사위원회, 가족 문화행정위원회.	가까운 관계에서의 아동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응(the Government's action plan to combat violence in close relationships(2004-2007))중 일부는 성별에 따라 다른 수요를 감안해 이에 맞추어 중앙 차원의 정책에는 포함되지 않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

주31) www.msd.govt.nz/publications/p-t.html

주32) www.msd.govt.nz/publications/care-protection-blueprint-2003/index.html

주33) www.msd.govt.nz/publications/agenda-for-children-public-repot/

〈부표 4〉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관련 모니터링 및 평가

국가	모니터링 및 평가활동	아동보호관련 조사수행 현황	아동보호 관련 국가통계의 생산
호주	HREOC는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이슈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전문성을 구축해왔음. Project Respect라는 반인신매매에 주도적인 NGO 및 다른 단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신매매 금지(Stop the Traffic)”이라는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음. 이 회의는 여러 주요 인사와 언론매체로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아동의 인신매매, 아동매춘 , 인간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이슈 등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음.	HREOC는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Social Justice Commissioner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위원회는 원주민의 인권(the Social Justice Report)보고와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위원회는 CRC와 관련 다른 국제기구로부터 권고에 동의할 것을 요청받고 있으며, 위원회는 원주민 아동에 대한 폭력 관련 이슈에 주목해 왔음. - the Social Justice Report 2003과 the Social Justice Report 2002는 정보수집의 타당성, 체계의 모니터링과 평가의 정당성을 포함해 호주 정부에 의한 원주민의 불이익 철폐 권고를 포함. HREOC는 원주민의 불이익을 파악하기 위한 호주 정부의 모든 위임 승인을 받았다. 원주민 정책의 두 가지 주요 쟁점은 (1) 긍정적인 아동발달과 폭력 및 자해 예방, (2)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지적인 가정 환경 조성.	호주의 개발 협동 프로그램은 유니세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아동의 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분석은 향후 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인권평등위원회(the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는 독립적 기구로서 국내 인권법과 국제 인권 조약 불이행에 대하여 호주 정부를 감시하고 있다.

국가	모니터링 및 평가활동	아동보호관련 조사수행 현황	아동보호 관련 국가통계의 생산
오스트리아	예방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Prevention)의 아동폭력 협동그룹이 이 영역의 모든 행위자의 조정을 개선시키는 데 관여.	사회안전, 세대와 소비자보호부(the Ministry of Social Security, Generation and Consumer Protection)는 Gewalt in der Familie를 출간해 아동폭력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 즉, 아동폭력, 특히 아동 성폭력에 관한 대중매체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매체는 이슈의 배경이나 전반적인 실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례에만 치중하고 있음. 이 보고서에서는 아동 폭력은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개인의 문제라는 점에 초점을 둬.주34). 2002년 갈등 조사 연구원(Institute for Conflict Research)에 의해 수행된 가정폭력 예방법을 평가한 연구 참고.주35)	NA

국가	모니터링 및 평가활동	아동보호관련 조사수행 현황	아동보호 관련 국가통계의 생산
캐나다	the Year Five Report of the Family Violence Initiative: 아동폭력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초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기대 효과 및 예기치 않은 정책효과, 기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노력³⁶⁾.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정책효과를 모니터링, 아동보호지국, 아동 및 가족서비스국(가족서비스 및 주택 산하)는 지방정부 전역에 걸친 아동복지 서비스 전반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 즉, 운영, 기준, 정책, 모든 아동복지 사무소에 의해 제공되는 서서서비스의 질에 대해 책임이 있음.	최근 5년 동안 아동폭력과 관련한 인구학적 측면, 역학적 측면 등의 조사 및 연구는 다음과 같음: -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Children and Youth(1996)³⁷⁾ - Canadian Incidence Study of Reported Child Abuse and Neglect(2001)³⁸⁾ - The Incident-Based Uniform Crime Reporting Survey(UCR2): 아동폭력사건 발생, 사건 정보,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정보 수록. - A Family Violence in Canada: 경찰 통계를 분석하고 아동폭력 발생 빈도를 기술함³⁹⁾. - A number of research studies by the Centre of Excellence for Child Welfare⁴⁰⁾ - National Outcome Measures Project by provincial and territorial Directors of Child Welfare, 2002⁴¹⁾ 한편,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부모의 참여에 따른 결과 평가, 아동학대에 대하여 영향이 있을 것을 가정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아동폭력에 관하여 과학 및 법적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조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아동의 사망에 대하여도 모든 지방정부는 Coroner and Medical Examiner's service를 통해 의심스러운 아동 사망 수사를 위한 절차 및 정책집행.	캐나다 정부는 사망아동에 대한 통계를 피해자의 성별·연령별로, 그리고 총계 또한 제공(the Homicide Survey) 2000년의 경우 전체 사망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의 사망 비율은 12%였고 2001년에는 14%, 2002년에는 12%를 차지

국가	모니터링 및 평가활동	아동보호관련 조사수행 현황	아동보호 관련 국가통계의 생산
체코	NA	2000년에는 범죄와 사회예방연구원에서 가족 내 아동에 대한 학대라는 조사를 한 바 있으며, 아동폭력에 관한 통계는 경찰, 국선변호사, 법정에서 수집 가능	NA
덴마크	덴마크 정부는 2003년에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실행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에는 성폭력 피해 아동이 사회에 복귀되었는지에 초점을 둔 기준(measure)을 포함.	덴마크 사회연구센터에서는 1995년 에 출생한 아동의 어머니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2-3년마다 아동의 문제와 아동의 평가에 대한 인터뷰를 시행하고 있음. 한편, 2004년도에 출판된 보고서에서는 아동폭력에 대한 현존 통계 정보를 수록하고 있음	NA
핀란드	NA	2000년에 국립보건복지연구개발센터에서는 아동성폭력 사건을 조사해 복지 및 보건 당국에 알렸으며, 국립법제도연구개발센터에서는 매년 “핀란드의 범죄”를 발간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있음. 아동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모든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정보는 경찰이 소지하고 있음.	1990-1999년 사이 15세 미만의 아동폭력(살해) 사망자 비율은 4.2%였고 15세-29세 사이는 18.9%였음.

국가	모니터링 및 평가활동	아동보호관련 조사수행 현황	아동보호 관련 국가통계의 생산
프랑스	프랑스 정부, 의회, 아동 옴부즈만제도, 국가인권자문위원회(the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Human Rights), 각종 협회 및 시민단체(the Institute for Children and the Family, The French Council of Associations for the Rights of the Child)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여부와 아동보호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NA	NA
독일	독일 연방정부는 아동 폭력 예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에도 많은 노력하고 있음. 독일에는 아동 위원회, 협상테이블, 아동 포럼(Children's councils), round table, children's forum)과 같은 500여개의 아동의회(Children's parliaments)가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학습하고 이를 실천 및 연습해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익힐 수 있음. Children's commission, the Commission for Children's Concerns of the German Bundestag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편 대다수의 경우, 학교 및 가정에서의 교육은 아동의 권리의 인식과 아동학대 예방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	아동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없지만 경찰의 범죄현황통계를 통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000년부터 수행된 양육에의 비폭력 환경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음: Parent's Study, Young People's Study, Multipliers' Study. 조사 결과 양육에 있어서의 차별은 과거와는 다르게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다수로 나타났으며 차별보다는 자녀와의 대화로 견해 차이를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일 청소년원(the German Youth Institute)의 데이터베이스는 보다 아동학대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가능케 하였음 ^{주42} .	아동 폭력 및 사망에 대하여 공식적 통계는 집계되고 있지 않음. 다만, 경찰 범죄 통계를 통해서 아동에 대한 폭력 현황을 추정할 수 있음. 18세 미만의 아동이 살인, 치명적인 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건수는 2003년 155명이었음.

국가	모니터링 및 평가활동	아동보호관련 조사수행 현황	아동보호 관련 국가통계의 생산
헝가리	NA	1999년에 헝가리 과학학술 사회연구원에서 발간된 가정폭력이라는 연구는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과 인구 및 역학적 관점에서 피해아동을 연구함. 폭력으로 인한 아동의 사망은 검찰의 소관.	1993년 대검찰청의 컴퓨터 적용과 정보부는 가해자의 전과기록, 피해자와의 관계와 관련된 정보 수집과 공개를 허가.
아이슬란드	아동 옴부즈만 제도는 아이슬란드의 아동정책이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아동폭력의 정도나 본질에 대한 포괄적인 체계적 연구 또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	아동보호 관련하여 국가 통계는 주로 아동복지 위원회에 보고되는 유기, 폭력, 정신적 학대. 성폭력 등에 대한 신고건수에 의존.
이탈리아	“CICLOPE”: 비용효과 및 비용인지 관리 측면에서 결과를 달성했는지를 모니터링	이탈리아는 정보 체계가 중앙집권화 되지 않아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경찰 통계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아동보호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음. ex) 성폭력 피해아동(2002): 511명
일본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학교 프로그램, 가정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아동보호 프로그램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 ⁴³⁾ . 매년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를 지역경찰이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가경찰의 조사가 매년 행해진다.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정책에 반영시킴	아동피해에 관한 국가 조사: 아동 피해의 빈도와 결과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사법부의 조사 및 훈련센터에서 2002년에 실시함. 피해아동의 범죄자화(Experience of Victimization among Juvenile Delinquents in Japan): 아동폭력 피해 경험이 아동의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함(2000). 아동폭력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조사 체계는 없음.	국가경찰국이 매년 아동의 폭력 피해 사실을 지방경찰의 보고를 통해 생성.

국가	모니터링 및 평가활동	아동보호관련 조사수행 현황	아동보호 관련 국가통계의 생산
한국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은 아동학대연감을 통해 모니터링 되고 있음. 이 연감은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보고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를 가해자의 종류별, 특성별, 피해자 연령,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별로 분석하고, 아동폭력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구성.	아동학대연감: 2002년부터 매년 발행되는 아동학대 현황 및 분석 보고서 국립아동학대예방센터 2008년에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수준에 대한 인터넷 조사 실시 범죄연감 분석보고서 가정 및 학교폭력을 아우르는 보고서 2000년부터 정부는 아동학대, 특히 아동학대 평가 개발과 아동학대 가해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시행. 2000년의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패널토의가 2000년 7월에 아동폭력예방과 관련한 발의를 평가하기 위해 개최.	2003: 총 살해사건(681), 12세 이하 피해자(24), 15세 이하 피해자(5), 20세 이하 피해자(14) 2002: 총 살해사건(615), 12세 이하 피해자(42), 15세 이하 피해자(5), 20세 이하 피해자(20) 2001: 총 살해사건(693), 12세 이하 피해자(42), 15세 이하 피해자(4), 20세 이하 피해자(21) 2000: 총 살해사건(632), 12세 이하 피해자(43), 15세 이하 피해자(4), 20세 이하 피해자(25)
네덜란드	아동폭력과 아동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특정 활동이나 조직은 존재하지 않음. 다만 아동폭력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와 관련 단체,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가 서로 연계를 강화하려고 노력	네덜란드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 정책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조사를 수행할 예정임. 피해아동의 상해유형, 가해자의 정보, 아동폭력이 발생한 배경과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범행 동기 및 상황에 관한 정보가 수집될 것임.	아동 성폭력과 관련한 자료는 수집이 어려운데, 이는 보통 비공식적 circle에서 일어나기 때문임. 최근 몇 년간 경찰에 보고된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경우 1996년의 40건에서 2000년에는 130건으로 3배 이상 증가
뉴질랜드	뉴질랜드 정부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기구의 설치와 시행을 기대하고 있음. 현재까지는 아동보호서비스 개별 프로그램 상 서비스 전달주체의 만족도 보고서 및 계약관계에 의한 모니터링 및 평가의 형태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사법부는 2001년에 15세 이상 인구에 대하여 “범죄 피해자 조사”를 수행했다. 2001년 아동의 신체적 제재(discipline)에의 공격 태도에 관한 조사를 수행함. 한편 아동의 건전한 학교교육환경과 관련한 연구, 아동에 대한 체벌에 관한 연구 등이 수행되었고 Te Rito New Zealand Family Violence Prevention Strategy의 일환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폭넓은 정보가 수집되고 배포될 예정	사망과 관련한 통계자료가 뉴질랜드 보건정보서비스에 의해 제공, 2000년에는 20건의 살인이 발생했고 30%인 6건이 18세 이하 아동이 피해자였음.

국가	모니터링 및 평가활동	아동보호관련 조사수행 현황	아동보호 관련 국가통계의 생산
노르웨이	NA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에 관한 조사는 거의 대부분이 1990년대에 수행된 것이고 가장 최근의 것은 2003년에 노르웨이 사회 조사(NOVA)에 의한 조사임. 가정폭력에 대하여 피해아동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 형법 체계와 아동 성폭력, 아동성폭력을 행한 사람에 대한 연구, 예비 재판에 있어 증인으로서의 아동 등 아동폭력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 및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NA

주34) www.bmsg.gv.at/cmc/site/detail.htm?channel=CH0098&doc=CMS1056453530966

주35) www.ikf.ac.at/a_proj02/a_pro03.htm

주36) www.hc-sc.gc.ca/hppb/familyviolence/pdfs/Family-Violence-Report-040224.pdf

주37) www11.hrdc-drhc.gc.ca/pls/edd/NLSCY.1.html

주38) www.hc-sc.gc.ca/pphb-dgspsp/publicat/cisfr-ecirf 참고

주39) www.statcan.ca:8096/bsolc/english/bsolc?catno=85-224-XIE와 www.statcan.ca:8096/bsolc/english/bsolc?catno=85-224-XIE2003008 참고

주40) www.cecw-cepb.ca 참고

주41) www.cecw-cepb.ca/DocsEng/OutcomesIndicatorMatrix.pdf 참고

주42) www.dji.de 참고

주43) www.mhlw.go.jp/wp/seisaku/jigyoku/03jigyoku/index.html 참고

〈부표 5〉 OECD 국가의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와 민간협력

국가	민간참여 현황	미디어 역할	교육 및 홍보활동 현황
호주	건전한 교육환경 마련,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원주민 아동 보호, 아동의 성폭력 방지 등 아동 폭력 보호 및 아동의 인권 관련 이슈에 있어 HREOC는 관련 기관과 비영리단체와의 협력관계를 맺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한편,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아동폭력, 아동착취의 퇴치를 위하여 비정부기구와 다양한 형태로 협력하고 있음.	아동보호 관련 미디어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호주의 아동보호관련 활동은 국제적 협력에 보다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음.	아동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 현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호주의 아동보호관련 활동은 국제적 협력에 보다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음.
오스트리아	Weisser Ring(White Ring): 피해자 지원조직.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담당. Victims First: 심리상담가, 의사, 변호사집단에 의해 설립. 현재 희생자가 미래의 가해자로 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심리상담 지원 조직. Austrian Labour Union: 작업장에서의 착취 피해자를 위한 도우미센터 New Start: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비영리단체.	아동폭력, 특히 아동 성폭력에 관한 대중매체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매체는 이슈의 배경이나 전반적인 실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례에만 치중하고 있음. 이 보고서에서는 아동 폭력은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개인의 문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아동보호 관련 법령에서 아동보호에 대한 관심 및 인식의 증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의 의무를 규정했으며 이러한 교육과 홍보는 의료, 사회복지 및 심리상담, 학교, 경찰, 법정, 가정폭력 예방 센터에서 아동폭력 예방, 아동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사회복귀, 처벌, 피해보상과 관련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국가	민간참여 현황	미디어 역할	교육 및 홍보활동 현황
캐나다	캐나다의 비영리단체는 아동보호에 대하여 교육, 홍보, 지원 및 변론에 있어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⁴⁴⁾. 2003년에는 Canadian Coalition for the Rights of Children은 아동 권리에 관하여 접근이 가장 용이한 자원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Alliance of Five Research Centers on Violence는 측정 가능한 목표 및 결과, 모니터링/평가 기제를 포함한 국가 전략의 개발을 목표로 발족되어 아동 폭력, 아동 성폭력과 관련된 이슈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Speak Out Against Violence”라는 라디오와 TV 방송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는 10.6백만달러의 기금조성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음. 미디어 인식 네트워크(Media Awareness Network)는 비영리조직으로 미디어의 교양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해왔음. 또한 온라인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하여 국제조직과의 협력과 미디어와 인터넷 교육을 도모하고 있음.	모든 수준의 정부는 가정 폭력과 아동 폭력에 대하여 인식을 높이는 홍보활동에 책임이 있다. 일례로, 2001-2004년에 퀘벡주는 의견 교환의 다양한 채널(극장에서의 광고, 라디오 광고, 스티커, 인터넷 사이트)을 통해 아동 폭력과 아동성 폭력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켰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아동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왕따 예방프로그램(Bullying Prevention Program) 교사를 위해 훈련 프로그램이 Newfoundland and Labrador에 설치됨.
체코	비영리단체, 지역 사회는 상담 서비스, 상담전화 등을 제공하며 예방홍보를 조직하고 학대 아동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위협적 환경에 있는 아동을 위해 중재하며 아동의 치료를 지원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The Safety Line, Our Child Foundation, The White Circle of Safety, The Children's Crisis Centre 등. 한편, 비영리단체는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이를 기반으로 한 정부정책에 참여	정보교환과 예방적 활동을 위해 미디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편향성을 띠거나 범죄의 용의자 수사에 민감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경찰의 수사에 어려움을 주기도 함.	아동 및 여성 폭력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해 First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the Interior, Minister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등 관련 정부 부처와 NGO 등 관련 기관 및 단체가 공동으로 홍보대회를 열었다.(f2003) 15-25세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였고, 각 학교에 리플렛 배포, 버스와 트럭에 포스터 부착, TV 및 신문 등 매체 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홍보활동을 진행

국가	민간참여 현황	미디어 역할	교육 및 홍보활동 현황
덴마크	NA	NA	Ministry of Social Affairs는 일반 대중, 전문가집단, 학부모를 위한 인식 증진 홍보를 계획하고 있음. 한편 교사와 사회복지사의 교육 훈련을 위한 교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재는 아동폭력을 식별하고 다루는 방법을 포함.
핀란드	여러 비영리단체, 특히 League for First Homes and Shelters는 아동폭력에 대하여 예방, 보호, 사회복귀, 폭력피해아동의 치유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 지방정부와 NGO는 건강증진기금, 슬롯머신 협회의 재원에 지원을 할 수 있음. 대부분의 재원은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사용되며 보건복지부는 NGO에게 보조금을 지원.	NA	정부가 직접 계획한 홍보는 최근 5년간은 없었으나, 아동 및 여성폭력 예방에 대한 5개년 프로그램에 보건복지부가 출자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예방에 있어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임. 아동폭력에 관한 홍보는 유인물, 라디오 및 TV, 학교 등을 통해 이루어졌음.

국가	민간참여 현황	미디어 역할	교육 및 홍보활동 현황
프랑스	옴부즈만제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모하는 독립적 기구이며 아동 또는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신고를 접수. 아동권리를 보다 보장하기 위해 규제나 법령을 제안할 수 있으며 아동권리와 효과적인 보호에 대한 정보 활동을 조직. 연간 보고서를 작성해 전년도 아동폭력 피해 상황 및 아동권리보호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음. 국가인권자문위원회: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1988년 이래 시민단체들의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제화를 위한 노력 The Institute for Children and the Family는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 1992년에는 the French Council of Associations for the Rights of the Child라는 독립적 기구를 설립해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국내법에 반영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고 아동의 건강, 교육, 보호, 아동노동참여에 대한 여러 조언들을 제안해 왔으며 이들의 제안은 정부에서 주의 깊게 검토	NA	NA

국가	민간참여 현황	미디어 역할	교육 및 홍보활동 현황
독일	www.dksb.de: 1953년에 설립된 German Child Protection Alliance은 독일 연방 전체에 걸친 아동을 위한 최대 로비단체. 각 Federal Land(16)마다 Land 협회가 있으며 420개의 지역 사무소가 있으며 회원수는 50,000명에 이릅니다. 이 협회는 부모와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폭력 없는 양육환경, 양육기술의 증진을 위해 고안된 Strong parents-Strong Children이 현재 운영중이다. 이 외에 36개의 전국 규모의 조직이 있음. 한편, “More Respect for Children” 캠페인의 일환으로 양육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많은 프로젝트에 재정적 지원과 가정 교육 및 훈련, 상담과 관련된 평가를 제공	독일은 미디어가 가지는 영향력의 순기능적 역할-사회통합의 기능, 광범위한 교육 및 홍보효과 등에 착안하였음.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사용하여 아동폭력의 유해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도구로, 아동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 한편, 미디어를 통해 미디어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알림으로써 아동이 매체를 통한 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음(EX. “Look! What your children are doing” 캠페인)	“More Respect for Children”: 2000년 11월에 개최된 이 캠페인을 통해 법률상의 변화를 홍보하고 동시에 부모와 사회가 양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지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였음. 특히 캠페인 현장에서 부모를 비롯한 양육시설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토론이 장려. 이 캠페인은 2002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연방정부의 가족·노인·여성·아동부가 처음 제안하고 추진하였지만 직접 개입된 당사자들에 의해 구체화되었음⁴⁵⁾. “Look.Do.Help”: 연방정부의 주관으로 2004년에 개최된 성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다. 아동 성학대에 대한 정보와 도움 및 상담 센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캠페인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광고 및 버스투어, 인터넷 웹사이트의 팝업창 또는 배너 광고를 이용해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음.

국가	민간참여 현황	미디어 역할	교육 및 홍보활동 현황
헝가리	the Hungarian Red Cross Organization the goal of the Movement for Prostitution=Free Hungary the Women for Women Together against Violence Association(NaNe) Association against Child Abuse Blue Line Child and Youth Telephone Service 비영리단체는 정부에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요한 홍보나 훈련 과정 및 출판물을 위한 기금을 받을 수 있음.	NA	Association of Hungarian Psychological First Aid Telephone Service Providers(Magyar Lelki Elsosegely Telefonszolgalatok Szovetsege): 가정폭력예방에 대한 캠페인을 2003. 12. 10~2004. 2.8 까지 개최했다. 24시간 상담전화를 열어놓아 언제 어느 때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문가 교육, 전문가 전국회의 개최, 공공장소에 포스터 부착 및 대중매체에의 광고를 포함했음.
아이슬란드	많은 비영리단체가 아동폭력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 있다. 주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개인으로부터의 기부금으로 운영. 대표적인 단체로는 아동성폭력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Stigamot”, “End Child Pornography on the Internet”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Save the Children, Iceland”, 학교내 따돌림 퇴치를 위해 활동하는 “Rainbow Children”등이 있음.	아이슬란드에서는 미디어의 역할이 아동 성폭력 문제, 따돌림, 추방에만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실정임. “Regnbogam”을 위한 전국규모의 기금 조성운동이 2002년에 미디어를 매체로 홍보.	Government Agency for Child Protection의 주관으로 아동 성폭력 및 신체학대에 관련한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다. 전문가의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 아동 ombudsman 역시 아동 스스로, 일반대중 및 전문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회의를 조직.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민간참여는 주로 국제기구 및 국외 비영리민간조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이탈리아는 아동의 노동착취, 아동성폭력, 인신매매, 아동의 인권수호, 법정에서의 아동의 권익 보호 등과 관련하여 아프리카, 유럽 등 연계를 맺고 있음.	TV와 라디오,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아동보호에 대한 홍보 진행. CICLOPE 위원회의 RAI 회원이 아동학대 퇴치 홍보에 있어 임명된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승인. RAI's Social Action Department는 아동학대 이슈와 사회적 의사소통에 대한 일련의 발의를 수행했는데, 내부 단체 구조 또는 주요 국가 또는 지역 기관과 함께 협력.	2003년 라디오프로그램인 Zapping and Radio RAI's GRI 뉴스 프로그램은 유니세프와 협력해 아동의 전쟁참여, 성학대, 성관광에 대하여 “No”라고 말하기 홍보. E-safe Directions 2003-2004; 유럽연합의 Safer Internet Action Plan을 모형으로 한 TV와 인터넷으로부터의 아동보호 프로그램.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해 시행되었음.

국가	민간참여 현황	미디어 역할	교육 및 홍보활동 현황
일본	아동학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다음을 포함: 아동 학대와 유기 예방을 위한 사회 실제적 경험과 연구의 교환을 통한 학대에 대한 기준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모임 구성원은 실천가, 학자, 의료·보건·복지·교육·사법·행정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를 포함. - NPO, 아동 전화 지원센터 - NPO, 아이치 아동학대 예방 네트워크 아동학대 예방 기준에 있어서 다양한 관련 분야 간 협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사적 영역은 지방정부, 경찰, 학교, 비영리단체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아동복지법에 따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협력. 또한 비영리단체에 의한 시민사회 활동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연구비용을 지급	사적 미디어 기업은 아동 학대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TV 광고를 통해 대중의 인식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아동의 인권보호는 사법부의 중요한 임무중하나임.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강의, 토론, 공개토론회, TV 및 라디오와 같은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등)이 행해져왔으며, 특히, “인권주간”인 매년 12월 4일~10일에는 이러한 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 한편, 경찰은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출판물을 학교, 보호자,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있음. 관련 훈련 프로그램은 교정훈련소(Training Institute for Correctional Personnel), 보호관찰관리(Probation Officers)로부터 제공됨. 사법부는 검사들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쏟도록, 가해자에 대하여 적합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함. 또한 이민국에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해 아동 인신매매 예방과 보호에 대한 강의를 제공 국립 교사개발센터(National Center for Teacher's Development)와 경찰에서도 활발히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프로그램을 제공

국가	민간참여 현황	미디어 역할	교육 및 홍보활동 현황
한국	Safe School: 약물중독 및 성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단체. 출판물, 세미나,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교육, 또래 폭력에 대한 연구 등의 활동을 진행. 아동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폭력에 관한 정보를 배포. Victims of Child Abuse Protection Unit: 주요 병원의 의료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단체. Sexual education for rural youth: 지역사회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매춘에 대한 비디오를 통한 교육 제공. The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회. 언론, 성문화, 폭력, 약물, 인터넷, 청소년 절제, 시민 참여, 청소년 참여, 정책제정에 관한 9개의 소위원회로 이루어짐.	언론에서는 아동폭력에 관해 부정기적으로 다루고 있음. 2003년에는 서울방송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2부작 TV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 아동 성폭력과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아동의 인권보호, 아동폭력의 심각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2000년 아동복지법개정에 앞서,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홍보 영상물을 제작, 학교, 아동복지시설, 경찰, 언론단체에 배포. 유명스포츠 스타와 배우를 활용한 홍보, 웹사이트의 배너 활용 등으로 홍보활동.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의료협회, 한국간호협회, 한국 아동복지연합을 통해 아동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적절한 훈련·교육 프로그램이 제공.
네덜란드	아동학대 및 아동성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전문가집단, 시민단체, 대학에 의한 발의를 정부는 다년간 지원하거나 이에 관한 프로젝트를 시행	아동학대 이슈에 대해 정기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보통은 정부 보도자료의 형태이며 사건에 대한 대응정도임.	정부는 홍보책자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동학대에 관한 전국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지역 홍보 또한 2003년 10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이루어졌음. 의료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지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교사 및 아동에게 훈련프로그램 지원, 특정 상황에서 아동학대의 사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대처할 수 있는 지침마련에 지원을 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프로그램을 아동이 인지하고 있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절차가 마련되었음.

국가	민간참여 현황	미디어 역할	교육 및 홍보활동 현황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아동보호 및 아동폭력 감소 방법 연구를 지지하는 수많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있음. 이러한 다양한 단체 중 우선적으로 꼽히는 곳은 다음과 같음: Barnados, UNICEF New Zealand, the Child Abuse Prevention Service, Save the Children, Action for Children and Youth and the National collective of Independent Women's Refuges. 아동학대예방서비스(Child Abuse Prevention Services)는 수많은 회원사무국을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아동학대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the National collective of Independent Women's Refuges와 National Network of Stopping Violence Services는 수많은 회원사무국을 통해 가정 폭력 예방과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the Children's Issues Centre는 아동폭력 이슈에 대한 연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아동의 체벌에 대한 주요 문헌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아동폭력방지위원으로 임명되었음.	공중파방송강령(The Broadcasting Conduct for free to air television)은 미디어에 의한 아동 학대 보호를 포함해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 권리와 관련한 미디어 지침은 아직 없음.	The Neglect Prevention Programme: 1999년 아동 · 청소년 · 가족서비스부에 의해 시작된 제도로 아동과 청소년 방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 목적임.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매체(라디오, TV, 포스터, 출판물 등)를 통하여 프로그램 활동 홍보도 포함; 아동방임 퇴치 메시지, 각종 세미나, 일반지역주민 및 전문가 교육 등. An Alternatives to Smacking Campaign: Every Communities: Strategies with Kids-Information for Parents: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동과 부모를 위한 권리보호 및 학대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부 또한 아동폭력 예방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지원함. Dangerous Dynamics Family Violence Dynamics of Sexual Abuse Child Focussed Interviewing The First Four Years The Puaruruhau-Diagnosis and Management of Abused Children

국가	민간참여 현황	미디어 역할	교육 및 홍보활동 현황
노르웨이	Norwegian Centre on Violence and Traumatic Stress: 아동보호영역에 있어 연구, 개발, 교육, 경쟁력 구축, 감독 및 아동 보호서비스 영역에서의 정보에 초점을 맞춤. Alternativ til vold(ATV):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아동과 가해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제공함. The Norwegian Red Cross: 아동과 15세 이상의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으며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연락망을 운영하고 있음. 전화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문자로도 연락이 가능함.	지역 및 전국 신문은 종종 가정폭력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 일례로 2003년에는 가장 주요한 신문사에서 아동폭력의 범위와 아동폭력의 결과에 대한 기사를 많이 실었음. 3년 연구 프로젝트인 “매체에 있어서의 가정폭력 제시(Presentation of Family Violence in the media)”가 2004년 종결될 예정임.	노르웨이의 학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학대 방지 캠페인이 2003년에 진행되었으며, 인쇄 포스터, 인터넷, 또래 교육 및 자신감 훈련이 주로 활용되고 있음. 일부 민간비영리단체에서 지역 및 인터넷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주46)} .

주44) 캐나다의 비영리단체에 관한 추가 정보는 www.pch.gc.ca/progs/p-hrp/canada/enfant_e.cfm#Othe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주45) “More Respect for Children 2000”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www.bmfsfj.de에서 확인할 수 있음.

주46) www.settgrensesr.no

부록 2. UN 아동권리협약의(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전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 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을 아동시절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의 가족에게는 공동체내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며, 국제연합헌장에서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각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와 제24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

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규정, “소년법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 최소표준규격”(베이징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충돌 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I 부]

제 1 조

-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제 2 조

-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분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

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 조

-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여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의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4 조

-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

-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6 조

-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 당사국은 다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7 조

-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 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 8 조

-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음이 없이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안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9 조

-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결정은 부모에 의하여 아동 학대 또는 유기에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 본 조 제1항에 따른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이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여하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하여)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여하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여타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 10 조

-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이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협약에서 인정된 여타 권리에 부합하는 제한에 의하여만 구속된다.

제 11 조

-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이 목적을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협정에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 12 조

-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해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하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상 절차규칙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 13 조

-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 14 조

-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

여야 한다.

-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정,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 15 조

-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안 된다.

제 16 조

-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17 조

-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복지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 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다양한 문화적,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 교환 및 보급하는 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 아동도서의 보급과 제작을 장려하여야 한다.
-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 18 조

-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 후견인을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법정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 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9 조

-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가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

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상기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여타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 20 조

-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족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 받을 권리가 있다.
-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체적 보호를 확보하여야 한다.
-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 21 조

-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를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 친척 및 법정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기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국제입양은, 아동의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

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장장치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본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아동의 타국 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2 조

-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여타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추적하는 데 기울이는 여하한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여하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 23 조

-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

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기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운이, 활용 가능한 재운의 범위 내에서, 이를 받을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 장애아동의 특별한 곤란을 인식하며, 본 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운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동참과 문화적, 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공헌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 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다음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의학 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 심리적, 기능적 처치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 24 조

-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

- 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내에서 무엇보다도 용이하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 받고 교육을 받으며, 자문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당사국은 본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 25 조

- 당사국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 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여타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 26 조

-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재력과 상황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여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 27 조

-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는 능력과 재정의 범위 내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 28 조

-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학교에의 정기적인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당사국은, 특히 전 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기여하고, 과학적, 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 29 조

-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내포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개발
 -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헌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개발
 -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안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개발
- 본 조 또는 제28조의 여하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 당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 32 조

-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 당사국은 본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여타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 본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제 33 조

-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4 조

-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아동을 여하한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 35 조

- 당사국은 여하한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6 조

-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서라도 해가 되는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 37 조

-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

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 저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 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38 조

- 당사국은 아동에게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 하여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

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9 조

- 당사국은 여하한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여하한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0 조

-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자각을 촉진시키는 데 부합하도록 처우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사항을 보장 받는다.
-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받는다.
-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법정후견인을 통하여 통지 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 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 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 환경,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 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결정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위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 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된다는 조건하에서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 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여타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제 41 조

-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여하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부] 당사국의 법 또는,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국제법

제 42 조

-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 43 조

- 이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 위원회를 설립한다.
-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형평성 있는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 발효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월 이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에 대하여 2월 이내에 후보자 지명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명한 당사국의 표시와 함께 알파벳 순으로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획득하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선거 후 즉시 동 회의

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여하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 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여타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 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협약 당사국 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된다.
-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 이 협약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 44 조

-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관계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 그 후 매 5년마다
- 본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의 협약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본 조 제1항

나호에 따라서 제출하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5 조

-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여타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갖는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여타의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여타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운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여타 권한 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와 제45조에 따라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

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3부]

제 46 조

-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 47 조

-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 48 조

-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 49 조

-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 50 조

-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기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붙이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로부터 4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 하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

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 본 조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여타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 51 조

-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 시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통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보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 52 조

-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 53 조

-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 54 조

-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연구보고서 2005-14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Child Protection System among OECD Countries

발행일	2005년 12월	값 10,000원
저 자	박 세 경 외	
발행인	김 용 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동원문화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ISBN 89-8187-355-0 93330